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I)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책임자 : 박 선 영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윤 덕 경 (본원 연구위원)
박 복 순 (본원 연구위원)
이 성 은 (이화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
한 지 영 (본원 위촉연구원)

발 간 사

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구상되었습니다.

한국의 성·제도와 개발(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GID) 점수는 0.021로 123개국 중 4위입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여성차별과 불평등 관련 제도가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제도적 성평등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순위는 75개국 중 53위로 멕시코(35위), 일본(42위), 필리핀(45위), 칠레(51위)보다도 낮습니다. 또한 남녀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한국이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인 92위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상당정도 정비되어 있지만 성평등 달성수준은 여전히 미약합니다.

법의 영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1980년 후반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의 제·개정, 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특별법, 여성발전기본법의 제·개정, 그리고 최근에는 성매매특별법의 제정과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법 개정 등을 통해 여성인권 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여성들은 고용 상의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고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3년에 걸쳐 여성관련법제를 공법, 사법, 사회법 분야로 나누어 각 영역별 여성관련 법제의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2007년은 그 첫해로 공법 분야의 여성관련법제를 헌법과 형법으로 나누어 「헌법상의 여성관련조항 개정방안」,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헌법상의 여성관련조항 개정방안」 연구

는 제헌헌법 60주년을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21세기 헌법과 여성 간의 관계를 조망해 본 것으로 헌법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도 관련법제 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연구를 위해 한 해 동안 많은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연구진과 바쁘신 중에도 자문과 논평을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 경 애

연구요약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3개년 연구과제로 계획하고 있는 「여성인권 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여성 관련 법제 정비연구」의 제1차년도 연구로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주제로 해서 진행되었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의 집행현황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무엇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는 여성들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피해자로서 인권침해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 후 이러한 폭력의 피해자가 조금씩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아동, 노인 등으로 확대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폭력의 문제는 여성이라는 이유에서만 아닌 강자와 약자의 관계, 즉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이에 여기에서는 여성인권보장과 차별해소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의 법제가 어떤 영향을 미쳤고,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 어떻게 정비되어야 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NGO 등 법 집행관련 담당자와 관계자를 면접함으로써 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다 실증적으로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피해비율이 높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 집행담당자의 법 집행을 위한 인식개선에 기여하며, 일반인들의 법 시행에 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 각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 규범은 있되 현실적으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폭력 관련 법제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성폭력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연혁 및 현행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공식통계 및 정부 주요 관련 정책을 통해 성폭력을 둘러싼 현실의 변화를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현행 법제 정비방안을 모색코자 법 집행담당자(경찰, 검찰)와 NGO 관계자의 심층면접을 통한 현행 성폭력특별법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로 앞으로의 법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가. 성폭력사건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는 성폭력특별법 제정초기보다 약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성폭력범죄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006년 현재 14~19세 이하의 청소년 성폭력범죄자가 전체의 약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성폭력피해자 역시 6세 이하를 비롯하여 12세~20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가 전체 여성피해자의 30.7%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동성폭력을 비롯하여 청소년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수위임을 알 수 있다.

성폭력관련 정부정책을 살펴보면, 1998년부터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성폭력 부문이 포함되었고, 최근 확정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도 ‘여성의 복지와 인권강화’라는 큰 틀에서 세부과제로 ‘성폭력 방지 실효성 제고’를 과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타 제도로서 진술녹화제도 및 성폭력전담 조사제도, 여성전용조사실 등이 마련되었다.

나. 성폭력특별법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1) 성폭력 개념의 협소성

성폭력특별법의 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성폭력 관련 NGO 관계자들과 성폭력 수사의 전담 주체인 검사와 경찰을 면접해 본 결과 가장 문제되는 것이 성폭력 개념이 현재 너무나 협소하게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형법 상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함으로써 최근 성폭

력피해자의 다양한 성별·계층별 차이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법 집행자들 역시 생물학적인 여성만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현행법 규정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결국 형법 상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만으로 규정하는 방식, 그리고 낯선 사람에 의한 눈에 보이는 강압과 폭력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만을 강간으로 규정하는 협소한 성폭력의 개념은 재고되어야 한다.

2) 장애인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 완화 필요

1997년 성폭력특별법 개정으로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자를 간음·추행한 자를 형법의 강간·강제추행죄로 처벌함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의 위법행위를 구비하지 아니하더라도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완화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항거불능’에 대한 해석을 매우 엄격히 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정신지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정신지체 여성의 경우 약간의 위력이나 위계만으로도 억압당하여 성폭력을 당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피해자의 문제일 뿐 아니라 비장애인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를 당하는 맥락과 상황에 대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법 집행자들의 면밀한 분석과 사실에 대한 철저한 인지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3) 배상명령제도의 도입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신체의 훼손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장·단기의 정신적 충격 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소송과 동시에 민사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감과 소송지연에서 오는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배상명령절차를 도입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경우 배제되어 있다. 성폭력범죄가 그 심각성의 면에서나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의 면에서 배상명령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성폭력전담 수사관 배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폭력전담관 제도는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성폭력전담관은 경찰서 내의 소수의 여자 경찰들의 임무로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 여경들에게 다른 제도적인 교육과 구체적인 노하우에 대한 훈련 없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전담관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여경들의 가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폭력전담관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성폭력전담관의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성폭력범죄 수사 전담을 위한 ‘여성경찰관’이 필요하지만, 남성경찰관의 경우에도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5) 성폭력피해자 진술녹화제도

성폭력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이중 조사를 통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녹음·녹화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나,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빗어지게 되는 재조사의 번거로움을 피해자가 감수해야 하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검찰을 설득하기 위해서 진술녹화 이외에도 다른 조서 양식을 꾸며야 하는 이중 업무가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진술녹화제도의 진행을 위해서는 진술녹화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갖추는 등의 내용적인 축적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 부부 간의 강간

부부 간의 강간에 대한 입장은 현행법 상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자들의 보수적인 시각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즉, 결혼한 부부의 성적 관계는 혼인계약을 근거로 한 상호 동의한 성관계이지, 성폭력을 해도 좋다고 동의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법 집행자들이 구분하고 있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따라서 부부 간의 성폭력이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이 원칙적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고, 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다.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일반 국민의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인지도 및 법의식을 파악하여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전국 6개 광역시 거주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07. 6. 12~7. 20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법이 존재하는 사실을 아는 정도는 88.9%에 이르렀으나, 법의 내용에 대해 아는 정도는 49.4%에 불과하였다. 성폭력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성폭력범죄자가 어떤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피해자보호에 관한 사항 혹은 새로이 만들어진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보여졌다.

성폭력특별법의 인지경로를 조사한 결과, TV/라디오, 신문/잡지 등 대중매체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성단체/상당기관 등의 자료나 법률교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의 존재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성폭력의 유형 및 정도별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경험 횟수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음란전화를 받거나 혹은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물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자가 응답자의 26.7%로 가장 높았다. '지하철이나 버스 및 공공장소에서 원치 않는 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가 6.5%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외 '원치 않는 강제적인 신체접촉(키스나 포옹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와 '원치 않는 강제적인 성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다'가 각각 1.9%, 0.3%였다.

이러한 성폭력의 경험이 신고까지 이른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다른 성폭력 경험에 비해서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눈 여겨 볼 만하다. 이는 최근 사이버 상에서 진행되는 성폭력범죄 뿐 아니라 언어 폭력의 문제 등이 사회적인 여론 형성이 시작되면서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 평가될 수 있다.

성폭력 경험에 비해 신고율이 낮은 이유로는 사건이 경미해서, 신고해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신고절차를 잘 몰라서, 귀찮아서, 사건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등이었다.

향후 성폭력피해를 경험할 경우 신고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신고의사를 밝힌 경우는 가족이 성폭력피해를 당한 때로, 피해 당사자를 잘 모를 경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피해 경험에 대해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대부분이 신고를 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나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공개를 원치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외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움거나 신고절차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대답에 포함되었다.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동성 간 성폭력 내지는 남성의 성폭력피해 경험에 대해 성폭력특별법이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한 질문의 경우 ‘남자, 여자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성 중립적인 의식로의 변화를 토대로 성폭력특별법에서도 강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부부 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58.0%가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성별에 따라 보면, 여성의 62.5%가 부부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고, 남성의 경우 53.4%가 찬성하였다.

성폭력특별법이 성폭력범죄 감소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4.9%가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여 일정 수준에서 성폭력특별법의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특별법 내용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질의한 결과,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강화가 가장 높았고, 성폭력특별법의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 유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유도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향후 성폭력특별법의 내용에 보완되어야 할 점을 질의한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강화가 1순위였고, 수사 및 재판과정 등에서의 피해자 인권 보장,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육 및 치료감시 체계 강화 등의 순으로 꼽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인들의 처벌 강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현재 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견해가 높기 때문이라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의 처벌과 관련한 법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라. 외국 입법례의 우리 법에 대한 시사

성폭력을 둘러싼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성폭력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통한 강간 개념의 확장, 부부 간의 성폭력을 둘러싼 변화, 아동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성범죄자에 대한 대책 등 우리나라 법에 대한 시사점들을 정리하였다.

미국과 유럽 여러 국가들의 성폭력특별법의 변화 방향은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과 맥을 같이 하여 이제 더 이상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협소한 시각에서 개념화하는 것이 아니라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다양한 폭력의 양상과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성중립적인 개념으로 법 개정을 시행하고 있다. 즉, 동성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성폭력의 문제들, 소수이긴 하지만 여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정 등이 변화의 한 양상으로 제기될 수 있다. 또한 1970년대 이래로 가정 폭력 문제에 대한 제기와 함께 부부 간의 강간을 법으로 명백히 규정하거나 혹은 판례로써 부부 간의 강간을 처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부부가 되는 계약은 서로 동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한 허용을 약속한 사이이지, 성폭력을 묵인하고 받아들이는 사이가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법적인 결론임을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빈번히 발생하는 지인 간의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문제들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처벌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는 한국 사회의 성폭력특별법의 법률적인 재정비 방안에 주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3. 가정폭력 관련 법제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가정폭력 관련법제의 정비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가정폭력특별법이 그 동안의 개정과정을 통하여 현재 담고 있는 주요 내용과 공식적으로 나타난 가정폭력통계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변화 분석, 법 집행 담당자와 NGO 관계자의 심층면접을 통한 현행 가정폭력특별법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로 앞으로의 법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가. 가정폭력사건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사법기관의 가정폭력사건 처리과정을 공식 통계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가정폭력사건 발생은 가정폭력특례법의 시행과 더불어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2003년까지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4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가정폭력사건 발생이 실제 감소한 것보다는 초기 형사법적 대응의 실패와 불신으로 인한 신고율의 저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단계에서는 가정폭력사건 개입시 대체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계도조치를 통해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불구속 재판 확대 방침에 따라 해마다 구속영장 기각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형사사건의 구속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가정폭력 범죄의 구속율의 급감은 가정폭력특례법 상의 “피해자 의사 존중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경찰의 응급조치 활용율은 법 시행초기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가정폭력피해자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주거지로부터의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 경찰의 임시조치 신청율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구속율의 저하와 임시조치 신청 및 집행율의 저하는 결국 피해자의 안전 및 재발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실태를 보면, 초기에 20%를 넘던 기소율이 점차 낮아져 2006년 현재 14% 정도에 머물고, 불기소율은 점차 높아져 2003년부터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급 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상당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율은 다소 낮아지고 있다. 가정폭력특례법의 시행 초기 가정폭력사건을 가벼운 폭력사건 내지 기소유예로 처리하거나 행위자를 벌금형에 처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것에 대한 비판에서 지금은 구약식 기소율 및 기소유예율이 많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검찰단계에서 불처분율이 총 접수사건의 50%를 넘는 것은 검사의 가정폭력에 대한 시각과 가치관에 따라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법적 개입이 공백으로 남을 여지가 있다.

법원에서의 가정폭력사건의 처분내역을 보면, 보호처분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불처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보호처분 중 3호(사회봉사·수감명령), 4호(보호관찰) 처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7호(상담위

탁) 처분이 증가하는 추세임에 반해 1호(접근행위제한) 및 2호(친권행사제한) 처분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법원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불처분율이 높은 것은 법원 실무 관행 상 가정폭력사건이 발생 후 법원에서 심리기일에 들어가기까지는 5~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 중 상당한 수가 사건의 즉시성을 상실하여 법정에 출석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미 이혼을 하여 가족관계가 청산되었든지, 서로 화해하여 가정생활을 원만히 영위하고 있는 등 보호처분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 가정폭력특례법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법 시행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비방안을 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검찰과 피해자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NGO 관계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경찰의 미온적인 응급조치로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지닌 피해자들은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며 이러한 형사절차에 대한 불신이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전히 가정폭력은 가정내 문제라는 인식이 집행담당자들에게 잔존하고 있었고,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가정폭력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태동은 바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라는 가정보호에 중점을 두는 법의 목적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우선적으로 바라는 자신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법의 목적에서 “가정보호”는 삭제되어야 하며, 긴급체포권한 부여 등 경찰의 응급조치권 강화와 함께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을 나누는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하며, 보호사건으로 갈 경우 가해자의 성행교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물질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아울러 임시조치에 대한 신속성을 도모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사적 구

제조치로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그리고 법 집행담당자들이 제대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의 특수성과 권력성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전환을 위한 성인지 교육도 지속적이고 의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법의 존재에 대한 인지도는 83.4%에 이르고 있으나, 법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42.4%에 불과하였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경험 및 신고 여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가정폭력특례법의 활용도를 살펴본 결과, 가정폭력의 여러 유형 중 8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은 전체 응답자(716명)의 14.3%(102명)가 정신적 폭력의 유형이든 신체적 폭력의 유형이든 한 번이라도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신고까지 이른 건은 거의 없었다. 이처럼 현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경험에 비해 신고율이 낮은 것은 ‘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와 ‘사건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자 중 피해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또한 ‘가족을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와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가 동일한 비중으로 나타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사의 부재”와 “형사절차에 대한 불신”이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정폭력특례법의 효과성에 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7.4%가 가정폭력특례법의 제정이 가정폭력범죄 감소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 가정폭력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특례법이 가정폭력범죄 감소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자들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강화(52.1%)와 가정폭력특례법의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 유도(27.7%), 가정폭력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유도(20.2%)

순으로 꼽았다.

또한 향후 가정폭력특례법의 내용에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강화(58.5%),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인권 보장(33.3%),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육 및 치료감시 체계 강화(21.3%)와 성행교정 조치 불이행 시 제재규정 강화(21.2%) 순으로 선호하였다.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가정폭력피해 경험에 비해 신고율이 낮다는 것이다. 법의 적용대상인 일반 국민의 의식 자체에서 가정폭력의 신고를 주저하고 적극적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법이 아무리 완벽하게 정비된다 할지라도 그 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제대로 효능을 발휘하기 못할 것이다.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가정폭력 신고를 주저하는 원인에 대한 이해와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뒷받침을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그리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경찰, 검찰 및 법원의 자체적인 노력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이 요망된다.

라. 외국 입법례의 우리 법에 대한 시사

최근 가정폭력특례법의 제11차 개정으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들의 권리가 확대되고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그 동안 지적받아 왔던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경찰의 응급조치권 강화를 위한 의무적 체포제도의 도입과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선택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사적 보호명령제도 도입 등 그 동안 문제제기 되었지만 개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대만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의무적 체포란 경찰관에게 의무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나 보호명령 위반자의 체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범죄 혐의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존재하는 경우 경찰관은 체포할 의무가 있고,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많은 주의 가정폭력방지법에 의무적 체포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배경에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의 용인이나 여성 피해자의 진술 경시 등 경찰관의 성 편견(Gender Bias)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체포 회피와 그 결과 경찰에 알린 뒤에 피해자가 더욱 가혹한 폭력을 당한 일이

다수 발생하였던 것이 있다. 미국에서의 의무적 체포는 수사 초기단계에서 경찰관의 성 편견에 의하여 가정폭력 사건이 특별하게 취급되어 형사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고, 경찰관의 적극적 개입과 가해자의 구속에 의하여 폭력 위해로부터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긴급하게 보호하며, 보호명령위반시 의무적 체포를 함으로써 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에 기능하고 있다. 미국법에서의 체포는 형사사법 작용의 시작이고 우리 법에서의 체포는 범죄 혐의가 확고한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성격의 차이가 있어 동일한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미국의 의무적 체포가 현실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에 활용하려는 대처는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임시조치에서의 피해자의 권한 확대 및 신속성 도모의 법체계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과 대만의 민사보호명령제도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민사보호명령은 배우자폭력방지법에 의해 창설된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을 발하고 명령위반자에게는 형벌을 과하는 법제도이다. 대만도 가정폭력방지법 제2장에서 민사보호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두 나라 모두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보호명령제도를 확충해 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일본과 대만의 민사보호명령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자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제11차 개정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에 산재해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들을 통합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한 민사법적 조치로 구상된 것이다. 이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여부와는 무관하게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시조치나 보호처분과는 독립성을 갖는 민사법적 조치로서 법체계적 난점을 극복하면서 피해자보호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피해자 보호조치가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종속되어 있어 발생하는 피해자 보호조치의 공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성매매 관련 법제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성매매 관련법제의 정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성매매처벌법의 제정과 시행, 법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과 공식통계에 의한 법 집행현황 및 성매매관련 정책을 살펴 보고, 법 집행 담당자와 NGO 관계자의 심층면접을 통한 현행 성매매처벌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로 앞으로의 법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 성매매처벌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 성매매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수를 보면, 업주 등 관련자는 2004년 16.7%, 2005년 22.0%로 증가했다가 2006년 10.5%로 감소, 2007년 8월 현재 14.4%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구매자는 2004년 60.0%, 2005년 62.0%, 2006년 79.0%, 2007년 8월 현재 70.1%이고, 성매매여성은 2004년 23.3%, 2004년 16.0%, 2006년 10.5%로 감소하였고, 2007년 8월 현재 15.5%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성구매자의 검거비율이 60%이상으로 높은 반면, 업주 등 관련자나 성매매여성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성구매자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 때는 성구매자 처벌근거가 법에 있었으나 처벌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훈방해 오던 것을 성매매처벌법 시행에 따라 성구매자를 적극 처벌하게 되었고, 집중테마단속 및 영업장부·신용카드 전표 등에 대한 추적수사 등으로 1개업소 단속 시 수십, 수백 명의 성구매자가 단속, 검거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2007년 현재 성매매사범 중 특히 성구매자, 성판매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우선 성구매자는 회사원, 자영업의 비율이 높고, 연령대는 30대, 20대, 40대의 순이며, 재범여부와 관련하여 전과가 없는 경우가 90%이상이다. 또한 성구매자들의 성구매 이용장소 및 수단을 보면, 성구매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는 2007년의 경우 안마·이발소(32.2%), 마사지·휴게텔(19.7%), 인터넷(8.8%), 유흥단란(6.7%), 집결지(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여성의 연령별 특성을 보면, 2007년 7월 현재 20대(50.7%), 30대(23.1%), 14~19세(8.6%), 50대(8.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20대 연령은 감소하고 30~40대 연령은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의 기소율은 2004년 76.5%, 2005년 57.5%, 2006년 19.1%로 되어 해가 갈수록 기소율이 떨어지고 있고, 범죄자에 대한 구속, 불구속 상황은 2004년에 비해 2005, 2006년으로 갈수록 구속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기소

율이 떨어지는 것은 성구매자에 대한 존스쿨 교육 조건의 기소유예가 많아진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법원의 성매매사건처리에 관한 제1심법원의 선고결과에 의하면 2005년 현재 집행유예, 재산형, 유기징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성매매정책으로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성매매방지관련 시행계획 포함과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의 활동과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수립·시행, 법집행기관인 경찰청의 성매매테마단속 전개와 117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운영, 법무부의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 교육)과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클린지수 평가 등이 현재 집행되고 있고,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를 토대로 한 개선대책, 즉 변종 성매매업소의 성매매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마련, 성매매알선업자 및 알선업소의 건물주에 대한 처벌강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강화, 처벌가능한 유사성교행위 유형의 구체화, 성매매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의 실효성 제고, 안마관련업소의 성매매알선장소 제공 가능성 제거 그리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 성과를 토대로 한 인터넷 성매매, 해외성매매 단속과 처벌강화 및 성매매알선업자 등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강화를 통한 성매매차단에 계속적으로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성매매처벌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경찰, 검찰, NGO관계자 면접을 통해 성구매자를 비롯한 수사기관, 일반사회에서의 성구매행위에 대한 범죄인식이 미흡하고, 성매매업소 단속과 수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획수사에 우려되는 부분과 성매매알선업자 처벌이 미약하고 성매매행위 장소제공과 건물주 처벌이 미흡하며, 내부고발자 신고가 저조하다는 것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판매자에 대한 사후대책이 부족하고,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 개념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으며,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보호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인지도조사에서는 성매매처벌법의 존재와 내용에 관한 인지도, 성매매알선업소에 대한 신고여부, 법의 효과성 및 관련법에 관한 의식에 관해 알아보았다.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법이 존재하는 사실을 아는 정도는 93.9%에 이르나, 법의 내용에 대해 아는 정도는 55.9%에 머물렀으며 남녀간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를 통해 성매매처벌법은 2004년 제정 당시부터 언론에서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법 존재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실제 법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성구매자 및 성구매자의 처벌조항 외에는 평균적으로 다른 법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 인지 경로는 TV/라디오(96.6%), 신문/잡지(48.1%) 등 대중매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질문한 결과, 집결지(45.8%), 단란주점, 유흥주점(14.0%), 호텔 등 숙박업소 및 이발소, 안마시술소(13.4%), 인터넷 등 통신매체(10.5%), 그 외 노래연습장 및 비디오방 등(2.9%)의 순으로 답하였고, 향후 성매매알선업소에 대한 신고의사와 관련해서는 약 25~30% 정도가 신고하겠다고 대답하고, 나머지 70~75%는 신고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미신고 이유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또는 '신고해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의 이유가 많았다.

법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여부를 질문한 결과, 81.2%가 찬성하고 18.8%가 반대하였다. 금지주의에 대한 반대이유로는 80.3%는 '성매매를 금지할 경우 음성적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방지에 기여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기여했다고 본 566명 중에 54.5%가 '성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성매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았고, '성매매 관련 업소 단속 및 규제 강화'가 25.4%로 다음 순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성매매처벌법을 통한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변화 등 사회분위기 변화'가 20.1%였다.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감소에 기여하지 못했다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성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5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법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 유도'가 26.0%, '성매매 관련 업소에 대한 규제강화'가 20.7%였다.

향후 성매매처벌법 내용 상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63.2%가 ‘성매매알선업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우선 순위로 두었다. 그 다음으로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12.1%, ‘성매매피해자 개념규정 확대’가 8.1%,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인권 보장’이 5%,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치료 및 감시체계 강화’가 3.4%, ‘변종 성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이 2.9% 등이었다.

다. 성매매 관련 외국 입법례

2007년 현재 시행 3년을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현재의 성매매방지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스웨덴과 대만의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스웨덴은 성매매에 관한 법적 규제와 관련하여 폐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8년 개정된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은 여성에 대한 학대, 성폭력, 성매매 등 광범위하게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게 되었고, 그 연장선에서 1999년 제정된 「성적 서비스 구매금지에 관한 법」은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성판매자들은 양성불평등의 피해자이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남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성구매자를 범죄인화함으로써 인신매매의 피해자 및 착취의 피해자가 되는 불법체류 성매매종사자들은 성구매자들의 증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송환되어 외국인 성매매종사자들의 피해와 착취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성구매자 처벌이후 체포의 위협을 피하려는 성구매자때문에 성판매여성들은 더욱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성구매자 정책이나 성매매업무 담당 경찰관 교육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 정부는 남성들에 대한 예방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위기센터’, ‘남성폭력에 대한 남성연대’ 등 남성들의 자발적인 단체와 조직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구매자들이 삶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을 도와주고 지원하기 위해 “스웨덴의 성구매남성연구” 등의 남성연구와 성구매자를 위한 상담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 정부는 성매매 관련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하기 위해 경찰들을 3년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를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 대한 교육을 중앙, 지방단위의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들에게 수행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 지방단체 등에 의해 시행되는 교육에 대해 국제재판소, 검찰청, 보건복지부, 국가위원회가 협의할 의무를 가지며, 국가 경찰위원회에 이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음은 대만의 퇴폐업소 척결정책을 보면, 대만은 원래 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1994년 천수이피엔 타이페이시장이 취임(1994)한 이후 대만의 성매매 근절정책을 펴면서 대대적인 퇴폐업소 단속을 시작하였다.

타이페이의 성매매방지정책은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제1단계 경찰 및 관계공무원 유착비리 차단, 제2단계 퇴폐업소 척결, 제3단계는 공창제 폐지와 공창을 전업시키기 위한 대안서비스로 레인보우정책이 추진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제2단계 퇴폐업소 척결사업에 관한 것이다. 이 사업 시행 당시 사우나, 여관, 이발소, 목욕탕, 룬살롱, 식당까지 단속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3개월간의 사전조사과정을 거쳐 업소명단을 파악하고, 한달 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적발된 업소에 대해 단전단수조치를 취하였다.

단전단수조치 결과 퇴폐업소가 감소하였으며, 초기에는 적발된 업소가 계속 영업을 재개하여 한 업소가 여러 차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단전단수조치이후에는 한 번 적발된 업소가 다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퇴폐업소가 많이 감소하였다고 한다.

스웨덴의 성구매자에 관한 교육을 비롯한 성구매자 정책이나 대만의 유흥업소에 대한 척결정책은 우리가 성매매방지정책을 수행하면서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라 할 것이다.

5.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이상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관련 법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가. 성폭력

1) 성폭력 개념의 확장

성폭력특별법은 이제 가해자 남성/피해자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벗어나 성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담아내는 도구로써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동성간의 성폭력과 남녀 구분 없이 아동 성폭력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강간의 객체를 부녀자로 상정하는 성폭력 개념의 협소한 시각은 강간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 성폭력, 부부 간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동의에 의한 성관계와 성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 집행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섹슈얼리티의 왜곡된 의식에 대한 교정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2) 성폭력전담관 제도의 정비 방안

최근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전담관 제도는 형식적인 차원에서 전담관은 존재하지만 내용적으로 전담관의 전문성은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성폭력전담관 제도 신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전담관 제도가 아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훈련과 현실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One-Stop 지원 센터 체제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성폭력전담 경찰, 검사 뿐 아니라 일반적인 경찰과 검사 모두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법 해석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진술녹화제도의 정비 방안

성폭력 피해자의 반복적인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진술녹화제도는 긍정적인 제도로써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실행 과정에서의 미숙함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진술녹화를 통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의 해석 차이는 경찰의 과중한 업무로 귀결됨과 동시에 피해자의 반복 진술을 최소화하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진술녹화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검찰과 경찰이 함께 만듦으로써 진술녹화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유치장이나 취조실 바로 옆에 배치된 진술녹화실의 환경 개선 작업도 정비 방안의 하나로 제기되어야 한다.

4) 친고죄 폐지에 대한 검토

한국 사회 내에서 친고죄의 존속은 한국의 유교적인 성문화, 즉 강간을 여전히 정조에 관한 죄로 생각하고 따라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친고죄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계속 주장해 왔다. 결국 우리나라에 친고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성폭력을 사회적인 범죄가 아닌 개인적인 권리의 문제로만 한정하는 경향성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의 성문화의 점진적인 변화는 친고죄 폐지를 큰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미 다수의 피해자인 여성을 대변하는 여성단체들은 친고죄를 통해서 피해자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2차 피해의 방지를 보완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형법 상의 친고죄 폐지 후에 제기될 피해자의 2차 피해의 문제는 또 다른 보안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5) 부부 간의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부부 간의 성폭력은 현행 형법 상의 강간 규정으로도 원칙적으로는 처벌 가능하다. 집행과정 상의 문제점에서도 밝혔듯이 현행법으로 부부 간의 성폭력은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자들의 보수적인 시각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한 한 건의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법

집행자들이 결혼한 부부의 성적 관계는 혼인계약이며 의무라는 관점에 근거하여 상호 동의한 성관계와 성폭력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 간의 성폭력에 대한 규정을 법률 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혼인 계약의 의무라는 동의 하에 성관계와 성폭력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부 간의 성폭력은 성폭력 특별법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6) 장애인의 성폭력 처벌 규정 정비문제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항거불능’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신체장애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에 제8조를 적용하기 더욱 힘든 현실이다. 이러한 법해석은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에서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과 협박(최협의설 적용)에 피해자가 강렬히 저항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최협의설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인한 한계라고 본다. 최근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항거불능’의 개념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다. 항거불능 개념이 삭제될 경우 신체장애 내지는 정신적 장애의 유무만을 확인하면 되므로 훨씬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기 쉬워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정신장애’를 ‘지적 장애’로 수정하자는 제안은 또 다른 의미에서 경정할 만하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 수정도 필요하다. 또한 법 집행자들이 지적 장애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것처럼 보일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명백한 강간임에도 불구하고 화간으로 판결내리는 경우 등에 대해서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성폭력을 처리하는 기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분석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문제

폭행이나 협박은 없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비동의 간음에 대해 현행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은 아무런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실제로 성관계라는 것이 동의에 의한 성관계와 물리적 폭력이 행해지는 강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무수한 형태의 동의되지 않은 형태의 성관계가 존재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물론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대해, 명확한 행위양태를 규정하기 힘들어서 오는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실무상 입증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견해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에 대해 죄형의설을 따르고 있는 법해석의 관행을 완화시키지 않는 한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동의없는 강제적 성관계’를 보호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항거곤란의 정도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동의없이 간음·추행한 경우, 그리고 항거곤란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저항의 외적 표시를 남길 여지가 없이 공포심에 짓눌려 당한 경우 등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동의 간음죄는 신설될 필요가 있다.

8)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사업의 강화

성폭력특별법의 실질적인 집행은 국민, 정부, 경찰, 검찰, 법원을 비롯한 사법기관, 피해자보호시설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성폭력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의식에 기초한 이해, 성폭력 사실의 신고와 사법기관과 피해자 보호시설의 활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책무, 사법기관의 인권보호 관점에서의 사건처리, 피해자보호시설의 상담과 보호, 치료가 상호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고 그 역할이 잘 이루어져야 법의 실효성과 인권보장기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법 시행주체들에 대한 인권과 양성평등의식, 관련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연수원에서부터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집행과정과 방식 그리고 판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경찰에 대해 실시되는 정기적인 교육에서 양성평등적이고 성중립적인 관점에서 성폭력 사건을 집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하우가 무엇인지를 훈련하는 교육의 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공하는 것도 주요한 정비 방안 중의 하나로 채택되어야 한다. 또한 성폭력예방교육을 학교, 가정, 조직 내에서 의무화한다면, 이는 성폭력 가해자가 되기 전에 성폭력의 심각성과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는 기회를 사전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 가정폭력

1) 법의 목적

- 가정보호보다는 피해자의 인권 및 안전 강조

가정폭력 행위가 엄연한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보호라는 목적이 강조된 결과 상당수의 사건들이 경미하게 처리되고 있다. 물론 ‘가정의 유지’라는 목적 자체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거나 비효과적인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가정폭력행위를 경미한 범죄로 인식될 여지를 주게 된다. 가정폭력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법규정은 실제로 상당수의 사건이 피해자의 이혼의사에 따라 검사재량으로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이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재범 혹은 상습가능성이 큰 사건은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현행법의 가정보호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특례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가정의 유지 내지는 회복이 아니라 기본원칙으로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보호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기계적인 피해자의 의사 존중 지양

- 형사절차 속에서의 피해자의 권한강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판단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현행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기계적으로 파악하여 존중하는 처리방식은 오히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판단 및 선택을 돕기 위한 형사절차상의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가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복지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상황적 강제와 부담을 경감시키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지원에 대한 노력도 기울어야 할 것이다.

3) 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지원

- 긴급보호조치 신설 및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의 내용 확충

가정폭력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한 지붕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고, 많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하여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장래의 경제적·사회적 생활의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없이는 해결로 나아가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이다. 신체적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경찰의 초기 대응강화와 함께 가해자를 격리하기 위하여 경찰의 긴급체포권을 추가하는 등 가정폭력특례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장래의 경제적·사회적 생활의 전망을 가능하도록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피해자 보호조치가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종속되어 있어 발생하는 피해자 보호조치의 공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민사법적 조치로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가해자 위험성 평가 제도의 도입

가정폭력 가해자의 위험성 평가는 궁극적으로 폭력발생 및 생명 손실을 억제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부터 시민과 사회의 안전과 보호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현재 실무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서양식의 개발, 즉 범죄의 행위책임성, 위험성(risk assessment), 가해자의 교정가능성 및 피해자의 요보호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사 체크리스트를 구성하는 일이다. 이것은 피해자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등 보호명령 발령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인권침해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위험성 및 가해자 유형에 따른 적절한 분류처우를 선택, 처벌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조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위험수위에 대한 평가와 그에 근거하여 상담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적격한 대상자를 선

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과악과 필요한 처분을 판단하기 위하여 검찰의 사건처리에 전문가의 의견조회 시스템 등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상담 불성실 이수자 및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식적인 상담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성행 교정을 통한 폭력 재발의 억제라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일정 수준의 위하감을 줄 수 있는 공적인 상담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담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6) 보호처분의 실질화

우선,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판사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행위의 위험성, 교정가능성, 재범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진단결과를 통해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행위자를 분류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의 기반이 없어 거의 사문화되고 있는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시설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보호처분 대상자들의 행위교정을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7) 의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가정폭력특례법의 집행은 국민, 정부, 경찰, 검찰, 법원을 비롯한 사법기관, 피해자보호시설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가정폭력 및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사실의 신고와 사법기관과 피해자보호시설의 활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의 책무, 사법기관의 인권보호 관점에서의 사건처리, 피해자보호시설의 상담과 보호, 치료가 상호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고 그 역할이 잘 이루어져야 법의 실효성과 인권보장기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법 시행주체들에 대한 인권과 양성평등의식, 관련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 또한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면 가정폭력행위자가 되기 전에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문제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 성매매

1) 성구매행위에 대한 범죄인식 강화

본 연구의 법 집행담당자와의 면접을 통해 실제 수사과정에서 보여주는 성구매자의 태도는 억울하다는 반응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찰, 검찰의 태도 역시 성구매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나 편의를 봐 주는 식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성구매행위가 처벌되어야 하는 행위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성구매를 남성들의 놀이정도로 생각하는 잘못된 사회일반의 인식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홍보와 성구매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처벌로 성구매행위를 하면 확실히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으며,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을 대상으로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숙지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3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스웨덴의 경찰관계자 교육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평등, 인권교육과 일반인 대상의 성매매금지에 관한 인권교육, 기업의 접대문화 바꾸기에 대한 홍보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성매매업소 단속 및 알선업자 처벌 강화

성매매는 증거포착이 쉽지 않아 단속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성매매업주의 처벌과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업주는 처벌되어도 업소는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어 실제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영업소 폐쇄조치, 알선업소의 건물주에 대한 처벌 및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등 성매매방지 개선대책으로 내세운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을 가능한 자유업 형태의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속망을 피해가는 다양한 성매매 경로를 획기적으로 차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대만의 퇴폐업소 척결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으며 그 정도의 강력한 의지로 대처해야 함을 알려 주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벌금 몇 백만원 정도로는 영업

을 그만 두게 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실행이나 벌금의 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성판매자에 대한 사후대책 마련

현재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재범인 경우 보호처분 등으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 기소유예의 경우 성판매여성은 성매매업소로 돌아가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보호처분제도는 있으나 최근 활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앞에서의 NGO관계자의 주장처럼 성판매자에 대한 교육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참고하여 초범자인 성판매여성에게도 기소유예단계에서의 재범방지교육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구매자를 위한 존스쿨 교육도 대상자는 많고 교육여건은 부족한 상황에서 과밀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성판매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겠는가의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를 기본목표로 세운 한에서는 이를 위한 정책과 여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 할 것이다.

4)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보호 강화

우선 성매매피해자 개념적용과 관련하여 경찰과 NGO사이의 견해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성매매피해자 판단을 위한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무리한 성매매피해자 만들기에 여력을 쏟거나 경찰과 NGO간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성매매나 성매매여성에 관한 정보나 이해부족으로 성매매여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성매매여성은 성매매피해자가 되거나 판매자로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범죄자로 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지역의 경찰을 만나는가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리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수사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매매피해를 인식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금지정책 활성화

성매매방지대책은 중앙에서 지역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성매매정책집행을 위해 근거법령인 조례제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매매가능업소에 대한 행정기관의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도로, 지역에서의 성매매업소 퇴치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성매매업소를 줄여가는 일을 함으로써 양방향에서의 공략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예를 들어 성매매업소를 알리는 불법 전단지나 명함 등이 주택가나 학교지역에 마구 뿌려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의 풍속정화나 아동보호차원에서 그러한 업소의 퇴치의 필요성을 느끼는 등 사례는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의 발의를 위해 생활정치와 인권감수성이 특히 높은 여성의원의 지방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성매매방지정책 이행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성매매방지 관련 조례의 제정과 이행정도를 평가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성구매자에 대한 보호처분 제도의 적극 활용

현재 성구매자에 대한 존스쿨 교육 등 초범자에 대해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교육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재범자에 대해서는 벌금과 실형이 내려지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이 성구매자, 판매자에 대한 보호처분 제도를 두어 성행의 교정을 통한 사회통합의 길을 열어 두고 있다. 그러나 성구매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실적은 낮은 실정이다. 성매매란 특별한 병리적인 속성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성문화에 의한 왜곡된 성인식에 근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처분의 활용이 요청되는 분야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관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형사처분 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7) 젠더 관점에서의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현행법 상 성매매여성의 경우 성판매자와 성매매피해자로 구분되고 있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로 보고 성매매여성은 사회의 구조적 피해자로서 모두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관점이 성매매처벌법 제정과정에서 하나의 선명한

목소리를 낸 바 있으나 현행법은 성매매강요 등 강제에 의한 경우만 성매매 피해자로 개념을 정리하였다. 젠더관점에서 성매매를 본다면 성매매는 여성인권 에 대한 침해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전형적인 것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여성을 지원하는 현장에서는 성판매자를 사회의 구조적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최근의 5, 6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내린 최종권고에서도 자발적인 성매매여성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법 감정 상 이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쉽지 않을 것이며, 이 문제에 관해 사회적 공론의 장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2. 연구내용 및 방법	8
가. 연구내용	8
나. 연구방법	9
3. 기대효과	10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11
II. 성폭력 관련 법제	13
1. 서론	15
2. 성폭력특별법의 주요 내용	15
가. 제정이유 및 개정연혁	15
나. 법의 목적과 구조	28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29
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보호	45
3. 성폭력특별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50
가. 성폭력특별법 관련 공식통계	50
나. 성폭력 관련 정책	61
다. 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67
4. 성폭력특별법 인지도 조사결과	85
가. 조사개요	85
나. 성폭력특별법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한 인지도	87
다. 성폭력피해 경험 및 신고 여부	94
라. 관련법에 관한 의식 및 법의 효과성	98

5. 성폭력 관련 외국 입법례	105
가. 성폭력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 강간 개념의 확장	105
나. 부부 간 성폭력을 둘러싼 변화	109
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113
라. 성범죄자에 대한 대책	115
6. 소 결	116
가. 성폭력특별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116
나.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117
다. 성폭력특별법의 외국 입법례의 변화 양상	118
Ⅲ. 가정폭력 관련 법제	119
1. 서 론	121
2. 가정폭력특별법의 주요 내용	121
가. 제정이유 및 개정연혁	121
나. 법의 목적과 구조	126
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127
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139
3. 가정폭력특별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141
가. 가정폭력 관련 공식통계	141
나. 가정폭력 관련 정책	153
다. 가정폭력특별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160
4. 가정폭력특별법 인지도 조사결과	183
가. 가정폭력특별법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한 인지도	183
나. 가정폭력 피해 경험 및 신고 여부	189
다. 가정폭력특별법의 효과성	196
5. 가정폭력 관련 외국 입법례	199
가. 미국의 의무적 체포제도	200
나. 일본과 대만의 민사보호명령	204

다. 일본과 미국의 이주여성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215
6. 소 결	216
가. 가정폭력사건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217
나. 가정폭력특례법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218
다.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219
라. 외국 입법례의 우리 법에 대한 시사	221
IV. 성매매 관련 법제	223
1. 서 론	225
2. 성매매처벌법의 주요 내용	225
가. 제정이유 및 개정연혁	225
나. 법의 목적과 구조	232
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233
라.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보호규정	242
3. 성매매처벌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245
가. 성매매처벌법 관련 공식통계	245
나. 성매매 관련 정책	253
다. 성매매처벌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274
4. 성매매처벌법 인지도 조사결과	290
가. 성매매처벌법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인지도	290
나.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신고여부	295
다. 법의 효과성 및 관련법에 관한 의식	298
5. 성매매 관련 외국 입법례	302
가. 스웨덴의 성구매자 관련 정책	303
나. 대만의 퇴폐업소 척결정책	306
6. 소 결	308
가. 성매매처벌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308
나.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310

다. 성매매 관련 외국 입법례	312
V. 법제 정비방안	315
1. 성폭력	317
가. 성폭력 개념의 확장	317
나. 성폭력전담관 제도의 정비 방안	318
다. 피해자보호를 위한 진술녹화제도의 정비 방안	318
라. 친고죄 폐지에 대한 검토	319
마. 부부 간의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319
바. 장애인의 성폭력 처벌 규정 정비문제	320
사.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321
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사업의 강화	322
2. 가정폭력	323
가. 법의 목적 - 가정보호보다는 피해자의 인권 및 안전 강조	323
나. 기계적인 피해자의 의사 존중 지양	
- 형사절차 속에서의 피해자의 권한 강화	324
다. 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지원	
- 긴급보호조치 신설 및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의 내용 확충	325
라. 가해자 위험성 평가 제도의 도입	328
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조건	328
바. 보호처분의 실질화	329
사. 의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330
3. 성매매	330
가. 성구매행위에 대한 범죄인식 강화	330
나. 성매매업소 단속 및 알선업자 처벌 강화	331
다. 성판매자에 대한 사후대책의 구체화	332
라.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	332
마.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금지정책 활성화	333

바. 성구매자에 대한 보호처분 제도의 적극 활용	334
사. 젠더 관점에서의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334
참고문헌	337
1. 성폭력	337
2. 가정폭력	340
3. 성매매	344
부 록	349

표 목 차

<표 I-1> 심층면접 대상자	9
<표 II-1> 형법 상의 성폭력범죄	30
<표 II-2>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신설된 성폭력범죄	37
<표 II-3>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성폭력범죄	39
<표 II-4>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	43
<표 II-5> 성폭력범죄 발생상황	50
<표 II-6> 성폭력범죄자의 성별(2006)	51
<표 II-7> 성폭력범죄자(강간) 범행 시 연령 분포(2006)	51
<표 II-8> 성폭력범죄자(강간) 직업(2006)	52
<표 II-9> 성폭력범죄자(강간)와 피해자와의 관계(2006)	52
<표 II-10> 성폭력범죄자(강간) 전회처분 상황(2006)	53
<표 II-11> 성폭력재범자 재범종류(2006)	53
<표 II-12> 성폭력범죄(강간) 피해자 연령 분포(2006)	54
<표 II-13> 성폭력범죄 신고 현황	55
<표 II-14> 성폭력범죄(강간) 피해자 미신고 이유	55
<표 II-15> 성폭력범죄(강간)의 신고 시 수사단서(2006)	56
<표 II-16> 전체 성폭력범죄 발생상황 및 검거상황	56
<표 II-17> 성폭력범죄자(강간) 구속·불구속 상황	57
<표 II-18> 성폭력사범 접수 및 처분결과	57
<표 II-19> 형법 상 성폭력범죄 죄명별 접수 및 처리인원(2006)	58
<표 II-20> 성폭력특별법 상 성폭력범죄 죄명별 접수 및 처리인원(2006)	59
<표 II-21> 형법 상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제1심 판결 현황	60
<표 II-22> 성폭력특별법 상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제1심 판결 현황	61
<표 II-23>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실적(2006)	63
<표 II-24>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2007)	63
<표 II-25> 성폭력 심층면접 사례개요표	68

<표 II-2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86
<표 II-27> 성폭력특별법의 존재사실의 인지도 - 응답자특성별	88
<표 II-28> 성폭력특별법 내용 인지도 - 응답자특성별	89
<표 II-29> 성폭력특별법 인지내용	90
<표 II-30> 성폭력특별법의 인지 내용 - 응답자 특성별	91
<표 II-31> 성폭력특별법 인지경로 - 반응별	92
<표 II-32> 성폭력특별법 인지경로 - 응답자 특성별	93
<표 II-33> 성폭력피해 경험	94
<표 II-34> 성폭력피해 경험에 대한 신고 여부	95
<표 II-35> 성폭력피해 경험에 대한 미신고 이유	95
<표 II-36> 향후 성폭력피해에 대한 신고의사	97
<표 II-37> 피해 당사자별 신고를 꺼리는 이유	98
<표 II-38>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식	99
<표 II-39> 부부 강간죄 성립 여부 및 그 이유	100
<표 II-40> 부부 강간죄 미성립 여부 및 그 이유	101
<표 II-41> 성폭력특별법의 성폭력 방지 기여 여부	102
<표 II-42> 향후 성폭력특별법 내용 상 보완되어야 할 점	105
<표 III-1> 가정보호사건 연령별 구성	142
<표 III-2> 가정보호사건 행위원인별 특성	143
<표 III-3> 가정보호사건 교육정도별 특성	143
<표 III-4> 가정보호사건 가정구성원별 현황	144
<표 III-5> 가정폭력 사건발생 및 조치상황	145
<표 III-6> 경찰의 응급조치 활용현황	146
<표 III-7> 경찰의 임시조치(격리, 접근금지) 신청 현황	147
<표 III-8> 가정폭력 사건발생 및 처분실태	148
<표 III-9>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사건 접수내역	150
<표 III-10> 가정보호사건 처리내역	151
<표 III-11> 가정보호사건 죄명별 접수현황	152
<표 III-1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실적(2006)	153
<표 III-13>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2007)	154

<표 III-14> 가정폭력 심층면접 사례개요표	160
<표 III-15> 가정폭력특례법의 존재사실의 인지도 - 응답자특성별	185
<표 III-16> 가정폭력특례법 내용 인지도 - 응답자특성별	185
<표 III-17> 가정폭력특례법 인지내용	186
<표 III-18> 가정폭력특례법의 인지 내용 - 응답자 특성별	187
<표 III-19> 가정폭력특례법 인지경로 - 반응별	188
<표 III-20> 가정폭력특례법 인지경로 - 응답자 특성별	189
<표 III-21> 현재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 경험	191
<표 III-22> 현재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신고 여부	191
<표 III-23> 현재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에 대한 미신고 이유	192
<표 III-24> 전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 경험	193
<표 III-25> 전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신고 여부	193
<표 III-26> 전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에 대한 미신고 이유	194
<표 III-27> 향후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의사	195
<표 III-28> 피해 당사자별 신고를 꺼리는 이유	196
<표 III-29> 가정폭력특례법의 가정폭력 방지 기여 여부	197
<표 III-30> 향후 가정폭력특례법 내용 상 보완되어야 할 점	199
<표 IV-1>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처벌법 처벌형량 비교	237
<표 IV-2> 성매매사범 단속 현황(2004~2007)	246
<표 IV-3> 성구매자(남성)의 직업별 특성	247
<표 IV-4> 성구매자(남성)의 연령별 특성	248
<표 IV-5> 동종전과	248
<표 IV-6> 이용장소 및 수단	249
<표 IV-7> 성매매사범 중 성매매여성의 연령별 특성	249
<표 IV-8> 성매매사범 중 성매매여성의 종사기간	250
<표 IV-9> 성매매사건의 검찰처분현황	251
<표 IV-10>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 제1심 법원 처리현황	252
<표 IV-11>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사범 제1심 법원 처리현황	253
<표 IV-1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실적(2006)	254
<표 IV-13>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2007)	255

<표 IV-14>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실적(2006)	256
<표 IV-15>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2007)	257
<표 IV-16> 성매매방지종합대책 부처별 소관과제	259
<표 IV-16> 성매매방지종합대책 부처별 소관과제 (계속)	260
<표 IV-16> 성매매방지종합대책 부처별 소관과제 (계속)	261
<표 IV-17> 성매매 사범 단속실적	262
<표 IV-18> 성매매 여성 인권보호활동 현황	266
<표 IV-19>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집행실태	268
<표 IV-20> 교육기관별 존스쿨 접수인원	269
<표 IV-21> 경찰청 성매매 테마단속 추진실적	270
<표 IV-22> 117센터 운영 실적	271
<표 IV-23> 성매매처벌법 시행직후 특별단속기간 중 업소별 단속유형	273
<표 IV-24> 풍속영업소 현황	273
<표 IV-25> 성매매 심층면접 사례개요표	274
<표 IV-26> 성매매처벌법의 존재사실의 인지도 - 응답자특성별	291
<표 IV-27> 성매매처벌법 내용 인지도 - 응답자특성별	292
<표 IV-28> 성매매처벌법 인지내용	293
<표 IV-29> 성매매처벌법의 인지 내용 - 응답자 특성별	293
<표 IV-30> 성매매처벌법 인지경로 - 반응별	294
<표 IV-31> 성매매처벌법 인지경로 - 응답자 특성별	295
<표 IV-32> 성매매 알선업소	296
<표 IV-33> 향후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신고의사	296
<표 IV-34> 업소유형별 신고를 꺼리는 이유	297
<표 IV-35> 성매매금지주의에 관한 의식	298
<표 IV-36> 성매매 금지주의를 찬성하지 않는 이유	299
<표 IV-37>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 방지 기여 여부	299
<표 IV-38> 향후 성매매처벌법 내용 상 보완되어야 할 점	302

그림 차례

<그림 II-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계획: 성폭력 부문	64
<그림 II-2> 성폭력특별법의 인지도	87
<그림 II-3> 성폭력특별법의 성폭력 방지 기여 여부	103
<그림 II-4> 성폭력특별법의 개선되어야 할 점	104
<그림 III-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계획: 가정폭력 부문	155
<그림 III-2> 가정폭력특별법의 인지도	184
<그림 III-3> 가정폭력특별법의 가정폭력 방지 기여 여부	197
<그림 III-4> 가정폭력특별법의 개선되어야 할 점	198
<그림 IV-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계획: 성매매 부문	258
<그림 IV-2> 성매매처벌법의 인지도	290
<그림 IV-3>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 방지 기여 여부	300
<그림 IV-4> 성매매처벌법의 개선되어야 할 점	30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2. 연구내용 및 방법 10
3. 기대효과 10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11

이 연구는 여성관련법제의 정비방안을 3년에 걸쳐 공법, 가족법, 사회법 영역으로 나누어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는 체결국에게 남녀평등원칙이 법률 속에서 구현되도록 할 것과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로써 규정하고 있다. 이런 국제기준과 여성운동의 성장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인권 보장과 차별해소를 위한 법률들의 제·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의 제·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의 제·개정, 그리고 최근에는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법 개정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런 법률들은 한편으로는 여성에 대한 차별해소와 인권보장에 기여한 바 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이 점에 주목하여 한국 사회내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여성의 정치참여 및 고용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실질적인 이행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보다 발전된 법제도적 인프라 강화에 대한 요구들이 증가하고 있고 시급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이주여성, 성적소수자 여성, 여성 장애인 등 여성 내부의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여성의 재생산권 등의 권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이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적 검토와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 해소를 위해 보다 발전된 형태로 법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법제를 변화된 상황과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로 정비하는 것과 함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3년에 걸쳐 여성관련법제를 공법, 사법, 사회법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영역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별 여성관련법제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I)

2007년은 그 첫해로 공법 분야의 여성관련법제를 헌법과 형법으로 나누어 「헌법상의 여성관련조항 개정방안」,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8년에는 가족의 다양화와 다민족 가족의 증가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배경으로 가족관련법제 정비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 보고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결과이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사건 중에서 성폭력·가정폭력은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손해를 수반하는 폭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여성피해자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의 공통점을 갖는다. 1990년대 아내구타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가정폭력이나 강간, 강제추행 등 여성에 대한 심각한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단체 차원의 입법운동이 있었고, 그 결과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한다),¹⁾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별법’이라 한다)²⁾이 제정되었다. 또한 성매매여성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장단체들이 새로운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주장한 결과 2004년에는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³⁾이 탄생하기에 이르렀다.⁴⁾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1994. 1. 5 법률 제4702호).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 1997. 12. 13 법률 제5436호).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정 2004. 3. 22 법률 제7196호).

4) 가정폭력·성매매에 관한 피해자보호법이 함께 제정되었으나(1997. 12. 3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2004. 3. 2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이 보고서에서는 가정폭력·성매매 등의 범죄의 처벌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되므로 가정폭력·성매매처벌법만 취급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은 폭력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젠더 관점에 입각하여, 폭력피해여성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폭력범죄의 예방과 형사 처벌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의 제정을 촉발시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유엔이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각 국가에게 권고했던 것 보다 먼저, 더구나 우리 사회안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⁵⁾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가지 법은 여성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으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젠더 관점에 입각한 각 법·정책 연구에도 불구하고 최근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성문화 등을 고려할 때, 젠더 관점을 넘어서서 각각의 법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된다.

성폭력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에 있어서 성폭력을 여성에 관한 폭력(gender violence)으로 규정할 것인가 혹은 성적인 폭력(sexual violence)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논란이 있어왔다.⁶⁾ 실제로 남자에 대한 성추행 등 남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남성 간의 성폭력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만 자리매김할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의 경우도 아내 폭력문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동과 노인 학대의 문제 그리고 남편구타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정폭력을 단순히

5) 여성폭력에 관한 국제적 기준은 1993. 6에 개최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선언과 행동계획, 1993. 12 UN총회에서 채택된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 1995. 9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선언과 행동강령(Platform of Action) 등으로 대표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여성단체들이 매매춘(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중대한 인권침해문제로 문제제기하였다. 그 후 1990년대 이르러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보다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1994. 1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특별법 등의 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한국여성의전화연합(2000),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아카데미).

6) 이성은(2003), “성희롱-이성애제도-조직문화 그 연관성에 관한 고찰”, 『한국여성학』 제19권 제2호, 한국여성학회; 변혜정(2004), “성폭력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반성폭력운동단체의 성정치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0권 제2호, 한국여성학회, 44~50면 참조; 신상숙(2001),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 제13권, 한국여성연구소, 17~23면 참조.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만 규정한다면 법에 대한 협소한 개념화로 현실을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⁷⁾ 또한 성매매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 즉, 성을 파는 행위와 사는 행위는 처벌되지만, 성을 파는 행위를 했더라도 강요나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의 경우라면 성매매피해자로 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매매의 경우 피해자개념은 전체 성판매자 집단 중 일부에 해당하고 일반화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여성단체는 성매매여성 전체를 성매매피해자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 바, 이와 같이 법적 개념과 여성단체에서 보는 개념이 다른 데서 오는 법 집행 상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⁸⁾

일반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세 가지 영역을 ‘여성폭력’ 또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범주화하거나 그렇게 범주화하기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여성폭력전담검사, 여성폭력지원시설 등 정부의 관련 부서에서도 일상적으로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대로 상대적으로 많은 폭력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법들이 제정되었으나 조금씩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아동, 노인 등의 피해가 늘고 있음을 볼 때, 이 세 가지 영역을 통틀어 ‘여성폭력’ 또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범주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들은 ‘여성인권관련법’의 하나로는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법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그 보호대상을 확장시켜 성중립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성폭력의 경우 남성에 대한 성폭력, 동성 간 성폭력, 가정폭력의 경우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등이 규율대상으로 되어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여성만이 아닌 남성, 아동, 노인에 대한 폭력의 발생과 그것이 법의 규율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7) 양현아(2005), “가정폭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젠더폭력 개념을 중심으로”, 『가족법 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참조.

8) 최홍원형(2002), “왜 ‘성매매 피해 여성’으로 규정해야 하는가? - 성매매방지법 논쟁을 중심으로”, 『당대비평』 통권 제18호, 생각의 나무, 123~135면 참조; 변혜정(2004), “성매매는 왜, 누구의 문제인가”, 『당대비평』 통권 제28호, 생각의 나무, 40~44면 참조; 이니영(2005), “성매매: 여성주의 성정치학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학』 제21권 제1호, 한국여성학회, 41~74면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제를 감안하면서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법들이 여성의 인권보장과 차별해소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이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법이 정한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부응하는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향후 과제로서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이 법들의 입법배경 자체도 여성의 폭력피해로부터 출발하였고, 현재 피해자 중 다수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의 법 집행상황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각 법에서는 각 영역의 폭력범죄의 처벌과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규정을 통해 법의 목적을 달성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법이 목적달성에 부응하고 있는가는 법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법 집행의 문제일 수도 있다. 여기서 집행의 문제를 보다 세밀히 보고자 하는 것은 법이 아무리 좋은 목적을 수립하였더라도 집행 상 문제가 있다면 법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피기 위한 방법으로 법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집행수단인 각종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잘 돌아가는가와 이를 집행하는 담당자들의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가가 고찰되어야 한다. 그런데 특히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는 사회적으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이러한 인식이 법 집행담당자들에게 있는 경우 법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원활한 법 집행이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법 집행과정 및 집행담당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접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법이 시행된 지 길게는 14년, 짧게는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반 국민들은 이 법들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고, 법 활용경험은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의 법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와 함께 이러한 정책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3개년 연구과제로 계획하고 있는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여성 관련 법제 정비연구」의 제1차년도 연구로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부제로 해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여성피해비율이 높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 집행담당자의 법 집행을 위한 인식개선에 기여하며, 일반인들의 법 시행에 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 각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 규범은 있되 현실적으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모두 법의 주요 내용, 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인지도 조사, 외국 입법례, 소결의 순으로 진행되며, 가정폭력·성매매에 이어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 중 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에서는 공식통계, 관련 정책과 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다루게 되며, 문제점은 문헌연구와 특히 경찰, 검찰, NGO 관계자와의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한다. 인지도 조사는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법의 인지여부, 인지경로, 법의 활용경험, 법 개선방향에 관해 질문하였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외국 입법례는 우리 법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해결에 주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으로 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연구방법

1) 공식통계, 기관자료 등 문헌연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관련 신고건수, 수사·재판기관의 처리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검찰연감」,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공청회, 토론회 등에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제공한 통계자료도 함께 활용하였다.

2) 관계자 심층면접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처벌법 집행담당자와의 면접을 통해 현장 실무자들이 경험하는 법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경찰, 검찰, NGO 관계자 21명을 면접하였다.

면접내용은 법에 관한 인식정도, 법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법 처리과정에 대한 평가, 성인지 교육 관련, 법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표 I-1> 심층면접 대상자

(단위: 명)

구분	경찰	검사	NGO 관계자	계
성폭력	2	2	3	7
가정폭력	2	2	3	7
성매매	2	2	3	7
계	6	6	9	21

10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I)

3)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처벌법에 관한 인지도 조사

일반국민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처벌법 인지도 및 법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으로 질문지조사를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 6. 12~7. 30이었으며, 조사내용은 세 가지 법에 대한 인지도(법 인지 경로, 법 내용 인지), 법 활용 여부(법·제도에 관한 신뢰성 여부), 법의 효과성 및 법에 관한 인식을 내용으로 한다.

4) 외국 입법례 연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순으로 각 법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 입법례 중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가 큰 사례 등을 선정하여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5)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과제의 연구방향 및 보고서 초안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였다.

3. 기대효과

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범죄의 심각성 인지

나. 법 집행담당자의 법 집행을 위한 인식개선에 기여

다. 일반인들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처벌법 시행에 관한 인식증진에 기여

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처벌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제공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가. 본 연구에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처벌에 관련된 법률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 성매매처벌법을 연구의 범위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범죄자의 처벌과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를 연구대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성폭력특별법의 경우는 단일법에 들어 있는 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지원시설 등 피해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부분이 연구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폭력피해자가 성인, 아동, 청소년인가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법들이 관계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성폭력은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서 범죄자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에서는 특별히 19세 미만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알선이나 성구매를 한 경우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관계되는 법도 최소한으로 다루기로 한다.

다. 이 보고서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의 개념을 여성에 대한 폭력만이 아닌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설정한다는 것을 앞에서 전제하였다. 따라서 성폭력 중 남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동성간 성폭력을 논의의 대상으로 할 것이다. 가정폭력 역시 배우자 폭력 이외에 아동학대, 노인학대도 현실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중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배우자 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라.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에 관한 외국 입법례의 경우 단순한 개별 법령이나 제도만이 아니라 그 국가의 법체계나 법 해석

12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I)

론 및 법 집행상황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것이 실질적인 시사점을 얻는데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에 관한 방대한 작업으로 인해 외국 입법례 연구에만 치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따라서 부분적으로 개략적인 소개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음을 밝혀 둔다. 외국 입법례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는 다른 기회에 수행될 필요가 있다.

II

성폭력 관련 법제

1. 서론	5
2. 성폭력특별법의 주요 내용	5
3. 성폭력특별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6
4. 성폭력특별법의 인지도 조사결과	5
5. 성폭력 관련 외국 입법례	15
6. 소결	116

1. 서론

본 장에서는 성폭력특별법의 주요 내용, 집행현황과 문제점, 인지도 조사 결과, 성폭력 관련 외국 입법례 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제기하기에 앞서 성폭력의 기본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 서론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성폭력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 성폭력을 규정하느냐 혹은 성적인 폭력 전반을 성폭력으로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로 함축된다. 이는 최근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여성 뿐 아니라 소수의 남성과 그리고 다수의 아동과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중립적인 관점에서 성폭력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 성폭력은 성중립적인 관점에서 정의하는 성적인 폭력(Sexual Violence)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성폭력특별법의 주요 내용

가. 제정이유 및 개정연혁

1) 제정이유 및 내용

성폭력특별법은 각종 성폭력범죄가 점차 흉폭화·집단화·지능화·저연령화되고,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자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재판등 사법처리절차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하기 위하여 1994. 1. 5 법률 제4702호로 제정되었다.

- ① 존속 등 연장의 친족에 의해 강간·추행과 신체장애자에 대한 추행을 처벌하도록 하고 이를 모두 비친고죄로 하였다(제7조, 제8조).

- ②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버스·지하철·극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로 하였다(제13조, 제14조).
-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할 때에는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범죄를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대상범죄로 보도록 하였다(제16조, 제17조).
- ④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1조, 제22조).

2) 개정연혁 및 내용

이 법은 그 동안 총 11차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다. 동 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개정한 것은 제2차(1997. 8. 22 법률 제5343호), 제6차(1998. 12. 28 법률 제5593호), 제8차(2003. 12. 11 법률 제6995호), 제11차(2006. 10. 27 법률 제8059호) 개정이다.

가) 제2차 개정(1997. 8. 22 법률 제5343호)

1994. 1. 5 성폭력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으나 전국적으로 근친간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빈발하는 등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절차를 한층 강화하여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코자 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었다.

- ①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강간 등을 가중처벌함에 있어서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 ②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을 처벌함에 있어 장애인의 범위를 신체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장애까지 확대하였다.
- ③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가중처벌하고

이를 비친고죄로 규정하였다.

- ④ 성폭력피해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⑤ 18세 미만의 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특별법 또는 형법에서 비친고죄로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당한 사실을 안 때에는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나) 제6차 개정(1998. 12. 28 법률 제5593호)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방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며,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카메라·비디오 등을 설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기 위해서 1998. 12. 28 법률 제5593호로 개정되었다.

-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건조물 등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촬영 전에 단속된 자에 대하여는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2조).
- ②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로 촬영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4조의2).
- ③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7조).

다) 제8차 개정(2003. 12. 11 법률 제6995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경우 진술과정을 영상물에 의하여 녹화하게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었다.

- ①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때에는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도록 하고, 당해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1조의2).
-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피해자를 신문 또는 조사하는 때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하였다(제22조의3 제3항).
- ③ 법원은 강간·강제추행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2조의4).
- ④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그 피해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2조의6 제1항 후단).

라) 제11차 개정(2006. 10. 27 법률 제8059호)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있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었다.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한 자를 간음죄 및 추행죄와 구별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제8조의2 제2항).
- ②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등이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11조 제3항).

- ③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였다(제14조).
- ④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도 촬영한 자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한편,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였다(제14조의2).
- 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감호하는 자의 추행 및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 등의 간음·추행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함으로써 친고죄의 범위를 축소하였다(제15조).
- ⑥ 성폭력범죄의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처벌하되,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하였다(제21조 제3항,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35조 제2항).
- ⑦ 성폭력범죄 조사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미리 지정된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또는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였다(제21조의2).
- ⑧ 의무적 진술녹화의 대상자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제21조의3).
- ⑨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에 있어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하였다(제22조의3).

3) 최근의 성폭력 관련 법률 제·개정 동향

가) 성폭력특별법 개정법률 발의안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2007. 2. 9)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사실에 대한 인식부족, 그 범죄에 대처하는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의 결여, 가해자에 대한 공포 등으로 그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미성년 성폭력피해자가 이를 극복하고 가해자를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는 때가 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 상의 공소시효제도 때문에 불가능하게 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성폭력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공소시효의 진행을 당해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로 하는 공소시효의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 ① 형사소송법 상 범죄행위의 종료 시부터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공소시효를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한다(안 제19조의2 신설).

(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홍미영의원 대표발의, 2007. 3. 20)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진압과 그 피해자의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관할 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위법령의 소관부처가 상이한 법체계를 이루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나타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성폭력범죄를 규제·진압 및 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내용하는 특례법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성폭력범죄의 진압을 기하려는 것이다.

- ①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 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안 제3조 제1항).

- ②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 또는 준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각각 처벌한다(안 제5조 제1항).
- ③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안 제6조 제1항).
- ④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 제10조 제1항).
- 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 제14조 제1항).
- ⑥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도록 한다(안 제16조 제1항).
- ⑦ 「형사소송법」 상의 고소의 제한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안 제17조).
- ⑨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안 제21조 제1항).
- ⑩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안 제23조 제1항).
- ⑪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안 제25조 제1항).
- ⑫ 법원은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증거장치에 의한 증거를 통하여 신문

할 수 있다(안 제26조 제1항).

- ⑬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안 제27조).
- ⑭ 비밀엄수의무위반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한다(안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인의원 대표발의, 2007. 4. 18)**

현행법 가운데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을 기본법인 「형법」에 흡수하여 규정함으로써 이 법은 피해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 ① 법률명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조항을 삭제한다(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5조 삭제).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 대표발의, 2007. 4. 18)⁹⁾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는 기본법인 「형법」에서 규정하여야 하나, 「형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형법」으로 처벌이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있거나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왔다.

그러나 성폭력특별법 개정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의 결함을 부분적으로는 시정 가능하나, 성폭력특별법 자체가 「형법」의 성폭력 규정을 모태로 하고 있어 개정의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형법」의 성폭력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9) 본 개정안은 형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이지만, 성폭력특별법의 상당부분을 포괄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소개토록 한다.

에 있어서 현행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 체계 상의 보호 공백을 보완하며, 친고죄를 폐지하여 보다 엄격한 형사처벌을 강구함으로써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 ① 사람에게 대하여 그가 동의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성적 행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에게 대하여 그가 동의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간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 제279조).
- ②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거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 흥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에게 성적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안 제299조의2 신설).
- ③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교육, 업무, 고용, 종교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동을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각각 처한다(안 제299조의3 제1항 신설).
- ④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제299조의2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한다(안 제299조의4 제1항 신설).
- ⑤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제298조부터 제299조의2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9조의5 제1항 신설).
- ⑥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 위계에 의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간음한 자는 제298조 또는 제299조의 예에 따른다(안 제300조).
- ⑦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안 제301조 제1항).
- ⑧ 교육, 업무, 고용, 종교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24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I)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하여 그 보호 또는 감독의 권한을 남용하여 성적 행동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간음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안 제303조 제1항 제1호).

- ⑨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한다(안 제304조 삭제).
- ⑩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말이나 음향, 글,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 제305조의3 신설).
- ⑪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 제305조의3 제1항 신설).
- ⑫ 성적 행위 또는 강간죄의 객체에 법률상·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안 제306조의3 신설).

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

(1) 제정이유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출소 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그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7. 4. 27 법률 제8394호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범죄자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¹⁰⁾ 다만, 단말기 개발, 시스템 시험운용 및 운용능력 습득에 필요한

10) 성폭력범죄 재방방지를 위한 ‘전자팔찌제도’의 위헌여부와 관련된 논의는 김서현(2006), “성폭력범 재범장치를 위한 조치 - 전자팔찌 등 상습범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70~74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08. 10. 28로 하였다(부칙 제1조). 그리고 제5조 제1항의 부칙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토록 하였다(부칙 제2조 제1항).¹¹⁾

(2)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제2조 제1호)

성폭력범죄자 전자장치부착법 상의 성폭력범죄는 다음의 범죄를 포함한다.

- ① 형법에 따른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간추행 및 그 미수범,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강도강간을 한 죄 및 이와 같은 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 ②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및 그 미수범,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을 한 죄 및 이와 같은 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 ③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을 한 죄 및 이와 같은 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를 대상 범죄

면 참조. 김서현(2006)은 전자팔찌 부착이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전자팔찌 부착제도가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합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범죄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와 그 제한에 의해 얻어지는 공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공익이 실질적으로 담보된다는 보장없이 범죄인의 기본권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11) 성폭력범죄자 전자장치부착법 부칙에서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동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위헌시비가 있다. 전자팔찌제도가 범죄자를 징벌하기 위한 목적의 처벌이라기보다 재범방지와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형법 제41조 상의 형벌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정은(2007), 『고시계』 2007년 8월호, 고시계사, 178~180면 참조.

④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정의(제2조 제2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조 제2호).

(다) 전자장치의 부착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등(제4조, 제5조 및 제12조)

검사는 ①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③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④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유기징역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제2항). 다만,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제4조).

법원도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 사건을 심리한 결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제5조 제3항).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제13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날 또는 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제1항). 다만,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제2항).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가해제(제17조)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전자장치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거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인격, 생활태도, 부착명령 이행 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부착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종료(제20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①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②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③ 부착명령기간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④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자가 그 가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경과한 때 집행이 종료된다.

(라) 가석방 등과 전자장치 부착(제22조~제23조)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가 형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기간(가석방 기간, 보호관찰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제1항).

(마)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제28조)

법원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경우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바) 벌칙(제36조)

전자장치 부착업무를 담당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1항), 금품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전자장치를 해제·손상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항). 그리고 피부착자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8조).

나. 법의 목적과 구조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의 구조는 총칙(제1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제2장), 성폭력 피해상담소등(제3장), 벌칙(제4장)의 총 4장과 부칙, 3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에는 법의 목적(제1조), 성폭력범죄의 정의(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3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제4조)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제2장에는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벌칙(제5조 내지 제14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제16조), 고소(제15조, 제18조, 제19조)와 신고의무(제22조의5), 수사와 재판의 특례(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준용)(제20조), 피해

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제21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 조사제(제21조의2),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제21조의3), 심리의 비공개(제22조), 전문가의 의견조회(제22조의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22조의3), 비디오 등 증거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22조의4), 증거보전의 특례(제22조의6)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제3장에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제23조 내지 제32조), 의료보호(제33조) 등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제4장에는 벌칙(제35조, 제37조)과 과태료(제36조)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이와 같이 이 법은 ①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행정법, ② 고소와 고발, 수사와 처벌에 관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③ 피해자의 보호와 치료에 관한 사회복지법의 성격을 가지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이 법에서는 성폭력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성폭력범죄가 무엇인지를 죄명으로 열거하고 있다(제2조). 그 범죄유형은 크게 형법상의 죄, 성폭력특별법상의 죄 및 이들 죄에 관해 다른 법률에서 가중 처벌되는 죄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처벌

가) 형법 상의 성폭력범죄

이 법은 형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범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 ①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등의 반포등), 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 ②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 ③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④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표 II-1> 형법 상의 성폭력범죄

죄명·법조항	범죄 행위	법 정 형
음행매개죄 (제242조)	영리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제243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화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제244조)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음란죄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계 속)

<표 II-1> 형법 상의 성폭력범죄 (계속)

죄명·법조항	범죄 행위	법정형
영리약취유인 매매죄 (제288조 제1항)	추행, 간음,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는 행위 (상습범, 미수범 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녀매매죄 (제288조 제2항)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하는 행위 (상습범, 미수범 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약취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은닉죄 (제292조 제1항)	추행 또는 간음, 영리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된 사람이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된 부녀를 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 (상습범, 미수범, 상습범의 미수범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강간죄 (제297조)	폭행,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미수범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제298조)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 (미수범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간죄 (제299조)	부녀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 (미수범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죄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 (미수범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등 상해·치상죄 (제301조)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등 살인·치사죄 (제301조의2)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이 · 사람을 살해한 행위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등의 죄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제303조)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행위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 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13세미만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제305조)	· 13세미만의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 · 13세미만의 부녀를 간음한 자가 그 부녀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 13세미만의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 13세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도강간죄 (제339조)	강도가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나)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새로운 성폭력범죄

성폭력특별법은 형법에는 없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내지 제14조의2).

(1) 특수강도강간등(제5조)

형법 상의 주거침입죄(제319조 제1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330조), 특수절도죄(제331조)를 범한 자 또는 주거침입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이 강간 내지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또한 형법 상의 특수강도(제334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이 강간 내지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이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된다(제12조).

이 조항은 성폭력특별법 제1차 개정 시(1997. 8. 22)에 제5조 제1항의 특수절도강간죄의 행위자에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미수범이 추가되었고, 법정형에서 사형이 삭제되었으며,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의 행위자에 특수강도의 미수범이 추가되었다.

한편, 이 법은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한 벌칙에 사형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외 성폭력범죄 중 사형을 법정형에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는 이 법 제10조 제1항(강간등 살인·치사)과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죄)의 죄를 범한 경우이다.

(2) 특수강간등(제6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상의 (준)강간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상의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강간·강제추행죄가 친고죄인 것과는 달리 이 죄는 비친고죄이다. 제2차 개정 시(1997. 8.

22)에 이러한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되게 되었다(제12조).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7조)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상의 (준)강간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상의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된다(제12조).

제정 당시에는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의 혈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제2차 개정(1997. 8. 22) 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강간 등을 가중처벌함에 있어서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비속의 친족 또는 의붓아버지에 의한 강간의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친족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도 강간·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제8조)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된다(제12조).

제정 당시에는 신체장애자에 대한 준강간 등을 처벌하였는데, 제2차 개정(1997. 8. 22) 시 장애인의 범위를 신체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장애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5)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8조의2)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항),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도 제1항 또는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미수범도 처벌된다(제12조).

제2차 개정(1997. 8. 22) 시 신설된 조항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가중처벌하고 이를 비친고죄로 규정함으로써 아동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6) 강간 등 상해·치상(제9조)

이 법 제5조 제1항(특수절도강간등), 제6조(특수강간등)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짐을 규정하고 있다(제1항). 또한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짐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된다(제12조). 이 범죄의 행위자에 미수범이 포함된 것은 제2차 개정 시(1997. 8. 22)이다.

(7) 강간등 살인·치사(제10조)

이 법의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제6조(특수강간등),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형법 제300조)이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다(제1항). 또한 이 법의 제6조(특수강간등),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다(제2항). 이러한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된다(제12조).

성폭력특별법 제2차 개정 시(1997. 8. 22)에 이 범죄의 행위자에 특수강도 강간죄, 특수강간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의 미수범이 추가되었다.

(8)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제11조)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1항), 친고죄이다(제15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 또한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항).

제3항의 규정은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그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를 위계·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형법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따라 처벌됨으로써 일부 처벌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제11차 개정 시(2006. 10. 27) 신설된 것이다.

(9)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제15조).

(10) 통신매체이용음란(제14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고죄이다(제15조).

제11차 개정(2006. 10. 27) 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되었다.

(11) 카메라등 이용촬영(제14조의2)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1항), 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12조).

이 범죄에 관하여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제37조). 즉,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범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1차 개정(2006. 10. 27) 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만을 처벌하던 것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촬영물의 유통행위(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것)에 대한 처벌도 포함하여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한편,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다.

<표 II-2>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신설된 성폭력범죄

죄명·법조항	범죄 행위	법정형
특수절도강간죄 등 (제5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자와 제330조 내지 제331조의 미수범이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는 행위 · 미수범처벌(제12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강간죄 등 (제5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범이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는 행위 · 미수범처벌(제12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간죄 등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행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또는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행위 · 미수범처벌(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등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족관계(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사실상의 친족관계 포함)에 있는 자가 · 형법 제297조(강간)와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행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와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행위 · 미수범처벌(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 등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 여자를 간음한 행위 ·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한 행위 · 미수범처벌(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유기징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죄 등 (제8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행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또는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행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행위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2.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 미수범처벌(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계속)

<표 II-2>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신설된 성폭력범죄 (계속)

죄명·법조항	범죄 행위	법정형
강간 등 상해·치상죄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 제1항(특수절도강간 등), 제6조(특수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 ·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 · 미수범처벌(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죄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제6조(특수강간 등),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형법 제300조)이 사람을 살해한 행위 · 제6조(특수강간 등),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 미수범처벌(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행위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행위 ·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 간음한 행위 · 추행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밀집장소 에서의 추행죄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제14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 · 영리목적으로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 · 미수범처벌(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성폭력범죄

성폭력특별법 제2조 제2항은 형법 상의 성폭력범죄(제2조 제1항)로서 다른 법률(「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제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제5조의5)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본다.

<표 II-3>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성폭력범죄

죄명·법조항	범죄 행위	법정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과 제288조 제2항(부녀매매죄)의 죄를 범한 행위, 또는 형법 제292조 제1항(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은닉 죄)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 · 위 범죄의 상습범 · 위의 범죄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 죄를 범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누범) ·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과 제288조 제2항(부녀매매죄)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301조(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 까지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3조) 성폭력특별법 (제20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특별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제6조(특수강간등), 제9조(강간 상해·치사),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와 그 미수범(특정강력범죄)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 까지 가중

라) 청소년성보호법 상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관련 특별규정

(1)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제2조)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제1호),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범죄는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제7조)
- ②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특별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
- ③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절차특례(제7조)

여자청소년에 대해 강간죄(형법 제297조)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1항), 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 또한 준강간·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를 범한 자(제3항)와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제4항) 강간·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된다.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의 미수범 역시 처벌된다(제5항).

(3)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제도

(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제32조, 제33조)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거나 판결로 신상에 대한 등록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열람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다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이로 인해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제3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 송달서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33조 제1항).

(나) 등록정보의 관리(제35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를 최초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부터 1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다.

(다) 등록정보의 열람(제37조)

법원은 ①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③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열람정보(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제4항)를 5년간 열람에 제공토록 열람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열람명령을 내릴 수 없다(제1항).

열람명령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제3항).

2) 성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고소할 수 있

다. 또한 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5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비친고죄(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제6조(특수강간 등),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간음 등),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은 없다.

한편,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해당되는 범죄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가 있지 않으면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다. 또 형사소송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24조), 성폭력특별법에서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8조). 또한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이 법은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고소기간을 연장하였다. 만일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제19조 제1항).

그런데 현행 형법은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의 성범죄 중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사)와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를 제외하고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성폭력특별법(제15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만을 친고죄로 하고 있다.

제11차 개정(2006. 10. 27) 전에는 제11조 전체가 친고죄의 적용대상이었으나,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감호하는 자의 추행 및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등의 간음·추행죄는 공익의 침해 정도가 심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엄벌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만을 친고죄로 제한하였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이 2007. 8. 3 개정되면서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의 친

고죄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정 범죄에 대하여 반의사 불벌죄로 하였다(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표 II-4>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

법	친고죄
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8조 제1항, 제292조 제1항 또는 제293조 제2항의 각 죄 중 추행,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제296조) · 제297조(강간) · 제298조(강제추행) · 제299조(준강간·강제추행) · 제300조(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의 미수범) · 제302조(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제303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 제305조(13세 미만의 부녀에 대한 간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추행)
성폭력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한편, 성폭력특별법(제20조)은 특정강력범죄인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제6조(특수강간등),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등 살인·치사)의 범 죄 및 그 미수범(제12조)에 관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의 제8조(출판물등으로부터 피해자보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 중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외 신고·고발한 자의 보호에 관해서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 있다.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 8. 31 법률 제5997호로 제정되어 2000.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의해 성폭력범죄 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특정강력범죄로 간주되는 범죄에 관해 신고·진정·고소·고발·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상의 불이익처우를 금지하며(제5조),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적사항의 공개금지(제8조), 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제11조), 신변안전조치(제13조) 등의 보호를 받는다. 또한 국가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 대리인 또는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4조).

3) 보호관찰(제16조)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형을 선고유예할 경우 1년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제1항). 또한 형을 집행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내려야한다(제2항). 그리고 형 집행 중에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제3항).

제2차 개정(1997. 8. 22) 시 보호관찰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보호

1) 신원누설금지(제21조)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제1항),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제2항).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5조).

2)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제21조의2)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지정된 성폭력범죄전담 검사 또는 성폭력범죄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전담 검사 또는 성폭력범죄전담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성폭력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범죄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1차 개정(2006. 10. 27) 시 신설된 조항이다.

3) 영상물의 촬영, 보존 등: 진술녹화제 적용대상의 확대(제21조의3)

성폭력범죄의 조사횟수를 최소화하는 조항을 신설(2003. 12. 11)함으로써 반복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갖는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피해자 진술의 비디오 촬영을 허용하였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조사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제2항).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 등의 명시적인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 녹화장치에 의해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11차 개정(2006. 10. 27) 시 의무적 진술녹화의 대상자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개정 전에는 제21조의2 제1항에서 ‘조사회수의 최소성’을 규정하고 있었다면 개정 후 성폭력특별법 제21조의3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제1항에서 규정한 뒤, 제2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조사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다 구체화하였다.

4) 심리의 비공개(제22조)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비공개 증인신문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제2항). 그 신청을 받은 재판장은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제22조).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피고인 기타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7조)라고 하여 피고인일시퇴정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피해자가 가해자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

인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운영 중인 원격영상재판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굳이 범죄자면전에서 진술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영상을 통해 증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다른 증인신문의 경우나 의료기록 등의 증거조사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사생활에 속하는 비밀이 폭로될 위험은 상당히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는 본인의 증인신문의 경우뿐만 아니라 공판심리절차의 전 과정에 걸쳐서 재판비공개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5) 전문가의 의견조회(제22조의2)

법원이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조회 결과 성폭력범죄 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의무 강화(제22조의3)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에 있어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강화하였다.

예전에는 13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의 경우에만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의무화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동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을 제11차 개정(2006. 10. 27)으로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에 있어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강화한 것이다.

7)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22조의4)

성폭력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제1항). 이때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결정한 때 증인의 연령, 증언할 당시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을 할 것 인지의 여부를 동시에 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2조의4제1항의증인신문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8) 증거보전의 특례(제22조의6)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다(제22조의6).

제2차 개정(1997. 8. 22) 시 신설된 조항으로 제11차 개정(2006. 10. 27) 시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신체장애 및 정신상의 장애인의 경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2조의6 제1항).

9)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준용

성폭력특별법 제20조는 특정강력범죄인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제6조(특수강간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그 미수범(제12조)에 관한 증인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 제9조(소송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①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② 증인은 검사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이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출판물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를 준용함에 따라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9조(소송진행의 협의)를 준용함에 따라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검사 및 변호인과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제1항). 다만, 그 협의는 소송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제2항).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조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항).

또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12조가 준용되어 특정강력범죄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범죄가 병합되는 경우에도 같다.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13조도 준용되어 법원은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한 때에는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복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성폭력특별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가. 성폭력특별법 관련 공식통계

여기에서는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1994년을 기준으로, 시행된 첫 해인 1994년과 그로부터 5년 후인 1999년, 그리고 최근 5년여의 성폭력범죄관련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공식통계를 주로 참고로 한다.

1) 성폭력사건의 발생

<표 II-5> 성폭력범죄 발생상황

(단위: 건(%))

년도	발생	
	발생건수	발생비
1994	6,173 (1,246)	13.7 (2.8)
1999	6,410 (2,420)	13.5 (5.1)
2003	10,365 (-)	21.4 (-)
2004	11,105 (-)	22.9 (-)
2005	11,757 (-)	24.1 (-)
2006	13,573 (-)	27.7 (-)

주: 발생비 - 인구 100,000명에 대한 범죄 발생건수 / 성폭력범죄 -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 괄호안의 수치는 성폭력특별법 상의 성폭력범죄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5, 2000, 2004, 2005, 2006, 2007』.

대검찰청이 2007년에 발간한 『범죄분석』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는 형법상의 강간과 추행의 죄와 함께 성폭력특별법 상의 범죄발생건수를 합하면 총 1994년에 7,419건이었고, 1999년에는 8,830건이었다. 2003년~2005년 사이에는 성폭력특별법 상의 범죄 수치가 따로 없지만, 성폭력특별법 제정 초기보다는 약 2배가량 늘어난 수치로 2006년 현재 13,573건으로 인구 100,000명 당 27.7%의 발생비를 나타내고 있다.

2)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대검찰청이 2007년에 발간한 『범죄분석』을 근거로 2006년 현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의 인적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성별 특성

<표 II-6> 성폭력범죄자의 성별(2006)

(단위: 명, %)

계(A)	남	여(B)	B/A × 100	미상
10,353	10,016	65	0.6	272

출처: 대검찰청(2007), 『범죄분석 2007』.

범죄자 총 10,353명 중 남자 10,016명(96.7%), 여자가 65명(0.6%)으로 남자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자의 범행이 무엇인지는 공식통계로 나타나지 않으나 성폭력범죄 중 강제추행관련죄의 가해자이거나 강간관련죄의 공범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연령별 특성

<표 II-7> 성폭력범죄자(강간) 범행 시 연령 분포(2006)

(단위: 명)

계	소년			성인					미상
	소계	14세 미만	14~19세	소계	20~30세	31~40세	41~60세	61세 이상	
10,353	979	12	967	8,851	2,381	2,907	3,140	1,053	523

출처: 대검찰청(2007), 『범죄분석 2007』.

범죄자의 범행 당시 연령은 41~60세가 30.3%(3,140명)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1~40세가 28.1%(2,907명)이다. 그리고 14세~19세 이하의 청소년 성폭력범죄자가 9.3%(967명)를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성폭력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다) 직업별 특성

<표 II-8> 성폭력범죄자(강간) 직업(2006)

(단위: 명)

계	피고용자	자영자	학생	전문직	공무원	미상	기타
10,353	3,896	1,691	1,115	290	110	812	2,436

출처: 대검찰청(2007), 『범죄분석 2007』.

범죄자의 직업은 피고용자 3,896명(37.6%), 자영자 1,691명(16.3%), 학생 1,115명(10.8%), 전문직 290명(2.8%) 등의 순이다.

라) 피해자와의 관계

<표 II-9> 성폭력범죄자(강간)와 피해자와의 관계(2006)

(단위: 명)

계	피해자													
	국가·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 동료	친구	애인	동거 친족	기타 친족	거래 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기타	미상
10,353	4	39	76	214	187	257	145	66	41	237	707	5,475	663	2,242

출처: 대검찰청(2007), 『범죄분석 2007』.

성폭력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범죄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관계(타인)가 5,475명(52.9%)으로 가장 많다. 그 외 기타와 미상을 제외한 관계를 보면, 그냥 아는 관계(지인)가 707명(6.8%), 애인 257명(2.5%), 이웃 237명(2.3%), 직장동료 214명(2.0%), 친구 187명(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의 피해자가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지인, 이웃 등 아는 사람에 의한 범행이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한다.

마) 전회처분

<표 II-10> 성폭력범죄자(강간) 전회처분 상황(2006)

(단위: 명)

계	초범	재범												미상	
		소계	즉결 심판	기소 유예	선도 유예	수배중	보호 처분	선고 유예	집행 유예중	보석형 집행장자중	가석방	형(재산형 포함) 집행 종료	감호소 출소		기타
10,353	3,229	5,324	-	313	20	33	67	9	156	6	11	3,655	13	1,041	1,800

출처: 대검찰청(2007), 『범죄분석 2007』.

전과있는 범죄자가 바로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처분을 받았는가를 살펴보면, 초범이 3,229명으로 31.2%이고 재범인 경우 5,324명으로 51.4%였다. 재범 중에서는 형집행종료가 3,655명(35.3%)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미상과 기타를 제외하고 기소유예(313명, 3.0%), 집행유예중(156명,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형의 집행을 마치고 재범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겠지만,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가 성공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추정된다.

바) 성폭력재범자 재범종류

<표 II-11> 성폭력재범자 재범종류(2006)

(단위: 명)

년도	계	동종재범(同種再犯)	이종재범(異種再犯)
1994	2,655 (789)	338 (121)	2,317 (668)
1999	3,849 (1,972)	475 (289)	3,374 (1,683)
2003	5,870 (-)	730 (-)	5,140 (-)
2004	4,817 (-)	527 (-)	4,290 (-)
2005	4,557 (-)	672 (-)	3,885 (-)
2006	5,307 (-)	757 (-)	4,550 (-)

주: 괄호안의 수치는 성폭력특별법 상의 재범자 수치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5, 2000, 2004, 2005, 2006, 2007』.

2006년의 경우 성폭력범죄 재범자 5,307명 중 동종재범은 757명(14.3%), 이종재범은 4,550명(85.7%)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종재범비율이 높은 것은 성폭력범죄자들이 성폭력범죄의 속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범죄와 더불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성폭력피해자의 특성

<표 II-12> 성폭력범죄(강간) 피해자 연령 분포(2006)
(단위: 명(%))

계	성별	소계	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0세 초과	불상
13,108 (100.0)	남성	507 (3.9)	9	34	44	52	159	83	91	24	11	198
	여성	12,403 (94.6)	161	728	689	2,228	4,864	1,676	1,444	396	217	

출처: 대검찰청(2007), 『범죄분석 2007』.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100% 중 여성 피해자가 약 95% 이상일 정도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상당수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30대, 40대를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6세 이하를 비롯하여 12세~20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총 3,806건으로 전체 여성피해자의 30.7%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동성폭력을 비롯하여 청소년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수위임을 알 수 있다.

4) 성폭력범죄의 신고·고소 실태

가) 성폭력범죄 신고현황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 후인 1995년부터 약 10년이 지난 2005년까지 강간과 성폭력특별법 상의 범죄에 대한 신고율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는 발생범죄 건수에 대한 신고율을 알 수 없으나, 절대적인 신고수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3> 성폭력범죄 신고 현황

(단위: 건)

구분	1995년	2000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6,093	10,381	12,494	14,089	13,446
강간	4,844	6,855	6,531	6,959	7,321
성폭력특별법	1,249	2,920	3,886	4,264	4,282

주: 성폭력특별법은 1994. 4. 1부터 가산, 강간 사건에는 형법상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규정된 범죄 행위 모두 포함.

출처: 이미경(2007),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형법 마련을 위해”, 『성폭력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2007. 2. 8).

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미신고 이유

<표 II-14> 성폭력범죄(강간) 피해자 미신고 이유

(단위: 건)

구분	계	피해 근소	부정 물자	명예 보호	보복 우려	범인이 친족, 친구	피해품 회수 기대안	범인 검거 기대안	유실로 착각	절차 복잡	신고지 원거리	피해 사실 몰라서	기타
1994	212	-	-	23	22	-	-	-	-	-	-	-	167
1999	187	-	-	3	14	2	-	-	-	1	-	-	167
2003	516	5	1	19	46	14	1	7	-	1	2	6	414
2004	686	-	-	2	15	5	-	2	-	1	-	3	658
2005	652	-	-	1	3	-	-	-	-	-	-	-	13
2006	1,222	-	-	1	4	-	-	-	-	-	-	3	14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5, 2000, 2004, 2005, 2006, 2007』.

여전히 성폭력범죄의 신고를 기피하는 이유로는 피해자의 명예보호와 보복에 대한 우려가 기타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우선 순위에 올라있다. 1994년 이후로 점차 비율이 줄었다고 보기에 명확한 흐름이 통계 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보호와 보복에 대한 우려 혹은 범인이 친족이거나 친구 등 아는 사람이어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단서

<표 II-15> 성폭력범죄(강간)의 신고 시 수사단서(2006)

(단위: 건)

계	현행법	신고							미신고
		소계	피해자 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 투서	타인 신고	
13,573	3,779	8,572	5,095	3,079	14	2	99	283	1,222

출처: 대검찰청(2007), 『범죄분석 2007』.

성폭력범죄자로 신고된 건 중 수사단서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경우가 5,095명(37.5%)으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이 고소 3,079명(22.7%), 타인신고 283명(2.1%) 순이다.

5) 사법기관의 성폭력사건 처리

<표 II-16> 전체 성폭력범죄 발생상황 및 검거상황

(단위: 건)

년도	발생		검거				
	발생건수	발생비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계	남	여
1994	6,169 (1,246)	13.7 (2.8)	6,045 (1,280)	98 (102.7)	6,596 (2,260)	6,492 (2,243)	104 (17)
1999	6,410 (2,420)	13.5 (5.1)	6,164 (2,485)	96.9 (102.7)	6,193 (3,520)	6,162 (3,342)	31 (178)
2003	11,105	22.9	10,220	92.0	9,521	9,301	220
2004	10,365	21.4	9,555	92.2	10,570	10,360	210
2005	11,757	24.1	10,365	88.2	11,288	11,106	182
2006	13,573	27.7	12,501	92.1	13,589	13,325	264

주: 발생비 - 인구 100,000명에 대한 범죄 발생건수, 검거율 - 발생건수에 대한 검거건수의 백분율(%), 괄호 안의 수치는 성폭력특별법 상의 성폭력범죄 수치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5, 2000, 2004, 2005, 2006, 2007』.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2006년에 발생한 전체 성폭력범죄 13,573건 중에서 검거건수는 총 12,501건으로 검거율이 92.1%이다. 검거된 인원 중 전체 13,589명 중 남성이 13,325명(98.1%)으로 검거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 성폭력범죄자 구속·불구속 상황

<표 II-17> 성폭력범죄자(강간) 구속·불구속 상황

(단위: 명(%))

년도	계	구속					불구속					
		소계	현행법 체포	긴급 체포	사전 영장	체포	소계	불구속 입건	영장요구		적부심 석방	검사 구속 취소
								검사 기각	판사 기각			
1994	5,650 (2,133)	2,945 (1,670)	743 (273)	816 (638)	1,386 (759)	-	2,705 (463)	2,504 (425)	99 (25)	30 (11)	13 (-)	59 (2)
1999	6,277 (3,688)	2,390 (2,352)	885 (698)	1,397 (1,540)	92 (85)	16 (29)	3,887 (1,336)	3,548 (1,174)	204 (94)	102 (64)	7 (-)	26 (4)
2003	9,815	3,804	1,256	2,348	161	39	6,011	5,681	194	107	-	-
2004	7,136	2,674	715	1,692	168	99	4,462	3,937	278	214	7	26
2005	6,740	2,218	556	1,325	223	114	4,522	4,141	203	154	9	15
2006	7,942	2,285	561	1,291	273	160	5,657	5,221	208	195	14	19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성폭력특별법 상의 수치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5, 2000, 2004, 2005, 2006, 2007』.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범죄분석』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구속·불구속 상황을 보면,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해 성폭력범죄자 중 60.2%가 구속되었고, 그 중 현행법은 9.5%, 긴급구속된 경우가 15.4%, 사전영장이 35.4%였다. 불구속된 경우(39.8%) 35.5%가 불구속입건되었다. 이후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성폭력범죄자의 구속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성폭력범죄자 접수 및 처분결과

<표 II-18> 성폭력사범 접수 및 처분결과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인원	기소			불기소							보호 사건 송치	
			계	구공판	구약식	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2003	8,521	8,471	3,935	3,478	457	4,048	664	183	9	2,553	217	314	111	303
2004	9,393	9,232	3,799	2,834	965	4,980	935	278	12	3,150	182	314	109	283
2005	9,280	9,294	3,805	3,143	662	4,951	896	217	4	3,112	271	315	136	332

출처: 법무부, 『법무부 여성통계 2006』.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총 9,280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형사기소된 인원은 3,805명으로 전체의 41.0%를 차지한다. 불기소된 인원은 전체의 53.4%인 4,951명이며, 보호사건 송치는 전체의 3.6%인 332명이다. 불기소된 사건의 경우 ‘공소권없음’이 전체 불기소 사건 4,951건 중 62.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혐의없음’(18.1%), ‘기소중지’(2.8%) 등의 순이다.

다) 성폭력범죄 죄명별 접수 및 처리인원

<표 II-19> 형법 상 성폭력범죄 죄명별 접수 및 처리인원(2006)

(단위: 명)

구분	접수	처리															
		총계	기소				불기소							소년 보호 사건 송치	가정 보호 사건 송치	타관 송치	
			소계	구공판 구속	불구 속	구약 식	소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 권 없음	기소 중지	참고 인중 지				각하
강간과 추행의죄 (계)	8,633	8,392	3,186	1,222	665	1,299	5,016	710	137	6	3,630	310	75	239	75	1	114
강간· 준강간	2,236	2,157	385	385	100	-	1,715	229	4	-	1,240	87	26	129	8	-	49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4,605	4,519	1,738	204	241	1,293	2,737	214	43	2	2,301	60	25	92	20	-	24
강간등상해	358	348	297	218	79	-	41	18	7	-	2	10	3	1	6	-	4
강간등치상	1,195	1,142	659	436	223	-	419	230	80	-	33	49	20	7	31	1	32
강간등살인	7	7	6	6	-	-	1	1	-	-	-	-	-	-	-	-	-
강간등치사	4	4	3	3	-	-	1	-	1	-	-	-	-	-	-	-	-
미성년자 간음	91	38	31	21	10	-	52	8	-	-	39	-	1	4	-	-	-
업무상위력 간음	20	18	2	1	1	-	15	4	-	-	7	2	-	2	-	-	1
미성년자 의제강간	37	37	19	18	1	-	10	2	-	2	4	1	-	1	7	-	1
미성년자 의제강제 추행	80	77	46	30	10	6	25	4	2	2	13	1	-	3	3	-	3

출처: 대검찰청(2007), 『검찰연감 2007』.

형법 상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접수 및 처리인원을 보면, 가장 많이 접수된 사건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 4,605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강간·준강간’ 2,236건, ‘강간등치상’이 1,195건 순이다.

<표 II-20> 성폭력특별법 상 성폭력범죄 죄명별 접수 및 처리인원(2006)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총계	기소					불기소							소년 보호 사건 송치	가정 보호 사건 송치	타관 송치
			소계	구공판 구속	불구 속	구약 식	소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 권 없음	기소 중지	참고 인 증지	각하			
13세미만 강간등	754	740	473	289	100	84	185	70	65	5	2	34	1	8	70	-	12
강간등 살인	16	16	15	14	1	-	1	-	-	-	-	1	-	-	-	-	-
강간등상해	237	229	182	158	24	-	41	17	1	-	2	12	1	8	4	-	2
강간등치상	322	316	212	187	25	-	41	30	5	-	1	4	1	-	54	-	9
공중밀집 장소추행	944	939	622	12	9	601	311	9	9	-	291	2	-	-	-	-	6
업무상 위력등추행	123	116	37	4	13	20	78	11	-	-	60	1	-	6	-	-	1
장애인 에 대한 준강간등	188	171	71	39	23	9	94	67	5	-	1	12	2	7	2	-	4
절도강간등	41	40	33	27	6	-	5	3	2	-	-	-	-	-	1	-	1
주거침입 강간등	368	360	279	182	97	-	74	21	32	-	2	15	3	1	4	-	3
친족관계에 의한강간등	265	252	151	127	24	-	93	41	12	1	11	15	3	10	-	-	8
카메라등 이용촬영	488	476	334	36	20	278	114	25	72	-	6	4	-	7	17	-	11
통신매체 이용음란	228	226	101	2	8	91	119	15	11	1	65	14	1	12	2	-	4
특수강간등	950	921	391	313	78	-	264	113	61	-	26	28	19	17	244	-	22
특수강도 강간등	326	310	250	190	60	-	32	8	2	-	6	15	1	-	7	-	21
특수강제 추행등	205	200	46	29	17	-	89	24	44	5	5	6	-	5	51	-	14

출처: 대검찰청(2007), 『검찰연감 2007』.

성폭력특별법 상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접수 및 처리인원을 보면, 가장 많이 접수된 사건은 ‘특수강간 등’이 95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공중장소에서의 추행’이 944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이 754건 순이다. 그리고 접수된 사건 중에서 처리된 사건의 경우 기소율을 보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이 63.9%(처리 740건 중 기소 473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66.2%, ‘카메라등이용촬영’이 70.1%, ‘통신매체이용음란’이 44.7%로 나타났다.

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판결 현황

<표 II-21> 형법 상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제1심 판결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합계	판결														소년부 송치	기타
			사형	자유형														
				무기	유기	집행유예	자격형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형의면제	면소	관할위반	공소기간				
1994	3,260	3,335	-	1	960	1,267	-	68	4	22	6	-	-	733	82	66		
2003	1,981	1,997	-	2	665	896	-	83	-	17	-	1	-	149	48	136		
2005	1,902	1,795	-	2	579	788	-	107	11	31	-	-	-	198	14	65		
2006	1,806	1,830	-	1	575	744	-	137	6	27	-	4	-	212	23	101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95, 2004, 2006, 2007』.

2006년의 경우 제1심 재판이 이루어진 피고인 1,830명 중 무기 또는 유기 징역을 받은 사람은 576명으로 전체 31.5%,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744명(4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2> 성폭력특별법 상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제1심 판결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합계	판결													소년 부 송치	기타
			사형	자유형													
				무기	유기	집행 유예	자격 형	재산 형	선고 유예	무죄	형의 면제	면소	관할 위반	공소 기간			
1994	981	761	-	2	336	201	-	-	-	1	-	-	-	2	114	1	
2003	2,520	2,575	1	6	1,350	832	-	157	1	12	-	-	-	51	96	69	
2005	2,310	2,353	-	9	1,121	845	-	77	3	28	-	-	-	79	132	59	
2006	2,141	2,222	1	15	957	767	-	125	6	27	1	-	-	80	150	93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95, 2004, 2006, 2007』.

성폭력특별법 상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제1심 판결 현황을 보면, 2006년 현재 제1심에서 처리된 2,222건 중 무기 또는 유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972명 이고, 집행유예는 767건으로 나타났다.

나. 성폭력 관련 정책

1) 「여성정책기본계획」 상의 성폭력 근절정책 이행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헌법에 규정된 남녀평등이념을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1995. 12)되었고, 동 법에는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 5년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제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도록 하였다(제8조 제1항).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에서는 주요 정책과제(20개) 중의 하나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정책과제는 크게 ‘여성에 대한 폭력발생방지 환경조성(15-1)’과 ‘폭력에 의한 피해여성·가족의 보호’로 구분된다. 특히 폭력에 의한 피해여성·가족의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는 성폭력피해 상담소 확충 등을 통한 피해자보호강화,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의료시설에 대한 지원육성 등을 통한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제도 도입(보건복지부)이 세부과제로 되어 있다.

추진성과를 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의 기능 강화를 통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2001년)하였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치안역량 결집 및 전담처리를 위한 여성청소년과가 신설되었다. 또한 성폭력 피해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 14개 지방청에 246개 여성상담실을 설치하고 TV, 신문, 책장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서는 여성폭력관련법제도의 정비 및 법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추진코자 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0대 핵심정책과제 중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인권보호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정책과제로 성폭력과 관련하여 ‘8-2.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추진’을 두고, ‘8-2-2. 성폭력관련법·제도의 정비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① 상황변화에 따른 성폭력관련법의 재정비, ②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수사과 재판 상에서 편의 확충 등, ③ 성폭력 수사종사자 직무교육 강화, ④ 성폭력 관련 정부통계자료 구축을 계획하였다.

<표 II-23>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실적(2006)

주관부처	계획	실적
법무부	○ 성폭력 피해자 관련 단속 지시 등	○ 10. 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령에 따른 전담검사지정 및 교육 실시 계획 수립 시달
	○ 성폭력 수사역량 강화	○ 12. 20.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지침' 시달 - '피해자 조사환경의 조성' 규정 신설 - '전담검사제', '신뢰관계자에 있는 자의 동석' 규정을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적용 -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자를 13세 미만 아동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 녹화데이프를 특수압수물에 준하여 보관토록 하던 것을 일반압수물에 준하여 보관
경찰청	○ 성폭력 수사인력 및 ONE-STOP지원센터 운영인력확보 추진	○ 여성청소년계 미설치 1급지 24개 경찰서 여청계 신설(67명) 및 전국 6개 ONE-STOP지원센터 운영인력(27명) 등 정원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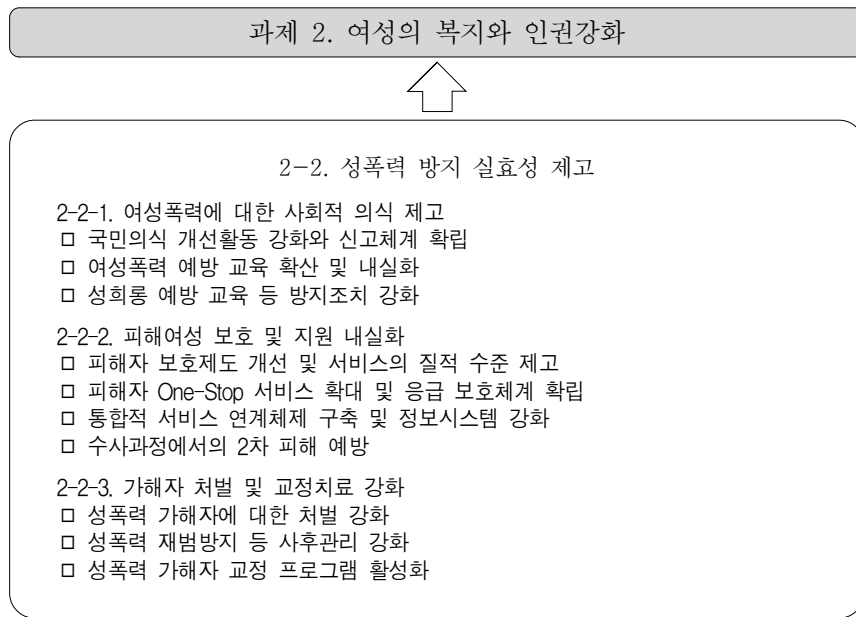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2007),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2006년 시행실적 및 2007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표 II-24>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2007)

주관부처	시행계획
법무부	○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여성피해자 관련 범죄 수사기법' 등 전담 강의 신설 요청 (상반기) ○ '성폭력 사건 수사·공판 관련 지침' 철저 준수 지시(연중)
경찰청	○ 여성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운영(5월경) - 전국 ONE-STOP지원센터 중앙지원 업무를 통합하는 여성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정(위치: 서울 용산구 남영동 인권보호센터내) ○ 『ONE-STOP지원센터』 확대 설치 지속 추진 - 여성폭력 치안수요가 많은 경기북부 지역 추가 설치 및 향후 대전, 광주 등 신설 지방경찰청에 연차적인 확대 설치 추진 ○ 유전자(DNA) 정보은행 구축으로 성폭력 증거확보 능력 강화 - 유전자 정보은행 구축을 위한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예정으로 향후 추진방안 마련
2008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폭력관련법의 지속적 정비로 폭력피해여성의 인권보호 강화(2006~) ○ 기 수립·시행중인 각종 지침 등 철저 준수토록 지속적 독려 ○ 사회적 분위기, 환경 등에 따라 적절히 법·제도 정비 추진 ○ 지속적인 제도 정비 및 여성폭력 관련 NGO와의 연계로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 중장기계획 수립 결과 및 매년 정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법령정비 추진

출처: 여성가족부(2007),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2006년 시행실적 및 2007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과제 2. 여성의 복지와 인권강화’를 추진과제로 잡고, 세부과제로 ‘2-2.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실효성 제고’를 두고 있다.



출처: 여성가족부(2007),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http://www.mogef.go.kr/>.

<그림 II-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계획: 성폭력 부문

2) 법무부 「성폭력범죄 근절 및 피해자보호 대책」

법무부가 지난 2006. 2. 28에 발표한 「성폭력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일부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검토, 양형기준제도 도입,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 수립, 양형조사제도 도입 등), ② 정신병 등으로 인한 성범죄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치료감호제도 및 전문가 의견조회 적극 활용,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교정치료프로그램 개발 등), ③ 성폭력사범의 재범방지(유전자 정보은행 설립 추진, 전자감독제 신중 검토, 외출제한명령제도 확대 추진, 집중보호관찰제도 활용 확대

등), ④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범죄피해자 보호법인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피해자 지원,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적 피해 방지) 등이다.

또한 2006. 3. 24 「성폭력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국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법무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성폭력피해자 진술녹화제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이중조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녹음·녹화 조사제도를 두고 있다. 2005년 54개 전자조사실에서 1,696명에 대하여 녹음·녹화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6년에는 2,000명까지 확대 실시하였다.¹²⁾

또한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수사 및 재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수사과정 영상녹화제’가 도입되었다(2008. 1. 1 시행). 수사과정 영상녹화제는 범죄 피의자나 참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을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녹화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뿐만 아니라 조사자의 진술 내용, 억양, 표정, 조사 분위기 등을 추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수사과정의 영상녹화로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의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불필요한 진술 번복을 방지할 수 있어 수사와 재판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자인 경우에 한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진술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앞으로 모든 피의자와 참고인으로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¹³⁾

12) 법무부(2006), 『성폭력범죄 근절 및 피해자보호대책』(2006. 2. 28), 법무부, 11면.

13)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서의 영상녹화와 참고인조사시의 영상녹화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 등 참고인조사 시에는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 형사소송법 제221조), 그리고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요건은 현행 형사소송법보다 강화되었다(동법 제312조 제4항). 현행 성폭력특별법 제21조의3과 다른 점은, 성폭력특별법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진술의 영상녹화가 의무적이나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그렇지 않고,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신뢰관계인의 진술만으로도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나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증인으로 신문받는 경우에만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4) 성폭력범죄자 외출제한명령제도¹⁴⁾

성폭력범죄자 외출제한명령제도는 보호관찰이 부과된 대상자 중 특정시간 대 외출을 제한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첨단기법으로, 상습적인 성매매나 야간 주거침입, 강도·절도, 폭주족, 청소년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해 3개월~1년간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2003년부터 일부 기관¹⁵⁾에서 시범 실시되어 오다가 2005년에 전국 보호관찰소로 확대되었다.

외출제한명령의 구체적 집행방식은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할 경우 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개시신고를 하고, 신고받은 담당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여, 거주지에 설치된 전화기를 통해 대상자의 음성을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서버에 등록하게 되고,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서버는 외출이 제한된 시간 동안 대상자가 외출하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점검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할 경우 담당보호관찰관은 해당 대상자를 소환하거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정도의 경중에 따라 재차 기회를 부여하거나 보호처분 또는 집행유예, 가퇴원, 가석방 등의 취소를 신청하게 된다.

2005년도에 실시한 2,857건에 대한 사건분석 결과, 일반대상자의 재범률이 7.5%인 점에 비해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대상자의 재범률은 3.6%로 약 4%가 낮았고, 대상자는 물론 대상자의 보호자도 본 제도에 대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년범의 비중이 97%, 절도와 폭력사범 등 일반사범에 대한 부과비율이 약 80%를 점유하는 등 연령과 활용사범 적용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성인과 야간 외출제한을 통해 재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4) 법무부(2006), “성인, 성폭력사범 등에 대한 외출제한명령제도 확대 적용”(2006. 2. 21), 법무부 보도자료 참조.

15) 2003. 3. 서울보호관찰소, 서울보호관찰소 남부지소, 서울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서울보호관찰소 의정부지소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한 후 2005. 3. 전국 보호관찰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범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범죄군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5) 성폭력피해자 조사 관련 제도

가) 성폭력전담 조사관 제도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여성 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성폭력전담 조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장애인·청소년피해자는 여성청소년계 여성이, 성인 피해자는 수사과 여성이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전담경찰관에 대한 교육이 수시로 실시되고 있다.¹⁶⁾ 전담 조사관의 역할은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 경찰서의 수사·생활안전과 합동으로 사전 송치 시까지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폭력피해자 조사는 여경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센터와 성폭력상담소 등과 연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여성전용조사실 운영

성폭력피해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여성전용조사실을 확충하고 신뢰관계자의 참여를 적극 보장토록 하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까지 26개 검찰청에 전용조사실을 설치하고 284건, 377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06년에는 전국 55개 검찰청에 확대·설치코자 하였다.¹⁷⁾

다. 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성폭력특별법의 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16) 1급서의 경우 여성청소년계 2명, 수사과 3명이 담당하고, 2급서의 경우 여성청소년계 1명, 수사과 3명, 3급서의 경우 여성청소년계 1명, 수사과 2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1·2급서는 여경을 2명 이상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박준영(2005),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대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5면).

17) 법무부(2006), 앞의 글, 11면.

위해서 본 장에서는 성폭력 관련 NGO 관계자들과 성폭력 수사의 전담 주체인 검사와 경찰에 대한 면접 자료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주요하게 사용할 면접 대상자의 개요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25> 성폭력 심층면접 사례개요표

사례번호	성별/연령	직업 및 직위	근무 경력
사례 1	여/47세	A NGO 소장	10년
사례 2	여/49세	B NGO 소장	11년
사례 3	여/43세	C NGO 상담실장	2년
사례 4	여/40세	A 지방경찰청/경위	19년
사례 5	여/27세	B 경찰서/경사	2년
사례 6	남/39세	A 검찰청/검사	10년
사례 7	여/40세	B 검찰청/검사	10년

1) 성폭력 개념의 협소성

성폭력을 어떻게 무엇으로 규정하는가는 법률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법을 집행할 때 주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가장 쟁점화되고 있는 성폭력 개념을 둘러싼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법 상 강간죄와 관련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는 것은, 최근 성폭력피해자의 다양한 성별·계층별 차이를 감안하지 못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성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은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으로 처벌함으로써 일반 강간죄와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부정 등은 강간죄의 피해자는 ‘생물학적인 여자’만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협소한 개념일 수 있다. 최근에 발생하는 아동 성폭력의 경우 성별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남성들만 모여 있는 집단 내, 즉 군대, 감옥과 같은 곳에서 동성 간의 성폭력 실태는 이성 간의 강간의 행위보다 더 폭력적이고 치명적인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성폭력 개념 특히 강간의 개념에 대한 객체를 ‘부녀’로써만 한정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음을

제기한다.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NGO 관계자들은 성폭력피해자를 생물학적인 여자로 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건 일단은 상담 통계를 기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5% 정도가 남성 피해이고 그리고 지금 추산하건데 수많은 동성간의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 노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반성폭력 운동이 15년, 16년 전에 여성이 피해자다, 물론 지금도 여성이 피해자이긴 하죠. 그렇지만 거기에만 고착되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남성 대 여성의 문제이자 여성 대 남성의 문제일 수 있고 동성간의 문제일 수 있고, 이렇게 넓히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례 1)

“성폭력의 객체가 남성도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유사성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강간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넓혀라,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는 부녀 이래가지고 여자만 그 대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대상에 여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확장해라라고 이렇게 개정안에 저희가 작업을 했구요. ... 그리고 꼭 정말 남자 성기가 여성의 질에 삽입하는 것만이 강간이 아니라 그거에 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강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사례 2)

이러한 성폭력 개념의 법률적인 확장에 대한 입장은 법 집행자인 경찰 역시 동의하고 있다.

“사실은 그 부분도 이제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다, 추행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뭐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는 뭐 달리 근거 짓고 있지만 사실 법은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과연 생물학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냐 ... 근데 우리 판례에 있는, 인제, 우리 판사님들이 그와 같은 해석을 지금 생물학적 개념을 다 풀지 못한 상태에서 내렸다는 거,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다른 게 남성적 관점에서 보면요, 왜 꼭 삽입, 삽입설이라는 건지. 그것도 여성의 중요 부위에 대한 삽입설만. 지금 동성 간에도 이성 간에도 뭐 항문 성교로 흔히 성폭행 하는 사례도 많은데 그걸 굳이 유사 성교 행위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 범죄에서는 유사 성교 행위가 있지만 일반적인 성인이나 어린이 범죄에서는 유사 성교 부분이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그냥 강제추행으로 해서 간다, 그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면 이렇게 걸라고 할 필요 없이 성폭력의 범위를 남녀의 구분 없이, 아니면 한편으로는 성행위라는 것이 질에 대한 삽입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중심점만 둔 상태에서 이걸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남

성도 이 중심의 피해자로 들어와야 된다는 반성도 전 조금 생각을 합니다.” (사례 4)

즉, 생물학적인 여성만이 강간의 피해자가 된다는 현행 법 규정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동성 간의 성폭력을 처벌하고 집행하는 법률적인 기준으로써 타당하지 못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례 4인 경찰의 입장에서는 항문 성교가 강간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현행 법은 남성 중심적인 입장에서 강간으로 규정한다는 한계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이미 통계에서도 이야기 되듯이 성폭력의 피해 경험은 낯선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지인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가 심각하는 것이 보고된 만큼, 친밀한 관계 내에서 부부, 혹은 애인, 서로 아는 친구 사이 등에서 발생하는 강간 문제를 다룰 때 늘 쟁점이 되고 있는 강간이나 화간이나의 여부, 즉 최협의설을 둘러싼 논란이 성폭력 개념의 주요한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최협의설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보는데. 일단 사법부는 우리나라 형법 자체가 갖는 문제죠. 297조에 보면 폭행과 협박, 그리고 얼마나 저항했는지 이를 주요하게 보는데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피해자 분들을 보면 폭행과 협박이 없었어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협감 내지는 권력에 의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 저희들은 성폭력이라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언행이라고 규정하는데 법은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95년까지는 정조에 관한 죄로 남아 있었고 지금도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소위 객관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너무나 사실 경험이라는 게 너무나 비 객관적이고 비정상적인 정황인데 거기서 객관성을 입증하라고 하니 결국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그래서 수많은 법적으로 무죄 내지는 불기소 이런 것들을 예견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법적인 해결을 망설이게 되지요.” (사례 1)

최협의설은 성폭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때, 명백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처벌을 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일선 경찰에서 20여년 동안 성폭력사건을 다루어 온 사례 4는 최협의설이 가지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럼 강간의 폭행은 뭐냐, 현저히 반항하기 곤란하거나 반항을 못할 정도로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드는 폭행이라고 했던 말입니다. 참 문구가 추상적이죠. ... 그 피해자한테 항거가 불능할 정도의 폭행이 어느 정도였는가라는 관점으로 해석되기보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사회적 잣대 내지 아니면 경찰 개인의 잣대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 인제 제가 우리 형사님들 보고 하는 얘기가 정말 다이내믹하게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우리 형사들이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시비를 풀어내고 우리 형사들이, 그 사람의 기준으로 그 형사의 기준으로 그 피해자의 판단 능력, 항거불능상태를 기준 삼는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당신들은 강한 사람이니까 당신한테 기준을 두지 마라. 그래서 피해자한테 물어봐라, 왜 당시에 그 폭력이 어려웠는지, 왜 그 당시에 협박이 어려웠는지. 근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게. 법률 해석의 기준이 잘못된거죠, 그것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항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법률적 해석의 기준이 아니죠. 가해자가 그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폭행을 행사했느냐가 기준이죠.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는 이정도 행사를 했다면 충분히 저항하기 어려웠다, 이 정도면 제압이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시작이 되었다, 라는 관점에서 법률적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미리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한테 그 기준을 두는 거죠.” (사례 4)

성폭력사건을 담당하는 경찰들은 남성 중심적인 관점에서, 즉 남성의 입장에서 피해 여성에게 충분히 저항하지 않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면 성폭력사건의 대부분은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근 변화하는 성문화로 인한 데이트 성폭력의 문제는 성폭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좀 더 섬세한 분석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이트 성폭력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 안에서는 이제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관계를 유지하면 성관계고 헤어지면 성폭력이나 하는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맥락화 할 수 없는 것, 의미화 할 수 없는 것, 당사자의 말을 제대로 인식해주지 못하는 사회구조나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데이트 성폭력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단체에서도 아마 참으로 지원하기 힘든 조건일 겁니다. 그러면 아는 관계에서 성폭력이 생겨났을 때 설명해낼 수 있는 다양한 언어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법이 가지고 있는 문구라는 게 해석의 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해석하는 게 너무너무나 단일하고 무미건조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사의 재량에 따라서 해석들이 달라져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내 성폭력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사례 3)

최근 빈번히 발생하지만 법적인 해결이 어려운 데이트 성폭력사건에 대한 상담 사건을 주로 접하는 사례 3은 데이트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집행과정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맥락과 상황 그리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법 집행이 필요함을 문제제기하고 있다.

반면 데이트 성폭력을 바라보는 사법기관의 입장은 그들의 법 집행 경험과 경력 등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굉장히 성이 자유로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첨 만났어도 아님 교체를 하고도 이제는 뭐 사랑하는 사이면 다 성관계를 하는 정도의 단계가 와 있어요. 그렇게 자유분방해진 반면에 내가 원하지 않는 성은 정말 안 하고 싶다는 또 다른 문화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사이의 경계선, 이걸 이제 우리 보수적인 사법부에서 얼마나 이해를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더더구나 그때 당시에 현저한 폭행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관점하고, 일반인들 관점에서 요즘에는 아이들은 사고력이 아주 출중하잖아요. 나는 이걸 좋아서 했지만 이거는 싫었다 요렇게 표현되는거 하고 보수적인 사법부의 해석이 그게 현저하게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요런 게 요새 참 애매하게 쟁점이 되요.” (사례 4)

사례 4는 최근의 변화하는 성문화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권리 의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선택한 성관계와 강제적인 성폭력은 뚜렷이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경계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재 데이트 성폭력의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예를 사례 5와 6의 설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딱 오면은 강간당했대요. 왜 당했니?, 아 둘이요 잠자고 있는데요 오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가 어떻게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했어요. 그땐 너는 왜 위로 올라가서 니가 했어? 아프잖아요. 섹스해 놓고 강간당했다고 왔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성폭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말 뜻하지 않는, 뜻하지 않게 막 당한거지 어쩔 수 없이 당한거지, 그 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을 때, 자기가 얼마만큼 대처를 했냐예요. 단지 하지마, 이게 반항이 아니거든요. 성폭력에 대해서 폭행 협박은 강압적인 협박이나 폭행이 있어야

되는거고, 당장 거기서 떨쳐 나올 수 없을 정도의 뭔가 있었어야 되지, 단지 말로써 하지 말라고 했구요, 그럼 왜 잤어? 같이? 그냥 같이 잠만 잘 줄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이렇게 성폭력 당했다고 오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사례 5)

“소개 받아서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남자는 뭐 삼입 섹스는 안 했다고 그러고 뭐 그냥 서로 애무만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여자는 자기는 인제 강간을 당했다고 그러는 거고. 만약 그 사람이 그냥 잘 해서 결혼 했더라면 그게 문제가 안 됐을 건데, 남자가 몇 번 만나보고 그러더니 이제 저 도대체 저 여자랑 못 살겠다, 이래갖고 갑자기 변질 선언을 하니깐 여자 쪽에서 고소를 하게 되고, 돈을 5000만원을 요구 하고, 뭐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 그 보편은 여자의 진술 밖에 없고, 또 실제 그 성행위가 있었네, 없었네, 당사자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례 6)

경찰에 근무한 경력이 2년 여 정도 되는 신참 여경인 사례 5와 남자 검사인 사례 6은 데이트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 힘들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사례 5의 피해자는 분명히 “하지마”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 5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최협의설에 근거한 성폭력의 개념이 가지는 협소성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사례 6 역시도 피해자 가해자가 결혼에 성공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건으로 본인이 경험한 사건을 정의하고 있다. 즉,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으로써 보다는 화간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법 집행자의 주관적 해석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지점이다.

결론적으로 형법 상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만으로 규정하는 방식, 그리고 낮은 사람에 의한 눈에 보이는 강압과 폭력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만을 강간으로 규정하는 협소한 성폭력의 개념은 재고되어야 함을 문제제기 할 수 있다.

2) 장애인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 완화 필요

2006. 10 개정 전 성폭력특별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장애자를 특별히 보호

할 목적으로 신체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협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간음·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하였으나, 2006년 개정 시 삭제되었다. 이 조항은 동조 제3항의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의 행위객체(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성범죄는 그 구성요건의 성립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1997년에 개정된 성폭력특별법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자를 간음·추행한 자는 형법의 강간·강제추행죄로 처벌함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의 위법행위를 구비하지 아니하더라도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성폭력특별법의 장애자 보호규정의 '항거불능'에 대한 해석을 법해석의 통일성 및 다른 조문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형법과 같이 매우 엄격히 해석하고 있어서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¹⁸⁾¹⁹⁾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005. 4. 20 동거녀의 딸인 정인지체여성을 5년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의 선고의 근거로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정도의 지능이 있고 사회적 성숙도가 다른 학생과 비슷하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기에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18) 대법원 2003. 10. 24, 2003도5322([성폭력특별법 상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법률 제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은 형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4. 10, 97도3392(관련법률의 장애인에 관한 규정과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보아 그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영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2005. 9), 5~7면 참조.

그러나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정신지체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며, 정신지체여성에게 대한 성폭력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내린 것이다. 정신지체여성의 경우 약간의 위력이나 위계만으로도 억압하여 성폭력을 가할 수 있으며, 같은 성폭력 상황에서도 비장애인에 비해 저항이 힘들 수밖에 없다. 결국 재판부는 정신지체로 인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장애인과 같은 엄격한 저항 유무를 따짐으로써 정신지체여성 성폭력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법 집행당사자인 사례 6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검사는 경찰이 하는 거의 1/10을 알고 판사는 검사가 하는 것의 1/10을 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 그건 결국은 많이 접촉하는 비율만큼 세상을 많이 아는 거예요. 24시간 밖에 돌아다니면서 현장이랑 부딪히는 경찰이 제일 많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마 검사가 왜 판사보다 1/10보다 더 많이 아느냐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는 그래도 조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조서로 만드는 거 외에도 대화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격리된 공간에 가서 정말 바라는 바에 대해서도 한 번 격의 없이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진솔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법상에서의 그 경직된 분위기에서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 판사, 경우에 따라서는 친절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막 이 사건은 많고, 고압적으로 막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이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대답 제대로 못하고, ...” (사례 6)

법 집행자들의 구분된 역할에 따른 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실질적인 법 집행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례 6은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 피해자의 문제일 뿐 아니라 비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를 당하는 맥락과 상황에 대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법률 집행자들의 면밀한 분석과 사실에 대한 철저한 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3) 배상명령제도의 도입

범죄피해자는 신체의 훼손, 경제적 손실, 장단기의 정신적 충격 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형사절차에 협력하는 데 따른 직·간접의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형사의 이원적 법체계 하에서 피해자의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의하여 배상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소송과 동시에 민사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감과 소송지연에서 오는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배상명령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배상명령은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상 배상명령은 그 신청대상범죄의 범위에 상해와 폭행죄, 그리고 재산범죄를 포함시키는데 그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성폭력범죄가 그 심각성의 면에서나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의 면에서 배상명령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²⁰⁾

4) 성폭력전담 수사관 배치

성폭력범죄의 특성과 성폭력 피해자의 필요와 심리를 잘 이해하는 전문성을 갖춘 수사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성폭력전담관 제도가 검찰과 경찰에서 모두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담관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으며, 성폭력전담관 제도가 현재의 법 집행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대안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 성폭력전담 검사도 있고 전담 경찰도 있고 교육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조금 있으면 다 바뀝니다. 1년, 많아야 2년. 그렇다면 그 전담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전담인지. 거기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담보하는 전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물론 페이퍼 상의 노하우는 전달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경험상 취득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새내기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문성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결국 그것은 피해자한테 또 다른 피해로 올 수 밖에 없는 거 아니냐, 구조적으로 아주 너무 불에 보듯 뻔한 문제

20) 한인섭(1994),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그 문제와 개선점”, 『피해자학연구』 제3호, 한국피해자학회, 47면.

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말 10년간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진술, 진술 녹화만 하는 사람 좀 해라,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그렇게 하더라구요.” (사례 1)

피해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입장으로써 사례 1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폭력전담관 제도는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 성폭력전담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찰과 검사의 입장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수사는 의지가 아니다 기술이다, 그렇다면 그 도구 테크닉을 가질 만하고 그러한 개념을 가질만하려면 최소한 3, 4, 5년차가 넘어야 한다. 근데 지금 현실의 문제는 이제 여자 경찰관을 대안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자경찰관을? ... 그니까 무턱대고 제도만 해놓을게 아니라 계속 내실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있는 거 같아요. ... 그러니까 조서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 형사가 따로 있다면, 이게 과연 같은 코드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양성 인지적 관점으로 남녀 구분 없이 그에 마인드가 맞는 형사가 수사를 하는게 맞다.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 우리 당직팀만 예를 들어도, 네 개 팀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여기에 마인드 있는 형사 그냥 한 사람한테만 시킬 것인가, 과연 그 형사가 좋아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건은 배당 순서대로 돌아가는데 그럼 이 사건을 돌리기만 하고 조서 받는 영역만 따로 두면 이게 코드가 맞을 것이냐. 이제 요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요 숙제를 ...” (사례 4)

20년 경찰 근무 경력을 가진 사례 4 역시 사례 1의 입장과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경찰 행정 시스템 상 성폭력전담관이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성폭력전담관은 피해자 조서를 꾸미는 것에 치중하고 현실적으로 그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들은 강력계 일반 형사라는 점, 그리고 여자 경찰이라고 해서 모두 성폭력전담관으로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찰이 성폭력 문제를 취급하고 다루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성폭력전담관으로써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사례

5는 다음과 같이 성폭력전담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할 거면 정확히 해야죠. 지금 우리 일선에 성폭력전담관은 정말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성폭력전담관이 있을 거면 아예 티오를 만들어야 해요. 각 단위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성폭력, 강제 추행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강간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전담관 제도를 그런 거만 할 수 있는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그 팀에서 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서 다 피해조서 받고 거기서 다 치료도 해주고, 입건도 해가지고 그 사람 딱 (교육시킬) 있을 만큼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일선에서 성폭력전담관 하면 그 전담관 누군지 아세요? 피해 조서 받는 사람들이 전담관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강력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피해조서는 다른 사람이 받고, 단지 그 피해조서 받는 것 때문에 성폭력전담관이 있을 거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 그래도 여자가, 우리 특히 사회에서도 그래도 여자가 강간당했는데 어떻게 그걸 특별하게 생각 안 해주나. 돈 잃어버린 사람한테 얘기 해봐요. 정말 나도 특별하지 않나. 우리가 얘기해요. (아, 이상할텐데.) 나는 버럭 화내요. 그럼 나는 특별하지 않은 거냐. 그럴 거면은 성폭력전담관을 만들 거면은 아예 구성을 해야되는 거예요. 구성도 안 하고 단지 경찰서에 있는 여자 형사들보고 그걸 전담해, 이러면 우리 형사들이 그것만 전담하는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건 하다보면 이중고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컷 일하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사건 있다) 나가라. 그럼 제 사건 누가 해줘요?” (사례 5)

전문성을 가진 하나의 팀으로서 성폭력전담관 제도의 시스템이 만들어 지지 않는다면 성폭력전담관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사례 5는 지적하고 있다. 사례 4와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하는 성폭력전담관은 경찰서 내의 소수의 여자 경찰들의 임무로 정해져 있고, 조서와 조사의 이원화는 성폭력전담관 제도가 별 의미 없음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 여경들에게 다른 제도적인 교육과 구체적인 노하우에 대한 훈련 없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전담관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여경들의 가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의 성폭력전담 검사제도 역시 경찰의 제도와 많이 다르지 않다.

“그게 지금 실행하는 검사들의 40%가 여자예요. 근데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요.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자를 하기도 했는데. 강력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까 남자 검사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좀 와일드하고 표현이 세련되지 못

하고, 근데 그 말을 듣는 피해자들은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지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되도록 개선하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가 마음 편하게 좀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보니 여자 검사들한테 투입한 거죠. 그만큼 잘 할 수 있는. 여자 검사들이 또 다 편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웃음) ... 또 그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 주변 정황에 맞는지를 차분하게 들어야 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락부락하게 생긴 검사가 여자 피해자 앞에서 어떻게 된 거야, 막 반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막 이러면은 사람이 가뜩이나 위축되고 그런데 말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쑥 들어간단 말이죠. 남자 검사 중에도 얼마든지 사근사근하게 할 수 있어요, 편하게. 그걸 꼭 남녀 간의 차이가 아니고, 다만, 이제 젊은 여자들 경우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같은 여자끼리라면 편안한 가운데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사례 6)

성폭력전담 검사제도 역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한 훈련에 의해서 전담 검사가 정해지기 보다는 여성 검사 위주로 성폭력전담 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 이유를 단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써 전담관 제도의 노하우를 구분하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전담 검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적으로 전담관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폭력 조사 업무에 가장 많은 관여를 하는 경찰의 입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One-Stop 제도의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One-Stop이 좀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One-Stop에 가면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피로가 덜해요. 왜냐면 한 곳에서 해결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의사도 보던 의사만 오죠. 그러니까 의사선생님도 어떻게 다르냐 하면 기존에 본인이 알고 있던 의학적 상식하고 계속 성폭력으로 당하는 피해자의 현상이 다양한 패턴을 보게 되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갖고 있던 이론하고 변수적 상황에 대해서 그 분들도 해석 능력이 달라져요. 그니까 그러하면서 마인드가 형성이 되는 거 같아요. ... 그런 마인드가 형성된 의사를 만나고, 짧은 시간 안에 보호받는 시스템 안에서 조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심리적 육체적 피로도 뿐만 아니라 보상심리가 바로 거기서 주어져요. 정말 이렇게 나만을 위한. 공개되어 응급실 한 쪽에서 기다리는 이게 아닌. 정말 나만이 보호받는다는 그런 느낌, ...” (사례 4)

결론적으로 성폭력전담관 제도는 형식적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전담관 제도의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 NGO와 법 집행자들의 입장이다. 성폭력전담관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성폭력전담관의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원화되어 있는 시스템, 즉 전담관은 조서만 담당하고 실제 사건의 조사 및 해결을 일반 경찰이 진행하는 문제의 해결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런 대안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One-Stop 지원 센터 제도의 확대 및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싶다. 또한 성폭력범죄 수사 전담을 위한 ‘여성경찰관’이 필요하지만, 남성경찰관의 경우에도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경찰 전체가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를 예방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는 것 역시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어야 한다.²¹⁾

5) 성폭력피해자 진술녹화제도

성폭력피해자들에 불필요한 이중 조사를 통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녹음·녹화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과연 진술녹화제도는 피해자 보호의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NGO는 진술녹화제도가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여전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은 제도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한 번 진술녹화를 하자고 한 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 믿지 못하겠더라던가 아니면 그게 분실된다라던지 이런 어이없는 실수에 의한 것.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진술을 했을 때는 너무 반복을 하니까 학습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나와서 지금도 헌법소원에 가 있거든요. 그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왜 우리 정책들을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부터 하는지가 불만인거예요. 적어도 진술녹화제도를 시작을 하려면 충분히 하

21) 한인섭(2006), “성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 입법안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2006. 3. 16), 국회법제사법위원회, 107~108면 참조.

드웨어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굴러가게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잘 개발이 되었는가 점검하고 어느 시점부터 시작을 해야지, 무조건 이것은 급하다 하는 소리에 그냥 해가지고. 어떤 데에 가니까 정말 구치소 있잖아요? 이 영창, 거기 유치장. 쇠창살 있는데 그 옆에 진술녹화실이 있더라구요. 그건 인제 그 경찰소의 구조가. 그 경우는 서울에 아주 비싼 땅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중의 그 노력한다, 라는 것도 있지만 저렇게 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을라나 하는 염려가 또 있는 거죠.” (사례 1)

사례 1은 진술녹화제도가 실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준비의 미흡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제기하고 있고, 또한 진술녹화실이 가해자들이 머무는 장소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례 3은 또한 진술녹화를 피해자가 선택해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게 하는 즉, 진술녹화제도의 유명무실한 실례를 제시하고 있다.

“피해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당신이 여러 번 반복해서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충분한 안내가 있어야 할 것 같구요, 근데 검찰에 가면 그것을 무시하고 또 새롭게 또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담, 당사자는 그 때는 분명 진술녹화를 하면서 그걸로 다 얘기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근데 내 피해가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담감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변명들이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 일정정도 도움은 될 거라는 것, 그리고 나중에 유출의 문제라던가, 그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경찰관이 이제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는, 재연을 시켜서 강간을 하는 사건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과연 조사관들을 다 믿을 수 있는가. 그런 우려는 좀 있어요.” (사례 3)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일선 경찰들의 경우도 진술녹화제도를 꺼려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을 사례 5의 답변에서 알 수 있다.

“진술녹화제도 같은 경우에는 한다면 어디까지 해주나 이게 문제죠. 진술녹화는 두 시간 세 시간 걸렸는데 조서는 30분이면 읽잖아요. 아무리 긴 것도. 그러면 조서는 폼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요약보고를 하라는데 오히려 그러면은 저희가 진술녹화 하는 것보다 차라리 타이핑 하는 것이 더 빨라요. 왜냐면 진술녹화하고 그걸 또 요약본 하려면 그걸 또 보면서 들으면서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찰관은 이중으로 힘든 거고 피해자들도 나를 누가 감시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도 힘들고, ...” (사례 5)

경찰에서 진술녹화를 통해 피해자 조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진술녹화 내용에 기초한 요약문을 만들라고 요구하게 되고 이는 경찰에게는 이중 부담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을 사례 5는 문제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입장에서 진술녹화제도는 자기 검열을 당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이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귀찮은 제도로 진술녹화제도를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건 경찰서에서 그런 시설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져서 쓰고 있구요. 다만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지난 번 형사법 때, 형사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어서 사실 경찰에서 원하던 만큼의 증거력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조사가 객관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됐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죠. 그 이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유용한. 사람 얼굴만 보면 막 자지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납치당했다던 그런 어떤 공포, 화남, 두려움, 뭐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증상들이 성폭력 피해자들한테 나오니까, 그거를 상당히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한다면 뭐 아주,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공개질의를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 6)

사례 6은 원칙적으로 진술녹화제도의 장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찰의 입장에서 경찰의 진술녹화제도에 의한 조서 작업에 대해서 원하는 만큼의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재조사의 가능성 또한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진술녹화제도는 재조사의 번거로움을 피해자는 감수해야 하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검찰을 설득하기 위해서 진술녹화 이외에도 다른 조서 양식을 꾸며야 하는 이중 업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진술녹화제도의 진행을 위해서는 진술녹화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갖추는 등의 내용적인 축적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 부부 간의 강간

최근 외국의 경우 부부 간의 강간은 법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로써 부부 간의 강간, 성폭력이 성립할 수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부부 간의 강간의 문제에 대한 NGO와 법 집행자들 사이의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004년 8월 20일 그 서울중앙법원에서 내린 판결 중에 이게 나오잖아요. 부부라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전 이게 말해준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인식의 전환,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지금 그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70년대 판례가 부부간의 성폭력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검찰도 아직 있는 거죠. 이런 굉장히 간극이 있는 사이에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법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어디에선가 그걸 막 못박아주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특수성 이 부분. 가족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은. 저는 오히려 더 가족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해야 된다는 거 아녜요.” (사례 1)

“부부 간의 성폭력은 그게 인제 가해자가 배우자고 피해자가 배우자란 것만 다른 것이지. 그니까 관계의 문제인 것이지. 그 폭력 하고는 구분되는 거 같아요. 성폭력이라는 것은 명확한 건데 그게 가해자 피해자가 배우자란 거죠. 그니까 대상이 배우자는 가해자가 될 수 없고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만 풀어주면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형법 개정에서는 부부강간에 대한 것은 하나를 다시 넣기 보다는 가해자가 배우자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 현재 학자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현재 법에서도 부부강간은 처벌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뭐냐면 결혼을 한 배우자는 그 섹스에 대한 동의를 당연히 전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주장하는 건 섹스를 전제 하는 것, 동의를 하는 것 전제를 하는 것이지 성폭력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건데 그것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섹스하고 성폭력은 다르잖아요. ... 배우자도 성폭력 가해자로 인정이 되는 걸로 해석만 하면 현재 법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배우자는 이제 판결을 내릴 때 결혼을 할 때에는 뭐 혼인 서약을 했으므로 뭐 이걸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걸 굉장히 가부장적인 보수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법조인들이.” (사례 2)

NGO의 부부 간의 강간에 대한 입장은 현행법으로도 부부 간의 강간은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자들의 보수적인 시각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문제제기하고 있다. 즉, 결혼한 부부의 성적 관계는 혼인계약을 근거로 한 상호동의한 성관계이지, 성폭력을 해도 좋다고 동의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법 집행자들이 구분하고 있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 상 강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남편이고 피해자가 아내일 경우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임을 명확히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보수적인 법조인의 시각에 근거한 사례 7의 부부 간의 성폭력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결혼과 이혼만을 인정할 뿐 결혼과 이혼 사이의 별거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별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부부간 성폭력의 전제라고 생각한다. 별거를 도입하여 부부간 의무에서 동침의 의무를 빼줘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성생활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부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 성폭력과 부부간 성폭력은 같다고 할 수 없다. 부부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성행위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성행위 요구에 응할 의무있는 사람과 의무없는 사람과는 똑같이 평가할 수 없다. 만약 아내가 남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남편이 강제적으로 성적욕구를 해소했다고 한다면 당한 아내에게도 폭행을 수반한 강제적인 성행위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사례 7)

사례 7은 현행법 상으로 부부 간의 강간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법률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별거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그런 제도를 신청한 부부에 한해서 부부 간의 성폭력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부부 간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성폭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보수적인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시각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NGO의 부부 간의 성폭력이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은 원칙적으로 옳지만, 구체적인 법으로 실행되기 위한 구체적인 명시에 대한 필요성을 재고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4. 성폭력특별법 인지도 조사결과

가. 조사개요²²⁾

1) 조사 대상과 방법

일반 국민의 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특별법·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인지도 및 법의식을 파악하여 여성 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의 준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전국 6개 광역시 거주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07. 6. 12~7. 20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대상: 서울시 및 전국 6개 광역시 거주 20세 이상 성인 남녀
- 표본 크기 및 표본 추출 방식: 1,000명(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개별면접조사
- 수행 기간: 2007. 6. 12~7. 20

이 설문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일대 일 개별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본추출방법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 할당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설문조사의 표본특징은 아래 <표 II-26>과 같다.

설문조사 자료는 검증 및 부호화, 편집, 오류수정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자료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 11.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2) 이 조사개요는 가정폭력, 성폭력 인지도 조사에도 해당됨.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표 II-2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거주지	서울특별시	232 (45.6)	223 (45.4)	455 (45.5)
	6대 광역시	277 (54.4)	268 (54.6)	545 (54.5)
혼인경험 유무	미혼	95 (18.7)	141 (28.7)	236 (23.6)
	기혼	414 (81.3)	350 (71.3)	764 (76.4)
연령	20대	106 (20.8)	110 (22.4)	216 (21.6)
	30대	120 (23.6)	121 (24.6)	241 (24.1)
	40대	116 (22.8)	115 (23.4)	231 (23.1)
	50대	80 (15.7)	78 (15.9)	158 (15.8)
	60대 이상	87 (17.1)	67 (13.6)	154 (15.4)
개인소득	100만원 미만	326 (64.0)	90 (18.3)	416 (41.6)
	200만원 미만	129 (25.3)	114 (23.2)	243 (24.3)
	300만원 미만	30 (5.9)	136 (27.7)	166 (16.6)
	300만원 이상	24 (4.7)	151 (30.8)	175 (17.5)
학력	중졸이하	74 (14.5)	41 (8.4)	115 (11.5)
	고졸이하	225 (44.2)	171 (34.8)	396 (39.6)
	대재이상	210 (41.3)	279 (56.8)	489 (48.9)
직업	전문/사무직	79 (15.5)	150 (30.5)	229 (22.9)
	서비스판매/기능/ 단순노무/농·임·어업	163 (32.0)	272 (55.4)	435 (43.5)
	학생	34 (6.7)	40 (8.1)	74 (7.4)
	전업주부	224 (44.0)	0 (.0)	224 (22.4)
	무직/기타	9 (1.8)	29 (5.9)	38 (3.8)
전체		509 (100.0)	491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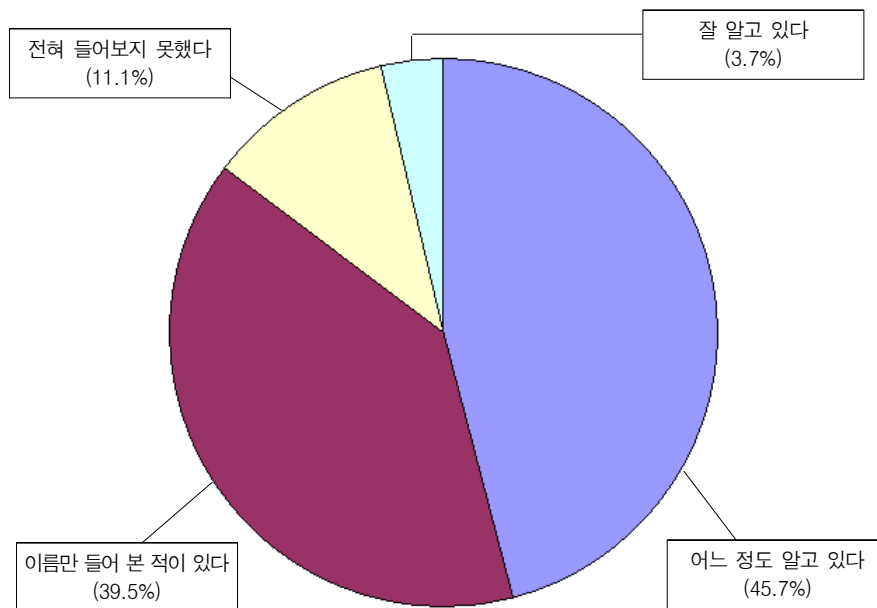
주: 혼인경험 유무의 기혼에는 한 번이라도 혼인한 적이 있는 유배우, 별거, 이혼, 사별을 포함하고 있음.

나. 성폭력특별법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한 인지도

1) 법의 인지도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45.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다’가 39.5%,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가 11.1%, ‘잘 알고 있다’가 3.7%로서 제일 적다.

그러므로 법이 존재하는 사실을 아는 정도(‘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는 88.9%에 이른다고 할 수 있으나, 법의 내용에 대해 아는 정도(‘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는 49.4%에 불과하다.



<그림 II-2> 성폭력특별법의 인지도

법이 존재하는 사실과 법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성별에 따라 각각 비교해 보면, 남성(92.1%, 56.8%)이 여성(85.9%, 42.2%)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성별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대체로 20대에서 50대의 연령층이 60대 이상의 연령층보다 법의 존재사실이나 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혼인상태별 인지도를 보면 기혼(90.3%, 51.2%)이 미혼(89.4%, 47.5%)보다 법의 존재사실과 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모두 높게 나왔다.

한편, 법의 존재사실과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학력별로 분석해 보면, 법의 존재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93.7%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이 고졸 이하(90.2%), 중졸 이하(64.3%)로 나왔다. 반면 법의 내용에 대하여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특히 중졸 이하의 법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18.3%)를 나타냈다.

<표 II-27> 성폭력특별법의 존재사실의 인지도 - 응답자특성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기혼	미혼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재 이상
사례수	1,000	491	509	216	241	231	158	154	764	236	115	396	489
비인지	11.1	7.9	14.1	12.0	5.0	5.6	10.1	28.6	9.7	10.6	35.7	9.8	6.3
인지	88.9	92.1	85.9	88.0	95.0	94.4	89.9	71.4	90.3	89.4	64.3	90.2	93.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value		0.002***		0.000***					0.777		0.000***		

주1): 인지 - '이름만 들어 본 적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임.
주2): * p<0.10, ** p<0.05, *** p<0.01.

<표 II-28> 성폭력특별법 내용 인지도 - 응답자특성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		연령					혼인상태		학력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기혼	미혼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재 이상
사례수	1,000	491	509	216	241	231	158	154	764	236	115	396	489
인지	49.4	56.8	42.2	49.1	51.9	59.3	51.9	28.6	51.2	47.5	18.3	48.2	57.7
잘 앎	3.7	5.9	1.6	4.2	4.1	5.2	2.5	1.3	3.6	3.8	0.9	2.5	5.3
어느 정도 앎	45.7	50.9	40.7	44.9	47.7	54.1	49.4	27.3	47.5	43.6	17.4	45.7	52.4
비인지	50.6	43.2	57.8	50.9	48.1	40.7	48.1	71.4	48.8	52.5	81.7	51.8	42.3
이름만 들어본 정도	39.5	35.2	43.6	38.9	43.2	35.1	38.0	42.9	39.1	41.9	46.1	41.9	36.0
전혀 들어보지 못함	11.1	7.9	14.1	12.0	5.0	5.6	10.1	28.6	9.7	10.6	35.7	9.8	6.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value		0.000***		0.000***					0.495		0.000***		

주1): 인지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임.

주2): * p<0.10, ** p<0.05, *** p<0.01.

성폭력특별법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494명을 대상으로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지하철, 버스 등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면 처벌할 수 있다'에 대한 인지도가 95.1%로 가장 높았으며, 이 밖에 '백화점, 화장실, 목욕탕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할 경우 처벌받는다'(93.7%), '아버지, 의붓아버지, 사촌오빠, 의붓오빠의 성폭력은 처벌할 수 있다'(92.3%),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90.9%), '13세 미만 아동의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유사강간행위)할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89.9%)는 사항에 관한 인지도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미성년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증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술내용을 비디오로 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78.5%)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의 형 집행이 유예될 경우 사회봉사·수감명령을 받을 수 있다'(77.9%),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부모, 변호사, 성폭력 관련 상담소 상담원

등(신뢰관계에 있는 자)과 함께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다'(77.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범죄 전담검사나 경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77.1%)는 사항에 대한 인지율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이와 같이 성폭력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성폭력범죄자가 어떤 경우에 처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피해자보호에 관한 사항 혹은 새로이 만들어진 정책에 대한 인지율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P-value가 0.000으로 나타난 성별, 연령별, 학력별 변수는 인지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지도는 성별의 차이와 연령별 세대차이 그리고 학력의 차이 등이 유의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II-29> 성폭력특별법 인지내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안다	모른다
지하철, 버스 등에서 다른 사람을 만지는 행위	494	95.1	4.9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한 처벌	494	93.7	6.3
아버지, 의붓아버지, 사촌오빠, 의붓오빠의 성폭력	494	92.3	7.7
피해자 고소 시 처벌	494	90.9	9.1
아동에 대한 유사 강간행위	494	89.9	10.1
진술내용 비디오 녹화 가능	494	78.5	21.5
성폭력범죄자의 형집행유예 시 사회봉사, 수감명령 가능	494	77.9	22.1
성폭력 피해자, 신뢰관계가 있는 자와 동반 수사 및 재판 가능	494	77.1	22.9
성폭력전담검사나 경찰 조사	494	77.1	22.9

<표 II-30> 성폭력특별법의 인지 내용 - 응답자 특성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혼인여부		학력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혼	기혼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재 이상
사례수	494	279	215	106	125	137	82	44	112	382	21	191	282
지하철, 버스 등에서 다른 사람을 만지는 행위	95.1	95.7	94.4	92.5	97.6	97.8	95.1	86.4	92.9	95.9	85.7	96.3	95.0
	p-value	0.512		0.013**					0.201		0.099*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한 처벌	93.7	95.7	91.2	90.6	96.0	96.4	96.3	81.8	88.4	95.9	90.5	94.8	93.3
	p-value	0.039**		0.003***					0.008***		0.660		
아버지, 의붓아버지, 사촌오빠, 의붓오빠의 성폭력	92.3	92.1	92.6	90.6	92.8	94.9	92.7	86.4	93.8	91.8	90.5	92.7	92.2
	p-value	0.855		0.408					0.515		0.933		
피해자 고소시 처벌	90.9	91.8	89.8	84.9	94.4	91.2	96.3	84.1	84.8	92.6	100.0	90.6	90.4
	p-value	0.446		0.018**					0.011**		0.333		
아동에 대한 유사 강간행위	89.9	91.8	87.4	87.7	90.4	88.3	93.9	90.9	87.5	91.5	85.7	91.1	89.4
	p-value	0.115		0.654					0.343		0.672		
진술내용 비디오 녹화 가능	78.5	80.6	75.8	75.5	83.2	75.9	81.7	75.0	81.3	78.4	90.5	77.0	78.7
	p-value	0.195		0.466					0.472		0.357		
성폭력범죄자의 형집행유예시 사회봉사, 수강명령 가능	77.9	82.1	72.6	72.6	77.6	81.0	84.1	70.5	78.6	78.1	85.7	77.5	77.7
	p-value	0.011**		0.217					0.854		0.679		
성폭력 피해자, 신뢰관계이 있는 자와 동반 수사 및 재판 가능	77.1	77.8	76.3	72.6	81.6	78.8	75.6	72.7	75.0	78.4	81.0	82.7	73.0
	p-value	0.694		0.487					0.543		0.045**		
성폭력전담검사나 경찰 조사	77.1	77.4	76.7	72.6	80.0	78.8	75.6	77.3	79.5	76.7	81.0	78.5	75.9
	p-value	0.859		0.712					0.503		0.728		

주: * p<0.10, ** p<0.05, *** p<0.01.

2) 법의 인지 경로

조사 대상 중 성폭력특별법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는 889명에 대해 그 인지경로를 조사한 결과, TV/라디오(94.2%), 신문/잡지(47.1%) 등 대중매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외 인터넷 등 통신매체와 친구/가족/직장동료/이웃 각각 14.4%,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이 5.3%,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 자료, 소식지가 4.8%, 버스/지하철 광고(2.2%), 반상회보/구청소식지(1.2%), 잘 기억나지 않음(0.2%), 경험으로(0.1%) 순이었다. 인지경로가 대중매체가 많고 여성단체/상담기관 등의 자료나 법률교육이 적은 것은 법의 존재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31> 성폭력특별법 인지경로 - 반응별

(단위: 명, %)

구분		반응별	
		응답자수	비율
인지경로	TV/라디오	837	51.4
	신문/잡지	419	25.7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128	7.9
	친구/가족/직장동료/이웃	121	7.4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47	2.9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43	2.6
	버스/지하철광고	20	1.2
	반상회보/구청소식지	11	0.7
	잘 기억나지 않는다	2	0.1
	경험으로	1	0.1
전체		1,629	100.0

법의 인지경로를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대중매체에 의한 인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다만, 남성은 신문/잡지와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에 의한 인지율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TV/라디오에 의한 인지

가 남성보다 높다. 또한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 자료 및 소식지에 의한 인지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변사람에 의한 인지도 역시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특성을 보면, 20대의 경우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에 의한 인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들의 인터넷을 통한 지식 습득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률에 대한 홍보를 인터넷 매체를 통해 진행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혼인여부로 살펴본 성폭력특별법의 인지경로는 기혼이 미혼보다 TV/라디오, 신문/잡지, 친구/가족/직장동료/이웃,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 자료 및 소식지, 반상회보/구청소식지를 통한 인지도가 높은 반면, 미혼은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버스/지하철광고를 통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2> 성폭력특별법 인지경로 - 응답자 특성별
(단위: 명, %, 복수응답)

구분	전체	성별		연령					혼인여부		학력		
		여성	남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혼	기혼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제 이상
사례수	889	437	452	190	229	218	142	110	211	678	74	357	458
TV/라디오	94.2	95.9	92.5	91.1	96.9	91.3	95.1	98.2	89.6	95.3	94.6	97.2	91.7
신문/잡지	47.1	41.0	53.1	40.0	47.6	54.1	52.8	37.3	40.8	50.5	32.4	46.2	50.2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14.4	10.8	17.9	29.5	14.0	13.8	6.3	0.9	28.9	10.2	1.4	8.1	21.4
친구/가족/직장동료/이웃	13.6	16.2	11.1	11.1	16.2	11.9	14.1	15.5	10.9	14.6	18.9	11.2	14.6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5.3	4.6	6.0	9.5	7.0	5.0	1.4	0.0	10.4	3.9	0.0	2.0	8.7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4.8	6.6	3.1	4.2	7.0	6.0	2.8	1.8	4.3	5.1	1.4	4.2	5.9
버스/지하철광고	2.2	2.3	2.2	3.2	1.7	2.8	2.8	0.0	2.8	2.2	0.0	1.1	3.5
반상회보/구청소식지	1.2	0.9	1.5	1.1	0.9	1.4	2.8	0.0	0.9	1.4	0.0	1.4	1.3
잘 기억나지 않는다	0.2	0.2	0.2	0.0	0.4	0.5	0.0	0.0	0.0	0.3	0.0	0.0	0.4
경험으로	0.1	0.2	0.0	0.5	0.0	0.0	0.0	0.0	0.5	0.0	0.0	0.3	0.0

다. 성폭력피해 경험 및 신고 여부

최근 5년간(2002. 5~2007. 5) 성폭력피해 경험 및 신고여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성폭력특별법의 활용도를 살펴보았다.

성폭력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의 정의는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에 서부터 음란전화, 공공장소에서의 신체접촉 등 다양한 형태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성폭력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성폭력피해 경험 여부 및 신고여부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성폭력피해 경험

성폭력의 유형 및 정도별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음란전화를 받거나 혹은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물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경험을 1회 이상 있는 자가 응답자의 26.7%로 가장 높았다. ‘지하철이나 버스 및 공공장소에서 원치 않는 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가 6.5%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외 ‘원치 않는 강제적인 신체접촉(키스나 포옹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와 ‘원치 않는 강제적인 성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다’가 각각 1.9%, 0.3%였다.

<표 II-33> 성폭력피해 경험

(단위: 명(%))

구분	전체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소계
			1회	2회	3회	4회 이상	
통신매체	1,000 (100.0)	733 (73.3)	74 (7.4)	67 (6.7)	25 (2.5)	101 (10.1)	267 (26.7)
몰래카메라	1,000 (100.0)	999 (99.9)	1 (0.1)	0 (0.0)	0 (0.0)	0 (0.0)	1 (0.1)
공공장소추행	1,000 (100.0)	935 (93.5)	43 (4.3)	16 (1.6)	2 (0.2)	4 (0.4)	65 (6.5)
강제적인 신체접촉	1,000 (100.0)	981 (98.1)	13 (1.3)	5 (0.5)	1 (0.1)	0 (0.0)	19 (1.9)
강제적인 성관계	1,000 (100.0)	997 (99.7)	2 (0.2)	0 (0.0)	1 (0.1)	0 (0.0)	3 (0.3)

2) 성폭력피해 경험에 대한 신고여부 및 미신고 이유

<표 II-34> 성폭력피해 경험에 대한 신고 여부

(단위: 명(%))

구분		경험 있음				소계
		1회	2회	3회	4회 이상	
통신매체	경험	74 (7.4)	67 (6.7)	25 (2.5)	101 (10.1)	267 (26.7)
	신고	2	1	1	5	9 (3.3)
몰래카메라	경험	1 (0.1)	0 (0.0)	0 (0.0)	0 (0.0)	1 (0.1)
	신고	0	0	0	0	0 (0.0)
공공장소추행	경험	43 (4.3)	16 (1.6)	2 (0.2)	4 (0.4)	65 (6.5)
	신고	2	0	0	0	2 (0.03)
강제적인 신체접촉	경험	13 (1.3)	5 (0.5)	1 (0.1)	0 (0.0)	19 (1.9)
	신고	1	0	0	0	1 (0.05)
강제적인 성관계	경험	2 (0.2)	0 (0.0)	1 (0.1)	0 (0.0)	3 (0.3)
	신고	0	0	0	0	0 (0.0)

성폭력의 경험이 신고까지 이른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성폭력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3.3% 정도로 다른 성폭력 경험에 비해서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눈 여겨 볼 만하다. 이는 최근 사이버 상에서 진행되는 성폭력범죄 뿐 아니라 언어폭력의 문제 등이 사회적인 여론 형성이 시작되면서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 평가될 수 있다.

<표 II-35> 성폭력피해 경험에 대한 미신고 이유

(단위: 명(%))

구분	통신매체	몰래카메라	공공장소추행	강제적인 신체접촉	강제적인 성관계	
신고하지 않은 이유	사건이 경미해서	117 (45.0)	0 (0.0)	22 (34.9)	8 (42.1)	1 (33.3)
	신고해도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74 (28.5)	0 (0.0)	16 (25.4)	4 (21.1)	0 (0.0)
	신고절차를 잘 몰라서	27 (10.4)	1 (100.0)	5 (7.9)	0 (0.0)	0 (0.0)
	귀찮아서	12 (4.6)	0 (0.0)	0 (0.0)	0 (0.0)	0 (0.0)
	범죄인지 몰라서	10 (3.8)	0 (0.0)	2 (3.2)	1 (5.3)	0 (0.0)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9 (3.5)	0 (0.0)	6 (9.5)	1 (5.3)	1 (33.3)
	사건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7 (2.7)	0 (0.0)	7 (11.1)	5 (26.3)	1 (33.3)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2 (0.8)	0 (0.0)	3 (4.8)	0 (0.0)	0 (0.0)
	신고 후 진술이나 출두명령 복잡해서	2 (0.8)	0 (0.0)	1 (1.6)	0 (0.0)	0 (0.0)
	그 자리에서 해결	0 (0.0)	0 (0.0)	1 (1.6)	0 (0.0)	0 (0.0)
계	260	1	63	19	3	

성폭력 경험에 비해 신고율이 낮은 이유로는 사건이 경미해서, 신고해도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신고절차를 잘 몰라서, 귀찮아서, 사건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등이었다. 특히 피해 경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통신매체 및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에는 피해 경험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사건이 경미해서’가 가장 높고(45.0%, 34.9%), ‘신고해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28.5%, 25.4%)가 그 다음 순이었다.

법규정 상으로 통신매체 등에 의한 성폭력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공장소의 추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통신매체를 통한 피해 시 행위자를 잡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고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10.4%)도 많기 때문에 신고율이 높지 않은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향후 성폭력피해에 대한 신고의사

향후 성폭력피해를 경험할 경우 신고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신고의사를 밝힌 경우는 가족이 성폭력피해를 당한 때로, 피해 당사자가 가족일 경우 응답자의 75.7%가 적극적인 신고 의사를 밝혔고, 13.2%는 신고할 의사가 없음을, 그리고 11.1%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피해 당사자가 본인일 경우 응답자의 69.0%가 적극적인 신고 의사를 밝혔고, 16.8%는 신고할 의사가 없음을, 그리고 14.2%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피해 당사자가 친구나 이웃, 직장동료일 경우 응답자의 59.0%가 적극적인 신고 의사를 밝혔고, 19.6%는 신고할 의사가 없음을, 그리고 21.4%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 당사자가 잘 모르는 사람일 경우 응답자의 40.3%가 적극적인 신고 의사를 밝혔고, 25.9%는 신고할 의사가 없음을, 그리고 33.8%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 II-36> 향후 성폭력피해에 대한 신고의사

(단위: %, N=1,000)

구분		본인	가족	친구, 이웃, 직장동료	잘 모르는 사람
신고 의사	신고하겠다	69.0	75.7	59.0	40.3
	신고하지 않겠다	16.8	13.2	19.6	25.9
	잘 모르겠다	14.2	11.1	21.4	33.8
계		100.0	100.0	100.0	100.0

성폭력피해 경험에 대해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대부분이 신고를 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나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공개를 원치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외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거나 신고절차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대담에 포함되었다.

피해자가 본인이거나, 가족,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가 가장 높아(53.5%, 47.4%, 41.2%), 법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친구, 이웃, 직장동료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건 공개를 원치 않을 것 같아서’가 47.6%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성폭력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고했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고 가해자 처벌이 어떻게 가능한 지에 대한 법의 구체적인 실효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II-37> 피해 당사자별 신고를 꺼리는 이유

(단위: 명(%))

구분	본인	가족	친구, 이웃, 직장동료	잘 모르는 사람	
미 신 고 이 유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166 (53.5)	116 (47.4)	150 (36.6)	246 (41.2)
	피해자가 사건 공개를 원치 않을 것 같아서	89 (28.7)	81 (33.3)	195 (47.6)	236 (39.5)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27 (8.7)	27 (11.1)	36 (8.8)	68 (11.4)
	신고절차를 잘 몰라서	12 (3.9)	13 (5.3)	16 (3.9)	24 (4.0)
	수치스러워서	5 (1.6)	2 (0.8)	0 (0.0)	0 (0.0)
	귀찮아서	2 (0.6)	2 (0.8)	6 (1.5)	10 (1.7)
	수사과정이 복잡해서	2 (0.6)	0 (0.0)	2 (0.5)	2 (0.3)
	피해정도에 따라 신고하겠다	1 (0.3)	1 (0.4)	1 (0.2)	3 (0.5)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1 (0.3)	1 (0.4)	1 (0.2)	1 (0.2)
	내 연령대와는 상관없어서	1 (0.3)	0 (0.0)	0 (0.0)	0 (0.0)
	본인이 판단할 일	1 (0.3)	0 (0.0)	3 (0.7)	4 (0.7)
	신분노출이 싫어서	1 (0.3)	0 (0.0)	0 (0.0)	0 (0.0)
	그때그때 다르다	1 (0.3)	0 (0.0)	0 (0.0)	1 (0.2)
	남자라서	1 (0.3)	0 (0.0)	0 (0.0)	0 (0.0)
	잘못될까봐	1 (0.3)	0 (0.0)	0 (0.0)	1 (0.2)
계	310	243	410	597	

라. 관련법에 관한 의식 및 법의 효과성

1) 성폭력에 대한 의식

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식

일반적으로 성폭력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최근 남성이 남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나 여성이 성폭력가해자인 경우 혹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성폭력특별법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83.0%가 ‘남자, 여자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15.6%는 ‘여성 이외에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성피해자 보호에 주력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 외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니 성폭력특별법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1.4%가 대답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성중립적인 의식으로의 변화를 토대로 성폭력특별법에서도 강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성별에 따라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남자, 여자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에 가장 많은 답변을 했고(여성 83.5%, 남성 82.5%), 그 다음으로 '여성 이외에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성피해자 보호에 주력해야 한다'는 문항에 여성 15.7%, 남성 15.5%가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니 성폭력특별법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문항에 대해서 여성의 경우는 0.8%, 남성은 2.0% 답변해 주었다. 즉, 성중립적인 입장에서 성폭력특별법을 인식하는 일반인의 견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이러한 답변에서 엿볼 수 있다.

<표 II-38>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식

(단위: 명(%))

구분	전체	여성	남성
계	1,000 (100.0)	509 (100.0)	491 (100.0)
남자, 여자 상관없이 가해자 처벌	830 (83.0)	425 (83.5)	405 (82.5)
여성피해자 보호에 주력	156 (15.6)	80 (15.7)	76 (15.5)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니 고려할 필요 없음	14 (1.4)	4 (0.8)	10 (2.0)

나) 부부 강간죄 성립 여부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물어 본 결과, 1,000명 중 580명(58.0%)이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부부강간죄가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부부간의 성적 관계에서도 개인의 의사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가 50.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부 간의 성행위가 항상 동의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가 37.1%, '부부간의 강제적 성행위는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처벌이 필요하다'가 8.3%, '부

부간의 성행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가 4.5%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 보면, 여성의 62.5%가 부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부부간의 성적 관계에서도 개인의 의사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가 47.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부간의 성행위가 항상 동의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가 39.0%, '부부간의 강제적 성행위는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처벌이 필요하다'가 10.7%, '부부간의 성행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가 3.1% 순이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약 10.0% 정도가 적은 53.4%가 부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부부간의 성적 관계에서도 개인의 의사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가 5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부간의 성행위가 항상 동의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가 34.7%, '부부간의 강제적 성행위는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처벌이 필요하다'가 5.3%, '부부간의 성행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가 6.1% 순이었다.

<표 II-39> 부부 강간죄 성립 여부 및 그 이유

(단위: 명(%), N=1,000)

구분		전체	여성	남성
계		1,000	509	491
성립 이유	소계	580 (100)	318 (100)	262 (100)
	부부 간의 성적 관계에서도 개인의 의사결정은 존중되어야 함	291 (50.2)	150 (47.2)	141 (53.8)
	부부 간의 성행위가 항상 동의된 것은 아님	215 (37.1)	124 (39.0)	91 (34.7)
	부부 간의 강제적 성행위는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처벌해야 함	48 (8.3)	34 (10.7)	14 (5.3)
	부부 간의 성행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국가개입	26 (4.5)	10 (3.1)	16 (6.1)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물어 본 결과, 1,000명 중 420명(42.0%)이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부부강

간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부부 간의 성행위는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이기 때문이다’가 5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부 간의 강제적 성행위는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가 16.7%, ‘부부 간의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가 14.0%, ‘부부 강간죄를 인정할 경우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가 11.7%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 보면, 여성의 37.5%가 부부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부부 간의 성행위는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이기 때문이다’가 5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부 간의 강제적 성행위는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가 20.9%, ‘부부 간의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가 13.6%, ‘부부강간죄를 인정할 경우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가 9.4% 순이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약 10.0% 정도가 많은 46.6%가 부부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부부 간의 성행위는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이기 때문이다’가 59.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부 간의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가 14.4%, ‘부부강간죄를 인정할 경우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가 13.5%, ‘부부 간의 강제적 성행위는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가 12.2% 순이었다.

<표 II-40> 부부 강간죄 미성립 여부 및 그 이유

(단위: 명(%), N=1,000)

구분		전체	여성	남성
계		1,000	509	491
미 성립 이유	소계	420 (100)	191 (100)	229 (100)
	부부 간의 성행위는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임	244 (58.1)	107 (56.0)	137 (59.8)
	부부 간의 강제적 성행위는 입증 불가	68 (16.2)	40 (20.9)	28 (12.2)
	부부 간의 성행위까지 국가개입 불가	59 (14.0)	26 (13.6)	33 (14.4)
	부부 강간죄를 인정할 경우 악용 소지	49 (11.7)	18 (9.4)	31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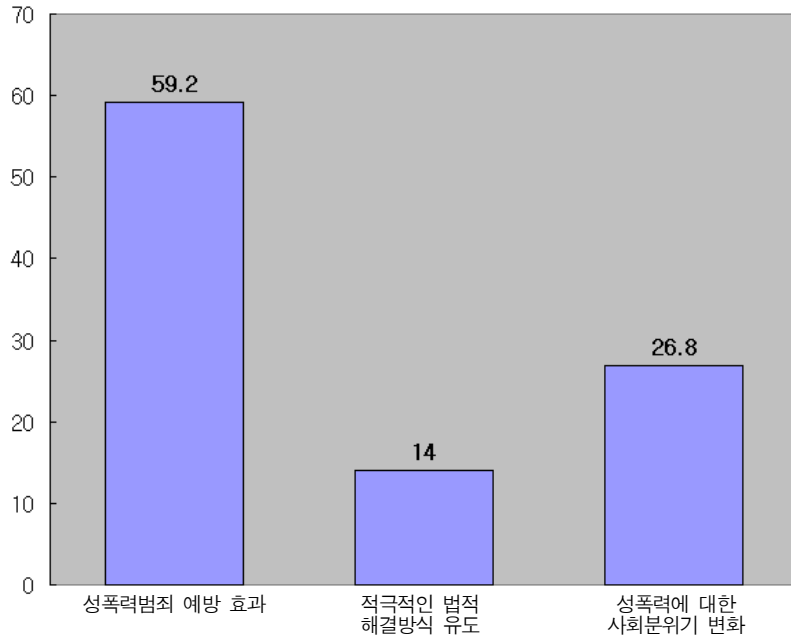
2) 성폭력특별법의 효과성

성폭력특별법이 성폭력범죄 감소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4.9%가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여 일정 수준에서 성폭력특별법의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 성폭력특별법의 성폭력 방지 기여 여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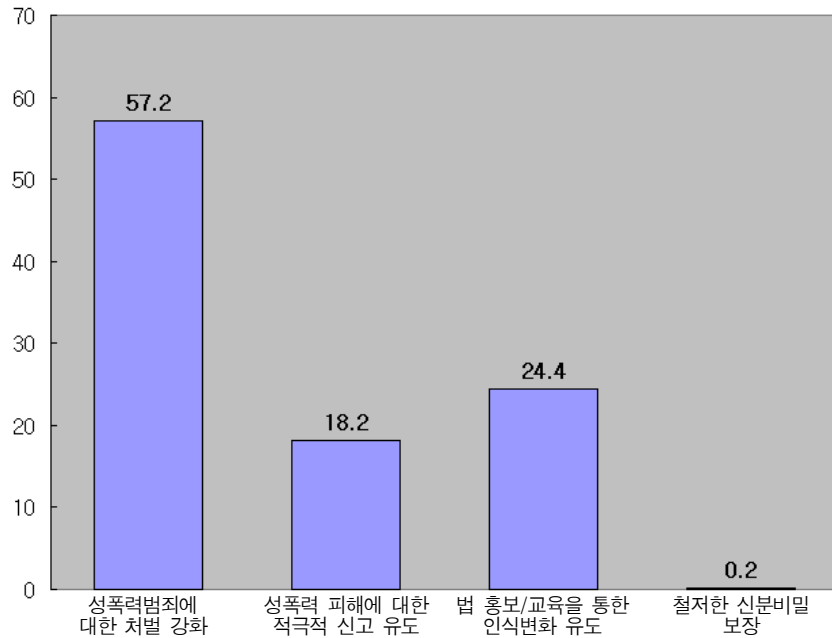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여성	남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기여 (54.9)	매우 기여	35 (3.5)	13 (2.6)	22 (4.5)	6 (2.8)	6 (2.5)	14 (6.1)	3 (1.9)	6 (3.9)
	어느 정도 기여	514 (51.4)	260 (51.1)	254 (51.7)	87 (40.3)	117 (48.5)	133 (57.6)	97 (61.4)	80 (51.9)
비기여 (45.1)	별로 기여 못함	408 (40.8)	216 (42.4)	192 (39.1)	107 (49.5)	105 (43.6)	75 (32.5)	57 (36.1)	64 (41.6)
	전혀 기여 못함	43 (4.3)	20 (3.9)	23 (4.7)	16 (7.4)	13 (5.4)	9 (3.9)	1 (0.6)	4 (2.6)
계		1,000	509	491	216	241	231	158	154

성폭력특별법이 성폭력 감소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549명을 대상으로 어떤 면에서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를 질의한 결과,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성폭력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9.2%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특별법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변화 등 사회 분위기 변화에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6.8%, ‘성폭력피해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법적 해결방식을 유도하고 제공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4.0%를 차지하였다.



<그림 II-3> 성폭력특별법의 성폭력 방지 기여 여부 (단위: %)

또한 성폭력특별법이 성폭력범죄 감소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451명을 대상으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질의한 결과,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강화가 57.2%가 가장 높았고, 성폭력특별법의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 유도가 24.4%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성폭력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유도가 18.2%로 나타났다.



<그림 II-4> 성폭력특별법의 개선되어야 할 점 (단위: %, N=1,000)

3) 향후 성폭력특별법 내용 상 보완되어야 할 점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성폭력특별법의 내용에 보완되어야 할 점을 질의한 결과, 제1순위로 지적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강화 60.3%, 수사 및 재판과정 등에서의 피해자 인권 보장 20.3%,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육 및 치료감시 체계 강화 5.8% 순으로 꼽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인들의 처벌 강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현재 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견해가 높기 때문이라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의 처벌과 관련한 법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I-42> 향후 성폭력특별법 내용 상 보완되어야 할 점
(단위: 명(%))

구분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보 완 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603 (60.3)	143 (14.3)	92 (9.2)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의 피해자 인권 보장	203 (20.3)	336 (33.6)	159 (15.9)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교육/치료 및 지속적인 감시체계	58 (5.8)	134 (13.4)	256 (25.6)
	신종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56 (5.6)	140 (14.0)	165 (16.5)
	친고죄의 폐지	47 (4.7)	150 (15.0)	115 (11.5)
	성폭력범죄 고소기간의 연장	18 (1.8)	57 (5.7)	114 (11.4)
	배상명령제도 도입	14 (1.4)	38 (3.8)	87 (8.7)
	잘 모르겠다	1 (0.1)	2 (0.2)	11 (1.1)
	성범죄자 신상공개	0 (0.0)	0 (0.0)	1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 성폭력 관련 외국 입법례

본 장에서는 성폭력을 둘러싼 외국의 다양한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폭력특별법의 개정 방향과 정책 보완에 주안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성폭력의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통한 강간 개념의 확장, 부부 간의 성폭력을 둘러싼 변화, 아동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성범죄자에 대한 대책 등으로 외국 입법례를 제시할 것이다.

가. 성폭력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 강간 개념의 확장²³⁾

한국 사회의 성폭력특별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에서 제기되었듯이 강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는 것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성폭력의 범주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법 규정임을 NGO 관계자, 법 집행자들 역시 공감

23) 増田 生成(2000), “諸外國における女性に対する暴力關聯立法 - 加害行爲に關する立法 No. 1 -”, ISSUE BRIEF NUMBER 338 (APR. 14. 2000), 國立國會圖書館 行政法務調査室課.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의 성폭력 개념, 특히 강간을 둘러싼 개정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법 개정의 방향에 근거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미국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강간은 중죄로써 취급되긴 하였지만, 피해자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저항의 증거를 제시하여야만 강간죄로 성립되는 수준이었다. 또한 증거심사 상 피해자의 성적 경력의 심사가 허용되고, 피해자가 의학적 증거수집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피해자보호의 차원에서 성폭력 문제가 취급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법이었다. 이러한 법 집행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 결여 등이 지적되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문제로써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1970년대부터 미국의 여러 주에서 성범죄에 관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성범죄를 성적 공격으로서 정의하고, 남녀를 묻지 않고 성중립적으로 규정하여 가해자의 신체의 일부(남성의 성기로 한정하지 않음) 또는 이 물질에 의한 구강, 항문 등(여성 성기로 한정하지 않음)에 대한 성적 행위라고 하고, 복수 범행, 무기 사용, 피해자의 저항불능, 정신적 무능력 등의 경우는 형벌을 가중한다.
- ② 보장증거요건을 폐지한다.
- ③ 피해자의 저항의 입증문제, 특히 동의 결여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환한다.
- ④ 피해자의 과거의 성적 경력이나 성행(性行) 상의 경력은 대부분의 경우 불안심리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관이 비공개로 심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법정 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
- ⑤ 의료검사비용을 피해자에게 보상한다.

⑥ 배우자 강간을 중죄로 한다.

예를 들어, 뉴욕 주의 경우 주형법 제130조에서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서 성행위는 성교, 이상(異常) 성교, 성적 접촉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전에는 성범죄 중 제1종 강간은 여성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성중립적으로 바뀌었다.

2) 영국 · 프랑스

영국은 통일적인 형법전을 갖고 있지 않지만 특별법 형태로 성범죄를 문서화 하고 있다. 성폭력 관련법들은 1956년 성범죄법(Sex Offences Act 1956)에서 규정되었으며, 동 법은 수회에 걸쳐 개정되고 있다. 1994년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 제142조에 의해 개정된 뒤의 1956년 성범죄법 제1조(여성 또는 남성에 대한 강간)는 강간죄의 피해자를 ‘여성 또는 다른 남성’이라고 하여 성중립적으로 규정하고 행위범위 역시 확대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성이 여성 또는 다른 남성을 강간하는 것은 범죄이다.

(2) 이하의 경우에 남성은 강간을 범한 것으로 한다.

(a) 강간이란 성교 시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자와 성교(질 또는 항문을 묻지 않는다)를 한 경우

(b) 성교 시점에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것을 인식하고 있었든지 또는 본인의 동의 결여의 인식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 또는 인식 있는 과실이 있었던 경우

(c) 기혼여성에 대해 남편을 위장하여 성교를 유도한 경우

성교란 사정에 의한 성교의 완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성교(가장 경한 것을 포함한다)만으로 기수에 이른다(제44조). 법정형은 무기를 상한으로 하는 구금형이다. 1970년대 이후 성기중심적이며, 생물학적인 남녀의 차별에 근거한

강간의 법규정은 성중립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1980년의 형법 개정에 의해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하고, 피해자보호의 강화가 도모되었다. 1992년 형법전은 이것을 이어 받고 있고, 성범죄를 성폭력(성적 공격)의 개념으로 통일하고 폭력, 강제, 협박 또는 의지에 반하여 실행하는 성적 침해를 모두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였다(제222~제222조). 성폭력범죄에는 강간(제222~제223조), 강간 이외의 성폭력(제222~제227조), 성기노출행위(제222~제232조), 성희롱(제222~제233조)이 있다. 강간은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폭력, 강제, 협박 또는 의지에 반하여 실행하는 모든 성적 삽입행위로 그 성질 여하를 문제 삼지 않고, 징역 15년이 과해진다. 성적 삽입행위는 성기에 한정 되지 않고, 성기 이외의 물건의 삽입, 성기 이외의 부분의 삽입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가중유형으로서 가중사유를 수반하는 강간죄(제224~제224조, 징역 20년), 강간치사죄(제222~제225조, 징역30년), 고문·야만행위를 수반하는 강간죄(제222~제226조, 징역 30년)가 있다.

이러한 성폭력 개념의 협소성을 극복하기 위한 개념의 확대는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법 개정의 주요한 지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스페인 역시 1995년 형법 개정에 이어 2003년 11월 25일 입법된 Organic Act 15에 의해 형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2003년 개정의 특징은 개인의 성적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들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과 아동학대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서는 더욱 형을 가중한 것이다. 아울러 강간의 정의에서 예전의 성기 삽입만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이 신체 부위나 물건의 삽입까지 확대된 것이다.

또한 제8편 성적 자유에 대한 범죄에서 남녀를 묻지 않고 폭행·협박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이나 성적 학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폭행·협박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자는 성폭력(성적 공격)죄에 의해 1년 이상 4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질 수 있다(제178조). 성폭

력의 형태가 성기삽입성교, 구강 또는 항문에의 삽입, 혹은 신체 부위나 물체의 질 혹은 항문 삽입의 경우는 강간죄로 6년 이상 12년 이하의 자유형을 과할 수 있다(제179조). 중대한 폭행·협박을 이용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 등의 약자, 존·비속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인 경우는 형이 가중된다(제178조의 죄는 4년 이상 10년 이하, 제179조의 죄는 12년 이상 15년 이하의 자유형)(제180조).

폭행·협박에 의하지 않고, 동의 없이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자는 성적 학대죄에 의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18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징역이 과해진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자, 판단능력을 결한 경우는 동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지배관계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동일한 형이 과해진다(제181조). 성적 학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기삽입성교, 구강 또는 항문에의 삽입, 혹은 신체 부위나 물체의 질 혹은 항문 삽입의 경우는 4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이 과해진다(제182조).

이와 같이 변화하는 성문화에 근거하여 외국의 성폭력 내지 강간의 개념은 생물학적으로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협소한 개념에서 벗어나 성중립적인 광의의 강간, 성폭력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법 개념도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나. 부부 간 성폭력을 둘러싼 변화

1) 미국

부부 간 강간에 관하여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를 통하여 판례의 변경, 법 개정에 의하여 남편의 면제에 관한 코먼로의 원칙을 제한·폐지해 오고 있다.

1993년 7월 5일 부부 간 강간은 미국 내 50개 주에서 금지되었다. 17개 주 및 워싱턴 D.C.에서는 남편에 대한 강간 선고 면제가 없어졌다. 그러나 33개

주에서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강간 선고 면제가 주어진다. 33개의 주에서 부인이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었거나, 무의식 중이거나, 수면 중일 때 또한 법적으로 동의 능력이 없을 때 남편은 선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저지 주에서는 1년간 별거 중인 아내의 아파트에 남편이 침입하여 강간한 사건에서 남편의 면제를 비판하는 판례가 나온 것을 계기로 1979년에 남편의 면제를 배제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는 다른 주에서도 남편의 면제를 배제하는 판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판례의 움직임과 병행하여 남편의 면제를 폐지 내지 제한하는 법 개정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되었다. 경향으로서는 첫째, 성범죄의 중한 유형에 관하여 남편의 면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혹은 부부 간의 강간을 독립된 범죄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둘째, 형식적으로는 법률 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남편의 면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 요건으로서는 법원의 별거명령이 있을 것, 별거상태에 있으면서 이혼이나 별거 등의 신청이 법원에 제기되어 있을 것, 이혼절차에 착수하고 있든가 또는 일정기간 별거상태에 있을 것, 단지 별거상태에 있는 것만으로 하는 것 등의 유형을 볼 수 있다. 단, 남편의 면제를 폐지 내지 제한하는 기본적 방향에 대하여 이 원칙을 부부간을 넘어 확장하는 경향이 일부 주에서 있고, 동서(同棲)자, 단순한 교제상대방으로 이전에 성적 관계가 있었던 자에 대하여도 강간죄의 성립이 부정된 예가 있다.

가해자와 여성 사이에 법에 의해 인정된 부부관계가 존재하지 않든가, 존재하여도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 혹은 명문의 합의에 의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2)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영국의 경우 부부 간 강간에 관하여 판례는 1949년의 클락(Clock) 사건, 1954년의 미라 사건 이후, 법원의 별거명령이 있는 경우나 별거에 합의하고 있는 경우 등 무언가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혼인에 기초한 아내의 성교섭의 동의를 철폐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남편의 면제를 배제하여 왔지만, 1991년에는 남편의 강간을 면제하는 코먼로의 원칙을 폐지하는 최고재판소 판결²⁴⁾이 내려졌다.

1976년 성범죄(개정)법(Sex Offences Act 1976) 제1조에서는 강간죄를 동의 없이 부녀와 ‘불법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지만, ‘불법한’이란 혼인 외를 의미하고, 부부 간의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었다. 그 뒤 1994년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 제142조에 의해 개정된 1956년 성범죄법 제1조(여성 또는 남성에게 대한 강간)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되고, 부부 간 강간이 범죄라는 것을 규정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부부 간 강간에 관하여 제정법이 없고, 1992년 형법전도 부부 간 강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하지만 판례는 점차 부부 간의 강간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나폴레옹 형법전 시대는 당시 보통의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은 혼인의 당연한 전제로 되어 있다는 시각에서 원칙적으로 부부 간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었다. 다만, 상해행위나 제3자의 면전에서 행위를 강제한 경우에 상해죄나 강제추행죄 등 강간 이외의 범죄의 성립은 인정하고 있었다. 예외적으로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이상한 성적 관계나 보통의 성적 관계에서 일정한 궤도를 벗어난 사유가 부수한 경우, 이혼한 전처, 내연의 처, 약혼자 등 법률상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판례는 이혼소송 중에 법원이 별거를 인정하고 있던 부부 간에 남편이 자녀가 있는 곳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칼로 위협

24) R. v R, [1991] 4 All ER 481(1991년 최고재판소(House of Lords)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아내강간 면책’ 이론이 공식 폐기되었다).

한 뒤에 성적 삽입행위에 이른 사건에서 부부 간에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1992년에 함께 사는 부부로 남편이 아내에게 보통의 성관계를 힘으로 요구한 사건에서, 혼인은 보통의 혼인생활에 있어서는 성적 관계에 관하여 배우자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추정은 반대의 입증에 있을 때까지 가치를 갖는데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독일은 종전의 강간죄(제177조)와 강제추행죄(제178조)를 제177조(성적 강요·강간)로 통합하였다.²⁵⁾ 개정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대상은 성중립적으로 되고, 혼인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부부 간 강간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행위와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형벌이 가중된다. 성적 강요죄는 폭행 또는 신체나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초래하는 협박을 가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성적 행위를 수용하도록 강요하거나, 그들에 대하여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경우에 1년 이상의 구금형이 처해진다(제1항).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행위자가 피해자와 성교를 한 경우, 또는 특히 행위가 신체에 대한 삽입행위와 결부된 경우에 피해자를 현저하게 능욕하는 성교유사의 성적 행위를 한 경우(제2항 제1호), 혹은 복수의 자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2년 이상의 구금형이 처해진다. 가중유형으로서 행위 시에 무기 등을 소지하거나, 피해자에게 중도의 건강상해가 발생하거나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구금형이 처해진다(제3항, 제4항). 범행 시에 무기들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신체를 심하게 확대하거나, 상대방을 죽음의 위험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 이상의 구금형이 처해진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경우는 경한 법

25) 독일은 1997년 형법 개정(제33차) 이전까지만 해도 형법 제177조에서 강간죄에 있어 “혼인외 성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간은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런데 1997년 형법 개정을 통해 ‘혼인외 성교’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강간죄의 객체에 법률상의 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타인’으로 대체함으로써 남성 역시 강간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국(2001),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5~16면 참조.

정형이 적용된다(제5항). 성적 강요 및 강간에 의한 치사(제178조)는 피해자를 성적 강요, 강간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 종신형 또는 10년 이상의 구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요된 성교뿐만 아니라, 온갖 남성 성기 삽입행위와 기타의 성적 폭력행위로 강간의 정의가 확대되었다. 또한 여성에 대한 경찰과 사법관계자의 대응이 여성에 대하여 굴욕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대책이 취해지고 있다. 성적 범죄를 위한 특별부문을 설치하고, 연수를 받은 검사나 여성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

이탈리아²⁶⁾의 경우에도 부부 간의 성폭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형법전은 1996년 개정 전부터 남편을 강간죄의 주체에서 면제하고 있지 않았다. 판례는 이른 시기부터 부부 간의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었다. 파기원은 1976년에는 재판 상의 별거에 이르지 않았지만 사실 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1982년에는 재판 별거 중인 경우, 1994년에는 아내를 학대한 후의 동거 부부 간의 경우에 각각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부 간의 강간을 법률로써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를 통한 부부 간의 강간을 처벌함으로써 부부 간의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로 분석할 수 있다.

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미국의 경우 2005년 여성폭력방지법(VAWA)(2006. 1. 5 개정)에서는 제정 이후 과거 10년 동안 거의 다루어지지 못한 아동 및 청소년 폭력 문제가 다루어지게 되었다.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의 직원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지하며, 아동과 청소년이 폭력의 다양한 종류를 인식하도록 돕고 그들에게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및 스토킹을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외에도 그 밖에 폭력예방프로그램, 가정폭력이나 스토킹피해자가 자신의 주택에 피해있는 동안의 새로운 보호

26) L.15 febbraio 1996 n.66(Law No. 66 of 15 Feb. 1996).

조치들, 강간위기센터에 대한 자금지원,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의 여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장애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 더 많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포함하게 되었다.²⁷⁾

캐나다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14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적 간섭(제151조), 유혹(제152조),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적 간섭이나 유혹(제153조) 등이 처벌된다. 동시에 경찰관이 체포를 위해 주거출입 권한을 강화하였다. 가정 내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입장이 중심에 있지만, 정식 기소 범죄의 급박한 신체에 대한 위하나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 영장에 의하지 않고 출입을 인정하고 있다.²⁸⁾ 또한 피해방지를 위해 법원명령에 의한 예방조치가 인정된다. 14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재판 시의 일정한 행위금지명령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예방명령이 인정된다(제161조, 제810조, 제811조).²⁹⁾ 소년범죄에 관하여는 1995년 「미성년범죄자법」 개정에 의해 폭력적 미성년범죄자의 처벌 강화, 경찰·학교의 정보교환의 향상, 경찰에 의한 중대범죄 미성년자에 관한 기록의 영구보존이 규정되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형법 상 폭행·협박 등의 강제에 의하지 않고, 합의에 기초한 성적 관계에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성립하고, 강제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일정한 경우(제609조의4)란 피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존속, 양친(兩親)(養親 포함), 후견인, 치료, 훈련, 교육, 감독, 감호의 이유에 의해 아동을 맡고 있는 자, 아동과 공동생활 관계에 있는 자이면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또한 아동 간의

27) http://findarticles.com/p/articles/mi_qa3820/is_200504/ai_n13643179.

28) 増田 生成(2000), “諸外國における女性に対する暴力關聯立法 - 加害行爲に關する立法 No. 1 -”, ISSUE BRIEF NUMBER 339 (APR. 14. 2000), 國立國會圖書館 行政法務調査室課, 7면.

29) 増田 生成(2000), “諸外國における女性に対する暴力關聯立法 - 加害行爲に關する立法 No. 1 -”, ISSUE BRIEF NUMBER 340 (APR. 14. 2000), 國立國會圖書館 行政法務調査室課, 13면.

동의에 의한 성적 관계인 경우 아동이 13세에 달하고 있으면서 연령차가 3세 이내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영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성폭력에 대한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13세 미만의 소녀와 위법한 성교를 하는 것(제5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소녀, 장애인 여성(제7조)과 위법한 성교를 하는 것(제6조, 제9조)은 범죄이다. 단,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소녀의 경우는 혼인하고 있던 경우에 법률상(1949년 혼인법 제2조 또는 1929년 혼인연령법 제1조)으로는 혼인이 무효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남성이 24세 미만으로 과거에 동종의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인인 것을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라. 성범죄자에 대한 대책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대책으로서는 여성폭력방지법에 아동에 대한 범죄 및 성범죄자등록법(Jacob Wetterling Crimes Against Children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 of Title XVII, Megan's Law)을 도입하여 주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등록제도를 개발토록 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출옥정보를 지역사회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1996년의 Megan법(법률 제104~145호, 1996. 5. 17)에 의해 개정되어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게시가 강화되었다. 또한 1996년 성범죄자의 추적과 등록법에 의해 유죄로 된 성범죄자의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FBI에 두는 것을 사법장관의 의무로 하였다. 1993년의 전미아동보호법도 개정되고, 보육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성희롱(성적 장난)을 포함한 범죄력의 전국적 체크시스템의 대상이 고령자 및 장애인 개호직으로 확대되었다.

캐나다³⁰⁾는 성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의 강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에

30) 増田 生成(2000), ISSUE BRIEF NUMBER 339, 7면.

대한 처벌강화가 행해지고, 형법 개정에서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범죄에 관하여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의 체포, 소추강화, 18세 이하의 자의 성매매에 의해 이익을 얻거나 그 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자 등의 형의 하한을 인상, 괴롭힘죄나 보호명령위반에 대한 형벌인상, 스토킹 살인에 대한 제1급 살인죄의 적용, 여성의 생식기절제에 가중공격죄의 적용, 일정한 범죄의 경우에 미성년자 피해자의 증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형벌 외에 최고 10년의 장기보호관찰에 붙이는 것이나 위험성 있는 범죄자의 지정, 보석요건의 엄격화 등의 대책이 강화되었다.

6. 소 결

성폭력특별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폭력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공식통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좀 더 실질적인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 검찰, NGO 관계자들과의 면접 조사를 통하여 집행절차에서 빚어지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흐른 지금 일반 국민들의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양적 방법에 의한 경향성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의 법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는 기초 자료로써 성폭력특별법의 미국, 유럽 국가들의 입법례들을 점검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몇몇 새로운 쟁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성폭력특별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피해자 권리를 옹호하는 NGO 관계자들 그리고 법 집행자들인 경찰과 검찰의 대부분의 입장은 현재까지 제·개정된 성폭력특별법 자체가 가지는 있는 문제점보다는 법 집행자들의 의식과 태도로 인해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즉, 하드웨어인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만, 그 시스템을 실행하는 훈련되고 교육된 인적 자원의 부재는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할 때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형법 상 부부 간의 강간은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례에서 부부 간의 강간을 처벌한 적이 없다는 것은 법 집행자들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사고에 기반해서 “부부 간에 성폭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법 집행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인적 자원을, 즉 경찰, 검사, 판사 등의 성폭력에 대한 성중립적이고 성평등적인 개념을 체화하는 의식화 교육과 훈련이 법 집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나.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인지도 조사에서 특이할 만한 사안은 성폭력특별법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광범위하지만,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는 부재하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점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법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성폭력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홍보, 즉 법을 이용하면 피해자가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회적인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법 집행자들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원칙을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성폭력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벗어나 성폭력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중립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부 간의 성폭력도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처벌 받아야 한다는 인식 역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더 이상 성폭력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숨겨야 할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써 인식하고 제기하기 시작하는 단초가 되는 인식 태도로 변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 성폭력특별법의 외국 입법례의 변화 양상

미국과 유럽 여러 국가들의 성폭력특별법의 변화 방향은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과 맥을 같이 하여 이제 더 이상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협소한 시각에서 개념화하는 것이 아니라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다양한 폭력의 양상과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성중립적인 개념으로 법 개정을 시행하고 있다. 즉, 동성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성폭력의 문제들, 소수 이진 하지만 여성이 성폭력가해자인 경우의 인정 등이 변화의 한 양상으로 제기될 수 있다. 또한 1970년대 이래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제기와 함께 부부 간의 강간을 법으로 명백히 규정하거나 혹은 판례로써 부부 간의 강간을 처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부부가 되는 계약은 서로 동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한 허용을 약속한 사이이지, 성폭력을 묵인하고 받아들이는 사이가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법적 결론임을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빈번히 발생하는 지인 간의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문제들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처벌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는 한국 사회의 성폭력특별법의 법률적인 재정비방안에 주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III

가정폭력 관련 법제

1. 서론	121
2. 가정폭력특례법의 주요 내용	1
3. 가정폭력특례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141
4. 가정폭력특례법 인지도 조사결과	8
5. 가정폭력 관련 외국 입법례	19
6. 소결	216

1. 서론

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을 포함하여 가정 내에서 가정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즉 가정 내 폭력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가정 내에서 여성을 통제하는 수단이 됨으로써 결국 여성의 종속과 남성의 지배를 강화하는 기재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사회학적인 의미에서의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주로 여성에게 자행되는 폭력 또는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의도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의 논의는 가정폭력특례법이 규정한 일반적인 가정폭력의 정의에 따르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배우자폭력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가정폭력 관련 법제의 정비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가정폭력특례법이 그 동안의 개정과정을 통하여 현재 담고 있는 주요 내용과 공식적으로 나타난 가정폭력통계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변화 분석, 법 집행담당자와 NGO 관계자의 심층면접을 통한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로 앞으로의 법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가정폭력특례법의 주요 내용

가. 제정이유 및 개정연혁

1) 제정이유

가정폭력은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왔으나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가정폭력에 사회와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게 되었다. 이에 가정폭력범죄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를 도입하고 가정폭력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처리특례를 규정하는 등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1997. 12. 13 법률 제5436호로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되었다.

2) 개정연혁

동 법은 그 동안 총 11차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중 동 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개정한 것은 제1차(1999. 1. 21 법률 제5676호), 제6차(2002. 12. 18 법률 제6783호), 제7차(2005. 1. 27 법률 제7356호), 제10차(2007. 5. 17 법률 제8434호), 제11차(2007. 8. 3 법률 제8580호) 개정이다.

가) 제1차 개정(1999. 1. 21 법률 제5676호)

가정폭력문제는 가정의 평화를 파괴시키는 것은 물론 가정폭력범죄 행위자의 집요한 추적으로 자녀교육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피해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및 학교장 등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이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전학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특례법을 개정한 것이다.

- ① 아동을 아동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였다(제2조 제8호).
- ② 비밀엄수 등의 의무범위에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및 교장을 포함시켜 이들이 전학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였다(제18조 제1항).

나) 제6차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83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임시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

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와 그에 대한 항고 등은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의 인권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대한 조치이므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도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 ① 법의 목적에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 외에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추가하였다(제1조).
-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격리와 퇴거 등의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자가 그에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하여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조 제2항).
- ③ 가정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불처분의 결정을 하거나 보호처분을 취소한 때에 그 가정보호사건이 검사의 송치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이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법원의 송치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이를 송치한 법원에 이송하도록 하였다(제37조 제2항 및 제46조).
- ④ 보호처분의 변경·취소 및 종료와 그에 대한 항고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검사를 추가하였다(제45조 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1항, 제2항).

다) 제7차 개정(2005. 1. 27 법률 제7356호)

가정폭력범죄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불처벌의사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불처분결정을 하여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가정폭력범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비형벌적 처분인 보호처분의 심리대상이 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려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37조 제1항 제1호 삭제).

라) 제10차 개정(2007. 5. 17 법률 제8434호, 2008. 1. 1 시행)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는 그 성격 상 일반인에 대한 소송기록의 공개가 적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확정된 재판기록에 관하여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이 법의 준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가정보호사건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을 방지하려는 개정이 이루어져 2008.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 제11차 개정(2007. 8. 3 법률 제8580호)

현행법 상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권리를 확대하여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법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정비·보완하기 위해서 가정폭력특례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 ①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조정(제2조 제3호 차목 삭제):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서 아동복지법 제29조 제8호를 위반한 죄를 삭제하여 가정폭력범죄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이는 현행법 제2조 제3호 가·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 유기, 학대 등의 한 태양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8호의 행위태양만을 ‘가정폭력범죄’로 별도로 규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법무부 의견에 따른 것이다.
- ② 임시조치 청구요건 개선 및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청구 요청권 신설(제8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선행요건을 삭제하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바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청구 요청권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사

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③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신설(제9조의2):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④ 판사의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조사요구권 신설(제21조): 실무상 활용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결정전조사를 명문화하여 판사는 조사관 외에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행위자·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⑤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유형 추가(제29조 제1항 및 제40조 제1항):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하나인 접근금지 또는 접근제한 대상에 피해자 외에 가정구성원을 추가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한 유형으로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또는 접근제한을 추가하였다.
- ⑥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기간 연장(제29조 제5항 및 제41조): 임시조치 중 격리 및 접근금지의 연장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연장하고,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시간을 최대 현행 1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연장하였다.
- ⑦ 임시조치 집행 및 피해자의 임시조치 변경신청권 신설(제29조의2): 임시조치결정을 집행하는 자는 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위반시 처벌 등을 고지하도록 하였다. 판사가 격리 또는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한 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결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⑧ 감호위탁기관 행위자 교육 실시 의무화(제40조 제6항): 감호위탁기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서 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⑨ 과태료 상한 인상(제65조): 소환 불응자,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 불응자,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처분을 불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나. 법의 목적과 구조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3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그리고 제4장 벌칙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제1장 총칙규정은 가정폭력특례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고, 제2장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신고의무를 비롯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제5조) 및 임시조치와 그리고 검사 및 법원의 송치와 관할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1절 통칙(제4조 내지 제18조)과,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임시조치와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제2절 조사·심리(제19조 내지 제39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보호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3절 보호처분(제40조 내지 제48조), 그리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절차를 규정하는 제4절 항고와 재항고(제49조 내지 제55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은 민사처벌에 관한 특례규정으로 가정폭력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절차를 규정한 것이고(제56조 내지 62조), 제4장 벌칙규정은 보호처분을 위반한 가해자와 비밀엄수의무와 소환불응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제63조 내지 제65조).

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1) 가정폭력의 개념 및 가족구성원의 범위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1호) 있다. 그러므로 가정구성원 사이의 성적 폭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에서의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제2조 제2호)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동거하고 있지 않은 친형제자매 사이의 폭력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가정폭력범죄의 유형

현행 가정폭력특례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는 다음과 같다.

- ① 형법중의 상해, 존속상해(제257조), 중상해, 존속중상해(제258조), 폭행, 존속폭행(제260조 제1항·제2항), 특수폭행(제261조)의 죄 및 앞의 범죄의 상습범(제264조)
- ② 유기, 존속유기(제271조 제1항·제2항), 영아유기(제272조), 학대, 존속학대(제273조) 아동학사(제274조)
- ③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제276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제277조), 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8조) 및 상습으로 형법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하는 것(제279조)과 그 미수범(제280조, 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 ④ 협박, 존속협박(제283조 제1항·제2항, 특수협박(제284조), 형법 제283조의 상습범(제285조) 및 형법 제283조 또는 제284조의 미수범(제286조)의 죄

- ⑤ 명예훼손(제307조), 사자의 명예훼손(제308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제309조) 및 모욕(제311조)의 죄
- ⑥ 주거·신체 수색(제321조)의 죄, 강요(제324조) 및 그 미수의 죄, 공갈(제350조) 및 그 미수의 죄, 재물손괴등의 죄(제366조)

3)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피해자’를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5호).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는 피해자 본인 외에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또한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아동과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또한 관계 법령에 의한 아동상담소·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제4조 제3항). 그리고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4조 제4항). 그러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없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를 할 수 없지만,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제6조 제2항).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4) 가정폭력사건의 사법처리절차

가) 경찰의 가정폭력사건처리

(1)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①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하고, ② 피해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인도하고, ③ 피해자의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인도하며, ④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5조).

(2) 임시조치신청(제8조)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제8조). 동법 제29조 제1항의 임시조치 중 제1호(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와 제2호(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제3호(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제1항).

(3)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및 의견제시(제7조)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당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7조).

나) 검찰의 가정폭력사건처리

(1) 법원에 대한 임시조치의 청구(제8조)

경찰로부터 송치된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8조). 가정폭력특별법 상의 검찰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는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이다.

검사는 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 제1항 제5호(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2항).

그리고 제11차 개정(2007. 8. 3)으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뿐만 아니라 그 요청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제3항). 이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제4항).

(2)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여부 결정(제9조)

가정보호사건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와 법원의 형사재판부에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처리한다.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때는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제9조).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②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도 포함된다(제9조 제2항). 이 조항은 2005. 1. 27에 법 개정될 때 신설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고소나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입법조치이다.

(3)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9조의2)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제9조의2). 제11차 개정(2007. 8. 3) 시 신설된 조항이다.

(4) 가정보호사건의 법원에의 송치(제11조)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하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제11조).

다) 법원의 가정폭력사건처리

(1)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제10조, 제12조)

검찰이 형사사건으로 기소한 경우에는 형사법원이 재판한다. 반면 검찰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으로 한다.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행한다(제10조).

그 외 법원은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제12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6조 제1항).

가정보호사건을 송치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

정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행위자와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5조).

(2) 법원의 임시조치(제29조)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제1호),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제2호),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제3호), ④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제4호), ⑤ 국가경찰 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임시조치(제5호)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을 즉시 검사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9조 제3항). 임시조치 처분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제1호·제2호 및 제3호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제4호·제5호의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2회에 한하여,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는 1회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제29조 제5항).

법원이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행위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제29조 제6항).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항에 의해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29조 제7항). 행위자는 이러한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판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비용의 예납을 명령할 수 있다(제48조). 판사는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조치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제29조 제8항). 임시조치는 판사의 직권이나 가정폭력

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의 신청에 의해 취소되거나 그 종류가 변경될 수 있다(제29조 제9항, 제10항).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법원의 임시조치의 집행 등(제29조의2)

제29조 제8항에 따라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하여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은 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제1항). 또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29조 제1항 제1호(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및 제2호(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때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가) 전문가의 의견조회(제19조, 제22조)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는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행위자·피해자 기타 가정구성원의 성행·경력·가정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9조). 이를 위해 법원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학자·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그 의견조회 결과를 참작하여 조사·심리하여야 한다(제22조).

(나)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조사명령제도(제20조, 제21조)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하여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둔다(제20조). 그리고 판사는 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행위자의 주

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다) 행위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소환(제23조)

판사 또는 조사관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할 때에 미리 행위자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제23조).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제24조).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65조). 판사는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제25조). 법원은 행위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제27조 제2항).

(라) 심리의 비공개(제32조)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사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 대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그 허가여부와 공개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제32조).

(마) 가정폭력피해자의 증인신문(제33조)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심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조사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공정한 의견진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제33조).

(바)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 선임의 허가 등

가정폭력행위자는 자신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상담소 등의 상담원과 그 장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 외에 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상담소 등의 상담원과 그 장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28조 제1항, 제2항). 그 외 법원은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을 명하며 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할 수 있고(제34조 제1항), 검증·압수 및 수색도 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 또한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제36조).

(5) 보호처분

(가) 보호처분의 결정(제40조)

검사의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되었다가 판사의 결정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법원에서 심리한 후 판사의 결정으로 처분된다.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①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④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감명령, ⑤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⑥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호 처분인 피해자에의 접근금지는 다른 처분들과 병과할 수 있고(제40조 제2항), 보호처분을 하면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임시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45조 제1항).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검사·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제45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제4호의 사회봉사·수감명령은 200시간 초과할 수 없다(제41조).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검사·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데(제1항),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제4호의 사회봉사·수감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5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제3호의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제40조 제3항).

(나) 보호 처분의 취소 및 종료(제46조, 제47조)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제40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의 보호 처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의 검사 또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제46조).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제47조).

(다) 보호처분의 비용부담(제48조)

제29조 제1항 제4호의 위탁결정 또는 제40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제48조 제1항).

(라) 처분기간 등(제38조)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치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38조).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위자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제46조 규정에 의해 법원이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사 또는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조).

(6) 불처분결정(제37조)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①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불처분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37조). 법원은 이러한 불처분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행위자,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7조 제3항). 그리고 심리결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불처분결정을 한 때에는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7)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

검사, 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제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 포함),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하여야 한다(제49조 제1항).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가정보호사건과 함께 항고심에 이심된다(제60조).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상당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제51조).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제52조).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제53조).

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1) 사법처리에서의 가정폭력관련자의 보호

가) 신원비밀보호(제18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를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 조사, 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보조인 또는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그 직에 있었던 자 포함)에게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18조 제1항). 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보조인(변호사 제외), 상담소 등의 상담원과 그 장(그 직에 있었던 자 포함)은 1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4조 제1항).

나) 가정폭력사건의 출판과 방송의 금지(제18조 제2항)

가정폭력특별법은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행위자, 피해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제2항). 이 보도금지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 기타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4조 제2항). 그리고 피해자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의

사실을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제18조 제3항).

2)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배상명령(제56조, 제59조)

가정폭력특례법은 피해자에게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제1심 법원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행위자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인지의 침부는 필요 없다(제56조). 행위자 및 그 보조인은 심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가정보호심판규칙 제68조 제1항, 제2항), 법원은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동 규칙 제69조).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②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제57조 제1항). 또한 배상명령은 가집행될 수 있음도 선고할 수 있다(제58조 제3항).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 있어서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다(제57조 제2항).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그 신청이 이유가 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제59조).

만일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가정보호사건과 함께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이심된다(제60조 제1항).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제60조 제2항). 행위자는 보호처분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제60조 제3항).

제3항의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7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다(제60조 제3항). 그러나 이러한 항고와 재항고는 배상명령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제60조 제5항). 이 법에 의한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61조 제2항).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제62조). 다만,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는 그 성격상 일반인에 대한 소송기록의 공개가 적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확정된 재판기록에 관하여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의 규정을 이 법의 준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2007. 5. 17 법률 제8434호)이 이루어져 2008.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정보호사건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가정폭력특례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가. 가정폭력 관련 공식통계

여기에서는 가정폭력특례법의 시행원년은 1998년이지만, 한 해에 걸쳐 온전하게 시행된 첫 해인 1999년과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이후 가정폭력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던 2003년, 그리고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06년의 공식통계를 주로 참고로 한다. 그러나 사건발생 추이나 처분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전체 통계를 인용한다.

1) 가정폭력행위자의 특성

법원에서 처리한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통계³¹⁾를 중심으로 가정폭력행위자

31) 각 년도 『사법연감』에 의거함.

의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령별 특성

<표 III-1> 가정보호사건 연령별 구성

(단위: 명(%))

구분	계	20세 미만	30세 미만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60세 이상
1999	2,239 (100.0)	5 (0.2)	240 (10.7)	913 (40.8)	779 (34.8)	264 (11.8)	38 (1.7)
2003	2,576 (100.0)	21 (0.8)	366 (14.2)	930 (36.1)	954 (37.0)	259 (10.1)	46 (1.8)
2006	3,005 (100.0)	1 (0.0)	189 (6.3)	710 (23.6)	1,413 (47.0)	538 (17.9)	154 (5.1)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0, 2004, 2007』.

2006년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연령은 결혼연수가 비교적 높은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전체의 47.0%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연령층은 30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전체의 23.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행위자의 연령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지켜보면 40세를 기준으로 40세 미만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에 있는 반면, 40세 이상은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0세 이상 60세 미만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통해 가정폭력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연령이 높고 결혼연수가 많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행위원인별 특성

<표 Ⅲ-2> 가정보호사건 행위원인별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부정행위	경제적 빈곤	부당대우·학대	취중	현실불만	분노(우발)	기타
1999	2,239 (100.0)	107 (4.8)	133 (5.9)	563 (25.1)	870 (38.9)		499 (22.3)	67 (3.0)
2003	2,576 (100.0)	386 (15.0)	352 (13.7)	314 (12.2)	285 (11.1)	484 (18.8)	676 (26.2)	79 (3.1)
2006	3,005 (100.0)	127 (4.2)	89 (3.0)	174 (5.8)	337 (11.2)	620 (20.6)	1,474 (49.1)	184 (6.1)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0, 2004, 2007』.

2006년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가정보호사건을 행위원인별로 보면 분노(우발)가 전체의 49.1%로 가장 많고 현실불만, 취중, 부당한 대우·학대, 부정행위, 경제적 빈곤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가정폭력의 행위원인별 연도별 추이는 1999년과 2006년 행위원인별 분류가 달라³²⁾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부당한 대우·학대의 비율은 상당히 크게 준 반면, 분노(우발)는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다) 교육정도별 특성

<표 Ⅲ-3> 가정보호사건 교육정도별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1999	2,239 (100.0)	35 (1.6)	367 (16.4)	668 (29.8)	996 (44.5)	172 (7.7)	1 (0.0)
2003	2,576 (100.0)	50 (1.9)	343 (13.3)	547 (21.2)	1,225 (47.6)	403 (15.6)	8 (0.3)
2006	3,005 (100.0)	65 (2.2)	433 (14.4)	658 (21.9)	1,380 (45.9)	438 (14.6)	31 (1.0)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0, 2004, 2007』.

32) 『사법연감 2002』까지는 정신결함으로 인한 가정폭력을 별도의 행위원인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는 기타로 처리하고 있다. 편의상 1999년의 정신결함은 기타로 편입하였다. 또한 1999년 자료는 취중과 현실불만을 하나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2006년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가정보호사건의 행위자 중 고등학교 졸업자가 45.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학교 졸업자로 전체의 21.9%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대학교 졸업자인 경우가 14.6%, 초등학교 졸업자인 경우는 14.4%, 무학인 경우는 2.2%를 차지하였고, 대학원 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1.0%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비중은 늘어난 반면,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 비중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높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라) 가정폭력행위자 가정구성원 관계

<표 III-4> 가정보호사건 가정구성원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배우자관계	직계존·비속관계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	동거하는 친족관계
1999	2,239 (100.0)	2,053 (91.7)	143 (6.4)	17 (0.7)	26 (1.2)
2003	2,576 (100.0)	2,263 (87.8)	208 (8.1)	25 (1.0)	80 (3.1)
2006	3,005 (100.0)	2,584 (86.0)	305 (10.1)	23 (0.8)	93 (3.1)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0, 2004, 2007』.

2006년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가정보호사건의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배우자 관계가 86.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직계 존·비속관계로 10.1%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동거하는 친족관계인 경우가 3.1%, 계부모·자 또는 적모·서자의 관계인 경우가 0.8%를 차지하였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배우자 관계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직계 존·비속관계와 동거하는 친족관계는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법기관의 가정폭력사건 처리

가)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처리

<표 Ⅲ-5> 가정폭력 사건발생 및 조치상황

(단위: 건(%))

구분	발생건수	검거인원	조치			가정보호사건 의견송치	
			구속	불구속	기타 (계도)	건수 (송치율)	인원
1998 7.~12.	3,687	4,002 (100.0)	498 (12.4)	3,491 (87.2)	13 (0.3)	89 (2.4)	97
1999	11,850	12,719 (100.0)	868 (6.8)	11,804 (92.8)	47 (0.4)	990 (8.4)	1,031
2000	12,983	14,105 (100.0)	678 (4.8)	13,380 (94.9)	47 (0.3)	3,813 (29.4)	4,040
2001	14,585	15,557 (100.0)	691 (4.5)	14,760 (94.9)	106 (0.7)	4,559 (31.3)	4,818
2002	15,151	16,324 (100.0)	586 (3.6)	15,127 (92.7)	611 (3.7)	3,702 (24.4)	4,083
2003	16,408	17,770 (100.0)	496 (2.8)	16,787 (94.5)	487 (2.7)	4,186 (25.5)	4,459
2004	13,770	15,208 (100.0)	329 (2.2)	13,969 (91.6)	910 (6.0)	2,587 (18.8)	2,616
2005	11,595	12,775 (100.0)	181 (1.4)	11,800 (92.4)	794 (6.2)	1,881 (16.2)	2,022
2006	11,471	12,837 (100.0)	113 (0.9)	12,011 (93.6)	713 (5.6)	1,722 (5.0)	1,903

출처: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1999년의 가정폭력사범 검거가 무려 12,179명에 이르고 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특례법의 시행이 가정폭력이 일종의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³³⁾ 이후 2003년에는 검거인원은 17,770명에 이르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4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

33) 김재민(2007),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개입 현황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법령 개선 방안”,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열린 포럼』(2007. 11. 28), 경찰청·(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 48면.

다. 한편 가정폭력사범을 구속하는 건수는 1999년 868건(6.8%)에서 2006년 113건(0.9%)으로 현격히 줄어들고 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건수도 2003년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어 2006년도에는 1,722건(5.0%)에 불과하였다. 반면 계도조치 건수는 1999년 47건(0.4%)에서 2004년 910건(6.0%), 2006년 713건(5.6%)으로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된 초창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고 이와 더불어 가해자의 대부분이 불구속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경찰이 가정폭력사건 개입시 대체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계도조치를 통해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불구속 상태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행위를 가해올 경우 피해자가 심각한 위협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응급조치 현황

<표 III-6> 경찰의 응급조치 활용현황

(단위: 건(%))

구분	상담소·보호시설인도(율)		의료기관인도(율)	
	건수	인원	건수	인원
1999	9 (0.1)	10 (0.1)	207 (1.7)	209 (1.6)
2003	819 (5.0)	802 (4.5)	901 (5.5)	915 (5.1)
2006	1,449 (12.6)	1,628 (12.7)	883 (7.7)	897 (7.0)

출처: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가정폭력특례법 제5조에 따라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표 III-6>을 보면 법 제정 당시에 비해 2006년에는 그 활용비율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피해자의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비율은 1999년 0.1%에서 2003년 5.0%로 그리고 2006년에는 12.6%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리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율은 1999년 1.7%에서 2003년 5.5%, 그리고 2006년에는 7.7%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는 경찰이 과거에 비해 가정폭력피해자의 필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긴급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가정폭력이 여전히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임시조치 신청 현황

<표 Ⅲ-7> 경찰의 임시조치(격리, 접근금지) 신청 현황
(단위: 건(%))

구분	신청(율)		집행(율)	
	건수	인원	건수	인원
1999	549 (4.6)	550 (4.3)	421 (3.6)	419 (3.3)
2003	1,140 (6.9)	1144 (6.4)	829 (5.1)	837 (4.7)
2006	583 (5.1)	511 (4.0)	240 (2.1)	299 (2.3)

출처: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가해자에 대한 주거지로부터의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 경찰의 임시조치 신청율은 1999년 4.6%에서 2003년 6.9%로 증가하였지만,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2006년 현재 5.1% 수준이다. 더불어 신청된 임시조치의 집행율은 신청율의 반인 2% 정도에 머물고 있다.

임시조치는 폭력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를 행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구속율의 저하와 함께 임시조치 신청 및 집행율의 저하는 피해자의 안전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나) 검찰의 가정폭력사건 처리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에 의하면 검찰의 처분은 크게 ① 기소(구공판 또는 구약식) 또는 불기소처분, ② 임시조치로서 경찰로부터 송치된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에의 임시조치 청구(제8조), ③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송치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III-8> 가정폭력 사건발생 및 처분실태

(단위: 건(%))

구분	총접수 인원	기소			가정보호 사건송치	불기소			소년부 송치	타관 이송	미제
		계	구공판	구약식		계	기소 유예	기타			
1998. 7~12	1,455 (100.0)	462 (31.8)	205 (14.1)	257 (17.7)	495 (34.0)	380 (26.1)	320 (22.0)	60 (4.1)	11	6	55
1999	9,210 (100.0)	2,037 (22.1)	524 (5.7)	1,513 (16.4)	3,384 (36.7)	3,302 (35.9)	3,078 (33.4)	224 (2.4)	69	39	61
2000	13,325 (100.0)	2,506 (18.8)	623 (4.7)	1,883 (14.1)	4,894 (36.7)	5,243 (39.3)	4,952 (37.2)	291 (2.2)	90	23	121
2001	17,281 (100.0)	3,506 (20.3)	623 (3.6)	2,883 (16.7)	6,425 (37.2)	7,173 (41.5)	5,944 (34.4)	1,229 (7.1)	64	41	72
2002	15,347 (100.0)	2,682 (17.5)	561 (3.7)	2,121 (13.8)	4,998 (32.6)	7,468 (48.7)	3,546 (23.1)	3,922 (25.6)	104	33	62
2003	19,004 (100.0)	2,807 (14.8)	6,58 (3.5)	2,149 (11.3)	5,907 (31.1)	9,950 (52.4)	5,305 (27.9)	4,645 (24.4)	58	45	62
2004	17,373 (100.0)	2,429 (14.0)	463 (2.7)	1,966 (11.3)	5,218 (30.0)	9,394 (54.1)	4,756 (27.5)	4,756 (27.4)	72	32	79
2005	15,545 (100.0)	2,161 (13.9)	361 (2.3)	1,800 (11.6)	4,475 (28.9)	8,712 (56.0)	4,368 (28.1)	4,344 (27.9)	36	24	47
2006	13,576 (100.0)	1,972 (14.5)	315 (2.3)	1,657 (12.2)	4,197 (30.9)	7,230 (53.3)	3,449 (25.4)	3,781 (27.9)	33	22	45

출처: 홍종희(2007),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성·가정·아동폭력 형사정책 공청회』 (2007. 10. 24), 법무부, 99면.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실태를 보면, 초기에 20%를 넘던 기소율이 점차 낮아져 2006년 현재 14% 정도에 머물고 불기소율이 점점 높아져 2003년부터는 50% 이상의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한편, 가정보호사건 송치율은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이후 꾸준히 높아지다가 2002년 이후 다소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03년부터 각급 검찰청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후 2001년까지는 구약식기소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고 기소유예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사건을 가벼운 폭력사건 내지 기소유예로 처리하거나 행위자를 벌금형에 처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검찰청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보호사건 처리를 활성화하고 기소유예 처분 시에도 향후 재발에 대한 엄중 처벌 경고 및 자필 서약서를 받고 구약식 기소를 지양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을 수립하여 하달한 결과, 2002년 이후 구약식 기소율 및 기소유예율은 많이 감소하였다.

2002년부터 불기소율 중 기타 비율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야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사건이 반의사불벌죄가 됨으로써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³⁴⁾

다) 법원의 가정폭력사건 처리

법원은 검사 또는 형사법원에 의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고,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치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38조), 심리절차에서는 비공개심리특칙(제32조), 피해자 진술권의 구체적 보장(제33조), 피해자의 의견진술시 행위자의 퇴장 명령제도(제33조 제1항) 등을 두어 심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가정보호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처리방식은 ① 보호처분(제40조), ②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 등 소추요건을 결여한 경우 및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불처분 결정과 동시에 사건의 관할법원 대응 검찰청 검사에로의 송치(검사 송치 가정보호사건) 또는 송치 법원에로의 이송(형사법원 송치 가정보호사건)(제37조), ③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보호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는 때 보호처분의 취소와 동시에 사건의 송치 또는 이송(제46조) 등으로 대별된다.

34) 홍종희(2007), 앞의 글, 100면 각주 33 참조.

(1) 가정보호사건 접수내역

<표 III-9>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사건 접수내역

(단위: 건(%))

구분	합계	검사송치	법원송치	타법원에서 이송
1999	3,877 (100.0)	3,839 (99.0)	28 (0.7)	10 (0.3)
2003	5,944 (100.0)	5,900 (99.3)	43 (0.7)	1 (0.0)
2006	4,221 (100.0)	4,175 (98.9)	30 (0.7)	16 (0.4)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0, 2004, 2007』.

2006년에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을 송치기관별로 보면, 검사 송치가 4,175건(98.9%)으로 가장 많고, 법원 송치는 30건(0.7%)이며, 타법원에서 이송된 사건은 16건(0.4%)이다.

법원에서 담당한 가정보호사건은 전체 소송사건 중 대략 0.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검사 송치가 99% 이상이고 법원 송치·이송은 1% 미만으로 해마다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2) 가정보호사건 처리내역

<표 Ⅲ-10> 가정보호사건 처리내역

(단위: 건(%))

구분	합계	보호처분											불처분	타법원으로이송	보호처분취소 후 검찰청 송치	기타
		계	접근제한행위	친권행사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1.4호병과	3.4호병과	기타				
1998	235 (100.0)	178 (75.7)	54 (23.0)	1 (0.4)	45 (19.1)	56 (23.8)	-	1 (0.4)	21 (8.9)	-	-	-	55 (23.4)	1 (0.4)	1 (0.4)	-
1999	2,552 (100.0)	1,448 (56.7)	324 (12.7)	17 (0.7)	404 (15.8)	593 (23.2)	6 (0.2)	3 (0.1)	101 (4.0)	-	-	-	1,071 (42.0)	7 (0.3)	21 (0.8)	5 (0.2)
2000	4,619 (100.0)	2,695 (58.3)	548 (11.9)	3 (0.1)	1,017 (22.0)	839 (18.2)	2 (0.0)	285 (6.2)	-	-	-	-	1,794 (38.8)	8 (0.2)	88 (1.9)	34 (0.7)
2001	5,602 (100.0)	2,725 (48.6)	334 (6.0)	-	278 (5.0)	754 (13.5)	-	1 (0.0)	348 (6.2)	117 (2.1)	748 (13.4)	145 (2.6)	2,371 (42.3)	8 (0.1)	-	498 (8.9)
2002	6,203 (100.0)	2,647 (42.7)	161 (2.6)	-	479 (7.7)	432 (7.0)	-	1 (0.0)	448 (7.2)	59 (1.0)	893 (14.4)	174 (2.8)	3,257 (52.5)	7 (0.1)	-	292 (4.7)
2003	5,551 (100.0)	2,576 (46.4)	241 (4.3)	5 (0.1)	657 (11.8)	450 (8.1)	-	1 (0.0)	332 (6.0)	80 (1.4)	647 (11.7)	163 (2.9)	2,371 (42.7)	13 (0.2)	-	591 (10.6)
2004	5,852 (100.0)	2,732 (46.7)	205 (3.5)	2 (0.03)	333 (5.7)	666 (11.4)	4 (0.1)	3 (0.1)	482 (8.2)	138 (2.3)	673 (11.5)	226 (3.9)	2,498 (42.7)	6 (0.1)	-	616 (10.5)
2005	4,405 (100.0)	2,577 (58.5)	66 (1.5)	-	193 (4.4)	581 (13.2)	2 (0)	35 (0.8)	650 (14.8)	100 (2.3)	543 (12.3)	407 (9.2)	1,332 (30.2)	12 (0.3)	-	484 (11.0)
2006	4,792 (100.0)	3,005 (62.7)	109 (2.3)	5 (0.1)	275 (5.7)	576 (12.0)	1 (0.0)	11 (0.2)	783 (16.3)	139 (2.9)	674 (14.1)	432 (9.0)	1,522 (31.8)	28 (0.6)	-	237 (4.9)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99~2007』.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된 첫 해인 1998년 통계를 보면 검찰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495건 중 235건이 처리되었는데, 이 중 75.7%가 보호처분되었고, 불처분은 23.4%, 보호처분 취소 후 검찰청 송치 1건, 타법원 이송이 1건이었다. 보호처분 결정내역은 4호(보호관찰) 처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호(접근행위제한), 3호(사회봉사·수강명령), 7호(상담위탁), 2호(친권행사제한), 6호(치료위탁) 처분 순이었다.

그런데 이후의 처분내역을 보면, 보호처분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불처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보호처분 중 3호(사회봉사·수강

명령), 4호(보호관찰) 처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7호(상담위탁) 처분이 증가하는 추세임에 반해 1호(접근행위제한) 및 2호(친권행사제한) 처분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가정폭력특례법 상으로 규정된 인신구속적 제재방안인 5호(감호위탁) 처분(시설내 처우) 비율이 매우 낮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감호위탁처분은 전혀 없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로 그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수탁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원이 위 처분의 결정을 주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³⁵⁾

그리고 7호(상담위탁) 처분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가해자 교육상 담처우가 보호처분의 중심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한편 법원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불처분율이 높은 것은 법원 실무 관행상 가정폭력사건이 발생 후 법원에서 심리기일에 들어가기까지는 5~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 중 상당한 수가 사건의 즉시성을 상실하여 법정에 출석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미 이혼을 하여 가족관계가 청산되었든지, 서로 화해하여 가정생활을 원만히 영위하고 있는 등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3) 가정보호사건 죄명별 접수현황

<표 III-11> 가정보호사건 죄명별 접수현황

(단위: 건(%))

구분	상해·폭행	유기·학대·아동학사	협박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	기타	합계
1999	3,869 (99.8)	1 (0.0)	3 (0.1)	-	-	4 (0.4)	3,877 (100.0)
2003	5,482 (92.2)	6 (0.1)	17 (0.3)	34 (0.6)	1 (0.0)	404 (6.8)	5,944 (100.0)
2006	3,057 (72.4)	4 (0.1)	66 (1.6)	165 (5.4)	6 (0.2)	923 (30.2)	4,221 (100.0)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0, 2004, 2007』.

35) 홍종희(2007), 앞의 글, 107면.

2006년 가정보호사건의 죄명별 접수현황을 보면 상해·폭행 사건이 72.4%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폭력유형은 신체적 폭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 가정폭력 관련 정책

1) 「여성정책기본계획」 상의 가정폭력 근절정책 이행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에서는 20대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포함하고 있고, 세부정책추진과제로 ‘폭력에 의한 피해여성, 가족보호’를 두었다. 추진성과를 보면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제도를 도입(여성부)하였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서는 10대 핵심정책과제 중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인권보호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정책과제로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추진’을 두고, ‘8-2-2.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① 상황변화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법의 재정비, ②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수사와 재판상에서 편의확충 등, ③ 가정폭력 수사종사자 직무교육 강화, ④ 가정폭력 관련 정부통계자료 구축을 계획하였다.

<표 III-1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실적(2006)
8-2-2.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실효성 강화

주관부처	계획	실적
법무부	○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단속 지시 등	○ 2. 1. 가정폭력범죄 관련 임시조치 적극 활용 지시 - 가정폭력범죄 고소, 고발사건에서 응급조치가 없었더라도 피해자 진술 등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도 임시조치를 적극활용하여 피해자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출처: 여성가족부(2007),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2006년 시행실적 및 2007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표 III-13>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2007)

주관부처	시행계획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전담검사 지속 운용(연중) ○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임시조치 활성화(연중) ○ 가정폭력사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확대실시 검토(연중) ○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수사지침」등 관련 지시·지침 준수토록 지도·감독 (연중) ○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임시조치 활성화를 위해 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 강화(연중) ○ 가정폭력사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법제화 추진 및 전국 청 확대실시 방안 검토(연중)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현장출동 경찰관의 「임시조치권」 확보 추진 - 현행 임시조치는 검찰·법원 경우 약 10일정도 소요,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관의 임시조치권 확보 필요
2008년도 이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관련법의 지속적 정비로 폭력피해여성의 인권보호 강화('06~) ○ 기 수립·시행중인 각종 지침 등 철저 준수토록 지속적 독려 ○ 가정폭력상담소, 병원, 복지단체 등과 연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 분위기, 환경 등에 따라 적절히 법·제도 정비 추진 ○ 지속적인 제도 정비 및 여성폭력 관련 NGO와의 연계로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 중장기계획 수립 결과 및 매년 정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법령정비 추진

출처: 여성가족부(2007),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2006년 시행실적 및 2007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과제 2. 여성의 복지와 인권 강화’를 추진과제로 잡고, 세부과제로 ‘2-2.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실효성 제고’를 두고 있다.

과제 2. 여성의 복지와 인권강화



2-2. 가정폭력 방지 실효성 제고

- 2-2-1.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제고
 - 국민의식 개선활동 강화와 신고체계 확립
 - 여성폭력 예방 교육 확산 및 내실화
 -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조치 강화
- 2-2-2.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내실화
 -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피해자 One-Stop 서비스 확대 및 응급 보호체계 확립
 - 통합적 서비스 연계체제 구축 및 정보시스템 강화
 -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예방
- 2-2-3.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가정폭력 재범방지 등 사후관리 강화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활성화

출처: 여성가족부(2007),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http://www.mogef.go.kr/>.

<그림 Ⅲ-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계획: 가정폭력 부문

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가) 실시배경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된 후 대검찰청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임시조치 청구의 활성화, 수사 상 피해자의 가정유지 의사파악 철저, 가정보호사건 처리활성화, 구약식 기소지양, 기소유예처분 시 서약서 징구 등을 수사지침으로 정하여 법에 의한 합리적 처리를 도모하였지만 가정폭력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검찰의 불기소율 증가 및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불처분을 증가, 가정폭력사건 처리에 장기간 소요 등의 문제점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³⁶⁾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2003년부터 일부 검찰청에서 가정폭

36) 정현미(2006a),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도입 검토”, 『폭력없는 가정 - 가정폭력 관련 상담법제 개선방안』(2006. 6. 2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1면; 정현미(2006b), “가정폭력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형사정책연구』 제 17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3~134면 참조.

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³⁷⁾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행위자에게는 어떤 불이익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교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가해자교정과 피해자보호를 지향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고자 한 것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할 수 있다.

나) 목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목적은 ‘가정의 평화회복 및 가정유지’에 있다.³⁸⁾ 검찰의 처리지침 상으로만 보면,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일반 폭력사건처럼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가정보호사건 송치도 장기간 소요와 높은 불처분율로 인하여 효과적인 재범방지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검찰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범방지는 물론 가정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도입한 검찰의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다.

37)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2003년 6월 대구지방법검찰청 상주지청에서 처음으로 시범운영하여 가해자의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상담결과가 누적되면서 창원지방법검찰청 통영지청,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 등이 합류하여 2006년 현재 전국 약 20개 검찰(지)청에서 실시하고 있다(정현미(2006b), 앞의 글, 135면).

38) 서울지방법검찰청 서부지청의 처리지침에 따르면, “.....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가정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 폭력사건과 같이 처리됨으로써 법 제정 취지가 몰각되는 사태가 적지 아니하며 그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한편 가정폭력사건이 법원에 송치되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처분에 장기가 소요되어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가정폭력 및 그에 따른 가정파탄을 방지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가정의 육성을 위하여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충실하고 합목적적인 처리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이에 기존의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지침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새로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수립·시행하고자 함”이라고 실시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여성부·법무부(2004),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부, 34~35면 참조).

다) 주요 내용

(1) 대상사건

검찰 처리지침에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상사건으로 하고 있다.

- 피해정도나 죄질에 비추어 기소유예처분이 상당하지 아니하나, 당사자들이 가정유지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건
- 상습범 또는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건
- 기소하는 경우 오히려 그와 관련하여 보복이 우려되는 사건
- 가정폭력행위자가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증세가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계도를 필요로 하는 사건
- 당사자들이 상담소의 상담을 원하는 사건

(2) 절차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절차를 보면,

- ① 주임검사가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면담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피해자의 의사, 가정의 평화와 안정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가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가정폭력상담의뢰통지서를 작성하여 상담소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을 의뢰한다.
- ② 상담의뢰를 받은 상담소가 상담인수 후 7일 이내에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사전면담하고 그 결과 및 상담필요여부, 상담계획 등을 가정폭력사전면담의견서에 기재하여 주임검사에게 제출한다.
- ③ 상담소로부터 가정폭력사전면담의견서를 제출받은 주임검사는 상담소의 상담이 가정폭력사건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상담소의 상담을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 그리고 처분사실을 상담소와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 ④ 상담소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상담위탁카드를 작성하고, 상담절

차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한다.³⁹⁾

- ⑤ 상담소는 상담을 종료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담결과통보서를 주임검사에게 제출한다. 주임검사는 상담결과통보서를 검토하여 성실히 상담에 응한 경우 통보서를 전담검사에게 송부하고 상담을 종결한다. 가정폭력행위자가 성실히 상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재범하는 경우 상담소는 불성실상담자통보서에 의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주임검사는 상담소의 상담으로 가정폭력사건의 실질적인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절차를 종료(상담의뢰의 해제)하고 사건을 재기하여 처리한다.⁴⁰⁾

(3) 기능

검찰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정폭력사건의 신속한 처리이다.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기간은 사건발생부터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평균 8~9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대체로 가정폭력사건이 신고되어 경찰수사가 끝나기까지 1~2개월이 걸리며, 검사가 이를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는데 1개월이 걸리므로 신고 후 법원에 접수되기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 심리기일에 들어가기까지는 통산 5~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검사가 가정폭력 신고 시로부터 3개월 만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보다 절반 정도의 시간이 단축되므로 신속한 처리의 장점이 있다. 또한 법원에 가는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행위자나 피해자 모두 시간이 절약되고 불필요한 감정적 마찰을 피할 수 있는 간편함이 있다.⁴¹⁾ 그리

39) 상담기간은 검찰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서울동부지검의 처리지침은 상담소가 3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상담기간을 정하되(월 2회씩 상담을 진행한다),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상담소의 결정에 의하여 각 1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서울서부지검의 경우에는 상담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다.

40) 이호중(2005a), “가정폭력사건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6~178면 참조.

41) 정현미(2006a), 앞의 글, 13~14면 참조.

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가정폭력재범율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이다. 아직 구체적인 통계치가 산출된 것은 아니지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으로 가정폭력상담소에 위탁상담되었던 가정폭력행위자들의 폭력재발은 10% 미만이었다고 한다.⁴²⁾

위와 같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가해자의 교정과 피해자의 보호를 동시에 지향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건전한 가족관계를 회복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한다는 목표에서 시작된 것이나,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적지 아니하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신속한 처리가 장점이라고 하지만 사안의 위험성 평가나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신속하게만 처리하는 것은 무의미하며,⁴³⁾ 가정폭력사건 처리에 이를 전면 도입하게 되면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영역을 상당부분 잠식하게 될 우려가 있어⁴⁴⁾ 결국 법원이 보호처분으로 할 사건까지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될 것이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한 사건들을 기소유예함으로써 처벌 완화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⁴⁵⁾는 비판이 그것이다.

한편, 일반적인 형사정책적 맥락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는 기소유예의 활용 폭을 보다 넓힘으로써 다이버전 전략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기소유예의 조건을 붙이는 문제는 범치주의적 한계를 넘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⁴⁶⁾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2007. 8. 3 가정폭력특례법의 개정으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위와 같은 비판은 일소되었다.⁴⁷⁾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가정폭력방지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 가해자의 처벌을 완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피해자의

42) 박소현(2005), “상담을 통해 본 가정폭력의 실태 및 법적 보호 강화 방안”, 『가족법 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158면.

43) 정현미(2006b), 앞의 글, 142면.

44) 이호중(2005), 앞의 글, 186면.

45) 정현미(2006b), 앞의 글, 140면.

46) 이호중(2005a), 앞의 글, 189면.

47) 홍종희(2007), 앞의 글, 103면.

인권과 안전보호와 연관시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상담조건부 기소 유예제도에 대한 이러한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대상사건 선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가정폭력특례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가정폭력특례법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 및 검찰 그리고 피해자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NGO를 대상으로 2007. 7~9에 걸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예산과 시간 상의 한계로 경찰 2명, 검찰 2명, NGO 3명의 총 7명의 심층면접밖에 할 수 없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이로 인하여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함에 부족한 부분은 그 동안 출간된 문헌자료도 참고로 하였다.

심층면접은 주로 법에 대한 인식정도, 법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법 처리과정에 대한 평가, 성인지관련 교육, 법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중점으로 이루어졌다. 아래의 표는 심층면접의 대상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III-14> 가정폭력 심층면접 사례개요표

사례번호	성별/연령	직업 및 직위	근무 경력
사례 1	여/45세	A NGO 회장	20년
사례 2	여/47세	B NGO 상담실장	15년
사례 3	여/43세	C NGO 상담원	12년
사례 4	남/43세	A 경찰서/경사	10년
사례 5	남/30세	B 지구대/경위	5년
사례 6	여/40세	A 검찰청/검사	7년
사례 7	남/35세	B 검찰청/검사	5년

1) 의식의 문제

가) 일반인들의 의식개선이 우선

본 연구과정에서 실시한 인지도 조사에서 최근 1년간(2006. 5~2007. 5) 가정폭력 피해 경험 및 신고여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가정폭력특례법의 활용도를 살펴본 결과, 유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별거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 현재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피해 경험은 전체 응답자(716명)의 14.3%(102명)가 정신적 폭력의 유형이든 신체적 폭력의 유형이든 한 번이라도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⁸⁾ 반면, 실제 현재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의 경험이 신고까지 이른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경험에 비해 신고율이 낮은 이유로는 ‘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와 ‘사건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사건이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을 향후 경험할 경우 신고할 의사는 피해 경험자가 가족, 본인, 친구나 이웃, 직장동료,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인보다 가족의 경우 신고 확률이 높게 나온 것은 가족을 더 중요시하는 우리의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 신고 확률이 낮게 나온 것은 가정폭력은 남의 집 가정사라는 의식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⁴⁹⁾ 피해 당사자가 본인이 될 경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가족을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59.5%)이다. 그 다음으로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29.8%)가 차지하고 있다. 그 밖의 사유로 ‘신고절차를 몰라서’(3.3%), ‘당사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3.0%), ‘신고하면 폭력을 당할 것 같아서’(1.8%), 기타 사유 등이 있다.

48) 사례를 유형별로 잘게 나누어 질의한 결과 소거법을 사용하여 어떠한 유형에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산출하여 계산하였다.

49) 이와는 반대로 최근에는 이웃에서 소음 문제로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심층면접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자 중 피해 당사자가 본인이 될 경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도 또한 ‘가족을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와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가 동일한 비중으로 나왔다. 여기에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사의 부재와 형사절차에 대한 불신이라는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심층면접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든지, 아니면 가정 깨기 싫으니까. 우선 깨지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론은 파출소 문턱을 넘으면 가정이 반쯤 금이 가고, 경찰서 문턱을 넘어가면 깨지고 ... ” (사례 5)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이 아무리 완벽하게 정비된다 할지라도 그 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제대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법의 적용대상인 일반 국민의 의식 자체에서 가정폭력의 신고를 주저하고 적극적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아내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자에게 남편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여성상과 “나 하나 참지 못해 가정을 깨면 애들이 불행해진다”는 자녀에 대한 죄책감과 걱정, “내가 잘하고 남편 비위를 맞춰 살다보면 남편도 좋아지겠지”라는 낙관적인 생각, 이혼하는 과정과 이혼 후의 생활능력 부족과 자신감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⁵⁰⁾ 이를 통해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의 신고를 주저하는 원인에 대한 이해와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교육 및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경찰, 검찰을 비롯한 법원의 자체적인 노력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확충이 요청된다.

50) 김은경(2001),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2면.

나) 법 집행담당자들의 의식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되고부터 지금까지 가정폭력업무를 담당해 왔다고 한 심층면접 사례 4의 응답을 통해 법 집행관의 의식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좋아진 것은 모르겠고, 피해자가 여자가 많은데, 가정폭력 때문에 피해를 당하던 부인이 오히려 심하게 당하니까 가해를 하던 남자한테 칼로 죽인 적도 있고 더 하게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똑같은 죄(살인죄)로써 처벌받고 구속되고 그랬는데, 저희 팀에서 한 것을 보면은 그런 사건인데 집행유예로 나와 버려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자가 피해를 너무 많이 당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한 거다 그래 가지고 집행유예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칼로 찔러 죽인 것 자체가 살의를 가지고 찔러 죽였는데 나온 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형을 좀 적게 사는 것은 1, 2년 사는 것은 적당하다고 보는데, 아예 그것도 없이 집행유예로 나온다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여자 쪽으로는 발전이 됐죠.” (사례 4)

위의 내용은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사례 4의 응답이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 가정폭력에 대한 특수성에 대한 인식 없이 법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의 문제를 엿볼 수 있다.

가정폭력과 일반 대인폭력은 폭력의 원인과 계기, 범죄성 및 피해에 대한 인지도, 노출가능성 또는 보고가능성, 폭력관계의 폐쇄성 여부라는 네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⁵¹⁾ 즉, 가정폭력의 경우는 임의적으로 자행되는 일회성 폭력행위가 아니라, 공포감을 유발함으로써 상대방을 지배·통제하기 위해 가해지는 ‘도구적 폭력(instrumental violence)’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모르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가정폭력피해자 역시 심한 폭행조차도 범죄라고 부르길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경우 전통적인 가족의 체계 유지적 속성 때문에 은폐되거나 사소하게 취급됨으로써 공식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남성의 아내에 대한 폭력을 합법화시키고, 구조적 합법화

51) 김은경(2001), 앞의 글, 66~68면 참조.

는 최초의 폭력이 발생했을 때, 여성에게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만들며, 이는 첫 폭력발생 후에 이들을 정상적인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만든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폭력행동은 강화되어 일탈 확장적인 연결고리가 발생되며 폭력은 안정적이고 지배적인 상호작용의 일부로 자리잡게 된다.

이미 ‘매 맞는 아내 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 이론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는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으로 고통 받고 가해자와의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하고 있다가 종종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게 된다.⁵²⁾ 이러한 가정폭력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은 대부분 일시적이고 경미한 폭력의 수준을 넘어 장기간에 걸친 가혹한 폭력의 결과이므로, 학습된 무기력과 같은 가정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은 오히려 정당방위의 제한을 해소하고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⁵³⁾ 면접에 응한 경찰의 경우 양형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얼마나 보수적인 의식을 지니고 가정폭력 업무에 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에 대한 교육이나 성인지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심층면접에 응한 검사의 경우 지금까지 성인지 교육을 받아 본 적은 없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견을 말해 주었다.

“솔직히 느낍니다. 그 전에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처리를 했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니깐, 이게 그냥 일반 형사사건하고 동일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의 전환이 생겼고, 그것에 따라서 사건처리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남자 검사를 떠나서 남자들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례 7)

법 집행관의 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좁게는 가정폭력의 역학구조 및 특수성

52) 조국(2000), “매 맞는 여성 증후군이론의 형사법적 함의”, 『형사법연구』 제15권, 한국형사법학회, 37면 이하 참조.

53) 김태명(2004), “가정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대상판결: 대법원 2001.5.15. 선고 2001도1089 판결”, 『刑事判例의 研究』, 志松 李在祥教授 華甲紀念論文集, 335면.

에 대하여, 넓게는 인권 및 양성평등의식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가 중요하다. 아울러 가정폭력특례법의 가정폭력 정의규정을 통하여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확실하게 부각시킨다면 법 집행담당자들의 의식의 전환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에 형법 상 개별 구성요건들을 충족하는 범법행위가 있으면 가정폭력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간접적인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방식은 가정폭력이 일반폭력 범죄와 비교하여 왜 특별한 절차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통찰과 가정폭력의 법적 개입의 근거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능적으로 지배하는 다양한 폭력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의 개념 규정에 ‘폭력의 목적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요청된다.⁵⁴⁾⁵⁵⁾

2) 피해자의 의사존중과 법 집행과정 상의 문제점

－ 가정보호라는 법의 목적과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강화

‘가정의 보호’라는 입법의 목적과 강하게 결부된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의

54) 김재민(2006a), “경찰의 가정폭력 위기개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검토 - 현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국가의 자세』 토론회(2006. 12. 6), 서울여성의전화, 24면; 김은경(2001), 앞의 글, 130면.

55) 미국 미시간 주의 가정폭력법(Domestic Violence Act 389 of 1978)의 경우 가정폭력의 개념을 ‘가정구성원 중 일방이 정당방위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신체나 정신적 해를 끼치거나 신체적·정신적 침해를 가할 것을 예고하여 공포감을 일으키거나, 강압에 의하여 성적 행동을 강요함으로써 성적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능히 자각할 수 있는 공포스럽고, 위협적이며, 보복적인 행동을 가정구성원에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행위와 같은 성적인 폭력행위나 스토킹 행위, 피해자의 경제활동을 기능적으로 지배하는 행위 등을 가정폭력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도 가정폭력 개념을 “가정폭력이란 그 폭력이 언제 그리고 어느 곳에서 발생하든지 간에, 친밀한 관계를 과거에 유지해 왔거나 현재 친밀한 관계에 있는 상호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일체의 폭력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폭력은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신적 폭력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권한남용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김재민(2006b), “경찰의 가정폭력 위기개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검토 - 현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제18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88면).

피해자의 의사 존중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 가정폭력 사건은 특수한 것이 일반 폭력 사건하고는 달리 가정유지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에게 좋지 않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가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거의 친고죄화 되어 버리는 거예요. 검사 입장에서 예컨대 누구를 때려서 2주 상해를 냈다 하면은 일반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200만원 하면 되지만, 가정폭력 사건인 경우는 그렇게 벌금을 냈을 경우에는 결국 가계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누라가 맞고 돈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은 대개는 이 사람하고 같이 살 것인지,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의사를 확인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많이 하게 되죠. 약식보다는. 그런 경우에 결국은 유사 친고죄화 되어 가지고 피해자가 처벌 원하면 처벌하는 것이고,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 안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일반폭력사건하고 달리 검사들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일반폭력사건보다는 존중을 하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국가형벌권은 가정 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 ” (사례 6)

가정폭력특례법 입법 시에 ‘가정보호’라는 보호법익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형사처벌 위주의 대응체계를 강행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체계가 사실상 전무한 현실에서, 형사처벌로 인한 가족의 생계곤란 등 경제문제와 가족해체로 인해 오히려 경제적 약자인 여성, 노인, 아동 등이 겪어야 할 사회적·구조적인 불평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장차 복지수요를 불필요하게 폭증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한다.⁵⁶⁾ 실제로 이러한 인식은 현장에서 가정폭력실무를 담당하는 있는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제가 하면서 괴로웠던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피해자들은 사실 맞지만 남편이 돈 벌어서 주니까 사는 것이지. 길바닥에 나 앉는다. 물론 사회에서 쉼터나 복지로 흡수를 해야 하지만, 이것이 결국 복지문제하고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가정을 깨 버리는 것.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너는 너, 나는 나.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사례 6)

가정폭력범죄가 명백한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보호’라는 특례법

56) 이찬진(1999), “가정폭력관련법 입법경위를 통해 본 법시행상의 문제점”, 『가정폭력관련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1999. 12. 3), 법무부, 55~56면 참조.

제정 당시의 입법목적이 강조된 결과 가정폭력범죄는 ‘보호사건화’가 바람직한 방향처럼 인식될 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경미한 범죄라는 인식이 재생산되고 있다. 더불어 검찰과 법원에서는 가정폭력범죄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이혼의사를 물어 보고 기계적으로 사건처리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건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보호라는 입법목적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가정파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우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⁵⁷⁾

“..... 국가의 형벌권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범감정이나 사회의 정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다 제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심각한 사건이 있으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합의한 것이 잠작 되어서 형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경찰서 내에서 훈방된다든지 이혼할거냐고 물어본다는 거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사실은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열악한 위치라든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가정이 쪽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든지 이러한 가족 유지적 관점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사례 1)

적정한 형벌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여부를 현재와 같이 기계적·형식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의존하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관행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의 목적에서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가정보호)”라는 문구는 삭제되어야 한다. 지속적이고 심각한 폭력의 위기에 처해 있는 피해자가 이혼을 주저한다고 하

57) 이호중(2005b),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연내통과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7면.

여 ‘가정보호’라는 명분 하에 가해자를 경미한 보호처분에 처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인 폭력의 위협에 방치하고 있는 가정폭력특례법의 현실은 가정의 기초가 되는 헌법 상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것이며, 가정 그 자체의 보호보다는 건강한 가정의 기초가 되는 개인의 인권을 최우선의 보호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밀성이라는 상호작용의 측면으로 인해 많은 경우 가부장적 권력에 의한 지배와 종속의 결과물이며 피해자의 위협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사안의 경중 및 가해자-피해자 간의 상황적 맥락(situational context)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사건발생 당시 극도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피해자에게 “혼인지속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서 사건을 나누는 현행 방식은 오히려 가정폭력사건 처분의 적정성을 저해하고 피해자보호에도 취약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⁵⁸⁾

따라서 효과적인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이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재범 혹은 상습가능성이 큰 사건은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현행법의 가정보호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가정폭력특례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가정의 유지 내지는 회복이 아니라 기본원칙으로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보호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⁵⁹⁾

기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관행을 지양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판단 및 선택을 돕기 위한 형사절차 상의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법적 처리과정이 결정될 수 있다는 관념은 피해자들이 정확한 정보, 지원, 충고 없이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신화에 불과하며,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적 맥락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⁶⁰⁾

58) 김은경(2001), 앞의 글, 168면.

59) 이호중(200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정의 보호·유지에서 피해자의 보호·인권강화로』(2004. 10. 28),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56면.

60) 김은경(2001), 앞의 글, 86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판단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현행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기계적으로 파악하여 존중하는 처리방식은 오히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⁶¹⁾ 따라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판단 및 선택을 돕기 위한 형사절차상의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은 제5조 제4호에서 “폭력행위의 재발 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디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불안한 상황 하에서 단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⁶²⁾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이후의 절차 진행에 대한 고지로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 단계 등 각 단계별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지로서 가정폭력관련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이용안내 및 관련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어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윤근의원과 홍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특례법개정안에 사법경찰관리의 신고 이후의 법적 절차 등에 대한 고지의 무가 반영되어 있었으나, 지난 7월의 제11차 개정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복지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상황적 강제와 부담을 경감시키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지원에 대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1) 김은경(2001), 앞의 글, 146면.

62) 이호중(2005b), 앞의 글, 27면.

3) 경찰의 응급조치 상의 한계

가정폭력특례법의 시행초기에는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지만, 법 시행 10년을 맞이한 현재에는 형식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가차 없이 법대로 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가 처벌의사만 밝히면 다 하죠. 언론 같은 데에서 가정문제라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고, 처벌해달라고 하면 다 하죠.” (사례 5)

그러나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행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서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으로 한정(제5조)되어 있어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후 철수한 경우에는 재차 발생하는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처음에는 왜 경찰이 가정사에 끼어드느냐고 하는데, 지금은 잘못되었다는 것은 다 인식은 하는데, 법을 엄두에 두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해봐야 다시 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버리면. 우리가 신고 받고 나가서 첫 번째 하는 목적이 가정의 평화잖아요. 욱 한마디, 한 대 때렸다 그래서 기물하나 손괴했다 그래서 경찰관서에 데리고 오면은 자녀가 달려들었다 그래서 경찰관서에 데려오면 그걸로 깨져버리는 것 아니에요. 반쯤은 금이 가 버리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주고 오는데 그것이 반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례 5)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폭력행위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피해자의 보호시설, 의료시설에의 인도조항은 있어도 가해자에 대한 경찰서로의 동행조치,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즉각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퇴거격리조치나 접근금지조치는 사건발생 후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가정폭력특례법 제29조에 의한 임시조치(가해자의 퇴거격리조치, 가해자의 접근금지조치 등)는 검사에게 신청하고, 다시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퇴거격

리조치나 접근금지조치는 사건발생 후 즉각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경찰이 이러한 조치를 현장에서 즉시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⁶³⁾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주장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즉각적 체포와 경찰서에의 강제적 인도를 가능케 하는 ‘의무적 체포제도’(mandatory arrest system)의 도입이다.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난 7월에 제11차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해자에 대한 수사개입조치, 피해자 긴급보호조치, 긴급임시조치제도의 도입 등이 여러 개정안에 반영되어 논의되었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개입조치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현행법으로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에 머물러 있지만 행위자에 대한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의 체포 등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⁶⁴⁾ 이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현행범 및 준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오판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의견과 함께 형사소송법의 체포 해당 규정인 동법 제200조2의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체포 등 강제처분을 예시함으로써 임의수사원칙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⁶⁵⁾ 그러나 가정폭력특례법이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한 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반대할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63) 박종인(2003), “가정폭력의 원인과 방지제도 및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소고”, 『실무연구』 제9권, 서울가정법원, 37면.

64) 가해자에 대한 수사개입조치로서의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의 체포는 홍미영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2005. 6. 13)과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2005. 11. 7)에 반영되어 있었다.

6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홍미영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2005. 9), 17~18면 참조.

피해자 긴급보호조치는 가정폭력의 현장에 임한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48시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 또는 접근제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⁶⁶⁾ 긴급임시조치제도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의 결정이 없더라도 사법경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격리 또는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되, 48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검사는 이를 승인한 때에는 의무적으로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⁶⁷⁾

피해자 긴급보호조치와 긴급임시조치제도 등은 홍미영의원, 이계경의원, 우윤근의원의 대표발의안에 각기 들어가 있어 용어를 달리했을 뿐 유사한 내용의 제도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조치로서 사전 임시조치, 사후 심사를 내용으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 측의 인권보장을 유연하게 하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적법절차 조항을 근거로 많은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현행법에 대한 의무적 체포제도와 피해자 긴급보호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제도는 범죄의 혐의가 확고하지 않은 단계에서 피의자의 심신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가해자에 대한 자유 제약이 되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적법절차 차원에서 사후 구제 절차를 충분하게 마련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초기 대응강화와 함께 가해자를 격리하기 위하여 경찰의 긴급체포권을 추가하는 등 가정폭력특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줄기차게 제

6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홍미영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2005. 9), 19면.

6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2007. 4), 7면.

기되어 왔으나 지난 7월 개정된 가정폭력특례법은 이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반영되지 못한 채 통과되었으며 이에 대해 여성단체는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⁶⁸⁾

또한 경찰의 초기 대응을 단순히 이후 형사절차 진행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절차화하기 보다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및 형사법적 통합서비스의 핵심단계로서 전문적으로 구조화할 필요성이 있다. 가정폭력의 위기수준의 다양성 및 문제의 복잡성에 비추어 경찰의 응급조치 이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후 개입과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⁶⁹⁾ 현행법 하에서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임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피해자를 인도할 수 있으며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인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제5조). 그러나 문제는 수사개시와 동시에 진행되는 형사절차 속에서 피해자지원업무를 하는 보호시설과의 법적 연계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법체계상 1차적으로는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에 출동하도록 되어있지, 거기에 NGO들이 함께 가야 하거나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례 1)

심층면접에 응한 경찰의 경우에도 가정폭력사건을 법적 개입만으로 해결하는 것의 한계를 인정하며, 한 두 차례 상담을 거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순전히 법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자에게는 얘기 안 하지만 가정폭력사건으로 처리를 하기 전에 부녀자 시설있죠. 그런 시설에 일단 상담을 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입건하고, 그 다음날 임시조치 하게 되면 법원에 서류를 보내 가지고 받는데, 그것은 이미 결정이 난 상태에서 나중에 법원에 가게 되면 가해자측에서 남자측에 대

68) 김영란(2007),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개입에 대하여 -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젠더리뷰』 가을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7~98면 참조.

69) 김은경(2001), 앞의 글, 248면.

해서 사회봉사 명령을 한다던지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시설에서 1회나 2회 정도 상담을 하고 또 다시 그런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에 처벌을 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바로 처벌하잖아요.” (사례 4)

경찰의 응급조치 이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후 개입과정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체제로 기능할 수 있으며, 수사개시로부터 법원송치 시까지 후속개입을 통해 재발위험을 억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⁷⁰⁾ 경찰의 질과 양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응급조치 이후의 후속 개입과정을 경찰에만 부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피해자보호시설의 연계를 통한 보완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량권의 행사기준 및 그 한계를 법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⁷¹⁾

4) 임시조치의 시의 적절성 및 실효성 확보

임시조치의 시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이 주장되어 왔던 피해자의 임시조치신청권은 최근에 이루어진 가정폭력특별법의 개정(제11차)에서 한층 완화된 형태로 반영되었다. 즉,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선행요건을 삭제하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바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청구 요청권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제8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이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청구하

70) 김은경(2001), 앞의 글, 248면.

71) 한인섭(1998), “가정폭력법의 법적 구조와 정책지향에 대한 검토”, 『법학』 제107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08면.

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곧바로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임시조치 신청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문제해결의 여지를 없애며 피해를 장기화·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임시조치 신청과 청구에 대한 요청권만을 부여하는 것으로는 임시조치의 시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없다. 애초에 피해자에게 임시조치의 신청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시작된 계기가 가정폭력행위 발생 후 사법경찰관과 검사를 거쳐 법원의 판단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시조치 신청 시 거쳐야 하는 단계를 줄여 시의적절하게 가정폭력행위에 대처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해자의 임시조치신청권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도입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임시조치신청에 대한 남발 우려는 비록 피해자에게 임시조치신청권을 인정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임시조치신청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단계에서 1차적 판단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임시조치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게 되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임시조치가 결정되어도 그 집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집행한다고 하여도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항이 없어 규정의 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법에 규정이 되어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가가 하나도 없이, 규정되고 나서도 그것에 대한 고민도 없고, 감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법을 그대로 간다고 해도 임시조치만 해도 감시체계가 전혀 없다.” (사례 3)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가 임시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찰단계에서 신청할 것을 의무화하고,⁷²⁾ 임시조치가 취해지기까지 생기게 되는 피해자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마련

72) 서거석, 김운희(2002),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제14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94~95면 참조.

해야 하며, 임시조치 집행에 대한 사후 감독과 위반한 경우의 제재규정 마련에 대한 입법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5)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

제11차 개정 시 검찰청 내에서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에 따라 행하여지고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법으로 도입되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통하여 검찰에서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상담교육을 통한 가정폭력 재범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제도에 대해서는 찬반의 입장이 존재하고 있다.

아래는 심층면접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것이 재판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조건부로 상담하면서 기소를 유예시켜주는 것인데, 그것은 법의 기능 자체를 무마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해당자들을 모아서 상담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안 거예요. 아 이것이 법원에 간 것도 아니고 검찰단계에서 이송을 받았기 때문에 계기는 겁니다.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어겼다고 해서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날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이 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사례 1)

아래는 심층면접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그냥 기소유예했던 사건과 가정보호사건으로도 안 넘기던 사건을 상담조건부로 하지는 입장이다. ... 상담보다 벌금을 내거나 상담기간도 딱딱딱할 것이 아니라 몰아서 해 달라고 행위자 입장에서는 얘기하지만 연성화 조치는 아니다. 어떤 대상사건을 기소유예사건으로 다룰 것인지 검찰에서 확실히 해야 한다. 상담소마다 (프로그램의) 질이 다르고 제제도 없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상담프로그램도 확실하게 6개월 동안 충분한 상담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례 2)

현행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 기존에 기소유예되거나 불처분될 사안에 대해 절차 상의 간이함을 기하고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한 형태인 것인지 아니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안까지 기소유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또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도입으로 가정폭력특례법 상 인정되고 있는 가정보호사건으로는 거의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⁷³⁾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지속적이고 악질적인 가정폭력에 대해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와 확대로 인해 법원으로 송치되는 사건이 거의 없게 될 것이며, 가정폭력행위자의 처벌은 미온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⁷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중한 사건은 구속을 해 버리고, 경미한 사건인 경우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담은 6개월간 20회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나가서 하느니 차라리 돈 벌어서 벌금 100만원 200만원 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을 여성가족부에서 일정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그런 식으로 주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용직 노동자들인데 하루 빠져 버리면 생계와 관련해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태도도 태도이지만, 생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례 6)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법률적 평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하는 거예요. 벌금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

73) 이호중(2005a), 앞의 글, 186면 이하 참조.

74) 한겨레신문(2005. 3. 23),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확대 논란”; 김은경(2006), “소송과정에서의 폭력피해자 보호현황과 쟁점들”, 『가정폭력 피해 지원 시스템의 문제와 과제』(2006. 9. 21), 가정폭력추방 연속토론회 3차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33면.

하거나 아니면 그냥 공소해 버리는 처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예컨대 이런 식으로 피해 정도는 중한데, 여자는 계속 용서해달라고 하고 남편은 처벌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사례 6)

위의 응답을 통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이 될 사건을 나누는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을 나누는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아니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법에 들어오기 전에 검찰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방식대로 검사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하게 둔다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어 가정폭력특례법을 형해화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담프로그램은 일반 가정보호사건의 상담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보통 6개월에 20회 정도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생계 해결이 우선 급한 가해자들이 상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담이 유아무야되고, 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가해자의 폭력성행교정 및 재발방지는 달성하지 못하고 가해자의 형사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부부갈등해소에 중점을 두고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가 함께 상담을 받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행위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 기보다 오히려 부부갈등의 한 형태로서 피해자 역시 상담을 받을 뿐만 아니라 폭력가해자와 합석을 해야 하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반영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담 프로그램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수탁기관이어서 가해자들을 받아 보면 그 사람들이 상담 받으러 올 사람들이 아니라 다 감옥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재범, 그 다음에 피해자가 굉장히 심하게 피해를 입었고 그런 경우에도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1차적으로 형사적인 처리과정을 겪으면서 더불어서 상담을 받는다거나 하면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피해자와 같은 집에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할 때마다 피해자를 막 협박하는 이러면서 상담 받는다는 것이 과연 그 상담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이 법이 생기고 나서 가정폭력 가

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례 1)

따라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이 되는 사건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설정하고, 상담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따르게 될 후속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상담의 질 담보와 함께 가해자로 하여금 폭력성행 교정을 위해 부여받은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야간이나 휴일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상담에의 참여 확대가 중요하며, 상담과정에서 폭력가해자와 피해자를 합석시킬 때에는 피해자의 안전 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6)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과 사법기관에 의한 신변보호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수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 및 법원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사와 심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차 개정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이 인정되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데 도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가해자가 계속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에는 신뢰관계 있는 자에게 형사적 제재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이보다 더 나아가 사법기관에 의한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심층면접 결과 부각되었다.

“신뢰관계 있는 자에 의한 동석 이런 것은 물론 필요하구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폭력 사건은요, 피해자가 가해자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되는 고통, 예를 들면 협박 그런 것이 굉장히 적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 사건은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과정이 더 괴롭거든요. 더 굉장히 괴롭히고 시댁식구 이런 사람들이 다 달려와서 난리를 치기 때문에 성폭력도 물론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랑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관계 있는 자에 의한 동석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 의한 신변보호가 꼭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이런 것도 이 사람도 형사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그 사람이 같이 앉아 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쫓아나와서 끌고 가거나 폭력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가정폭력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사적 체계에 의한 신변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구요.” (사례 1)

2005년에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법률지원, 의료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록 가정폭력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정폭력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수사를 받을 때 경호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 범죄피해자보호제도는 좀 잘 되어 있어요. 수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이 혹시 가정폭력피해자가 혹시 형사절차에서 진술을 하고 싶거나 수사를 받고 싶을 때 혹시 경호를 해 주라고 하거나 하면은 그것도 해 줍니다.” (사례 7)

그러나 자원봉사를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위원들에 의한 민간 경호도 역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에 의한 신변보호조치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의한 피해자 지원에 대한 꾸준한 홍보를 통하여 부족하나마 이 제도의 활용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나) 피해자와 가족, 친정식구, 아동에 대한 보호 일체화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에 아동이라든지 친정식구에 대한 보호가 꼭 있어야 돼요. 저희 내담자 같은 경우도 집을 도망 나오고 싶은데 제 내담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남편이 친정식구를 해칠까봐 도망 못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가정폭력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 친정식구라든지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례 1)

제11차 개정으로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가정구성원으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 가정폭력피해자들은 같이 살고 있는 가정구성원뿐만 아니라 비록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친정 식구에 대한 해악을 두려워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배우자폭력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우리나라의 가정폭력특례법에 삽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2007. 7. 11 개정되어 2008. 1. 11 시행 예정인 일본의 「배우자폭력방지법」 제10조 제4항에서는 배우자가 피해자의 친족 기타 피해자와 사회생활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의 주거에 들어가 현저하게 거칠고 난폭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정이 있는 것에서 피해자가 그 친족 등에 관하여 배우자와 면회하는 것이 부득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발한 법원 또는 발했던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배우자에 대해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한 날까지의 사이, 당해 친족 등의 주거 기타 장소에서 당해 친족 등의 신변에 따라 붙거나 당해 친족 등의 주거, 근무지 기타 그 통상 소재하는 장소의 부근의 배회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은 당해 친족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 아동 보호를 위해 제재조치강화

“가해자 모르게 학교를 전학하는 문제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들을 계속 처리하면서 너무나 엄청난 문제가 가해자들이 아이들이 없어졌을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데가 학교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 여선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전학 담당교사가 교감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여교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해자 인식 속에 폭력은 권력의 문제잖아요. 대상도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너무나 무서워해요. 가해자가 계속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랬을 때 이 분들한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럴 때 계속 일일

이 신고해라 그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가까운 경찰과 연계하고 당분간은 조심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위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부설로 있잖아요. 이 가해자들이 어쨌든 물불을 안 가리고 특히 자기 통제권 하에서 아이들과 부인이 벗어났을 때 훨씬 더 심해지니까. 그런데 그 위험이 심각하지 않은 수준임에도 그것이 귀찮거나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두렵죠. 더군다나 피해여성에게 칼도 휘두른다는 말도 듣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르쳐 줘버리는 거예요.” (사례 3)

가정폭력특례법 제18조 제1항은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또는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 및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피해자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아동의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 포함)의 사실을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64조는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정폭력특례법 제18조 제3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은 두고 있지 않다. 아동의 가전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아동의 의무교육권의 박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제재조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7) 보호처분 부과기준의 적정성 문제

현재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가정폭력사건에 따른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행위자에게 수강명령이나 상담명령을 부과하는 등 가해자의 행위유형별로 구분치 않은 채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문제가 된다. 실제 가정법원 실무 상 가족의 생계문제 등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행위자의 처분이행 능력을 고려하여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경제적 능력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대개 제4호 처분인 보호관찰 처분을 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행위자의 경우는 제7호 처분인 상담명령을 주로 내리게 된다.⁷⁵⁾

따라서 법원은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판사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행위의 위험성, 교정가능성, 재범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진단결과를 통해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행위자를 분류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⁷⁶⁾ 또한 시설의 기반이 없어 거의 사문화되고 있는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시설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가정폭력특례법 인지도 조사결과

가. 가정폭력특례법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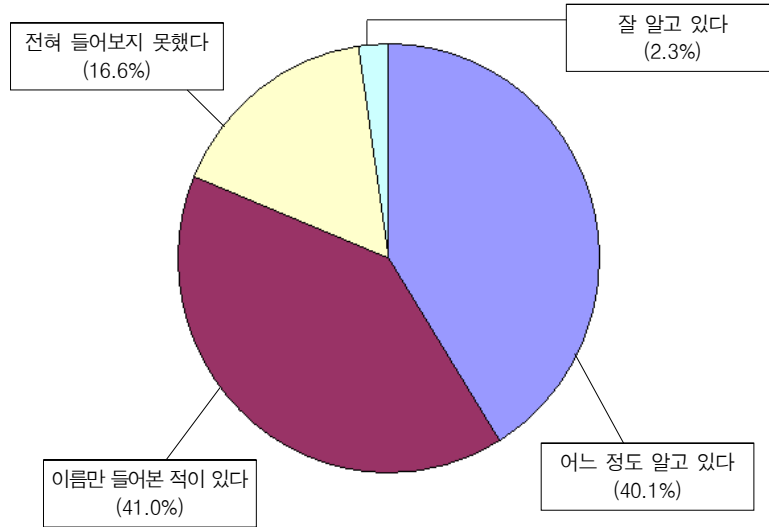
1) 법의 인지도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다’가 41.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40.1%,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가 16.6%, ‘잘 알고 있다’가 2.3%로서 제일 적다.

그러므로 법이 존재하는 사실을 아는 정도(‘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는 83.4%에 이른다고 할 수 있으나, 법의 내용에 대해 아는 정도(‘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는 42.4%에 불과하다.

75) 김용우(2002), “가정폭력관련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현안』 제2002-13호 (통권 제131호), 국회사무처 법제실, 28면.

76) 김은경(2003a), “피해자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과 한계”,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95면.



<그림 III-2> 가정폭력특례법의 인지도

법이 존재하는 사실과 법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성별에 따라 각각 비교해 보면, 남성(84.3%, 46.6%)이 여성(82.5%, 38.3%)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남녀 간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대체로 30대에서 50대의 연령층이 20대나 60대 이상의 연령층보다 법의 존재사실이나 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혼인상태별 인지도를 보면 기혼(86.6%, 45.9%)이 미혼(72.9%, 30.9%)보다 법의 존재사실과 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모두 높게 나왔다.

한편, 법의 존재사실과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학력별로 분석해 보면, 법의 존재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중졸 이상 고졸 이하가 86.4%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이 대학교 재학 이상(84.9%), 중졸 이하(67.0%)로 나왔다. 반면 법의 내용에 대하여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표 Ⅲ-15> 가정폭력특례법의 존재사실의 인지도 - 응답자특성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기혼	미혼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재 이상
사례수	1,000	491	509	216	241	231	158	154	764	236	115	396	489
인지	83.4	84.3	82.5	74.1	88.4	89.6	89.2	73.4	86.6	72.9	67.0	86.4	84.9
비인지	16.6	15.7	17.5	25.9	11.6	10.4	10.8	26.6	13.4	27.1	33.0	13.6	15.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value		0.444		0.000***					0.000***		0.000***		

주1): 인지 - '이름만 들어 본 적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임.
주2): * p<0.10, ** p<0.05, *** p<0.01.

<표 Ⅲ-16> 가정폭력특례법 내용 인지도 - 응답자특성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		연령					혼인상태		학력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기혼	미혼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재 이상
사례수	1,000	491	509	216	241	231	158	154	764	236	115	396	489
인지	42.4	46.6	38.3	32.9	44.4	55.4	49.4	26.0	45.9	30.9	19.1	42.2	48.1
잘 앎	2.3	3.3	1.4	2.3	2.5	3.5	2.5	0.0	2.5	1.7	0.0	1.3	3.7
어느 정도 앎	40.1	43.4	36.9	30.6	41.9	51.9	46.8	26.0	43.5	29.2	19.1	40.9	44.4
비인지	57.6	53.4	61.7	67.1	55.6	44.6	50.6	74.0	54.1	69.1	80.9	57.8	51.9
이름만 들어본 정도	41.0	37.7	44.2	41.2	44.0	34.2	39.9	47.4	40.7	41.9	47.8	44.2	36.8
전혀 들어보지 못함	16.6	15.7	17.5	25.9	11.6	10.4	10.8	26.6	13.4	27.1	33.0	13.6	15.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value		0.008***		0.000***					0.000***		0.000***		

주1): 인지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임.
주2): * p<0.10, ** p<0.05, *** p<0.01.

한편 가정폭력특례법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424명을 대상으로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남편의 아내 구타 이외에 아내의 남편구타, 노인·아동학대의 경우도 가정폭력범죄로 인정하고 있다'에 대한

인지율이 94.3%로 가장 높았으며, 이 밖에 ‘이혼한 전 남편이 전 부인을 폭행하는 경우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84.7%), ‘가정폭력가해자는 형사처벌되거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84.0%), ‘가정폭력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된다’(83.3%)는 사항에 관한 인지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교 교사, 교장 및 보육시설 종사자는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취학/전학 등의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69.1%)와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을 다른 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부양료, 생활비, 손해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69.3%)는 사항에 대한 인지율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행위자 처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인지율이 높은 반면,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인지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7> 가정폭력특례법 인지내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안다	모른다
아내의 남편구타, 노인·아동학대도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함	424	94.3	5.7
이혼한 전남편의 전 부인 폭행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함	424	84.7	15.3
가정폭력가해자는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음	424	84.0	16.0
가정폭력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불이행 시 처벌됨	424	83.3	16.7
가정폭력피해자가 배우자 또는 자신의 직계존속일 경우 고소할 수 있음	424	81.1	18.9
가정폭력 신고받은 경찰 폭력행위 저지,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조치 취하여야 함	424	78.8	21.2
학교교사, 교장, 시설종사자 등 가정폭력피해사실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424	77.8	22.2
가정폭력피해자 가정보호사건다른 법원에 부양료, 생활비, 손해배상 함께 청구 가능	424	69.3	30.7
학교교사, 교장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가정폭력피해아동 취학/전학 등 사실 누설금지	424	69.1	30.9

<표 III-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 특성별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이혼한 전 남편이 전 부인을 폭행하는 경우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는 항목에 대한 연령에 따른 인지 차이와 ‘학교 교사, 교장, 시설종사자 등은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학력에

따른 인지 차이,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을 다룬 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부양료, 생활비, 손해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한 여성과 남성간의 인지 차이는 99%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8> 가정폭력특례법의 인지 내용 - 응답자 특성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		연령					혼인여부		학력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혼	기혼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제 이상
사례수	424	229	195	71	107	128	78	40	73	351	22	167	235
아내의 남편구타, 노인·아동학대도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함	94.3	94.3	94.4	87.3	95.3	97.7	94.9	92.5	89.0	95.4	90.9	96.4	93.2
	p-value	0.987		0.046**					0.031**		0.301		
이혼한 전남편의 전 부인 폭행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함	84.7	85.2	84.1	77.5	76.6	92.2	85.9	92.5	79.5	85.8	90.9	86.8	82.6
	p-value	0.765		0.003***					0.174		0.355		
가정폭력가해자는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음	84.0	86.0	81.5	81.7	80.4	86.7	85.9	85.0	79.5	84.9	81.8	84.4	83.8
	p-value	0.209		0.687					0.248		0.949		
가정폭력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불이행 시 처벌됨	83.3	85.2	81.0	71.8	86.9	85.2	87.2	80.0	74.0	85.2	77.3	86.2	81.7
	p-value	0.257		0.057*					0.020**		0.362		
가정폭력피해자가 배우자 또는 자신의 직계존속일 경우 고소할 수 있음	81.1	80.3	82.1	80.3	81.3	82.0	82.1	77.5	80.8	81.2	77.3	86.2	77.9
	p-value	0.655		0.974					0.941		0.096*		
가정폭력 신고받은 경찰 폭력행위 저지,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조치 취하여야 함	78.8	80.8	76.4	76.1	81.3	84.4	73.1	70.0	83.6	77.8	72.7	82.0	77.0
	p-value	0.272		0.166					0.272		0.372		
학교교사, 교장, 시설종사자 등 가정폭력피해사실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77.8	79.0	76.4	67.6	80.4	77.3	87.2	72.5	75.3	78.3	68.2	86.8	72.3
	p-value	0.516		0.053*					0.574		0.001***		
가정폭력피해자 가정보호사건다룬 법원에 부양료, 생활비, 손해배상 함께 청구 가능	69.3	75.5	62.1	63.4	66.4	75.0	71.8	65.0	74.0	68.4	50.0	73.7	68.1
	p-value	0.003***		0.388					0.345		0.064*		
학교교사, 교장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가정폭력피해아동 취학/전학 등 사실 누설금지	69.1	70.3	67.7	66.2	72.9	72.7	64.1	62.5	72.6	68.4	54.5	71.3	68.9
	p-value	0.562		0.479					0.477		0.279		

주: * p<0.10, ** p<0.05, *** p<0.01.

2) 법의 인지 경로

조사 대상 중 가정폭력특례법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는 834명에 대해 그 인지경로를 조사한 결과, TV/라디오(51.4%), 신문/잡지(25.3%) 등 대중매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외 친구/가족/직장동료/이웃과 인터넷 등 통신매체가 각각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 자료 소식지가 2.8%,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이 2.1%, 버스/지하철 광고(1.0%), 반상회보/구청소식지(0.6%), 잘 기억나지 않음(0.2%) 순이었다. 인지경로가 대중매체가 많고 여성단체/상담기관 등의 자료나 법률교육이 적은 것은 법의 존재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법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결과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9> 가정폭력특례법 인지경로 - 반응별 (단위: 명, %)

구분	반응별	
	응답자수	비율
인 지 경 로	신문/잡지	368 25.3
	TV/라디오	786 54.1
	버스/지하철광고	15 1.0
	반상회보/구청소식지	8 0.6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 자료, 소식지	40 2.8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30 2.1
	친구/가족 직장동료/이웃	101 7.0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101 7.0
	잘 기억나지 않는다	3 0.2
	전체	1,452 100.0

법의 인지경로를 성별에 따라 비교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대중매체에 의한 인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다만 남성은 신문/잡지와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에 의한 인지가 여성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TV/라디오에 의한 인지가 남성보다 높다. 또한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 자료 및 소식지에 의한 인지도

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변사람에 의한 인지도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특성을 보면, 20대의 경우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에 의한 인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혼인여부로 살펴본 가정폭력특례법의 인지경로는 기혼이 미혼보다 TV/라디오, 신문/잡지, 친구/가족/직장동료/이웃,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 자료 및 소식지, 반상회보/구청소식지를 통한 인지가 많은 반면, 미혼은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버스/지하철광고를 통한 인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0> 가정폭력특례법 인지경로 - 응답자 특성별
(단위: 명, %, 복수응답)

구분	전체	성별		연령						혼인여부		학력		
		여성	남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혼	기혼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재 이상	
사례수	834	420	414	160	213	207	141	113	172	662	77	342	415	
TV/라디오	94.2	95.7	92.8	91.3	94.8	93.2	96.5	96.5	88.4	95.8	94.8	96.8	92.0	
신문/잡지	44.1	36.7	51.7	38.1	43.7	54.6	46.8	31.0	37.8	45.8	24.7	41.5	49.9	
친구/가족 직장동료/이웃	12.1	15.5	8.7	8.1	14.1	11.6	14.9	11.5	7.6	13.3	18.2	8.8	13.7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2.1	8.8	15.5	21.3	14.1	14.0	5.0	0.9	23.8	9.1	0.0	7.0	18.6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 자료, 소식지	4.8	6.9	2.7	5.0	5.6	7.2	2.8	0.9	3.5	5.1	1.3	3.5	6.5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3.6	2.6	4.6	6.3	4.7	3.9	1.4	0.0	8.1	2.4	0.0	1.2	6.3	
버스/지하철광고	1.8	1.7	1.9	3.8	1.9	1.4	1.4	0.0	3.5	1.4	0.0	1.8	2.2	
반상회보/구청소식지	1.0	0.7	1.2	0.0	0.5	2.4	1.4	0.0	0.0	1.2	0.0	0.9	1.2	
잘 기억나지 않는다	0.4	0.5	0.2	1.3	0.0	0.5	0.0	0.0	1.2	0.2	0.0	0.3	0.5	

나. 가정폭력 피해 경험 및 신고 여부

최근 1년간(2006. 5~2007. 5) 가정폭력 피해 경험 및 신고여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가정폭력특례법의 활용도를 살펴보았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에는 아동학대, 노인학대, 배우자, 자녀, 친

인척으로부터의 폭력 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배우자와 전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 경험 여부 및 신고여부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 경험 및 신고 여부

유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별거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 현재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716명)의 14.3%(102명)가 정신적 폭력의 유형이든 신체적 폭력의 유형이든 한 번이라도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⁷⁾

폭력의 유형 및 정도별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정신적 폭력에 해당하는 욕설 등 심한 말을 1회 이상 들은 경험이 있는 자가 응답자의 9.5%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물건을 던지는 것을 목격한 경험을 1회 이상 한 자가 9.4%로 높게 나왔다. 때린다는 위협을 1회 이상 당한 경우와 손바닥으로 뺨을 맞은 경험을 1회 이상 한 경우가 각각 5.0%와 3.1% 정도였고, 책대나 몽둥이 등 물건으로 맞거나 사정없이 마구 맞은 경험을 1회 이상 한 경우는 각각 1.1%와 0.9% 정도였다.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은 대부분 욕설 등 심한 말과 물건을 던지는 수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의 경험이 신고까지 이른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없이 마구 맞은 경우 외 1회 경험으로 신고에 이른 건은 하나도 없었다.

77) 사례를 유형별로 잘게 나누어 질의한 결과 소거법을 사용하여 어떠한 유형에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산출하여 계산하였다.

<표 Ⅲ-21> 현재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N=716)

구분	전체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소계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정신적 폭력	욕설 등 심한 말	716 (100.0)	648 (90.5)	26 (3.6)	19 (2.7)	7 (1.0)	16 (2.2)	68 (9.5)
	때린다고 위협 당함	716 (100.0)	680 (95.0)	13 (1.8)	8 (1.1)	5 (0.7)	10 (1.4)	36 (5.0)
신체적 폭력	물건을 던짐	716 (100.0)	649 (90.6)	31 (4.3)	17 (2.4)	3 (0.4)	16 (2.2)	67 (9.4)
	손바닥으로 뺨을 맞음	716 (100.0)	694 (96.9)	13 (1.8)	4 (0.6)	1 (0.1)	4 (0.6)	22 (3.1)
	물건(혁명, 몽둥이)으로 맞음	716 (100.0)	708 (98.9)	3 (0.4)	1 (0.1)	1 (0.1)	3 (0.4)	8 (1.1)
	사정없이 마구 맞음	716 (100.0)	709 (99.0)	3 (0.4)	0 (0.0)	1 (0.1)	3 (0.4)	7 (0.9)

<표 Ⅲ-22> 현재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신고 여부
(단위: 명(%))

구분	경험 있음						소계
	1회	2회	3회	4회 이상	소계		
정신적 폭력	욕설 등 심한 말	경험	26 (3.6)	19 (2.7)	7 (1.0)	16 (2.2)	68 (9.5)
		신고	0	0	0	1	1 (1.4)
	때린다고 위협 당함	경험	13 (1.8)	8 (1.1)	5 (0.7)	10 (1.4)	36 (5.0)
		신고	0	1	0	0	1 (2.8)
신체적 폭력	물건을 던짐	경험	31 (4.3)	17 (2.4)	3 (0.4)	16 (2.2)	67 (9.4)
		신고	0	1	0	0	1 (1.5)
	손바닥으로 뺨을 맞음	경험	13 (2.0)	4 (0.6)	1 (0.1)	4 (0.6)	22 (3.1)
		신고	0	1	0	0	1 (4.5)
	물건(혁명, 몽둥이)으로 맞음	경험	3 (0.4)	1 (0.1)	1 (0.1)	3 (0.4)	8 (1.1)
		신고	0	0	0	0	0 (0.0)
	사정없이 마구 맞음	경험	3 (0.4)	0 (0.0)	1 (0.1)	3 (0.4)	7 (0.9)
		신고	1	0	0	0	1 (14.3)

현재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경험에 비해 신고율이 낮은 이유로는 ‘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와 ‘사건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사건이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현재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에 대한 미신고 이유
(단위: 명(%))

구분		욕설 등 심한 말	때린다고 위협함	물건을 던짐	뺨을 때림	물건으로 때림	마구 때림
신고하지 않은 이유	신고절차를 잘 몰라서	1 (1.5)	1 (2.9)	1 (1.5)	1 (4.8)	0 (0.0)	0 (0.0)
	사건이 경미해서	24 (35.8)	6 (17.1)	26 (39.4)	3 (14.3)	3 (37.5)	0 (0.0)
	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	23 (34.3)	13 (37.1)	22 (33.3)	7 (33.3)	1 (12.5)	1 (16.7)
	사건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6 (9.0)	6 (17.1)	7 (10.6)	6 (28.6)	4 (50.0)	4 (66.7)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7 (10.4)	4 (11.4)	6 (9.1)	2 (9.5)	0 (0.0)	1 (16.7)
	배우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해서	1 (1.5)	2 (5.7)	1 (1.5)	0 (0.0)	0 (0.0)	0 (0.0)
	범죄인지 몰라서	4 (6.0)	3 (8.6)	3 (4.5)	1 (4.8)	0 (0.0)	0 (0.0)
	상황을 이해해서	1 (1.5)	0 (0.0)	0 (0.0)	0 (0.0)	0 (0.0)	0 (0.0)
	창피해서	0 (0.0)	0 (0.0)	0 (0.0)	1 (4.8)	0 (0.0)	0 (0.0)
	계	67	35	66	21	8	6

2) 전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 경험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여 전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폭력의 유형 및 정도별로 조사한 결과,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물건을 던지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자가 응답자의 26.7%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정신적 폭력에 해당하는 욕설 등 심한 말을 들어본 경험을 1회 이상 한 자가 26.6%로 높게 나왔다. 때린다는 위협을 1회 이상 당한 경우와 손바닥으로 뺨을 맞은 경험을 1회 이상 한 경우가 각각 13.3%와 6.7% 정도였다. 현재 배우자뿐만 아니라 헤어진 전배우자에 의해서도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전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의 경험이 신고까지 이른 비율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4> 전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구분	전체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소계
			1회	2회	3회	4회 이상	
욕설 등 심한 말	15 (100.0)	11 (73.3)	0 (0.0)	2 (13.3)	0 (0.0)	2 (13.3)	4 (26.6)
물건을 던짐	15 (100.0)	11 (73.3)	1 (6.7)	3 (20.0)	0 (0.0)	0 (0.0)	4 (26.7)
손바닥으로 뺨을 때림	15 (100.0)	14 (93.3)	0 (0.0)	1 (6.7)	0 (0.0)	0 (0.0)	1 (6.7)
때리거나 위협함	15 (100.0)	13 (86.7)	0 (0.0)	0 (0.0)	0 (0.0)	2 (13.3)	2 (13.3)

<표 Ⅲ-25> 전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신고 여부 (단위: 명(%))

구분	전체	경험있음				소계
		1회	2회	3회	4회 이상	
욕설 등 심한 말	경험	0 (0.0)	2 (13.3)	0 (0.0)	2 (13.3)	4 (26.6)
	신고/경험	0	0	0	0	0 (0.0)
물건을 던짐	경험	1 (6.7)	3 (20.0)	0 (0.0)	0 (0.0)	4 (26.7)
	신고/경험	0	0	0	0	0 (0.0)
손바닥으로 뺨을 때림	경험	0 (0.0)	1 (6.7)	0 (0.0)	0 (0.0)	1 (6.7)
	신고/경험	0	0	0	0	0 (0.0)
때리거나 위협함	경험	0 (0.0)	0 (0.0)	0 (0.0)	2 (13.3)	2 (13.3)
	신고/경험	0	0	0	0	0 (0.0)

전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까지 이르지 않은 이유는 현재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와 ‘사건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전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 범죄인지 몰라서’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III-26> 전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에 대한 미신고 이유
(단위: 명, %)

구분		욕설 등 심한 말	물건을 던짐	뺨을 때림	때리거나 위협함
신고 하지 않은 이유	범죄인지 몰라서	1 (25.0)	1 (25.0)	0 (0.0)	0 (0.0)
	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	2 (50.0)	1 (25.0)	1 (100.0)	1 (50.0)
	사건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1 (25.0)	1 (25.0)	0 (0.0)	1 (50.0)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0 (0.0)	1 (25.0)	0 (0.0)	0 (0.0)
계		4 (100.0)	4 (100.0)	1 (100.0)	2 (100.0)

3) 향후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의사

향후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할 경우 신고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본인일 경우 응답자의 60.0%가 적극적인 신고 의사를 밝혔고, 26.7%는 신고할 의사가 없음을, 그리고 13.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신고 의사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당사자가 가족일 경우 응답자의 63.9%가 적극적인 신고 의사를 밝혔고, 23.2%는 신고할 의사가 없음을, 그리고 12.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신고 의사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당사자가 친구나 이웃, 직장동료일 경우 응답자의 52.3%가 적극적인 신고 의사를 밝혔고, 25.7%는 신고할 의사가 없음을, 그리고 22.0%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 당사자가 잘 모르는 사람일 경우 응답자의 39.9%가 적극적인 신고 의사를 밝혔고, 30.4%는 신고할 의사가 없음을, 그리고 29.7%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정폭력을 향후 경험할 경우 신고할 의사는 피해 경험자가 가족, 본인, 친구나 이웃, 직장동료,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인보다 가족의 경우 신고 확률이 높게 나온 것은 가족을 더 중요시하는 우리의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 신고 확률이 낮게 나온 것은 가정폭력은 남의 집 가정사라는 의식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Ⅲ-27> 향후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의사
(단위: %, N=1,000)

구분		본인	가족	친구, 이웃, 직장동료	잘 모르는 사람
신고 의사	신고하겠다	60.0	63.9	52.3	39.9
	신고하지 않겠다	26.7	23.2	25.7	30.4
	잘 모르겠다	13.3	12.9	22.0	29.7
계		100.0	100.0	100.0	100.0

피해 당사자가 본인이 될 경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가족을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59.5%)이다. 그 다음으로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29.8%)가 차지하고 있다. 그 밖의 사유로 ‘신고절차를 몰라서’(3.3%), ‘당사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3.0%), ‘신고하면 폭력을 당할 것 같아서’(1.8%) 등이 있다.

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자 중 피해 당사자가 본인이 될 경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도 또한 ‘가족을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와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가 동일한 비중으로 나왔다. 여기에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사의 부재와 형사절차에 대한 불신이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III-28> 피해 당사자별 신고를 꺼리는 이유

(단위: 명(%))

구분		본인	가족	친구, 이웃, 직장동료	잘 모르는 사람
미 신 고 이 유	신고절차를 잘 몰라서	13 (3.3)	10 (2.8)	19 (4.0)	22 (3.7)
	가족들을 차마 신고할 수 없을 것 같아서	238 (59.5)	209 (57.9)	50 (10.5)	36 (6.0)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119 (29.8)	102 (28.3)	177 (37.1)	219 (36.4)
	신고하면 폭력을 당할 것 같아서	7 (1.8)	7 (1.9)	32 (6.7)	68 (11.3)
	당사자가 신고를 원치 않을 것 같아서	12 (3.0)	29 (8.0)	187 (39.2)	237 (39.4)
	사건의 심각성을 못 느껴서	2 (0.5)	0 (0.0)	0 (0.0)	0 (0.0)
	내용을 잘 몰라서	3 (0.8)	3 (0.8)	3 (0.6)	3 (0.5)
	자신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여서	1 (0.3)	0 (0.0)	1 (0.2)	1 (0.2)
	출두하라면 생활에 지장이 많아서	1 (0.3)	1 (0.3)	2 (0.4)	2 (0.3)
	번거로워서	1 (0.3)	0 (0.0)	2 (0.4)	3 (0.5)
	수치스러워서	2 (0.5)	0 (0.0)	0 (0.0)	0 (0.0)
	가족에게 도움 청하려고	1 (0.3)	0 (0.0)	0 (0.0)	0 (0.0)
	남의 일에 참견하기 싫어서	0 (0.0)	0 (0.0)	4 (0.8)	10 (1.7)
	계	400	361	477	601

다. 가정폭력특례법의 효과성

1) 가정폭력특례법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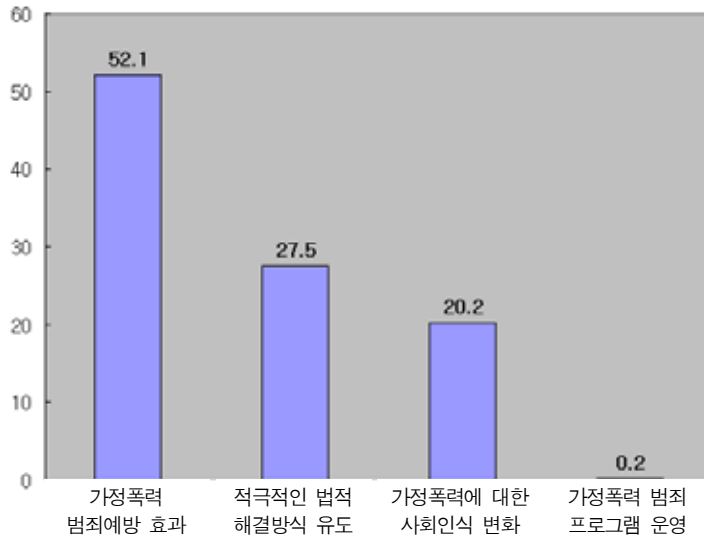
가정폭력특례법이 가정폭력 범죄 감소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7.4%가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여 일정 수준에서 가정폭력특례법의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9> 가정폭력특례법의 가정폭력 방지 기여 여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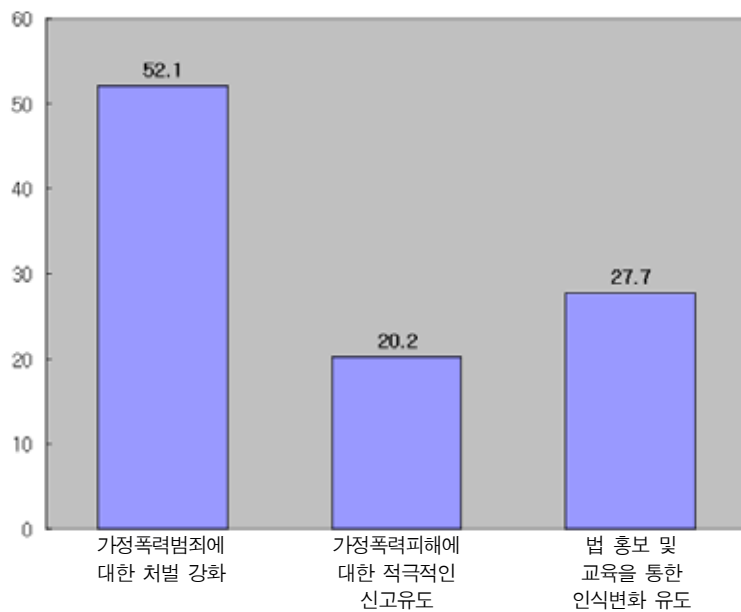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여성	남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기여 (57.4)	매우 기여	14 (1.4)	6 (1.2)	8 (1.6)	1 (0.5)	3 (1.2)	5 (2.2)	4 (2.5)	1 (0.6)
	어느 정도 기여	560 (56.0)	287 (56.4)	273 (55.6)	109 (50.5)	124 (51.5)	141 (61.0)	98 (62.0)	88 (57.1)
비기여 (42.6)	별로 기여 못함	381 (38.1)	196 (38.5)	185 (37.7)	91 (42.1)	103 (42.7)	71 (30.7)	54 (34.2)	62 (40.3)
	전혀 기여 못함	45 (4.5)	20 (3.9)	25 (5.1)	15 (6.9)	11 (4.6)	14 (6.1)	2 (1.3)	3 (1.9)
계		1,000	509	491	216	241	231	158	154

가정폭력특례법이 가정폭력 감소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574명을 대상으로 어떤 면에서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를 질의한 결과,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 가정폭력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특례법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변화 등 사회 분위기 변화에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7.5%,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법적 해결방식을 유도하고 제공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를 차지하였다.



<그림 Ⅲ-3> 가정폭력특례법의 가정폭력 방지 기여 여부 (단위: %)

또한 가정폭력특례법이 가정폭력범죄 감소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426명을 대상으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질의한 결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강화가 52.1%가 가장 높았고, 가정폭력특례법의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 유도가 27.7%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가정폭력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유도가 20.2%로 나타났다.



<그림 III-4> 가정폭력특례법의 개선되어야 할 점 (단위: %)

2) 향후 가정폭력특례법 내용 상 보완되어야 할 점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가정폭력특례법의 내용에 보완되어야 할 점을 질의한 결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강화가 58.5%로 제1순위, 수사 및 재판과정 등에서의 피해자 인권 보장이 33.3%로 제2순위,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육 및 치료감시 체계 강화 및 성행교정 조치 불이행 시 체재규정 강화를 각각 21.3%와 21.2%로 제3순위로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30> 향후 가정폭력특례법 내용 상 보완되어야 할 점
(단위: 명(%))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보완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강화	585 (58.5)	136 (13.6)	106 (10.6)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의 피해자 인권 보장	177 (17.7)	333 (33.3)	155 (15.5)
	신고시 사법경찰관의 개입조치 강화	62 (6.2)	139 (13.9)	163 (16.3)
	가정폭력사건 전담반 규정 신설	66 (6.6)	151 (15.1)	126 (12.6)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육/치료감시체계 강화	81 (8.1)	155 (15.5)	213 (21.3)
	성행교정 조치 (보호처분) 불이행 시 제재규정 강화	26 (2.6)	82 (8.2)	212 (21.2)
	잘 모르겠다	3 (0.3)	1 (0.1)	2 (0.2)
	무응답	0 (0.0)	3 (0.3)	23 (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 가정폭력 관련 외국 입법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7차 개정 이래 가정폭력특례법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어왔던 사항들이 포함된 여러 개정안⁷⁸⁾들을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하여 2007. 7 가정폭력특례법의 제11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들의 권리가 확대되고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그 동안 지적받아 왔던 가정폭력특례법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어 향후 개정이 법 개정과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그 동안 문제제기가 되어 왔지만 이번 개정에서 누락되거나 개정이 미진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개정의 밑거름을 만들고자 한다.

이하의 외국의 사례는 가정폭력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냐에 따라

78) 홍미영의원 대표발의안(2005. 6. 13, 의안번호 2028), 우윤근의원 대표발의안(2005. 11. 7, 의안번호 3256), 안명옥의원 대표발의안(2006. 5. 26, 의안번호 4430), 박명광의원 대표발의안(2006. 6. 30, 의안번호 4562), 이계경의원 대표발의안(2006. 12. 1, 의안번호 5533)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특례법처럼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을 포함하여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즉 가정 내 폭력으로 이해하고 있는 입법례로 대만,⁷⁹⁾ 그리고 경제적 자립 곤란이나 자녀에 대한 영향이나 자녀와의 분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이나 파트너로부터의 폭력을 특별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일본,⁸⁰⁾ 남녀 간의 비대칭 권력관계나 비인격적인 구조적 기제에서 비롯된 성별역할분업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하고 결혼 생활에서 이를 더욱 증폭시키기에 이른다는 생각에서 남편,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으로부터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널리 가정폭력으로 이해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⁸¹⁾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미국의 의무적 체포제도

1) 도입 필요성

우리의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행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서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으로 한정(제5조)하고 있다. 이 때문

79) 대만의 家庭暴力防治法은 1998년 6월 24일 공포되어, 2007년 3월 28일 개정된 법을 참고로 하였다(家庭暴力防治法, 中華民國87年6月24日總統(87)華總(一)義字第8700122820號令公布, 中華民國96年3月28日總統華總一義字第09600037771號令公布修正). 법안의 원문은 <http://dspc.moi.gov.tw/ct.asp?xItem=508&ctNode=726&mp=1> 참조(2007. 10. 22 최종방문).

80)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2007년(평성19년)법률 제113호, 2008. 1. 11 시행). <http://www.gender.go.jp/e-vaw/law/dv1907.html> 참조(2007. 10. 22 최종 방문).

81) 미국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규제입법은 1976년 펜실베이니아 주를 시작으로 주마다 달리 대응하고 있으며, 연방차원에서의 종합적 대응은 1994년 「폭력범죄방지및 집행에관한법」에 의해 시작되었다. 동법은 광범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정폭력에 관하여는 주로 제4편 여성폭력방지법과 제11편 공공의 안전 및 여가용총기 사용법이 관련된다. 법안의 원문은 <http://thomas.loc.gov/cgi-bin/query/z?c103:H.R.3355.ENR>: 참조(2007. 10. 22 최종방문).

에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후 철수한 경우에는 재차 발생하는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가 부단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즉각적 체포와 경찰서에의 강제적 인도를 가능케 하는 ‘의무적 체포제도(mandatory arrest system)’의 도입 주장이 계속되어 왔고,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난 7월에 제11차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해자에 대한 수사개입조치, 피해자 긴급보호조치, 긴급임시조치제도의 도입 등이 여러 개정안에 편입되어 논의되었다. 그러나 제11차 개정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체포정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의무적 체포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본다.

2) 미국에서의 체포정책의 변천

미국의 경찰은 1970년 전반까지 가정폭력에 대해서 불개입주의를 취하고 가정폭력가해자가 체포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형사절차법 상의 문제였다. 영미법의 코먼로에서는 경찰관의 영장 없는 체포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현행범의 경우를 제외하고 경죄에 해당하는 폭행 사건에서는 가해자를 바로 체포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원인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경향, 즉, 경찰관의 성 편견(Gender Bias)이었다. 이들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주의 피해자지원조직이 입법운동을 시작하고 그 성과로서 1976년에는 펜실버니아 주에서 민사보호명령제도가 창설되고, 미국 최초의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 1977년에는 오레곤 주에서 최초로 의무적 체포(mandatory arrest)를 명하는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의무적 체포란 경찰관에게 의무적으로 가정폭력가해자나 보호명령 위반자의 체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무적 체포의 틀이 도입된 이유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의 용인이나 여성 피해자의 진술 경시 등 경찰관의 성 편견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체포를 피하게 되고, 그 결과 경찰에 신고한 뒤에 피해자가 더욱 가혹한 폭력을 당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의무적 체포가 규정되면 범죄 혐의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존재하는 경우 경찰관은 체포할 의무가 있고, 재량은 허용되지 않는다. 1980년대가 되자 많은 주의 가정폭력방지법에 의무적 체포가 규정되고 많은 경찰서는 적극적 체포정책(pro-arrest policy)으로 전환하였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의무적 체포를 법에 정한 주는 1993년까지 15개 주, 1999년까지 21개 주로 늘고, 또한 민사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의무적 체포를 정한 주는 1993년까지 19개 주, 1999년까지 30개 주가 되었다. 미국 내 많은 경찰서가 적극적 체포정책으로 전환하고, 1989년까지 도시부 경찰의 75%가 의무적 체포정책을 채용하였다.⁸²⁾

3) 미국의 의무적 체포의 기능과 우리법에 대한 시사

우리나라와 미국의 체포의 성격의 차이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미국의 의무적 체포와 동일한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미국의 의무적 체포가 현실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평가하고, 그것을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에 활용하려는 대처는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의무적 체포의 기능과 우리법에 대한 시사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미국법에서 체포는 형사사법작용의 시작이다. 따라서 의무적 체포란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경찰관의 성 편견(Gender Bias)에 의하여 가정폭력 사건이 특별 취급되어 걸러지고, 형사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의 경우에는 신변구속의 강제처분은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하고, 체포는 수사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가 확고한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그 때문에 가정폭력사건이 성 편견이 있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수사 초기단계에서 걸러지고 형사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관에게 수사의 단서인 가정폭력사건의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명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인지된 경우에는 다른 폭력범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확실한 수

82) Sherman, Lawrence W.(1992), "The Influence of Criminology on Criminal Law: Evaluating Arrest for Misdemeanor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Vol. 83, No. 1, p. 23.

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정폭력특례법 속에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의무적 체포는 경찰관의 적극적 개입과 가해자의 신변구속에 의하여 폭력 위해보부터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긴급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에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가 허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영장에 의한 체포가 원칙이고, 영장 없이 체포가 허용되는 것은 현행법 체포 또는 긴급체포의 경우뿐이다. 현행법의 경우는 경찰관은 주저 없이 가해자를 체포하여야 한다.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형이 3년 이하의 폭행죄나 협박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영장 없는 체포가 한정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법집행기관으로부터의 청구에 대해 법원에 의하여 신속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될 필요가 있다.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법관은 「체포의 이유」와 「체포의 필요성」을 각각 심사하게 되지만 가정폭력사건에서는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남편이 보복적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포의 필요」에 관하여는 장래의 가해행위의 위험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셋째, 미국에서는 보호명령위반에 대한 의무적 체포는 보호명령의 실효성의 강화에 기능하고 있다. 보호명령위반에 대한 형사사법의 엄정한 대응이 없으면 보호명령의 효과는 그만큼 감쇄된다.

현행 우리의 가정폭력특례법에는 미국의 가정폭력방지법과 같은 체포 규정도 없고 보호명령 제도도 없지만,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법원의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호처분 위반자에 대한 체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일본과 대만의 민사보호명령

1) 도입 필요성

가정폭력특례법의 제11차 개정으로 피해자에게 임시조치청구나 신청에 대한 요청권이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사법경찰관리의 임시조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여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 임시조치에서의 피해자의 권한 확대 및 신속성 도모가 법체계상 한계가 있다면 일본과 대만의 민사보호명령제도가 참고가 될 것이다.

2) 일본⁸³⁾의 민사보호명령

일본의 배우자폭력방지법은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두 개의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보호명령제도의 창설이다. 보호명령은 배우자폭력방지법에 의해 창설된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을 발하고 명령위반자에게는 형벌을 과하는 법제도이다. 보호명령제도의 적용을 받는 가정폭력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신체에 대한 폭력으로 한정되지만 신체에 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언동은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된다.

83) 일본에서는 형법 기타 법령에서 폭행, 상해 등의 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들 규정은 배우자 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배우자 간의 폭력의 처벌에 관한 특례로 규정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2001년(평성 13년) 4월에는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나 보호명령에 관하여 규정한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배우자폭력방지법’이라 한다)이 성립하고, 같은 해 10월(일부는 2002. 4)부터 시행되고 있다. 형사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폭력방지법은 3년 뒤에 재검토 취지의 규정(부칙 제3조)에 기초하여 2004년(평성 16년)에 개정되었지만 개정법은 여전히 3년 뒤에 재검토한다는 취지의 규정(개정 부칙 제3조)을 두고, 시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검토를 한 뒤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04년과 2007년에 개정이 이루어졌다.

가) 보호명령의 신청

보호명령은 배우자로부터 신체에 대한 폭력 또는 생명 등에 대한 협박을 받은 상황(제12조 제1항 제1호), 배우자로부터 거듭된 신체에 대한 폭력 또는 배우자로부터 생명 등에 대한 협박을 받은 뒤 당한 신체에 대한 폭력에 의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신청 당시의 사정(제2호),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당해 동거하고 있는 자녀와 관련하여 배우자와 면회하는 것이 부득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명령을 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신청 당시의 사정(제3호), 피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당해 친족 등과 관련하여 배우자와 면회하는 것이 부득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명령을 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신청 시의 사정(제4호),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또는 경찰 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거나 지원 또는 보호를 청구한 사실의 유무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신청한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지만 신청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해당 신청과 관련된 신체에 대한 폭력 또는 생명에 대한 협박이 행해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할 수 있다(제11조).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또는 경찰 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거나 지원 또는 보호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또는 해당 경찰직원의 소속관서 명칭, 상담이나 지원 또는 보호를 청구한 일시 및 장소, 요구 내용 및 집행된 조치의 내용 또한 기재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한 사항에 관한 신청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나) 보호명령의 결정

법원은 보호명령 신청에 관한 사건은 신속하게 재판하며(제13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두변론 또는 상대방이 입회한 심문기일을 거쳐 발할 수 있

다(제14조). 보호명령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여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결정서의 송부 또는 상대방이 출두한 구두변론 또는 심문 기일의 선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15조).

보호명령을 발한 경우에는 법원 서기관이 신속하게 그 취지 및 내용을 신청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경시총감 또는 도도부현 본부장에게 통지하며, 보호명령 신청인이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의 직원에게 상담, 지원, 보호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법원서기관은 신속하게 보호명령을 발한 취지와 그 내용을 당해 신청서에 명칭이 기재된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당해 신청서에 명칭이 기재된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직원에게 상담하거나 지원 또는 보호를 구한 일시가 가장 느린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배우자폭력방지법은 제정 시부터 보호명령제도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 제1차 개정과 제2차 개정을 거치면서 보호명령제도의 확충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다) 제1차 개정⁸⁴⁾ 시의 보호명령제도의 확충

(1) 전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배우자로부터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이혼 직후의 시기가 일련의 신체에 대한 폭력의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라고도 하고, 또한 배우자로부터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받은 후에 이혼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신체에 대한 폭력과 이혼 후의 배우자였던 자로부터 계속 당한 신체에 대한 폭력은 일체적인 것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혼 등을 한 경우에도 배우자였던 자로부터 계속 당한 신체에 대한 폭력에 의해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보호명령을 발하도록 하였다.

84) 2004. 6. 2 법률 제64호, 2004. 12. 2 시행.

(2)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함

배우자가 피해자의 자녀에게 접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우려가 직접 발생시키는 행위는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 발해져 있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은 방지된다.

그러나 예를 들면 배우자가 피해자의 자녀를 그 통원처 등에서 데려가거나, 배우자에게로 데려가 버리면 그 자녀의 신상을 감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스스로 배우자와 만날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배우자와의 면회를 부득이하게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 발해져 있어도 피해자와 배우자가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의해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거듭 신체에 대한 폭력이 가해질 위험이 높아지고 그 효과가 감쇄되어 버린다. 이와 같은 형태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의 효과가 감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과 함께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게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은 배우자가 피해자의 미성년의 자녀를 데려갈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에서 피해자가 그 동거하고 있는 미성년의 자녀에 관해 배우자와 면회하는 것을 부득이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과 함께 발해지게 된다. 단, 피해자의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는 그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3) 퇴거명령기간을 2개월로 연장하고, 퇴거명령의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개정 전에는 퇴거명령의 재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것도 있고 2주간이라는 퇴거명령의 기간으로는 피해자는 주거로부터 전거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 그 기간은 신변정리, 전거처의 확보 등을 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입각하여 퇴거명령의 기간을 2월간으로 확대하였다(제10조 제1항 제2호 관련).

또한 퇴거명령의 기간이 2월간으로 확대되었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배우자와 함께 생활의 본거로 삼고 있는 주거에 계속 거주할 필요성이 높고, 퇴거명령을 다시 발해야 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한편, 다시 퇴거명령이 발해져도 배우자의 생활에 특히 현저한 어려움을 낳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퇴거명령의 재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초 퇴거명령과는 달리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고려한 뒤에 여전히 배우자의 거주 자유나 재산권의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에서 퇴거명령을 다시 발할 수 있게 하였다.

퇴거명령이 다시 발해지는 것은 배우자와 함께 생활의 본거로 삼고 있는 주거로부터 전거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미 발해져 있는 퇴거명령의 기간 내에 전거를 완료할 수 없는 등, 퇴거명령을 다시 발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해지게 된다. 다만, 법원은 배우자의 생활에 특히 현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시 퇴거명령을 발하지 않을 수 있다.

(4) 보호명령의 재신청 절차의 개선

개정 전에는 보호명령의 발령 후에 피해자가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나 경찰에 상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상정되어 있지 않고 보호명령의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증인 작성의 선서공술서의 첨부이 필수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재신청에 앞서 거듭된 배우자로부터의 신체에 대한 폭력에 의해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받을 우려에 관하여 센터나 경찰과의 상담 등이 행해진다면 이들 기관으로부터 당초 신청과 동 정도의 객관적·정형적인 신용력이 있는 자료가 법원에 적절하게 제공되는 것이 제도 상 담보되고, 이들 자료를 첨부하는 것에 의해 신속하면서 적정한 발령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거듭된 배우자로부터의 신체에 대한 폭력에 의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받을 우려에 관하여 센터 직원이나 경찰 직원에 대한 상담 등의 사실에 관한 소정의 사항이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증인 작성의 선서공술서의 첨부를 생략함으로써 재신청을 하기 쉽게 하였다.

라) 제2차 개정⁸⁵⁾ 시의 보호명령제도의 확충

(1) 생명 등에 대한 협박을 받은 피해자에 관한 보호명령

배우자로부터 생명 등에 대한 협박(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해를 가한다는 것을 고지하고 하는 협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받은 신체에 대한 폭력(배우자로부터의 생명 등에 대한 협박을 받은 후에 피해자가 이혼을 하거나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였던 자로부터 계속 입은 신체에 대한 폭력)에 의해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받을 우려가 큰 경우도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배우자(배우자로부터의 생명 등에 대한 협박을 받은 후에 피해자가 이혼을 하거나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였던 자)에 대해 보호명령을 발할 수 있게 된다(제10조 제1항 관련).

(2) 전화 등을 금지하는 보호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발한 법원 또는 발했던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배우자에 대해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사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행위도 금지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게 된다(제10조 제2항 관련).

- ① 면회 요구
- ② 그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 ③ 현저하게 조야 또는 난폭한 언동
- ④ 전화를 걸어 아무것도 알리지 않거나 긴급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연속하여 전화를 걸고 팩스를 이용하여 송신하거나 전자메일을 송신하는 것

85) 2007. 7. 11 법률 제113호, 2008. 1. 11 시행.

- ⑤ 긴급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오후 10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전화를 걸고 팩스를 이용하여 송신하거나 전자메일을 송신하는 것
- ⑥ 오물, 동물의 사체 기타 현저하게 불쾌하거나 혐오의 정을 알리는 물건을 보내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 ⑦ 명예를 해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 ⑧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을 보내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3) 피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배우자가 피해자의 친족 기타 피해자와 사회생활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녀 및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자를 제외. 이하 ‘친족 등’이라 한다)의 주거에 들어가 현저하게 조야 또는 난폭한 언동을 하고 있는 것 기타 사정이 있는 것에서 피해자가 친족 등에 관하여 배우자와 면회하는 것을 부득이하게 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발한 법원 또는 발했던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배우자에 대해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한 날까지의 사이, 당해 친족 등의 주거(당해 배우자와 함께 생활의 본거로 하고 있는 주거를 제외한다) 기타 장소에서 당해 친족 등의 신변에 따라 붙거나 당해 친족 등의 주거, 근무지 기타 그 통상 소재하는 장소의 부근의 배회 금지를 명할 수 있다(제10조 제4항 관련). 피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의 신청에는 당해 친족 등(피해자의 15세 미만의 자를 제외)의 동의(당해 친족 등이 15세 미만의 자 또는 성년피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제10조 제5항 관련).

일본의 보호명령제도는 법원이 발하는 명령의 실효성을 형벌로 담보하는

법 형식을 택하고 있다. 즉, 보호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29조). 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벌 규정에 관하여는 보호명령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라는 외, 법률에 의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입이 곤란하였던 종래의 경찰실무에 비추어보면 법률로 기준을 명확하게 한 것에 의하여 경찰력의 개입이 용이하게 되었다는 측면도 가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내려지고 있다. 이리하여 경찰실무는 가정폭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이러한 자세는 상해의 검거건수의 증가와 그 속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증가,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폭행·상해사건에서의 검거건수의 비약적인 증가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⁸⁶⁾ 그러나 경찰실무가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된 것에 부수한 주요 문제점으로서 형사사법 전체에 의한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도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면 보호명령 위반으로 검거·체포된 사건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끝나고 있는 것에서 피해자의 안전보장의 견지에 비추어 보면 「검찰청이나 법원은 형사벌을 규정한 것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3) 대만의 민사보호명령의 개요

대만의 가정폭력방지법 제2장은 민사보호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⁸⁷⁾ 보호명령은 통상보호명령과 일시보호명령 및 긴급보호명령으로 나뉘고(제9조), 피해자 외, 검찰관, 경찰기관, 직할시·현(시)의 주무기관이 신청할 수

86) 배우자 간의 범죄 중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의 검거건수 추이를 최종별로 보면, 폭행, 상해는 각각 2000년 이후 증가하고, 2004년에 상해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2006년에는 폭행이 671건으로 전년보다도 312건(86.9%) 증가, 상해도 1,294건으로 30건(2.4%)이 증가되었다. <http://www.gender.go.jp/whitepaper/h19/gaiyou/danjyo/html/honpen/index.html> 참조.

87) 대만의 가정폭력방지법은 제1장 통칙, 제2장 민사보호령, 제3장 형사절차, 제4장 부모자녀, 제5장 예방 및 처우, 제6장 벌칙, 제7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8. 6 제정 시에는 총 54개조이었으나, 2007. 3. 28 총 66개조로 개정·공포되었고, 공포일로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하 괄호 속의 조항 표시는 최근 개정된 대만의 가정폭력방지법에 의거하고 있다.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 등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나 일정 범위(3촌 이내)의 친족·인척이 신청할 수 있다(제10조).

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지만, 긴급한 경우는 구두, 전보, FAX 등으로 긴급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가능하다. 이 신청에는 신청인이나 피해자의 주·거소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송달할 곳만 기재한다(제12조). 보호명령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조정·화해는 행해지지 않는다(제13조).

통상보호명령은 법원이 심리를 종결한 후 가정폭력의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발한다(제14조).

- ① 가해자의 피해자나 특정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정폭력행위의 금지
- ②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소요, 접촉, 쫓아다니기, 통화, 통신 기타 불필요한 연락행위 금지
- ③ 가해자의 피해자의 주·거소로부터의 퇴거명령,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당해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행위 금지
- ④ 피해자 또는 그 특정한 가족구성원이 통상 출입하는 주·거소나 학교, 직장 등 특정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 ⑤ 개인생활상, 직업상, 교육상 필수품의 사용권의 정함, 필요한 경우 그 교부를 명함
- ⑥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임시 권리행사 또는 의무부담을 정함.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공동으로 행사 또는 부담하는 내용 및 방법. 필요한 경우 자녀에게 교부를 명할 수 있음.
- ⑦ 가해자와 자녀와의 면회, 왕래의 시간·장소·방식의 정함. 필요한 경우 면회·왕래의 금지
- ⑧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주·거소의 차임이나 피해자 및 미성년 자녀의 부양비 지급명령

- ⑨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또는 특정 가족구성원의 의료, 상담, 쉼터 비용 및 재산손해 등의 지급명령
- ⑩ 가해자에 대한 처우계획작성 명령
- ⑪ 가해자에 대해 상당한 변호사비용부담 명령
- ⑫ 피해자 및 그 임시감호를 맡은 미성년자의 호적·학적·소득원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금지
- ⑬ 기타 피해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명령

통상보호명령의 유효기간은 1년 이하이며, 그 실효 전에 법원은 당사자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취소·변경·연장할 수 있다. 기간연장은 1년 이하이며 1회로 한한다(제15조).

임시보호명령이나 긴급보호명령은 심리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의 사항 중 ①~⑥ 및 ⑫와 ⑬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제16조).

(1)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행위의 금지 및 금전급부의 명령은 채무명 의가 되므로 피해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하여 집행하며, (2) 직할시· 현(시) 주무기관에서 미성년 자녀와의 면회·왕래장소를 설치하고, 직할시· 현(시) 주무기관이나 그 소속 직원이 미성년 자녀와의 면회·왕래를 감독하 는 경우에는 당해 직할시·현(시) 주무기관에 집행을 신청하며 (3) 처우계획 서 작성 명령은 직할시·현(시) 주무기관이 집행하며, (4) 관련 자료의 열람 금지명령은 피해자가 관련기관에 신청하여 집행하고, (5) 기타 명령의 집행 은 경찰기관이 한다(제21조).

4) 우리 법에 대한 시사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일본과 대만의 민사보호명령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자는 개정안⁸⁸⁾이 제출되

었지만 제11차 개정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에 산재해 있는 피해자보호조치들을 통합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한 민사법적 조치로 구상된 것이다. 이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여부와는 무관하게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시조치나 보호처분과는 독립성을 갖는 민사법적 조치로서 법체계적 난점을 극복하면서 피해자보호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피해자보호조치가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종속되어 있어 발생하는 피해자보호조치의 공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모습은 일본과 대만은 민사보호명령으로 우리나라는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로서 서로 다르지만, 민사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현 체계를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일본과 대만의 보호명령제도가 담고 있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참고할만한 것들은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의 대상 확대의 측면이다. 제11차 개정으로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가정구성원으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같이 살고 있는 가정구성원뿐만 아니라 비록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친정식구에 대한 해악을 두려워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배우자폭력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우리 가정폭력특례법에 삽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둘째, 사건처리결과의 통지의무 강화 측면이다. 우리의 가정폭력특례법에 의하면 판사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위탁의뢰의 필요에 의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지원업무의 하나로 가정폭력상담소가 피해자를

88) 홍미영의원 대표발의안(2005.6.13, 의안번호 2028) 제56조 내지 제57조. 법안 설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호중(2005),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연내통과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의회전환연합 참조.

상담하거나 지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호처분이 내려졌는지 안다면, 거기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고 보다 적절하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탁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담이나 지원 등 보호업무를 하고 있는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 대하여 법원이 보호처분의 결정이나 변경, 정지 취소 결정을 할 때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2007. 7. 11 개정으로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의 장애에 대한 보호명령 발령 등에 관한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제15조 제4항, 제16조 제7항, 제17조 제3항 등).

다. 일본과 미국의 이주여성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최근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가정폭력피해자 중 외국인여성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물론 가정폭력특례법의 적용은 국적 및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적용되지만, 언어나 장애로 인하여 이러한 피해자의 인권이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배우자폭력방지법에서와 같이 가정폭력관련 직무관계자에 의한 배려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직무관계자는 피해자의 국적,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그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특례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적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미국의 1994년 「폭력범죄방지 및 집행에 관한 법」 제4편 여성폭력방지법⁸⁹⁾ 제G장은 “구타 받는 여성 및 아동의 보호”라는 표제 하에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을 갖는 자로부터 구타, 학대받은 배우자 및 자녀가 국외추방의 우려 없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합법적 거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2005. 9. 25부터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자신의 잘못 없

89) Title IV, sec. 40001-40703 of the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 HR 3355.

이 이혼을 하거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할 경우, 출생한 자녀가 있으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도 생모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거주(F-2) 자격으로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는 등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적업무처리지침』의 개정(2006. 5. 9 시행)으로 국민과 혼인한 후 그 혼인관계가 파탄된 외국인이 「공인된 여성관련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국적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⁹⁰⁾ 이러한 조치는 특히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안정적인 국내 체류와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⁹¹⁾

6. 소 결

가정폭력은 일반폭력과 달리 지속되고 반복되는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은폐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방관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되었고, 법 시행 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수차례 개정과 함께 올 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피해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그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침해하며 나아가 사회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 장에서는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가정폭력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가정폭력특례법이 그 동안의 개정과정을 통하여 현재 담고 있는 주요내용과 공식적으로 나타난 가정폭력통계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변화 분석, 법 집행담당자와 NGO

90)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이혼 후, 귀화신청을 하고자 할 때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판결문, 불기소결정문, 진단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국내 법적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이주 여성들이 입증자료를 구비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91) 법무부 보도자료, 2005. 9. 26 “외국인 이혼자, 국내 체류·취업 길 넓어진다”와 2007. 1. 10 “혼인파탄사유 확인서 발급 여성관련단체 선정” 참조. <http://www.moj.go.kr>.

관계자의 심층면접을 통한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로 앞으로의 법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가정폭력사건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사법기관의 가정폭력사건 처리과정을 공식 통계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가정폭력사건 발생은 가정폭력특례법의 시행과 더불어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2003년까지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4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가정폭력사건이 실제 감소한 것보다는 초기 형사법적 대응의 실패와 불신으로 인해 신고율이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경찰단계에서는 가정폭력사건 개입시 대체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계도조치를 통해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불구속 재판 확대 방침에 따라 해마다 구속영장 기각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형사사건의 구속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의 구속율의 급감은 가정폭력특례법 상의 “피해자 의사 존중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경찰의 응급조치 활용율은 법 시행초기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과거에 비해 가정폭력피해자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으나, 가해자에 대한 주거지로부터의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 경찰의 임시조치 신청율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구속율의 저하와 임시조치 신청 및 집행율의 저하는 결국 피해자의 안전 및 재발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실태를 보면, 초기에 20%를 넘던 기소율이 점차 낮아져 2006년 현재 14% 정도에 머물고, 불기소율은 점차 높아져 2003년부터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급 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율은 다소 낮아지고 있다. 가정폭력특례법의 시행 초기 가정폭력사건을 가벼운 폭력사건 내지 기소

유예로 처리하거나 행위자를 벌금형에 처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것에 대한 비판에서 지금은 구약식 기소율 및 기소유예율이 많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검찰단계에서 불처분율이 총 접수사건의 50%를 넘는 것은 검사의 가정폭력에 대한 시각과 가치관에 따라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법적 개입이 공백으로 남을 여지가 있다.

법원에서의 가정폭력사건의 처분내역을 보면, 보호처분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불처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보호처분 중 3호(사회봉사·수감명령), 4호(보호관찰) 처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7호(상담위탁) 처분이 증가하는 추세임에 반해 1호(접근행위제한) 및 2호(친권행사제한) 처분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법원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불처분율이 높은 것은 법원 실무 관행 상 가정폭력사건이 발생 후 법원에서 심리기일에 들어가기까지는 5~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 중 상당한 수가 사건의 즉시성을 상실하여 범정에 출석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미 이혼을 하여 가족관계가 청산되었든지, 서로 화해하여 가정생활을 원만히 영위하고 있는 등 보호처분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 가정폭력특례법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법 시행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비방안을 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검찰과 피해자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NGO 관계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경찰의 미온적인 응급조치로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지닌 피해자들은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며 이러한 형사절차에 대한 불신이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전히 가정폭력은 가정내 문제라는 인식이 집행담당자들에게 잔존하고 있었고,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가정폭력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대응은 바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라는 가정보호에 중점을 두는 법의 목적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우선적으로 바라는 자신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법의 목적에서 “가정보호”는 삭제되어야 하며, 긴급체포권한 부여 등 경찰의 응급조치권 강화와 함께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을 나누는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하며, 보호사건으로 갈 경우 가해자의 성행교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물질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아울러 임시조치에 대한 신속성을 도모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사적 구제조치로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그리고 법 집행담당자들이 제대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의 특수성과 권력성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전환을 위한 성인지 교육도 지속적이고 의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법의 존재에 대한 인지도는 83.4%에 이르고 있으나, 법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42.4%에 불과하였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경험 및 신고 여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가정폭력특례법의 활용도를 살펴본 결과, 가정폭력의 여러 유형 중 8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은 전체 응답자(716명)의 14.3%(102명)가 정신적 폭력의 유형이든 신체적 폭력의 유형이든

한 번이라도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신고까지 이른 건은 거의 없었다. 이처럼 현재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경험에 비해 신고율이 낮은 것은 ‘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와 ‘사건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자 중 피해 당사자가 본인이 될 경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또한 ‘가족을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와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가 동일한 비중으로 나타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사의 부재”와 “형사 절차에 대한 불신”이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정폭력특례법의 효과성에 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7.4%가 가정폭력특례법의 제정이 가정폭력범죄 감소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 가정폭력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특례법이 가정폭력범죄 감소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자들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강화(52.1%)와 가정폭력특례법의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 유도(27.7%),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유도(20.2%) 순으로 꼽았다.

또한 향후 가정폭력특례법의 내용에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강화(58.5%),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인권 보장(33.3%),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육 및 치료감시 체계 강화(21.3%)와 성행교정 조치 불이행 시 제재규정 강화(21.2%) 순으로 선호하였다.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가정폭력 피해 경험에 비해 신고율이 낮다는 것이다. 법의 적용대상인 일반 국민의 의식 자체에서 가정폭력의 신고를 주저하고 적극적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법이 아무리 완벽하게 정비된다 할지라도 그 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제대로 효능을 발휘하기 못할 것이다.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가정폭력 신고를 주저하는 원인에 대한 이해와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뒷받침을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여성상에 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그리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경찰, 검찰 및 법원의 자체적인 노력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이 요망된다.

라. 외국 입법례의 우리 법에 대한 시사

최근 가정폭력특례법의 제11차 개정으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들의 권리가 확대되고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그 동안 지적받아 왔던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경찰의 응급조치권 강화를 위한 의무적 체포제도의 도입과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선택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사적 보호명령제도 도입 등 그 동안 문제제기 되었지만 개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대만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의무적 체포란 경찰관에게 의무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나 보호명령 위반자의 체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범죄 혐의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존재하는 경우 경찰관은 체포할 의무가 있고,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많은 주의 가정폭력방지법에 의무적 체포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배경에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의 용인이나 여성 피해자의 진술 경시 등 경찰관의 성 편견(Gender Bias)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체포 회피와 그 결과 경찰에 알린 뒤에 피해자가 더욱 가혹한 폭력을 당한 일이 다수 발생하였던 것이 있다. 미국에서의 의무적 체포는 수사 초기단계에서 경찰관의 성 편견에 의하여 가정폭력사건이 특별하게 취급되어 형사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고, 경찰관의 적극적 개입과 가해자의 구속에 의하여 폭력 위협로부터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긴급하게 보호하며, 보호명령위반 시 의무적 체포를 함으로써 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에 기능하고 있다. 미국법에서의 체포는 형사사법작용의 시작이고 우리 법에서의 체포

는 범죄 혐의가 확고한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성격의 차이가 있어 동일한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미국의 의무적 체포가 현실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에 활용하려는 대처는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임시조치에서의 피해자의 권한 확대 및 신속성 도모의 법체계 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과 대만의 민사보호명령제도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민사보호명령은 배우자폭력방지법에 의해 창설된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을 발하고 명령위반자에게는 형벌을 과하는 법제도이다. 대만도 가정폭력방지법 제2장에서 민사보호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두 나라 모두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보호명령제도를 확충해 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일본과 대만의 민사보호명령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자는 개정안⁹²⁾이 제출되었지만 제11차 개정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에 산재해 있는 피해자보호조치들을 통합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한 민사법적 조치로 구상된 것이다. 이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여부와는 무관하게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시조치나 보호처분과는 독립성을 갖는 민사법적 조치로서 법체계적 난점을 극복하면서 피해자보호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피해자 보호조치가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종속되어 있어 발생하는 피해자보호조치의 공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92) 이호중(2005b), 앞의 글 참조.

IV

성매매 관련 법제

1. 서 론	225
2. 성매매처벌법의 주요 내용	25
3. 성매매처벌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4
4. 성매매처벌법 인지도 조사결과	20
5. 성매매 관련 외국 입법례	32
6. 소 결	308

1. 서론

현행법 상 성매매는 성을 사는 행위와 성을 파는 행위를 의미하며, 모두 금지하고 있다. 성매매여성의 경우 성판매자와 성매매피해자로 구분하고 성매매피해자는 불처벌하고 있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로 보고 성매매여성은 사회의 구조적 피해자로서 모두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관점이 성매매처벌법 제정과정에서 하나의 선명한 목소리를 낸 바 있으나, 현행법은 성매매강요 등 강제에 의한 경우만 성매매피해자로 개념정리하였다. 성매매여성을 지원하는 현장에서는 성판매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피해자로 인정해서 처벌하지 말아야 하며, 자발과 강제에 의한 이분법적 사고는 불필요하다는 관점이 담긴 법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젠더관점에서 성매매를 본다면 성매매는 여성인권에 대한 침해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전형적인 것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나, 이하에서는 현행법의 성매매 개념에 의거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성매매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며, 2004년 제정·시행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향후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2. 성매매처벌법의 주요 내용

가. 제정이유 및 개정연혁

1) 제정이유 및 내용

우리사회의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등행위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알선·유인하는 등 성매매의 공급 및 중간 매개체들이 다양화되어 계속해서 확산되었다. 따라서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벌칙에 있어서 성매매 강요·알선 등 행위에 대하여 형태별로 다양화하여 형량을 강화하며, 성매매알선등행위로부터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성매매 강요·알선 등 행위자가 성을 파는 자에 가지는 채권을 무효화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매매피해자의 형사처벌 제외, 수사·재판과정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신고자 등에 대한 법정심리의 비공개를 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제정되었다.

2) 개정연혁 및 내용

성매매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감호위탁을 수행할 지원시설의 인적·물적 자원이 미약하여 현실적인 효력이 떨어지고 시설에의 입소를 강제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감호위탁 조항을 삭제(2005. 3. 24)하여 지원시설이 성매매여성들의 자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법 제정취지를 살리려 2005. 3. 24 법률 제7404호로 개정되었다.

3) 최근의 성매매 관련 개정법률안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2005. 3. 30)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개념 정의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과 집행실무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으로서 성매매대상이 된 자를 성매매피해자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세환의원 대표발의, 2005. 4. 15)

현행법은 ‘청소년 또는 심신상실·미약자 그리고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임을 구성요건상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약자를 성매매에 이용하는 행위는 최근 발생한 하월곡동 성매매업소집결지 화재사건의 경우에서도 드러났듯이, ‘위계 또는 위력’의 사용과 관계없이 비난가능성이 높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필요성이 크므로 ‘위계나 위력’이란 문구를 구성요건에서 삭제하여 사회적 약자로 하여금 성매매행위를 하게 한 자를 엄히 처벌하려는 것이다.

- ①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여부를 불문하고 청소년이나 사리분별 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미숙하거나 결여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8조 제2항 제2호).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경숙의원 대표발의, 2005. 8. 18)

성매매된 자를 보호하고 성매매를 알선·조장·유인·권유 또는 강제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의 시행결과 성매매된 자의 보호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조장·강제하는 자에 대한 조치도 충분하지 않는 점들이 있어 제도적인 미비점들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이다.

- ① 성매매를 하였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를 성매매피해자로 본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성매매피해자의 정의,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시킬 수 있다는 것, 증인에 대한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사전에 고지

하여야 한다.

- ③ 성매매행위를 인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성매매알선등행위자의 체포 및 범죄수사의 개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성매매피해상당소에의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의료기관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건축지도원, 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소방대 대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설이나 장소가 성매매 등 금지행위에 제공된 것으로 불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성매매범죄의 수사에 있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가 성매매피해자임을 주장할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⑥ 사법경찰관리는 폭행 또는 협박, 위계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이용하여 생활한 자의 위법사실 및 인적사항 등 자료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해당업소 및 건물에 대하여 위법사항을 조사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⑦ 사법경찰관리는 성매매 관련 범죄를 한 자를 수사하여 송치한 후에도 당해 범죄행위가 발생한 장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감시·감독하여야 한다.
- ⑧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자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자가 성매매피해자의 채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받은 금원은 그 제3자 또는 성매매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⑨ 상습으로 제18조 내지 제2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⑩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의 수입이나 성을 파는 행위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지불받는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

문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가 받거나 받을 금품 또는 이를 원인으로 조성된 자산을 받아 생활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2005. 10. 1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성매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손을 이용한 행위도 유사성교행위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률적용시 혼돈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

-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규정에 구강·항문 뿐 아니라 손을 이용한 행위도 유사성교행위로 인정하도록 명시한다.

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2006. 11. 2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일반 국민이 신고하도록 촉진·장려함으로써 성매매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방안의 하나인 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보상금 지급제한 사유도 보상금지급 사유와 마찬가지로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 법률 체제상 타당하기 때문에 현재 하위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지급제한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이다.

- 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인신매매등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를 한 경우,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가 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경화의원 대표발의, 2006. 12. 20)

성매매·성매매알선행위 및 성매매목적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현행법이 제정·시행된 후에도 성매매가 근절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향락산업 등의 번창으로 오히려 성매매행위가 늘어나는 경향마저 있어 이에 대처하고 법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산업형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고자 한다.

- ① 3차 서비스 업종, 식품접객업소 및 안마시술소가 본래의 1차적 목적인 서비스 외에 2차적 서비스의 성매매를 하는 것을 산업형 성매매라고 정의한다.
- ② 시·군·구의 장은 연 1회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성매매 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4조의 금지행위를 한 자를 고발하도록 한다.
- ③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건축지도원, 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피해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④ 몰수·추징한 재산은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운영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명옥의원 대표발의, 2007. 4. 5)

최근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 ‘해외성매매’가 증가하면서 국가이미지 실추는

물론 교민사회 위상도 함께 추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성매매관련법 제정 이후 오히려 ‘해외성매매’는 급증하고 있는 것은 현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해외성매매’를 방지할 직접적인 근거조항의 미비로 인한 것이다. 이에 ‘해외성매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제협력 증진 및 관련 부처간 종합대책 추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외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 ① 국가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와 해외성매매 방지를 위해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 강화에 노력해야 함을 명시한다.
- ② 국가가 해외성매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대통령이 정하는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 ③ 국가는 국외에서 성매매피해자가 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게 국내로의 안전한 복귀를 위해 국가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아)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홍미영의원 대표발의, 2007. 9. 6)

성매매 방지관련 법령의 제정 및 시행 이후 정부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탈성매매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성매매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으며, 창업·취업자의 배출 등 자활 성공사례가 쌓여 가고 있다. 또한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추진과 국민의식 개선사업으로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최근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자유업종 형태에서 빈발하는 데 반하여, 경찰의 단속이 어렵고 성매매 알선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행정관청은 근거법령이 없어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이 불가능하여 성매매방지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고, 또한 개별법규에 성매매 관련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영업도 행정처분의 기준이 상이하여 통일된

행정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등”의 범위를 정하여 성매매 행위 등이 빈발하는 자유업종의 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별법에 산재한 성매매 행위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의 통일성을 기하며, 성매매 알선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사전영장발부 없이 경찰의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방지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 ① 다른 법령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행위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있는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②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등의 범위를 성매매 행위와 관련하여 적발된 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을 하는 업소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알선 행위가 빈발한다고 결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로 규정한다.
- ③ 경찰서장은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등에 출입하여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를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 ④ 행정관청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 공표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반기별 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나. 법의 목적과 구조

이 법은 성매매와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제1조) 성매매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성산업 축소 및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의 구조는 총칙(제1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제2장), 보호사건(제3장), 벌칙(제4장)의 총 4장과 부칙, 28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에는 법의 목적(제1조), 성매매, 성매매알선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피해자 등에 관한 정의(제2조), 국가 등의 책무(제3조), 금지행위(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제2장에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제6조), 신고의무 등(제7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8조), 심리의 비공개(제9조), 불법원인에 의한 채권무효(제10조),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제11조)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제3장에는 보호사건의 처리(제12조), 관할(제13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제14조), 보호처분의 기간(제15조), 보호처분의 변경(제16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17조)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1) 성매매 등의 개념(제2조)

가)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윤락행위’의 개념을 폐기하고 ‘성매매’ 개념을 도입하였다. 성매매처벌법에서의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성교행위 외에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개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와 관련해서는 ①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② 위와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③ 위와 같은 행위가 행하여진 것을 알면서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이거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④ 위와 같은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3호).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서 ‘지배·관리 하에 둔다’는 것의 의미에 관해서는 ①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② 타인을 고용·감독하는 자,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자 또는 그를 보조하는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다) 성매매피해자 개념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①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②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③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④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4호).

2)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가) 금지행위(제4조)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는 행위와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일체 금지한다(제4조).

나) 처벌규정

(1) 성매매강요죄(제18조)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②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③ 친족·고용 그 밖의 관계로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8조 제1항). 또한 ① 제18조 제1항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자, ②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③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8조 제2항).

그리고 ①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②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를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자, ③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④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8조 제3항). 또한 ①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②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제19조)

①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②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 자, ③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9조 제1항). 또한 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②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③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9조 제2항).

(3) 성매매관련 광고행위(제20조)

①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자, ②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 ③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20조 제1항), 영업으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0조 제2항). 또한 영업으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0조 제3항).

(4) 단순 성매매자 및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위반자(제21조)

단순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제1항),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를 위반(제7조 제3항)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

<표 IV-1>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처벌법 처벌형량 비교

구성요건	윤락행위등방지법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강요행위	5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강요 및 대가수수 등	7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유기징역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	10년 이하 징역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함
감금, 낙태강요, 인신매매 등	-	3년 이상 유기징역
마약 이용 성매매 강요 등	-	5년 이상 유기징역
성매매 유인·권고	·영업 :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일반 : 2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
성매매 알선 등 영업	5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 모집, 직업소개, 알선, 광고행위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광고제작·공급	-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광고물 배포	-	1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 행위자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동일
신고자, 피해자 정보 누설	-	500만원 이하 벌금

다) 성매매관련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제25조)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관련 광고행위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과 재산을 몰수하거나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라) 형의 감면(제26조)

성매매, 성매매알선등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마) 청소년성보호법 상 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 관련 특별규정

(1) 청소년대상 성매매범죄(제2조)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으로 ① 성교 행위, ②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③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④ 자위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4호).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를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성교, 유사성교행위 이외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상대의 각종 성관련 행위를 범죄로 포함시킨 것은 청소년의 성보호의 차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2) 청소년대상 성매매범죄의 처벌과 절차특례

(가) 청소년 매매행위(제9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나) 청소년 성구매행위(제10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제11조)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제1호), 위계,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제2호),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제3호),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제4호)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항).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항). 또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라) 청소년 이용 알선영업행위(제12조 제1항)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제1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제3호),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제4호)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마) 청소년 이용 알선영업행위(제12조 제2항)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제1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제2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제3호),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제4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 청소년 이용 알선영업행위(제12조 제3항)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소년대상 성매매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

(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제32조, 제33조)

청소년대상 성매매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거나 판결로 신상에 대한 등록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열람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다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이로 인해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제3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 송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33조 제1항).

(나) 등록정보의 관리(제35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를 최초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부터 1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다.

(다) 등록정보의 열람(제37조)

법원은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열람정보(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제4항)를 5년간 열람에 제공토록 열람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

에는 열람명령을 내릴 수 없다(제1항).

열람명령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제3항).

바) 보호처분

(1) 보호사건의 처리(제12조)

성매매행위자, 즉 성판매자와 성구매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제12조 제2항).

보호사건의 관할은 성매매를 한 장소나 성매매를 한 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으로 한다(제13조 제1항). 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행한다(제13조 제2항).

(2) 보호처분(제15조)

판사는 심리의 결과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성매매 장소에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거나 각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처분은 100시간 이내로 하고 그 외의 처분은 6월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제15조).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보호처분을 받은 자,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운영하지 아니하는

수탁기관에 보호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의 처분을 한 때에는 교육·상담·치료나 보호관찰에 필요한 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라.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보호규정

1) 성매매피해자 형사처벌 대상 제외 및 신고자 등의 보호(제6조)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다(제6조). 법에서는 특별히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될 만한 사안의 경우 몇 가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매매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이러한 조치는 그 여성의 인권을 또 다시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매매 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고자나 성매매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친족 등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판사, 검사 또는 주거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구두로도 가능하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

2) 시설장 등의 신고의무(제7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제7조).

3)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8조)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신고자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1항, 제2항). 특히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 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제3항).

4) 심리의 비공개(제9조)

법원은 신고자 등의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항). 증인으로 소환 받은 신고자 등과 그 가족은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제2항). 재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제3항).

5) 불법원인채권 무효규정(제10조)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하고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같다고 하여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제1항).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불법원인과 관련된 의심이 있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매의 유인·강요나 성매매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제2항).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제3항).

6)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제11조)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당해 외국인 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항). 또 검사는 이 성매매범죄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제2항).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 중에는 당해 외국인 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제3항). 그리고 수사기관은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하는 때에는 「소송촉진등에관

한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제4항), 성매매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한 때에는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되지 않는다(제5항).

한편 2002. 12. 5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득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동법 제22조의2 제1호). 이 조항을 통해 외국인 여성의 경우 성매매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여권 등을 확보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로 보아 엄하게 처벌하고, 그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 수사 및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출국을 명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은 외국인 여성에게 지원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배상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국제적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의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3. 성매매처벌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가. 성매매처벌법 관련 공식통계

1) 성매매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표 IV-2>는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 성매매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수를 보여준다. 이를 행위자유형별로 보면, 업주 등 관련자는 2004년 16.7%, 2005년 22.0%로 증가했다가 2006년 10.5%로 감소, 2007년 8월 현재 14.4%로 다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성구매자는 2004년 60.0%, 2005년 62.0%, 2006년 79.0%, 2007년 8월 현재 70.1%이다. 성매매여성은 2004년 23.3%, 2005년 16.0%, 2006년 10.5%로 감소하고 있고, 2007년 8월 현재 15.5%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성구매자의 검거비율이 60% 이상으로 높은 반면, 업주 등 관련자나 성매매여성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중 성구매자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 때는 성구매자 처벌근거가 법에 있었으나 처벌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훈방해 오던 것을 성매매처벌법 시행에 따라 성구매자를 적극 처벌하게 되었고, 집중테마 단속 및 영업장부·신용카드 전표 등에 대한 추적수사 등으로 1개업소 단속 시 수십, 수백 명의 성구매자가 단속, 검거된 결과이다.⁹³⁾

<표 IV-2> 성매매사범 단속 현황(2004~2007)

(단위: 명(%))

구분	검거인원	조치		성매매 사범		
		구속	불구속	업주 등 관련자	성구매자	성매매여성
2004	16,947	1,606	16,351	2,824 (16.7)	10,180 (60.0)	3,943 (23.3)
2005	18,508	829	17,679	4,071 (22.0)	11,474 (62.0)	2,963 (16.0)
2006	34,795	569	34,226	3,653 (10.5)	27,488 (79.0)	3,654 (10.5)
2007. 8	17,740	194	17,546	2,559 (14.4)	12,429 (70.1)	2,752 (15.5)

출처: 경찰청 자료.

성구매자 단속, 검거비율이 높은 관계로 상대적으로 업주의 단속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 입법목적의 하나가 성매매알선행위의 처벌강화라고 할 때, 업주 등 관련자에 대한 단속, 검거비율은 현재보다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성매매여성의 단속비율은 2004년 23.3%, 2005년 16.0%로 줄어들다가 2007년 8월 현재 15.5%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단속과정에서 입건되지 않는 성매매피해자의 인원이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자료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성매매피해자 인정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그 이후 자활지원과정으로의 연계부분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여 성매매피해자 지원대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93) 이금형(2007),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과 및 향후 치안대책”, 『성매매특별법 시행 3주년 그 성과와 과제』(2007. 9. 17).

2) 성매매사범 유형별 특성

성매매사범 중 경찰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성구매자(남성), 성매매여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⁴⁾

가) 성매매사범 중 성구매자의 특성

성구매자의 직업, 연령, 동종전과여부, 성매매이용장소나 경로를 보기로 하겠다.

<표 IV-3> 성구매자(남성)의 직업별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회사원	자영업	무직	공무원	학생	기타	전문직
2004. 9~10	2,352	975	458	342	20	79	478	0
2005	11,474	4,552	2,187	1,782	123	635	2,085	110
2006	27,488	15,650	5,120	2,156	153	790	3,178	441
2007. 7	10,260	5,070	1,563	1,257	70	330	1,813	157

출처: 경찰청 자료.

우선, 성구매자의 직업별 특성을 보면, 2004년 성매매처벌법 시행 후 특별 단속 시 성구매자의 분포도에서 회사원(41.5%)과 자영업(19.5%)이 61.0%를 차지하였으며, 2005년 58.7%, 2006년 75.5%, 2007년 7월 현재 64.6%로 특별 단속시의 분포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회사원과 자영업자의 왜곡된 접대 음주문화에 이어지는 2차 성매매 문화가 건전 성문화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무직의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무직으로 적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한다.

94) 이금형(2007), 앞의 글, 65~66면 참조.

<표 IV-4> 성구매자(남성)의 연령별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04. 9~10	2,352	20	727	1,060	407	114	24
2005	11,474	73	2,739	5,091	2,751	697	123
2006	27,488	23	7,349	12,668	5,823	1,465	160
2007. 7	10,260	47	2,636	4,782	1,958	603	234

출처: 경찰청 자료.

성구매자의 연령별 특성을 보면, 2004년 성매매처벌법 시행 후 특별단속 시 대부분 기혼인 30~40대가 약 62.0%였고, 2005년~2007년 30~40대가 약 67.0% 이상을 차지하였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왜곡된 음주·접대문화로 성매매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5> 동종전과

(단위: 명(%))

구분	계	전과없음	1범	2범	3범	4범	5범 이상
2004. 9~10	2,352	미분류					
2005	11,474 (100.0)	11,064 (96.4)	314	75	12	6	2
2006	27,488 (100.0)	26,541 (96.6)	726	180	29	1	11
2007. 7	10,260 (100.0)	9,964 (97.1)	259	22	4	4	7

출처: 경찰청 자료.

성구매자의 동종전과 상황을 보면, 성구매사범 중 전과없음이 2005년 96.4%, 2006년 96.6%, 2007년 7월 현재 97.1%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5년 초범 이상이 3.6%, 2006년 3.4%, 2007년 7월 현재 2.9%로 동종전과자가 소폭이지만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성매매처벌법 시행 후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표 IV-6> 이용장소 및 수단

(단위: 명)

구분	계	집결지	유흥 단란	다방	숙박 업소	안마 이발	인터넷	마사지 휴게텔	기타
2004. 9~10	1,931	76	407	141	미분류	57	미분류	189	1,061
2006	27,488	1,020	739	436	1,026	9,042	4,486	미분류	10,739
2007. 7	10,260	616	690	128	161	3,303	900	2,022	2,440

출처: 경찰청 자료.

또한 성구매자들의 성구매 이용장소 및 수단을 보면, 성구매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는 안마·이발소(2006년 32.9%, 2007년 32.2%)였으며, 2007년의 경우 마사지·휴게텔(19.7%) 순이며,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2006년 16.3%, 2007년 8.8%를 차지하였다. 집결지를 이용한 경우는 2004년 특별단속시 4%, 2006년 3.7%, 2007년 6%로 전체적으로 볼 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성매매사범 중 성매매여성의 특성

경찰에 단속된 성매매여성의 연령, 업소 종사기간을 보면 다음과 같다.⁹⁵⁾ 여기서 성매매여성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경우가 해당된다.

<표 IV-7> 성매매사범 중 성매매여성의 연령별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13세 이하	14~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2004	3,943 (100.0)	0	358 (9.1)	2,475 (62.8)	815 (20.7)	248 (6.3)	47 (1.2)
2005	2,963 (100.0)	4 (0.1)	211 (7.1)	1,789 (60.4)	693 (23.4)	202 (6.8)	55 (1.9)
2006	3,654 (100.0)	0	99 (2.7)	2,235 (61.2)	946 (25.9)	309 (8.5)	65 (1.8)
2007. 7	2,286 (100.0)	25 (1.1)	197 (8.6)	1,158 (50.7)	528 (23.1)	184 (8.1)	194 (8.5)

출처: 경찰청 자료.

95) 이금형(2007), 앞의 글, 66~67면 참조.

성매매여성의 연령별 특성을 보면, 2007년 7월 현재 20대(50.7%), 30대(23.1%), 14~19세(8.6%), 50대(8.5%)의 순으로 나타났고, 다른 해도 대체로 이와 비슷하다. 전체적으로 20대 연령은 감소하고 있고, 30~40대 연령은 증가하고 있다.

19세 이하의 경우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채팅에 의한 성매매가 많을 것으로 보이며, 이 연령대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지는 않고, 보호처분이 명해질 수 있다.

<표 IV-8> 성매매사범 중 성매매여성의 종사기간

(단위: 명)

구분	계	1년 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5년 이상
2004. 8~12	1,456	500	412	258	158	55	73
2005	2,963	1,695	533	390	208	63	74
2006	3,654	2,271	804	365	129	43	42
2007. 7	2,286	1,612	424	147	64	21	18

출처: 경찰청 자료.

성매매여성의 종사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2004년 34.3%, 2005년 57.2%, 2006년이 62.1%, 2007년 70.5%로 증가하였고, 3년 미만이 2004년 80.4%, 2005년 88.4%, 2006년 94.1%, 2007년 95.5%이며, 3년 이상 종사자는 2004년 19.6%, 2005년 11.6%, 2006년 5.9%, 2007년 4.5%로 감소하였다.

3) 수사기관의 성매매사건처리 현황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의 기소율을 보면, 2004년 76.5%였던 것이 2005년 57.5%, 2006년 19.1%로 갈수록 기소율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불기소율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기소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처분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년의 경우 불기소 중 기소유예비율이 높아진 것(76.4%)은 성구매자에 존스쿨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가 많아진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2006년의 경우 기소인원 4,839명 중 구약식 인원이

4,277명(88.3%)으로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만큼 벌금을 선고받는 인원이 많다고 하겠다.

<표 IV-9> 성매매사건의 검찰처분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기소							불기소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성매매보호송치	소계	기소유예	협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구속	불구속												
성매매처벌법	2004	51 (100.0)	39 (76.5)	8	7	24	-	-	1	11 (21.6)	7	3	-	-	1	-
	2005	325 (100.0)	187 (57.5)	15	15	157	-	-	6	124 (38.2)	97	26	-	1	7	1
	2006	25,331 (100.0)	4,839 (19.1)	224	338	4,277	28	15	324	19,361 (76.4)	17,172	2,027	4	158	688	76
윤방법	2004	9,869 (100.0)	4,248 (43.0)	199	235	3,814	13	-	-	5,366 (54.4)	4,399	545	-	422	157	85
	2005	2,008 (100.0)	770 (38.3)	18	49	703	2	-	6	1,122 (55.9)	851	235	1	35	54	54
	2006	151 (100.0)	52 (34.4)	2	6	44	-	-	-	85 (56.3)	36	31	-	18	9	5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2007』.

다음으로 범죄자에 대한 구속, 불구속 상황을 보면, 2006년의 경우 구속인원에 비해 불구속 인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비해 2005, 2006년으로 갈수록 구속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바, 성매매처벌법 시행초기에 비해 수사기관의 처벌의지가 약화된 것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역시 기소율이 2004년 43.0%, 2005년 38.3%, 2006년 34.4%로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따라서 불기소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법원의 성매매사건 처리현황

법원의 성매매사건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제1심법원의 선고결과를 보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 중 2005년에 처리된 765명 중 집행유예가 323명(42.2%), 재산형 294명(38.4%), 유기징역 39명(5.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

다. 그런데 이 수치는 성매매강요, 알선, 구매, 판매행위 등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범죄유형이 포함된 것이다.

<표 IV-10>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 제1심 법원 처리현황
(단위: 명(%))

구분	접수	처 리												
		처리	판결										소년 부 송치	기타
			사형	자유형			자격 형	재산 형	선고 유예	무죄	공소 기각	기타*		
무기	유기	집행 유예												
2005	796	765 (100.0)	-	-	39 (5.1)	323 (42.2)	-	294 (38.4)	6	4	-	-	-	93
2006 ⁹⁶⁾	2	2	-	-	-	-	-	2	-	-	-	-	-	-

주: 기타*에 형의 면제, 면소, 관할위반 포함.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5~2007』.

<표 IV-11>을 보면,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사범 중 2004년에 처리된 989명 중 집행유예가 454명(45.9%), 재산형 362명(36.6%), 유기징역 84명(8.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행유예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에서 2004년 사이에 50.9%, 48.2%, 48.1%, 45.9%로 비율이 약간 떨어지고 있고, 재산형, 즉 벌금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30.2%, 32.7%, 35.4%, 36.6%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실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14.1%, 2002년 12.5%, 2003년 6.4%, 2004년 8.5%로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6) 2007년 발간된 『사법연감』에 의하면, 2006년 현재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으로 제1심법원에 접수된 인원은 2명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인원이 이렇게 적은 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표 IV-11>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사범 제1심 법원 처리현황
(단위: 명(%))

구분	접수 건수	처 리														
		합계	판결											소년 부 송치	기타	
			사형	자유형			자격 형	재산 형	선고 유예	무죄	형의 면제	면소	관할 위반			공소 기간
무기	유기	집행 유예														
2001	1,015	949 (100.0)	-	-	134 (14.1)	483 (50.9)	-	287 (30.2)	4	-	-	-	-	1	4	36
2002	949	1,080 (100.0)	-	-	135 (12.5)	521 (48.2)	-	342 (32.7)	2	2	-	-	-	3	9	65
2003	888	878 (100.0)	-	-	56 (6.4)	422 (48.1)	-	311 (35.4)	10	8	-	-	-	2	-	69
2004	962	989 (100.0)	-	-	84 (8.5)	454 (45.9)	-	362 (36.6)	9	11	-	-	-	2	1	66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5~2007』.

나. 성매매 관련 정책

1) 「여성정책기본계획」 상의 성매매 근절정책 이행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에 따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행위 등을 엄중처벌하고, 이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2000. 1)하고,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수립(2002년)하였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서는 10대 핵심정책과제 중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인권보호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정책과제로 성매매와 관련하여 ‘8-1. 성매매 방지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두고, ‘8-1-2. 성매매관련 법제의 정비 및 법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①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안 마련(남녀차별적 ‘윤락’ 개념 대신 중립적인 ‘성매매’ 개념 도입, 성매매중간알선업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여성피해자 인권보호강화 등), ② 성매매업소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마련, ③ 성매매·인신매매 수사관계자 직무교육 강화·④ 성매매·인신매매 관련 정

부통계의 정비를 계획하였다.

<표 IV-1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실적(2006)
8-1-2. 성매매 관련 법제의 정비 및 법적용의 실효성 제고

주관부처	계획	실적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관련법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회의 참석 등 - 성매매관련지시 및 지침 ○ 성매매 관련 수사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여성 전용조사실 전국 청 확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20. 법무부 검찰국장 주재 ‘인신매매방지 유관기관 대책회의’ 참석 ○ 5. 16. ‘여성관련 범죄수사 모니터링 업무 철저 지시 - 성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수사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과 피해자 인권방지를 위하여 설문지 배포 ○ 11. 2. 인신매매 방지 유관기관 대책회의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인신매매 방지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방안 ○ 12. 31. 아동·여성전용조사실 설치 확대(26개청에서 30개청)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전담인력 및 부서확대로 수사역량 강화 ○ 성매매 알선업소 건물주 처벌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청계 미설치 1급지 경찰서 24개서 여청계 신설 및 인력증원(94명, 2007년 반영) ○ 「117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 7. 20 정식직제 반영(6명) ○ 14개 지방 「ONE-STOP지원센터」 개소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상담, 수사,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 인터넷 성매매 전담팀(215명) 보강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및 해외 성매매 알선사이트 순찰강화 ○ 경찰서별 성매매관련 풍속업소 밀집지역 특별관리·지속적인 단속 ○ 성매매 업소 건물주 처벌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주에 대한 처벌강화로 성매매 근절 및 단속의 실효성 제고 ○ 경찰단속 병행 대국민 인식개선 노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및 집중단속 강화
국가 청소년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예고(5. 18~6. 8)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10. 26) - 법제처 심사(11. 13~2007. 1)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등록·열람제도 및 취업제한 확대·강화 •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상실 청구 및 피해자 보호처분 결정 • 성폭력피해자 응급조치 및 접근금지 등

출처: 여성가족부(2007),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2006년 시행실적 및 2007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표 IV-13>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2007)
8-1-2. 성매매 관련 법제의 정비 및 법적용의 실효성 제고

주관부처	시행계획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정책 반영에 필요한 통계 재생산을 위해 성매매알선등처벌법에 대한 죄명 세분화(연중) ○ 여성관련범죄 수사혁신 토론회 개최(연중) ○ 아동·여성전용조사실 전국 청 확대 설치
국가청소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추진(계속) 및 하위법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관회의 심사(1. 18) 및 국무회의 심사(1. 23) - 국회상정(1. 30) - 개정안 공포(2007년 상반기) - 하위법령 개정 및 시행(2007년 하반기)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청계 설치 및 경찰관 증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급지 경찰서 중 여청계 미설치 24개서 여청계 설치완료(2007년 상반기) - 향후 여청계 미설치 2, 3급지 경찰서(110개서)에 대한 단계적 설치 추진 ○ 「여성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운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E-STOP센터」, 「117센터」 운영활성화 및 NGO 등과 연계 실질적 보호 및 구호조치 - 센터 통합으로 전담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추가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북부지역 센터 추가개소(6월한)
2008년도 이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 검토 ○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사건 처리지침 등 성매매사범 관련 지침의 지속적 보완 ○ 여성관련범죄 수사혁신 토론회 개최 ○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피해자 상담실 설치·운영 전국 확대 및 여성관련범죄 전문성 강화 위해 피해여성에 대한 조사기법 개발

출처: 여성가족부(2007),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2006년 시행실적 및 2007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또한 ‘8-1-4. 국제적 성매매예방 및 외국인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하여 ① 성매매·인신매매에 대한 정기적 조사·연구, ② 여성긴급전화 1366의 3자통역시스템 구축으로 외국인 피해신고 활성화, ③ 외국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용쉼터 운영, ④ 외국인 피해자 무료법률 구조사업 지원, ⑤ 성매매·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정부 간 정보공유 및 협력강화를 위한 지역 내 네트워크 결성, 국제전문가 회의 개최 등)를 계획하였다.

추진성과를 보면, 2007년 경찰청은 ① 성매매 관련 업소에서의 업주의 폭행, 감금, 협박 등 인권유린 행위 집중단속 및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NGO 연계를 강화하고, ② 집결지 및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등 신·변종 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표 IV-14>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실적(2006)
8-1-4. 국제적 성매매예방 및 외국인피해자 보호강화

주관부처	계획	실적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단속 지시 ○ 성매매 관련 유관기관 대책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알선등 사범 단속 지시(2004. 11. 4.)」에 따른 '성매매 여성의 국외 송출 또는 국내 수입 조직 등 국제 성매매알선 조직' 중점 단속 지시의 지속적 독려(연중) ○ 11. 2. 인신매매 방지 유관기관 대책회의 참석 - 국·내외 인신매매 방지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방안
경찰청	○ 해외 성매매 방지 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성매매 전담반 편성 운영 - 경찰청 외사, 수사, 형사,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여성청소년과로 편성된 해외 성매매 전담반 편성·대책 마련 - 2006. 7 해외 성매매 및 인신매매 관련 회의 참석 - 2006. 12 미 FBI방문 미국 내 한인 성매매관련 대책회의 참석
	○ 외국인 피해자 보호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외국인 전용클럽 현황파악 - 미군기지 주변 외국인 고용 유흥업소 일제 점검 (2006. 5) - 미군 헌병대와 성매매 직통전화 및 핫라인(팩스)운용으로 기지주변 클럽내 외국인 여성 인권보호 ○ 「117긴급지원센터」 홍보스티커 및 리플렛 제작 배부

출처: 여성가족부(2007),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2006년 시행실적 및 2007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기존에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근거한 선도 보호 중심의 접근에서 성매매 알선구조 및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설하였고, 군산 개복동과 대명동 화재사건 등을 계기로 2004년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성매매 방지종합대책이 발표되는 등 성매매 관련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들이 마련되었다.

<표 IV-15>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2007)
8-1-4. 국제적 성매매예방 및 외국인피해자 보호강화

주관부처	시행계획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한 추진방안(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 범죄단체들이 이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해외 주재 영사관등으로부터 불법 성매매 및 인신매매 조직책의 인적사항 등 정보가 송부되면 국내 공급책 및 성매매알선사범 지속적 단속 ○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아동·여성전용조사실 전국 55개청 설치 및 적극 활용지시(연중) ○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 예정(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성매매범죄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조수사체제 구축 ○ 해외 성매매 방지대책(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경합동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 구성, '출입국 및 해외범죄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성매매알선조직 단속활동 강화(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파악 및 관련자료 축적, 유관기관 공조수사체제 구축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해외 성매매 전담반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성매매, 해외 성매매 등 국제적 범죄 대응 강화 - 수사·외사·생안 기능 합동으로 관련 사이트 지속적인 검색으로 해외 인력 송출 등 성매매 단속철저 ○ 미연방수사국 등에 한인범죄 담당 경찰관 파견 추진 ○ 미군기지 주변 외국인 고용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실시
2008년도 이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성매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효율적 단속계획 수립 및 지속적 보완

출처: 여성가족부(2007),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2006년 시행실적 및 2007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영역 6.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 체계 강화’를 추진과제로 잡고, 세부과제로 3.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제도화 강화를 두고 있다.

과제 2. 여성의 복지와 인권강화



2-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내실화

- 2-3-1.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 성매매 예방교육 활성화
 - 성매매 방지정책 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방지정책 추진체계 강화
- 2-3-2. 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자활지원 내실화
 -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종합지원대책 확보
 - 탈성매매 여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대책
- 2-3-3. 성매매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비 추진
 - 성매매알선 우려업소 등의 성매매방지 대책 추진
 -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구축

출처: 여성가족부(2007),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http://www.mogef.go.kr/>.

<그림 IV-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계획: 성매매 부문

2) 정부 성매매방지대책

가)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정부와 시민단체는 성매매처벌법 제정 작업과 더불어 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성매매방지기획단을 국무총리실내 설치(2003. 6) 하고 약 10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성매매방지를 위한 『성매매방지종합대책』(2004. 3. 31)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이 각 부처가 추진해야 하는 세부과제를 수록하고 있어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없이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던 ‘성매매방지대책기획단’을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으로 전환하였다(2004. 11. 10).

현재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은 성매매방지대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

추진하는 등 성매매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의 점검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국세청, 경찰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16개 유관기관이 참가하여 각 부처의 세부추진과제의 이행상황과 정책현안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총 14차에 걸친 회의(제1차 회의: 2004. 12. 3~제14차 회의: 2007. 9. 19)가 진행되었고, 제14차 회의에서 성매매처벌법 시행 3년 부처별 과제 추진실적을 발표하였다.

<표 IV-16> 성매매방지종합대책 부처별 소관과제

과 제 명	소관부처
69개 시책	16개 부처
<과제1> 건전한 성문화 정착 및 음주·접대문화 개선	
1-1) 성매매 불법성 홍보 1-2) 성매매 예방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1-3) 접대 실명제 지속 추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과제2> 성매매 예방교육 활성화	
2-1) 보호관찰제 활성화 2-2) 군장병대상 성매매근절교육 및 홍보 2-3) 학생 및 청소년 대상 교육 2-4) 관계부처 합동 성문화개선(T/F) 구성·운영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청소년위원회 국정홍보처
<과제3>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3-1) 생활권내 여가활동과 주말여행을 위한 여가 환경정비 3-2)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프로그램 개발·보급 3-3) 건전 여가활동을 촉진하는 사회여건 조성	문화관광부·농림부 문화관광부·교육부·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과제4> 성매매방지를 위한 관련법률 정비	
4-1) 성매매방지법 후속 정비 추진 4-2) 관련 법령의 유기적 연계 체계 정비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법무부·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복 지 부) (청소년위원회)

(계 속)

<표 IV-16> 성매매방지종합대책 부처별 소관과제 (계속)

과제명	소관부처
<과제5> 성매매 관련 수사역량 강화	
5-1) 전담 검사의 지정·운영 5-2) 성매매수사 전담인력 및 부서 확대 5-3) 성매매수사의 효율성 제고	법무부 경찰청 법무부·경찰청
<과제6> 성매매 피해자 인권을 보호를 위한 체계구축	
6-1)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 적극 이행 6-2)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이중출석 방지 6-3) 피해자 상담실 설치·운영 전국 확대 6-4) 피해여성에 대한 조사기법 교육 실시 6-5) 수사기관·상담소 등 지역단위 관련기관 연계 강화 6-6)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대책 효율성 제고	법무부·경찰청 법무부·경찰청 법무부 법무부 경찰청·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과제7> 성매매집결지 단계적 폐쇄·정비 추진	
1단계 : 집결지 폐쇄·정비를 위한 사전 준비	
7-1) 폐쇄·정비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7-2) 시범지역 성매매관련 범죄자료 수집 및 체계적 관리 7-3) 경찰·관계공무원의 유착고리 근절 조치 시행 7-4) 집결지 성매매여성 탈성매매 시범사업 실시	여성가족부(행정자치부) 경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
2단계: 집결지 시범적 폐쇄조치 추진	
7-5) 시범적 폐쇄지역 성매매여성 탈성매매 지원 7-6) 시범적 집결지 폐쇄조치 추진 7-7) 타 지역으로 확대 검토	여성가족부 법무부·경찰청 법무부·경찰청
<과제8> 풍속업소 및 업주의 불법퇴폐행위 단속강화	
8-1) 경찰 및 관계공무원 유착고리 근절 8-2) 성매매알선업주에 대한 범죄수익몰수 추징철저 8-3) 성매매업소의 탈세·탈루 조사 8-4) 풍속업소·유흥업소 불법퇴폐행위 강력 단속 8-5) 자유업 형태의 신종 성매매알선업소 규제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 문화관광부·복지부·경찰청
<과제9> 성매매 알선 우려업소의 탈법방지 대책	
9-1) 성매매 알선 직업소개소 단속관리 강화 9-2) 직업소개소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9-3) 해외원정 관광 성매매 등 확산방지대책	노동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과제10> 휴대폰의 성매매 유인광고 방지대책	
10-1) 수신자 사전동의 방식 법제화 추진 10-2) 불건전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기능 강화 10-3) 불법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 10-4) 불건전정보 집중단속 실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과제11> 인터넷상의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강화	
11-1) 불건전정보 유통방지활동 강화 11-2) 해외제공 불법한글사이트의 국내유입방지방안 마련 11-3) 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기술적 대응강화 11-4) 스팸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계속)

<표 IV-16> 성매매방지종합대책 부처별 소관과제 (계속)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 12> 성매매피해 여성 인권보호 및 지원강화	
12-1) 현장상담센터 및 보호시설의 확대	여성가족부
12-2) 성매매 현장활동가 및 시설종사자 인력 양성	여성가족부
12-3) 성매매 피해여성 법률·의료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과제 13>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시스템 구축	
13-1) 자활지원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여성가족부
13-2) 거주·생계 지원책 마련	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
13-3)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노동부·여성가족부
13-4) 학습·진학지원 활성화	여성가족부·교육부
13-5)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문화관광부
13-6) 성매매 피해여성 신용회복	여성가족부·재정경제부
<과제 14> 청소년고용 티켓다방 근절대책 추진	
14-1)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청소년위원회
14-2) 티켓다방 극심지역 이동점검단 운영 및 정례화 추진	청소년위원회
14-3) 신고율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청소년위원회
<과제 15>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15-1)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신상공개제도도입	청소년위원회
15-2) 신상공개제도의 공정한 운영 및 정보제공 기능 강화	청소년위원회
15-3) 저위험군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 확대 및 내실화	청소년위원회
<과제 16>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16-1)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청소년위원회
16-2) 피해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지속 추진	청소년위원회
16-3) 청소년 특성에 맞는 지원시설 설치·운영	여성가족부·청소년위원회
16-4)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강화	청소년위원회
<과제 17> 유흥업소 종사 외국여성 관리 체계개선	
17-1) 공·항만 입국심사 강화	법무부
17-2)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지정기준 및 자율 정화활동 강화	문화관광부
17-3) 외국인연예인 파견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노동부·법무부·문화관광부
<과제 18>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대책	
18-1) 외국여성 보호시설 확대 및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18-2)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강화	여성가족부
18-3) 국가 간 성매매·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여성가족부·법무부

출처: 제14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자료.

나) 성매매처벌법 시행 성과 및 개선대책

(1) 성매매처벌법 시행 2년 성과 및 개선대책

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도 수사 인력 보강을 통한 기획수사 등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가 법 시행 전에 비하여 대폭 증가(68.6%)하는 성과를 서두었다.

<표 IV-17> 성매매 사범 단속실적

(단위: 명)

구분	단속실적
2003. 10~2004. 9	14,192
2004. 10~2005. 9	16,260
2005. 10~2006. 8	23,922

출처: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및 향후 개선대책 발표”(2006. 9. 19) 보도 자료.

또한, 스포츠 마사지업소 등 변칙 성매매업소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의 풍속업소 단속반을 대폭 보강(2006년 1,447명 증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성매매처벌법 실효성을 강화하고 위한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변종 성매매 업소의 성매매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자유업형태의 변종 성매매업소의 경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 즉, 성매매 행위를 한 경우라도 해당 업소에서 즉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등 영업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변종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근거가 부재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능한 것을 자유업형태의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성매매 행위 시 행정처분(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을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한다.

② 성매매 알선업자 및 알선업소의 건물주에 대한 처벌 강화

성매매 알선업자 및 알선업소의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는 하였지만 수준이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유사한 수준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알선업자의 경우 최고 7년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또한 건물주의 경우에는 최고 3년의 징역과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성매매알선업소의 건물주에 대한 처벌은 ‘사실인지’가 되어야 처벌할 수 있는 점을 건물주가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업소 적발 시 건물주에게 적발 사실을 통지하고 추후 단속 시 건물주의 성매매 장소 제공사실 부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강력한 처벌을 시행코자 한다.⁹⁷⁾

③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구매의 초범자를 대상으로 하는 존스쿨(8시간 교육) 제도의 도입 취지가 다소 약화되어 운영되고 있고, 단속 시 성매매 행위에 대한 현장 증거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성구매행위가 완성되기 직전의 실행단계에 있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성구매 초범자에 대한 존스쿨 교육의 개선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④ 처벌 가능한 유사성교행위 유형의 구체화

변종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유사성교행위(손 또는 신체일부 이용 등)를 처벌할 근거법이 명확하지 않아 단속의 어려움과 처벌 논란이 가중되었다. 특히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에 대한 지방법원간의 상반된 판결들이 나오면서 성매매처벌법 상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성매매처벌법 상 “구강·항문

97) 경찰청에서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라 성매매 알선 업주·건물주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추징을 한 결과, 2006. 11부터 2007. 7 현재까지 총 665건이 검거되었고, 그 중 190건이 형사입건되고 475건이 경고 통지를 받았다. 형사입건의 경우 신변중업소보다 집결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금형(2007), 앞의 글, 70면).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로 규정, 처벌하고 있는데, 이를 손·발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유사성교행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⑤ 성매매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의 실효성 제고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조직폭력 또는 인신매매 조직과 관련된 성매매범죄 신고에 한해서만 보상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보상금 지급 대상의 한정으로 신고가 어렵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따라서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보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⑥ 안마관련 업소의 성매매 알선 장소 제공 가능성 제거

안마관련 업소 내에 설치된 안마실이 성매매 알선 장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시설의 안마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안마실을 설치하지 않고 남녀 피술자를 구분하기 위한 간이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안마업 개설시 소규모 안마원 창업을 유도토록 하고, 간이 칸막이를 사용하는 등 안마실을 개방적 공간으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2) 성매매처벌법 시행 3년 성과 및 개선대책

정부는 지난 2007. 9. 19 범정부차원의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통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지난 3년 동안 성구매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 등에 있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성매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법 시행 전 1년간 검기인원 대비 2.5배 증가한 35,000여명의 성매매사범을 검거하고, 560여명의 감금된 성매매 피해 여성을 업주로부터 구조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성매매업소 집결지는 41% 감소하고, 55%의 종사여성이 감소되는 변화를 나타내었다.

또한 정부는 성매매 알선업자 및 업소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및 탈세 추징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성매매 신고보상금 지급 및 117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인권유린 및 강요된 성매매 등 피해여성에 대한 NGO 연계 등 인권보호활동을 함께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인터넷 성매매 등 음성적 성매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성매매로 인하여 국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해외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알선업자 등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성매매 차단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3) 법무부 성매매 관련 제도 및 정책

가) 성매매방지법 후속 정비 추진

법무부는 2004. 3. 22 성매매처벌법을 제정·공포한 후 「성매매사건 전담 업무 실무지침서」(2004. 9. 17), 「성매매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사건 처리지침」(2004. 9. 23)을 시달함으로써 성매매 범죄 수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배려 등을 지시하고 성매매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담검사가 사전지휘하게 입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처리지침」(2004. 9. 30)에서는 성매매 알선·강요 등 성매매의 매개·조장행위를 엄단하고, 보호처분을 통한 성매매행위 재범 방지 및 경찰 등 관련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시스템을 구축코자 하였다.

그리고 성매매 관련 지원단체(2005. 4) 및 성매매 관련 여성단체와의 간담회(2005. 10. 11)를 개최하여 성매매 관련 지원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법률 정비 작업에 참조하였고, 특히 해외 성구매 남성들에 대한 엄벌 요청과 해외 진출 여성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논의하였다.

나)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2005. 8 말 현재까지 전국 17개청에 아동·여성 전용조사실을 설치하였고, 2007. 7. 30 현재 전국 56개청 중 38개청에 설치하여 성매매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 등 인권보호에 기여하였다. 향후 아동·여성 전용조사실을 전국 청에 확대 설치 및 운용할 예정이고 금년 하반기 중 전국 56개청 모두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그리고 성매매피해자 조사 시 모니터링에 의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인권보호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표 IV-18> 성매매 여성 인권보호활동 현황

(단위: 명)

구분	피해여성 불입건	NGO 연계	신뢰관계자 동석	여경 조사
계	1,955	2,211	1,138	5,132
2004	614	16	1	14
2005	504	473	508	1,954
2006	557	1,091	402	2,026
2007. 7	280	631	227	1,138

출처: 이금형(2007), 앞의 글.

성매매 여성 인권보호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성매매 피해여성 불입건, NGO 연계 강화, 여경조사 및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특히 성매매 피해여성 등 NGO 연계 인원이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성매매알선업주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

지난 2004. 11. 4 「성매매알선등 사범 단속지시」를 통해 범죄수익에 대하여 철저히 추적하여 몰수·추징토록 하였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절차에 따라 몰수보전절차를 이행토록 하였다. 이에 퇴폐업소 임대업자나 성매매 알선 자금제공업자 등의 범죄수익은닉금 등을 몰수·추징하였다.⁹⁸⁾ 향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자금추적 및 수사기법을 수집·전파

하고, 성매매관련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라)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대책(존스쿨, John School)

2004. 9 「성매매사범 재범방지 종합대책」 및 「성매매사범 보호관찰 지침」을 제정하여 보호관찰관의 1:1 밀착지도, 성매매사범의 특성에 맞는 집중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2005. 8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시스템(존스쿨)」을 구축하여, 검찰단계에서 성구매자의 동의를 받아,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1일 8시간 동안 존스쿨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5. 8 당시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던 존스쿨을 2006. 2 22개 기관으로 확대·시행함으로써 교육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교육집단을 소규모화하였다.

(1) 도입배경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2004. 10~2005. 1까지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에 대한 검찰의 조치현황에 따르면, 위반사범 1,322명 중 벌금형(대부분 100만원)으로 약식기소된 사람이 1,109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며, 성구매자 중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은 없는 반면, 성을 파는 여성의 경우 25명이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처분실태는 성구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재범방지에 실효성이 낮고, 교육·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 등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전제 하에 성매매 사범에 대한 보호사건 송치원칙을 규정(제12조)한 입법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⁹⁹⁾

98) 2004. 12 특급관광호텔 퇴폐업소 업주의 수익금, 건물 임대해 준 호텔 사장 임대료 - 등을 범죄수익으로 환수하였고(수원지검), 2005. 5 사채업을 운영하면서 유흥주점업주들에게 성매매에 종사할 여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취업선불금을 대여 해온 사채업자의 선불금에 대해 사실상 성매매를 위한 자금대여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원에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명령을 추징 요청하였다(울산지검). 또한 2007. 1. 11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계좌추적을 통해 영업매출액 10억원을 특정하고,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를 환수하였다(대구지검).

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5), 『성매매사범 특성 및 유형 연구와 수강명령 표준프로

성구매자의 경우 성매매를 용인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보다 성매매의 범죄성과 반인권성에 대한 교육 중심의 처우를 통하여 성매매 행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범인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재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또는 정식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집행실태

성구매 재범방지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육대상자가 증가하였다. 2005년 대비 2006년 중 실시된 사건이 3,210명에서 13,455명으로 319.2%가 증가하였다. 또한 교육효과 향상을 위해 1회 교육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였다(2007년 중 1회당 평균교육인원 47명).

<표 IV-19>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집행실태

(단위: 명)

구분	접수	교육	교육실시기관	비고
2005	3,210	2,297	13	2005. 8~12 인원임
2006	12,542	11,216	22	
2007. 6	10,426	8,755	22	

출처: 성매매방지기획단 12차 회의 자료; 안미영(2007), “성매매방지법 시행 3주년 - 법무부의 성과 및 평가, 그리고 향후 과제”, 『성매매특별법 시행 3주년 그 성과와 과제』(2007. 9. 17).

그럼 개발(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면; 2005. 7. 6 현재 성구매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3건(기소유예 1건, 보호처분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법무부(2005),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존스쿨』 도입계획”(2005. 7. 11, 보도자료)).

<표 IV-20> 교육기관별 존스쿨 접수인원

(단위: 명)

구분	계	20세 미만	30세 미만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70세 미만
2005	3,210	14	877	1,560	633	109	17
2006	12,542	23	3,274	6,145	2,561	471	68

출처: 강지식(2007), “산업형 성매매산업 축소 방안”, 『일상 속의 성매매 드러내기 - 산업형 성매매 축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2005. 8~2006. 8까지 존스쿨 교육자 6,340명 중 38명(0.6%)이 재범자로서 전체 대비 1% 미만이다. 존스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은 원칙적으로 초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재범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검찰의 처분과정에서 전과확인 누락으로 재범자가 초범자로 오인되어 존스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전과 확인에 철저해야 한다. 보호관찰소도 존스쿨 교육대상자 명단 접수 후 재범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검찰청에 신속히 통보해야 할 것이다. 재범자에게 다시 존스쿨 교육 처분을 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하고 초범자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¹⁰⁰⁾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존스쿨 운영관련 민간 강사진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2005년 대비 존스쿨 적용 대상자는 4.2배 이상 증가(2006년 기준)하였지만 민간전문 강사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존 강사진도 대부분 재경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소재 보호관찰소의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향후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유관기관 간의 협조가 필요하고, 지방에서도 원만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사진 양성프로그램 가동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¹⁰¹⁾

100) 성매매방지기획단 11차 회의자료, 2면.

101) 안미영(2007), “성매매방지법 시행 3주년 - 법무부의 성과 및 평가, 그리고 향후 과제”, 『성매매특별법 시행 3주년 그 성과와 과제』(2007. 9. 1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 국회의원 조배숙, 58면.

4) 경찰청 성매매 관련 제도 및 정책

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성매매 강요·감금 등 업주의 인권유린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성매매 집결지가 쇠퇴하고 있으나 은폐가 용이한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성매매영업행위가 지속되어 주기적인 테마단속이 전개되었다.¹⁰²⁾

<표 IV-21> 경찰청 성매매 테마단속 추진실적

· 2004. 9. 23~10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특별단속(1,664명 입건)
· 2005. 1~2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집중단속(734명 입건)
· 2005. 7~10	청소년(인터넷)·장애인·도서지역 등 성매매 및 인권유린 업소 단속(10,300명 입건)
· 2005. 12~2006. 2	동계방학 중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등 단속(2,405명 입건)
· 2006. 3~4	노래연습장 등 성매매의심업소 특별단속(1,539명 입건)
· 2006. 4	번태 마사지업소 특별단속(1,600명 입건)
· 2006. 6~7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 1차 특별단속(14,688명 입건)
· 2006. 8	하계방학 중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등 집중단속(1,796명 입건)
· 2006. 9~11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 1차 특별단속(19,017명 입건)
· 2006. 12~2007. 2	동계방학 중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등 집중단속(4,734명 입건)
· 2006. 10~2007. 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에 따라 노래연습장 접대부 고용행위 및 성매매알선행위 집중단속(9,026명 입건)
· 2007. 7. 16~8. 24	하계방학 중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등 집중단속(8,240명 입건)
· 2007. 9. 5~10. 24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 등 집중단속 중

출처: 경찰청 자료.

가) 성매매전담경찰 배치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미설치 1급지 경찰서 24개서에 여성청소년계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였다. 2007년 현재 총 94명이 배치되었다.

나) 117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등 설치

경찰청은 지난 2004. 6. 3 『117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긴급전화를 확보하였다. 성매매처벌법 제정에 따른

102) 이금형(2007), 73~74면.

성매매피해여성 구조요청 및 신고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속한 구조 활동 및 신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성인, 인터넷·청소년, 외국인 성매매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성매매여성 조사 시 NGO 입회제 활성화 등으로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보호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One-Stop 지원센터』 개소를 완료(14개소)하고 인터넷 성매매전담팀 역시 보강(215명)하였다.

<표 IV-22> 117센터 운영 실적

(단위: 명)

구분	신고내용							조치				
	계	납치 감금	성매매 강요	선불 금	업소 단속	상담	기타	계	수사	상담	NGO 연계	기타
2004. 6~	1,012	24	134	221	516	53	64	1,282	537	463	270	12
2005	1,679	33	88	207	547	376	426	1,677	669	872	113	23
2006	2,595	38	58	222	510	1,322	445	2,595	667	1,634	294	0
2007. 7	1,851	18	29	87	201	620	896	1,851	241	1,338	270	2

출처: 이금형(2007), 앞의 글.

2004. 6 개소 이후 2007. 7말 현재 성매매 피해여성 559명을 구조하였고, 업주 등 관련자 2,378명을 검거하였으며, 성매매 피해여성 등 NGO연계인원 2006년 294명에서 2007. 7 현재 270명으로 증가하였고 납치·감금 등 인권 유린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성매매 강요·선불금 상담 등은 감소하였다.

다) 신종 풍속업소 합동점검 및 단속 대책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변태영업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신종 풍속업소 확산 방지 및 퇴폐영업행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6회)하여 성매매사범 34,795명을 검거하였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87.9%가 증가한 것(2005년: 18,508명)으로 윤락행위방지법에 처벌토록 되어 있었으나 관행적으로 훈방해오던 성구매자를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적

극 처벌하고 있으며, 이것은 영업장부·신용카드전표 등에 대한 추적 수사 등 성매매 수사기법 개발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2006. 1 1~2007. 2 동안 건물주 등 총 356건에 371명을 단속(형사입건 96명, 경고통지 275명)하였다.

5) 지방자치단체 성매매 클린지수 평가¹⁰³⁾

성매매방지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05년도에 개발된 평가지표를 통해, 2006년부터 성매매 클린지수를 시범평가하였고, 2007년부터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연계하여 공식적인 평가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성매매 클린지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식 개선사업, 행정처분, 성매매방지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등을 평가하는 ‘정책이행평가’와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고 있는 성산업 실태의 현황에 대한 평가인 ‘성산업실태 평가’로 구성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방지정책 추진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6) 신종 성매매 우려업소 규제 대책

이 대책은 성매매처벌법 시행과 강력한 단속의 여파로 속칭 ‘대딸방’ 등 성교를 전제로 하지 않는 신종 퇴폐업소가 출현하여 이들을 단속하여 퇴폐업소 확산방지 및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성매매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가 없는 손, 발, 유방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이를 긍정적인 대법원 판례

103) 권용현(2007), “성매매방지법 시행 평가와 보완대책”, 『일상 속의 성매매 드러내기 - 산업형 성매매 축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조배숙 위원실, 다시함께센터.

(2006. 10. 26, 2005도8130)가 나와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지난 2005. 1. 17 서울중앙지검은 ‘스포츠피부클리닉’이라는 상호로 여대생을 고용하여 손으로 자위행위를 시켜주는 업주를 성매매처벌법 상 ‘유사성교행위’ 알선으로 판단하여 업주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2004. 9. 23~10. 22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특별단속기간」 중 업소별 단속분포도에서 집결지는 4%에 불과하였고, 2005~2006년도와 마찬가지로 유흥업소·스포츠 마사지·퇴폐이발소 등 신·변종 산업형 성매매와 인터넷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IV-23> 성매매처벌법 시행직후 특별단속기간 중 업소별 단속유형
(2007. 9. 23~10. 22)

(단위: 건)

총단속건수	집결지	유흥업소	다방	휴게텔	퇴폐이발소	스포츠마사지	출장마사지	광고지배포	기타
1,931	76	407	141	37	57	37	115	64	997

주: 기타는 원조교제 등 개별접촉, 인터넷, 노래방 등임.
출처: 이금형(2007), 앞의 글.

또한 「풍속영업규제법」은 풍속영업소에서의 음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신종 성매매 우려업소의 경우 현행법 상 풍속영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에 의해 규제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표 IV-24> 풍속영업소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이용업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무도장	기타
2004	503,797	22,877	16,346	25,874	18,392	2,042	27,437	1,148	38,9681
2005	570,336	26,991	16,205	27,848	21,151	1,948	33,562	1,029	441,602
2006	523,448	27,555	16,669	28,736	21,734	1,927	34,905	1,010	390,912

출처: 이금형(2007), 앞의 글.

경찰의 단속으로 성매매로 단속되는 풍속업소수가 전체적으로 2005년 대

비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성매매처벌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1) 성구매행위에 대한 범죄인식 미흡

성구매행위가 성매매처벌법에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구매자 자신들이나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인식이 미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정심을 가지고 관대하게 처리하려는 생각도 나타난다.

이것은 성구매자를 비롯한 사회 일반인들의 인식이 성구매는 남성 중심의 놀이문화이고 따라서 범죄로 단속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식의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성구매자 자신들은 성구매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교육에 대해 쉽게 납득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일반인 뿐 아니라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관, 검사, 보호관찰소 공무원 등에게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 법 집행담당기관인 경찰, 검찰과 성매매피해 지원을 담당하는 현장단체 관계자와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표 IV-25> 성매매 심층면접 사례개요표

사례번호	성별/연령	직업 및 직위	근무 경력
사례 1	여/35세	A NGO 소장	10년
사례 2	여/43세	B NGO 소장	15년
사례 3	여/52세	C NGO 소장	17년
사례 4	여/38세	A 경찰서/경위	12년
사례 5	남/45세	B 지방경찰청/경사	10년
사례 6	여/33세	A 검찰청/검사	5년
사례 7	여/41세	B 검찰청/검사	10년

우선 성구매자들이 성매매처벌법에서 성구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풍조가 있다. 아래 법 인지도조사에서 성구매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응답자의 98.9%가 안다고 응답함으로써 인지도가 매우 높은데도 실제 성구매 시 이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마 걸릴까하는 안이한 마음가짐과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 당시 성구매행위가 역시 금지였음에도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관행에 젖어 있는 탓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매매의 금지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법 집행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사례 10).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홍보와 성구매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처벌로 성구매행위를 포함한 성매매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사회가 뭐 지금 안마시술소나 스포츠 마사지, 아니면 뭐 유흥주점에서 성구매하는 것 자체를 크게 의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 이게 범죄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없고 또 단속이 미흡하다라는 ... 단속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없는 거 같아요.” (사례 5)

“법 제정에서 볼 때 여성부 공은 있으나 한쪽의 목소리로만 제정된 법이다 보니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얻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 막상 처벌해야 된다고 법은 구성되어 졌지만 모든 국회의원들도 사법기관, 검사, 판사, 검찰관도, 법이 있어 처벌된다고 생각하지만 처벌해야 하는가 합의에 동조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다. 성폭력, 가정폭력은 합의는 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법 집행은 쉬운 거라고 봐요. 법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 검찰, 경찰의 집행상 문제점이 무엇인가는 지엽적 문제이다. 성매매 금지라는 전체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사례 10)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인식은 실제 성구매자가 단속된 경우 본인들은 억울하다, 재수없게 걸렸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수없다고, 재수없어서 걸렸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성매매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것 보다 재수없이 걸렸다,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그런 시각을 많이 갖지요.” (사례 5)

“성구매자들의 경우 이 법에 의한 처벌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다. 즉 지금껏 자연스럽게 성구매행위가 처벌된다는 막연한 거부감, 성구매자에 비해 처벌되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낮고 이 낮은 수치에 본인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심하게 보인다.” (사례 3)

그런데 경찰에서도 성구매자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성구매자에 대해서는 높게 주더라도 벌금이요 실형을 주기 어렵다는 생각은 가정이 있는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생각에 기인하는 듯 하다. 그러나 가정해제가 염려되어 실형을 주지 말자거나 또는 성구매행위 정도로 실형을 주는 것은 심하다, 또 다른 차원에서 존스쿨 교육을 토요일에 8시간 몰아서 교육하는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성구매자의 편의를 봐 주려는 생각이 인식저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서 초범이고, 우리가 범죄 경력이 없고, 인제 우리도 전과조회가 다 되듯이 나중에 보면 전과 조회 다 나오잖아요. 조회 나오면 솔직히 말하면 치사한, 같은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율방법이라든지 비슷한 경력이 있으면, 성향을 안 좋게 보니까, 인제 이렇게 하는데, 가정이 있다거나, 초범이고 회사가 있고 명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냥 정말 재수가 없어서 걸린 사람처럼 희생양인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례 2)

“이게 성구매자가 없어야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는데.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지 않은가. 이런 많은 문제제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강력하게 했었던거죠. 지금 제 생각에는 성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떻게 처벌받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걸 이제 실형을 줄 수 없잖아요. 이게 자기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실형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한 편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잖아요. 벌금을 내는 거 말고 강력하게 할 수 없을 거 같아요.” (사례 4)

이러한 성구매자들의 인식은 성구매자가 검찰에서 소위 존스쿨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존스쿨 교육에 임하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도 성구매자에 대해서는 큰 범죄는 아니고 수사협조차원에서 존스쿨 교육 정도로 처분을 받고 끝내기를 바라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서 존스쿨 교육 자체도 8시간으로 시간이 짧은데다 대

단위 강의식으로 진행됨으로써 성매매범죄 예방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존스쿨에 관한 문제점 검토와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성구매남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문화에 대한 차이가 감수성이, 저것이 과연 범죄인가, 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이 한 번 오입하는 걸, 다 실수할 수 있는 건데, 갑자기 불러다놓고, 응? 니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그럼 나는 깨끗한가. 설령 했든 안 했든, 당신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부담감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지역이 좁다 보니까 한 다리 건너면 어떻게, 어떻게 알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강하게 추궁하기 보다는 이제 이렇게 협조 차원에서, 수사 협조 차원에서 해라, 존스쿨로, 이제 뭐 교육 정도로 끝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존스쿨 교육에 가면 그냥 이게 이게 진짜 법집행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법집행 맞나? 8시간 가지고 너무 면죄부 주는 거 아닌가 하는 막 약 오른 그런 의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너무 뻔뻔하게 나는 와이프한테도 통보하고 왔고, 내가 한 게 뭐 범죄냐. 재수 없어서 걸렸을 뿐이고, 교통 딱지 때면 또 저기 수감명령 똑같이 받잖아요. 그거랑 뭐 별반 다를 거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요.” (사례 2)

“앞으로 꼭 해야 할 일이 성문화 변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무엇을 할건지와 존스쿨 프로그램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한다. 존스쿨은 현재 강의식만 있는데, 구매자들에게 토론식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성매매를 안하게 할지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거다. 8시간하면 끝이다 생각하지 않도록 치료작업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 거의 모두 “재수없어 걸렸다”고 이야기한다. 정원 45명인데 많은데는 80명까지도 한다.” (사례 3)

그런데 성구매자의 이러한 억울함의 호소는 단속, 수사과정에서 성구매자가 선별적으로 단속된다는 점에서 자기만 재수없게 걸렸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한다. 성구매자 자신들이 성구매자 처벌에 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 많은 경우 억울하다는 입장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성구매자 단속 시 업소에 동행했던 성구매자들이 모두 검거되지 않고 일부만 검거되거나 성매매여성들이 알선자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무리하게 성구매자들을 신고하게 되는 과정에서 성구매자들로 하여금 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신뢰하지 못하고 재수없게 걸렸다는 반응을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 그러나 형사소송 원칙상 증거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모든 성구매자들을 일률적으로 검거할 수는 없다. 다만 누락되는 성구매자를 최소화하여 성구매시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수사기관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실은 이런 얘기하기 참 조심스러운데, 성구매자가 열 명이 나왔어요. 열 명이 나왔으면, 때로는 열 명을 다 수사해야 되지만, 딱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미진해가지고, 특징이 조금 자세하지 않아서. 조금 품을 팔아야지 증거를 잡을 경우가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 슬그머니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인제 피해여성들이 다 진술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성구매자들이 느끼는 것이 대질을 왔을 때도 나는 채수 없어서 그랬다. 왜 니가 한 사람이 열 사람도 넘을 텐데. 예를 들어 한 팀이 갔어요, 그 업소를 같이 갔는데. 직장 동료 등등 뭐 구매 차. 내가 생각해도 열 명이 갔는데 왜 나만 나왔나, 그렇다고 해서 뭐 같이 볼 수는 없지만. 뭐 그런 반발도 많고. 이제 존스쿨 교육을 가면 남성들이 그래요. 정말 너무 억울하다. 나만 채수 없이, 카드를 대신 끊어가지고 전표가, 나만 증거로 딱 잡혔지. 사실은 아니다 이거죠. 정말 이 법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항변을 많이 하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왜냐면 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다 처벌이 안 되니까.” (사례 2)

성매매의 감소와 예방을 위해서는 성매매에 관련된 수요자, 알선자, 공급자의 각각을 상대로 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특히 성매매에 관한 수요자인 성구매자 측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일반인 중 누구라도 범죄에 대한 인식없이 성구매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쪽에서의 예방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사례 2의 경우처럼 “성매매여성들만 구하면 되지 왜 나를 처벌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성구매자들도 있음을 볼 때,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성매매의 인권침해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교육하면서 느끼는 건데 성매매 피해여성의 사회 구조적인 피해들만 부각시키다 보니까 종합적인 부분을 못 봐요. 왜 그 여성들만 구하면 되지 나는 왜 처벌을 하나? 이거거든요. 대비적으로 성구매 방지 교육에 가가지고 더 집중해야 되고 그런 대국민 홍보를 해야 되요. 네. 정말 왜 성이 거래되어서 안 되는지 인권교육의 기본 개념을 모르고 있잖아요. 폭력도 기본인권교육을 주시시키면 다른

사람을 안 때릴 거예요.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초점이 성구매 방지, 수요 차단, 이런 쪽으로 간다면 분명히 가야 되고, 피해여성 지원은 다른 한 축이지만 어필은 이 쪽으로 더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들죠.” (사례 2)

2) 성매매업소 단속 미흡

성매매처벌법의 입법목적이 성산업 붕괴를 통한 성매매 감소라는 것에 있다면 성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형 성매매의 축소를 위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 성매매단속, 수사의 어려움

그러나 산업형 성매매는 집결지처럼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업소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2차를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증거포착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의 사례 4와 사례 5의 경찰관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은 성매매 입증을 위한 증거포착의 어려움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경찰이 단속나가면 손님을 뒤로 빼 돌리거나 업소의 입구를 찾기가 어렵거나 대형업소는 단속이 어려우며 실제 업주의 처벌이 어렵고,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는 등 성매매알선, 구매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사례를 보여준다.

“이제 업소단속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업소 같은 경우에 단속하거나 수사할 때 저희들이 수사할 때 신고자, 피해자의 신고만 듣고 가서 수사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증거 확보를 해야하고 현장 답사를 하고, 저희가 수사를 하며, 출구가 어디고 어떻게 나오고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수사 단속에 들어가거든요. 낮에 단속도 새벽 2, 3시 정도에 단속하거나, 집결지 같은 경우는 심야 시간대. 그리고 또 다른 집결지 평택 이런데는 항상 개방해놓고 성매매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낮에도 장사를 하기 때문에 낮에도 단속이 가능하지만, 저녁 때 시간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다른 업소들은 새벽에 하죠, 이제. 그 뭐라지? 술도 팔면서 하는 업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술을 먹고 2차를 가면서 성매매를 하기 때문에 새벽 시간 때까지 이동을 해서 성매매를 하잖아요. 기업형. 그 이동 경로까지 봐가면서 해야 해요.” (사례 4)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게, 단속을 해도 현장에서 성관계 장면을 목격을 하고 확인작업을 해야 처벌이 가능하고, 서로 간에 옷을 벗고 있어도 안 했다고 그러면 처벌을 못해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 제일 애로사항이 현장을 단속해야 하는데, 그 이런 성매매업소라고 안마시술소 이런데 가면은 뭐 2중, 3중으로 보안장치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안에 있는 손님하고 종사자들 다 뒷문으로 떠넘기고, 일부 나가지 못한 사람들만 잡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재수없어서 걸렸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 (사례 5)

“제가 하다 못해 제가 장안동 주변에 한 번 갔어요. 그 톱싸롱인데 바로 또 2층에 여관으로 올라가고, 근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 여관이 굉장히 허름해 보이고 일반인들이 안 가는, 일반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내부 시설은 뭐 호텔방처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또 바로 인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입구를 찾지를 못해요, 그거를. 찾지를 못해. 그래서 나중에 한 3일을 제가 지켜봤는데, 출입문, 그니까 밖에서 업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고, 안에서는 밖이 보이고, 문을 반만 열어 놔더라고. 항상.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문 뒤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근데 급하게 단속을 나와서 비상구 찾는다는 거 자체가 힘들구요, 대개 철문으로 2중, 3중으로 잠금장치가 돼있어 가지고 그걸 뚫고 들어간다는 것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요.” (사례 5)

“강남에 그 안마시술소. 낮에도 가면은 뭐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데 이제. 뭐 경찰청에서 이번에 성매매 특별단속을 명해가지고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데, 큰, 진짜 대형 업소나 그런데는 손을 못 미쳐요. 30억씩 50억씩 투자해서 그런데 들어가면은 다 날려버리는데, 그냥 뭐 받이사장도 내세우고. 혼자서 못하고 여럿이 하는 곳도 많고. 그런데 나중에 동업자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타나요. 수사를 해도 밝혀지기 힘들죠. 원래 주인들이 한 10명이면 10명이 밝혀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뭐 밝히려고 하면 계좌추적도 해야 하고 하지만 요즘에는 또 계좌추적이 안 나와요. 결산할 때 현금 결산해가지고 바로바로 나눠가지니까. 계좌추적을 해서 그 업소하고 관련성을 입증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렇게 되면 실제 업주들은 처벌을 안 받아. 뭐 현장에 있는 마담이나 받이사장 그 정도나 처벌이 되지, 실제로 업주가 처벌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사례 5)

“안마시술소 같은데 비용이 지금 18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18만원인데, 거긴 또 안마하고 2차 성매매까지 이어졌을 때가 18만원이고, 보통 그렇지 않고 안마만 받으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7만원, 7만 5천원 쯤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냐 하면 성매매를 분명히 했는데도, 아니다, 나 친구랑 둘이 가서 안마

만 받았다, 사우나하고 안마만 받았다, 2명이, 3명이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다, 너 성매매 분명히 했다 하면은 증거대라, 증거대라고 하면 그거 뒷받침할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사례 5)

나) 기획수사의 현황과 문제점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단속은 특정기간을 정하여 특정유형에 대한 기획수사, 테마수사의 형태를 많이 이용한다. 실제 경찰청의 공식통계를 보면, 성매매처벌법 시행에 따른 특별단속,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집중단속, 노래연습장 등 성매매 의심업소 특별단속, 변태마사지업소 특별단속 등이 추진되었고, 특히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인터넷) 성매매단속의 횟수가 많다.¹⁰⁴⁾

이러한 기획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사례 4의 예에서 보듯이 특진제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단속과 성매매 수사의지 증진을 유도하고 있다.

“경찰에서 성매매 단속을 잘 하면 특진시켜주고, 요런 식으로 수사의지를, 성매매를 근절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거는 전에 비해서 많이 변화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어차피 또 경찰, 승진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리고 또 특진시켜주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더 하죠.” (사례 4)

그런데 기획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성매매단속의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것의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업소들이 단속기간만을 잘 피해가면 된다는지, 또 사례 5의 지적처럼 단속기간에 맞추어 접근하기 쉬운 곳만 단속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사례 3의 NGO 관계자의 우려처럼 기획수사가 인터넷 성매매수사에 집중됨으로써 성매매여성의 단속이나 처벌에 중심이 맞춰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꼭 저기 기간 정해놓고 한다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평상시 지속적으로 한다면 몰라도, 이거에 대해서 딱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단속을 많이 해야 된다 하다 보면, 사실상 큰, 대형 업소는 손을 못 데요. 찾기 편한 데만 이제 걸려 들어오는 거지.” (사례 5)

104) 이금형(2007), 앞의 글, 62면.

“현재 성매매 수사가 기획수사에 한정됨으로써 대부분 단속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는 인터넷 성매매를 통한 여성들이며 이들의 경우 개인적 환경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선불금이 없다는 이유로 자발적 성매매가 되기 때문에 대거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기획수사, 합정수사에만 머무르다 보니 성구매자의 처벌이나 단속보다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과 단속에 중심이 맞춰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다.” (사례 3)

다) 성매매알선업자 처벌 미약

최근 산업형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규제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업소가 단속된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의한 실형이나 벌금형을 강력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 실제 양형과정이 있어 법정형을 그대로 선고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짧은 기간의 실형이나 낮은 벌금액수로는 성매매범죄의 억제효과가 얼마나 있을 지 의문이다.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기업형 성산업을 타겟으로 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범규정은 기업형 성산업을 하는 업주의 처벌을 아주 강화한 법입니다. 법대로 집행이 된다면 성산업을 손을 댔다가 단속이 되면 파산이 나와 맞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업주가 이득을 취했던 취하지 못했던 단 1회라도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 이 법의 효과가 발휘되지요. 1억원 이하의 벌금인데 기천만원씩 벌금을 내게 한다면 쉽게 이 성산업을 뛰어들지 못할텐데 실제 법적용에 있어서는 벌금의 양정에 있어서 영업기간, 이익, 피의자의 재산상태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대로 집행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검사, 판사님들이요).” (사례 4)

라) 성매매행위 장소제공, 건물주 처벌 미흡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업소의 건물주나 성매매행위의 장소제공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휴게텔이나 스포츠마사지 등은 집결지와 별로 차이가 없는 성매매 업소로, 허가나 등록없이 세무서 신고만으로 영업을 가능하게 되어 있는 현행 구조에서는 경찰이 아무리 수고해도 영업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수 없다.

최근에는 이발소 등 이용업소가 행정처분된 경우 대부분 업소가 폐업을 하고 자유업종인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등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스포츠마사지 영업자가 숙박업소의 객실일부를 빌려 영업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¹⁰⁵⁾

이와 관련하여 성매매방지법 2주년 개선대책으로 성매매 알선업자 및 알선업소 건물주에 대한 법 집행시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고, 건물주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1차 적발시 통지절차 등을 통한 증거보강을 실시하고 2차 적발 시에는 반드시 처벌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¹⁰⁶⁾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례 5 경찰관의 말처럼 건물주에 대한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대형업소에 대한 단속은 더욱 이루어지지 않는 듯이 보인다. 실제 건물주에 대한 강력처벌을 통해 건물주의 경우도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성매매와 관련된 일련의 범죄행위가 모두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선대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1차 적발 시 통지, 2차 적발 시 처벌은 업소단속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⁰⁷⁾

“지금 뭐 여기 성매매처벌법에는 건물주도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건물주도 소환해보면 성매매 업소인지 몰랐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전에 짐창촌 업주들을 건물주들을 처벌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 안마시술소, 스포츠 마사지, 이런 업소의 건물주까지 처벌한다고 하는 내용은 거의 없잖아요 ... 스포츠 마사지도 (건물주 처벌)할 대상은 다 되는데. 뭐 스포츠 마사지 업체를 임대를 해줬는데, 건물주인이 거기 와서 뭐 스포츠 마사지가 실제로 뭐하는지 확인을 해볼 의무는 없잖아요 ... 건물주 처벌 노력도 많이 해 봤는데, 건물주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요. 반발도 많고 거의 출석도 안 하는 예도 많고. 뭐 사실상 큰 건물의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또 마진의 영향이 없으면 이탈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소환하기가 쉽지는 않죠.” (사례 5)

105) 다시함께센터(2007), 『산업형 성매매 축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다시함께센터, 121~129면 참조.

106) 여성가족부(2006), “성매매 영업소 폐쇄조치 등 알선업자 처벌 강화”(2006. 9. 19), 보도자료.

107) 경찰청 및 법무부는 수사지시(2006. 9. 20)를 내리고 ‘성매매업소 건물주에 대한 사건처리대장’을 경찰관서에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들으니까, 집결지에 집이 있었다, 임대를 줬는데, 뭐 국회의원도 왔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구요. 사실이에요, 그거는. 모르고 왔고, 이거죠. 그럼 자꾸 이런 이야기도 환기되면서 이 임대주는 경우에도 1회 경고하고 2회 때는 처벌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임대사업자도. 장소 제공자도.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좀 최소한 것까지 막 자꾸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례 2)

마) 내부고발자 신고 저조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알선자 단속, 처벌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자 개념 도입과 성매매업소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종사자의 고발에 대한 형의 감경, 면제나 보상금 지급 등의 수단을 두고 있다. 법 시행초기에는 성매매여성들의 신고가 많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사례 4).

이것은 업주들이 범망을 피하기 위하여 성매매강요행위를 줄이거나 선불금 형식을 제3자간 채권채무관계로 바꾸는 등 표면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에 의한 성매매강요행위가 줄어든 것이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원인으로 사례 2의 말처럼, 성매매여성들이 정보가 부족하거나 정보가 있더라도 향후 당할지도 모르는 보복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점 등 제도에 관한 신뢰부족이나 업주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업주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내부 고발자들의 경우는 그거는 피해자로 인정을 해주고 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자로 인정을 해가지고 본인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랬는데, 그 단계는 넘었어요. 그니까 처음 성매매특별법이 알려졌을 당시에는 신고에 관해 아마 성매매피해자지원단체들도 그런 거를 다 보고했을 거예요... 성매매가 어떤 내가 이제 탈출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생존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 직업으로 되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어떤 신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신고가 굉장히 많았었죠.” (사례 4)

“단속의 경우는 업주를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매매여성이 단속으로 자신이 처벌을 받는데 업주(업소)에서의 성매매 횟수에 따라, 죄질이 무겁게 다루어

저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두려워한다. 대부분 법적 지식이나 정보의 제한과 성판매 여성의 낮은 학력으로 인한 종합적 판단력의 미숙으로 업주를 처벌하고 자신이 빠져 나온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자신이 업주를 신고하거나 처벌에 함께 동참할 경우 추후 보복(업계에서 완전히 발을 빼고 탈 성매매할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조차 없는 상황을 반영)을 가장 두려워하고, 비이성적 신념으로 인하여 남을 해치고 자신이 득을 보는 신의없는 행위는 비난받는다고 생각하고 업주를 보호한다. 간혹 경찰이나 지원센터의 상담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주의 불법사실 일부를 시인하였다 하여도 경찰이 사건이후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선불금을 갚으라는 협박과 더 안 좋은 곳으로 팔려가는 등의 사실적 상황에서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경험은 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다.” (사례 2)

3) 성판매자에 대한 사후 대책 미흡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성매매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성판매 여성의 경우 초범인 경우는 기소유예, 재범인 경우는 보호처분을 과한다고 한다.

그런데 성판매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NGO 관계자(사례 1)나 경찰(사례 5)이나 모두 문제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보호처분의 경우도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아서 대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NGO 관계자의 말처럼 성판매 여성에 대한 단계적인 교육계획과 기소유예처분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성판매 여성이 다시 업소로 돌아가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처벌을 한다는 게 아니라 교육을 몇 차례. 뭐 교육을 계속 시키든지, 그리고 교육을 안 받으면 뭔가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거. 그게 인제 처벌이 아니라 교육해라, 교육해서 뭐. 교육을 세 번이나 받았는데도 그랬다, 그러면 또 다른 식의 어떤 뭐, 처벌 위주인가 아니라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죠. 어떤. 뭐. 그냥 가능하다고 생각해. 불이익을 주는 거에 있어서,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나는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계속 교육해라. 그 여성들이 그렇게 안 하고, 쉽게 살지 않도록 ...” (사례 1)

“그런 대안 자체가 지금 없잖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 생업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우리나라는 갈수록 또 학력도 고

학력만 원해. 저학력, 못 배운 사람보다는 고학력을 ...” (사례 5)

4) 성매매피해자 개념집행 관련 문제점

성매매처벌법은 강요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경우 등에 대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매매피해자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경우 성판매자로서 처벌된다.

가) 성매매피해자 개념집행의 혼란스러움

성매매처벌법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처벌되지 않는 경우와 처벌되는 경우로 나눔으로 해서 법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기관과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NGO로서는 성매매피해자 개념해석과 관련하여 통일적이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과 NGO가 성매매피해자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수사기관은 법 집행기관이므로 법 해석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하고, 반면에 NGO는 성매매여성 지원을 담당하므로 가능하면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넓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 있게 되는 바, 이것은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 하나 어느 지역의 경찰청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지양해야 한다. 성매매피해에 대한 경찰교육을 통해 성매매피해자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최소한 어느 경찰이 사건을 맡든지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피해자 개념이 근데 인제 비범죄화 되가지고 피해자 개념으로 되면 완벽할텐데, 케이스대로 년 피해자고 년 판매여성이고 가해자로 처벌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참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법의 눈치를 봐야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의지를 갖고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어필해야 될까를 끊임없이 힘들어해야 되잖아요. 그럼 소진되죠. 이처럼 피해자 개념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경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상담소를 도와주고 피해여성을 도우려고 이 사건을 했지만, 처분결과가 예를 들어서 그냥 보호처분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벌금도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정식재판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분명히 상담소가 우리 또 계속 봐야 될 건데, 경찰한테 사건 제대로 한 거야? 그 얘기 안 나올 수 없다 이거죠.” (사례 2)

“수사기관마다 같은 성매매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 관점이 다르다보니 처벌의 수위도 엄청나게 된다. 그래서 상담소의 경우 어느 경찰서가 성매매여성들에 대해 우호적인지,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수준의 어떠한지를 사건의뢰에 앞서 고민하게 된다.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여전히 필요하다.” (사례 3)

“지금 제일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보통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성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을 피해자로 봐야될 것인가, 성매매 이걸 알고 성매매를 했다는데, 신고를 한다거나 도주해버린다거나, 이랬을 때 정말 피해자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럴 부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근절시키기 위해 나온 거니까, 법 대로 법 주문대로, 피해자로 간주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근데 인제 이거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성매매를 해서 어떤 업주한테 영업 이익을 준다거나 성매매를 할 생각없이 돈만 당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하고 또 여기서 하고. 또 그것도 자세히 파악을 해서 수사를 하면 사기가 되거든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또 수사를 해서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을 하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하지만 일단은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들은 피해자로 봐서 수사를 해야한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수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례 4)

나) 무리한 성매매피해자 해석이 갖는 문제점

다음 사례 5는 성매매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악용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 사례 3은 NGO 입장에서의 반대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법 집행기관은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을 법 규정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NGO는 성매매여성 전체를 성매매피해자로 보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양자 간에 관계하는 대상의 범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집행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성매매피해자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경찰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검찰로 송치되어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수사과정에서 과도한 에너지 낭비와 경찰, NGO간 신뢰관계 구축에 좋은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제가 보기에는 NGO단체를 제가 별로 신뢰 안 하는 거는. 사실은 피해 요건상으로는 피해자가 안 되는데도 법에 끼워 넣으려고 그래요. 피해자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근데 그것도 나중에 인제 검찰에 가고 법원에 갔을 때는 무죄가, 가해자가 무죄가 나올 경우가 많아지고.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단 얘기죠, 굳이. 물론 그런 NGO에 피해신고가 들어 왔으면 사전에 분석을 해보고 상담을 충분히 해서 분석도 해보고 그 심리상태를 조사해보고 해야하는데, 일단 처음에 들어오면, 피해자 요건에 충족이 안 되면 맞추려고 그래요 ... 실제 제가 사건 지금 하면서도 또 아가씨들이 피해자라고 얘기해요. 피해자라고 했는데 정말로 채무때문에 뭐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해서 도저히 못살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다른 지역에 가서 같은 업소에 또 종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피해자라고 한 사람이. 그걸 우리가 찾은 게 아니고. 근데 가해자라고 지목된 피고소인들. 피고소인들이, 업주들이라기보다 사채업자들이 이 사람들이 아가씨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찾아내가지고 ... 우리가 피해자들을 불러갖고 이게 사실이냐고 그러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또 일단 아니라고 하니깐 우리는 이쪽 말을 믿어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증거자료 가지고 와요. 그러면 나중에 와서 사실은 내가 거기서 며칠 동안 일했다, 하루 일했다, 이틀 일했다, 고런 식으로 얘길 해요. 그니까 누구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례 5)

“검·경찰에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대해 인정해 주지 않는 측면이 있다. 법 시행 이후 법을 악용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상담소들이 여성들에게 속고 있다는 비판, 여성들이 탕치기하도록 돕고 있다는 지적들을 듣는 것도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다. 상담소는 법집행 기관과 달리 여성들을 판단하고 객관적 판단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을 보는 관점의 확연한 차이로 매번 어려움을 겪는다.” (사례 3)

5)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보호 관련 문제점

다음 사례들은 수사기관의 성매매나 성매매여성에 관한 정보나 이해부족으로 성매매여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를 보여준다.

성매매여성은 성매매피해자가 되거나 판매자로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범죄자로 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어느 지역의 경찰을 만나는가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리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수사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매매피해를 인식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매매처벌법 집행과 관련하여 경찰교육 다시 시켜야 한다. 처벌절차에서 경찰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문제이다. 한 사례로 마약과 성매매가 중첩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증언하게 되었는데, 검사가 “병을 몇 번 집어 넣었느냐”를 묻는 등 여성에 대한 인권 의식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 여성은 다시는 재판정에 서지 않겠다고 하였다. 수사, 재판기관이 모두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해 피해자라는 개념이 없다. 사기성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듯하다.” (사례 3)

“성매매관련범죄는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성매매구조 모르면 선불금 있을 때 사기쳤다고 하게 된다. 경찰이 수사할 때 사기가 왜 있게 되었는지부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들이 2중 피해를 당하게 된다.” (사례 3)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신고를 했으면 나머지는 업소에 그대로 있게 되요. 단속을 하면 같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모르면 사람이 여성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원하면 인계해 준다. 이제 그런 과정들에 의해서. 알려줘서. 그게 잘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관점에서도 좋거든요. 자기판리가 잘 안되고, 자기절제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라 센터에서 지원하고 필요한 진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 4)

“판매여성들, 말로는 그래요. 이제 우리가 고소, 고발 사건을 가니까 지방청만 해도, 우리가 사건을 지방청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사건은 많이 했고, 교육을 거기서 시켜요. 일선 부서를.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노하우도 있고 개념도 많이 깨져 있어요. 그렇지만. 여청계에서. 전담부서가. 그래서 우리도 하면 좀 더 수월하니까, 훨씬 더 수월하니까, 힘이 안 들고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는 건 아녜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일선시, 군에 가면은 거의 노골적으로, 이게 어떻게 피해여성이나, 애는 사기로 고소당했으니 사기 피의자다, 근데 왜 성매매 상담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동석을 요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례 2)

“수사담당자들 중 일부만이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피해를 인정하고 모두 피해여성 개인의 실수나 책임을 물어 피해자가 아닌 성판매 범죄자의 시각으로 접근한다. 심지어 성적으로 타락한 여성, 부도덕한 여성으로 보며 수사 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접하기는 어렵다. 지속적으로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이해 교육과 성매매 수사기법에 대한 경찰과 검찰담당자 교육이 필요하다.”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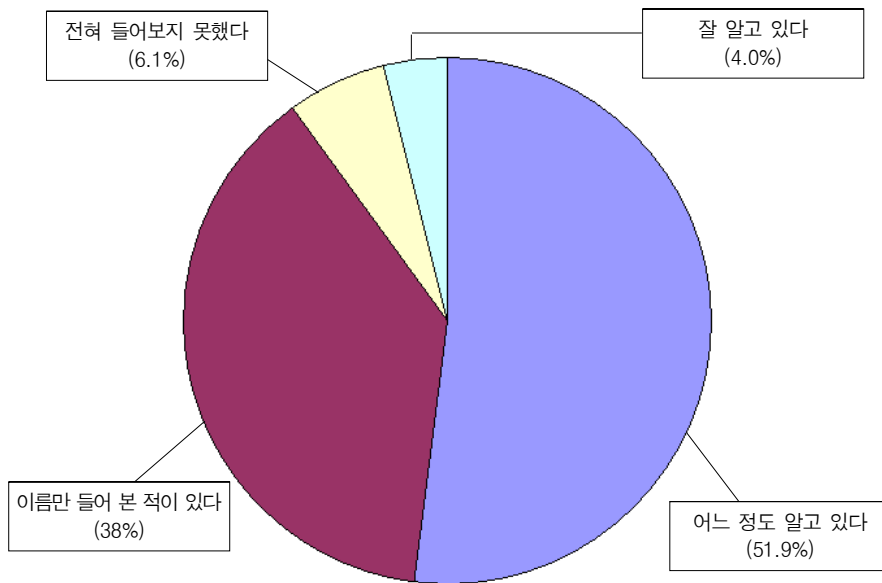
4. 성매매처벌법 인지도 조사결과

가. 성매매처벌법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인지도

1) 법의 인지도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51.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다’가 38.0%,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가 6.1%, ‘잘 알고 있다’가 4.0%로서 제일 적다.

그러므로 법이 존재하는 사실을 아는 정도(‘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는 93.9%에 이른다고 할 수 있으나, 법의 내용에 대해 아는 정도(‘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는 55.9%에 불과하다.



<그림 IV-2> 성매매처벌법의 인지도

법이 존재하는 사실과 법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성별에 따라 각각 비교해 보면, 남성(95.9%, 63.7%)이 여성(91.9%, 48.3%)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남녀 간의 인지차이는 99%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대체로 20대에서 50대의 연령층이 60대 이상의 연령층보다 법의 존재사실이나 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혼인상태별 인지도를 보면 기혼(95.1%, 58.8%)이 미혼(94.1%, 51.3%)보다 법의 존재사실과 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법의 존재사실과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학력별로 분석해 보면, 법의 존재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97.1%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이 고졸 이하(96.5%), 중졸 이하(71.3%)로 나왔다. 반면 법의 내용에 대하여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특히 중졸 이하의 법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20.9%)를 나타냈다.

<표 IV-26> 성매매처벌법의 존재사실의 인지도 - 응답자특성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기혼	미혼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재 이상
사례수	1,000	491	509	216	241	231	158	154	764	236	115	396	489
인지	93.9	95.9	91.9	93.5	99.2	97.4	94.3	80.5	95.1	94.1	71.3	96.5	97.1
비인지	6.1	4.1	8.1	6.5	0.8	2.6	5.7	19.5	4.9	5.9	28.7	3.5	2.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value		0.009***		0.000***					0.902		0.000***		

주1): 인지 -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임.

주2): * p<0.10, ** p<0.05, *** p<0.01.

<표 IV-27> 성매매처벌법 내용 인지도 - 응답자특성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		연 령					혼인상태		학력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기혼	미혼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사례수	1,000	491	509	216	241	231	158	154	764	236	115	396	489
인지	55.9	63.7	48.3	54.2	59.8	66.7	57.6	34.4	58.8	51.3	20.9	56.8	63.4
잘 앎	4.0	6.1	2.0	4.6	2.9	6.1	4.4	1.3	4.3	3.4	0.9	3.8	4.9
어느 정도 앎	51.9	57.6	46.4	49.5	56.8	60.6	53.2	33.1	54.4	47.9	20.0	53.0	58.5
비인지	44.1	36.3	51.7	45.8	40.2	33.3	42.4	65.6	41.2	48.7	79.1	43.2	36.6
이름만 들어본 정도	38.0	32.2	43.6	39.4	39.4	30.7	36.7	46.1	36.3	42.8	50.4	39.6	33.7
전혀 들어보지 못함	6.1	4.1	8.1	6.5	0.8	2.6	5.7	19.5	4.9	5.9	28.7	3.5	2.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value		0.000***		0.000***					0.101		0.000***		

주1): 인지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임.

주2): * p<0.10, ** p<0.05, *** p<0.01.

한편 성매매처벌법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559명을 대상으로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성매매 알선자와 성구매자는 모두 처벌된다'에 대한 인지율이 98.9%로 가장 높았으며, 이 밖에 '업주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을 판 피해자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74.4%), '성을 팔거나 사는 사람을 교육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69.5%), '성매매피해자는 부모, 변호사, 성매매관련상담소 상담원 등(신뢰관계에 있는 자)과 함께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69.4%), '성매매 관련 범죄자가 신고하거나 자수하는 경우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69.0%)는 사항에 관한 인지율은 약 70% 정도로 나타났다.

반면 '성매매피해자가 외국인 여성인 경우 수사과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60.2%)와 '성매매와 관련한 일부 범죄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51.8%)는 사항에 대한 인지율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2004년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진 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 존재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실제 법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성구매자 및 성구매자의 처벌조항 외에는 평균적으로 다른 법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 성매매처벌법 인지내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안다	모른다
성매매알선자·구매자 모두 처벌	559	98.9	1.1
강제적으로 성을 판 피해자 처벌 불가	559	74.4	25.6
성매매/매수자에 대한 교육/상담 제도	559	69.5	30.5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수사, 재판 가능	559	69.4	30.6
성매매 범죄자 자수 시 형 감면	559	69.0	31.0
성매매여성의 선불금 갚지 않아도 됨	559	67.0	33.0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금품 몰수	559	65.1	34.9
외국인 여성의 보호	559	60.2	39.8
신고 시 보상금 지급	559	51.8	48.2
모두 비인지	559	2.3	97.7

<표 IV-29> 성매매처벌법의 인지 내용 - 응답자 특성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		연령						혼인여부		학력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혼	기혼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재 이상	
사례수	558	313	245	116	144	154	91	53	120	438	24	224	310	
성매매알선자 구매자 모두 처벌	98.9	99.0	98.8	99.1	99.3	100.0	98.9	94.3	99.2	98.8	100.0	97.8	99.7	
	p-value	0.481		0.028*						0.654		0.047**		
강제적으로 성을 판 피해자 처벌 불가	74.4	77.3	70.6	71.6	73.6	71.4	82.4	77.4	71.7	74.7	79.2	76.3	72.6	
	p-value	0.061*		0.310						0.368		0.573		
성매매/매수자에 대한 교육/상담 제도	69.5	74.4	63.3	67.2	63.2	74.0	78.0	64.2	71.7	69.9	62.5	70.1	69.7	
	p-value	0.004***		0.076*						0.653		0.754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수사, 재판 가능	69.4	71.6	66.5	71.6	68.1	74.0	67.0	58.5	73.3	69.0	62.5	70.5	69.0	
	p-value	0.177		0.288						0.346		0.733		
성매매 범죄자 자수 시 형 감면	69.0	77.3	58.4	64.7	69.4	72.7	71.4	62.3	66.7	70.4	75.0	66.1	70.6	
	p-value	0.000***		0.450						0.459		0.391		
성매매여성의 선불금 갚지 않아도 됨	67.0	72.2	60.4	60.3	66.7	73.4	71.4	56.6	62.5	68.3	66.7	68.3	66.1	
	p-value	0.003***		0.063*						0.194		0.902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금품 몰수	65.1	70.3	58.4	58.6	63.2	68.2	71.4	64.2	63.3	66.1	58.3	66.1	64.8	
	p-value	0.003***		0.288						0.580		0.767		
외국인 여성의 보호	60.2	65.8	53.1	56.9	57.6	66.2	65.9	47.2	61.7	60.6	54.2	57.6	62.6	
	p-value	0.002***		0.077*						0.790		0.393		
신고 시 보상금 지급	51.8	57.5	44.5	48.3	47.2	58.4	51.6	52.8	50.8	52.5	41.7	54.0	51.0	
	p-value	0.002***		0.322						0.749		0.491		

주: * p<0.10, ** p<0.05, *** p<0.01.

2) 법의 인지 경로

조사 대상 중 성매매처벌법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는 939명에 대해 그 인지경로를 조사한 결과, TV/라디오(53.5%), 신문/잡지(26.7%) 등 대중매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외 인터넷 등 통신매체와 친구/가족/직장동료/이웃이 각각 8.9%,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 자료 소식지가 2.1%,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이 1.6%, 버스/지하철 광고(0.9%), 반상회보/구청소식지(0.5%) 순이었다.

<표 IV-30> 성매매처벌법 인지경로 - 반응별

(단위: 명, %)

구분		반응별	
		응답자수	비율
인 지 경 로	신문/잡지	452	26.7
	TV/라디오	907	53.5
	버스/지하철광고	15	0.9
	반상회보/구청소식지	8	0.5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 자료, 소식지	36	2.1
	학교/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27	1.6
	친구/가족/직장동료/이웃	99	5.8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150	8.9
계		1,694	100.0

법의 인지경로를 성별에 따라 비교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대중매체에 의한 인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다만 남성은 신문/잡지와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에 의한 인지가 여성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TV/라디오에 의한 인지가 남성보다 높다.

연령별 특성을 보면, 20대의 경우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에 의한 인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TV/라디오가 다른 경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여부로 살펴본 성폭력특별법의 인지경로는 기혼이 미혼보다 TV/라디

오, 신문/잡지를 통한 인지가 많은 반면, 미혼은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버스/지하철광고 등을 통한 인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성매매처벌법 인지경로 - 응답자 특성별
(단위: 명, %, 복수응답)

구분	전체	성별		연령					혼인여부		학력별		
		여성	남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혼	기혼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제 이상
사례수	939	468	471	202	239	225	149	124	222	717	82	382	475
신문/잡지	48.1	41.2	55.0	39.6	51.9	57.8	51.0	33.9	42.3	51.3	28.0	45.8	53.5
TV/라디오	96.6	97.6	95.5	94.1	97.9	96.4	96.0	99.2	92.8	97.6	98.8	98.2	94.9
버스/지하철광고	1.6	1.5	1.7	3.0	1.3	1.3	1.3	0.8	3.2	1.2	1.2	1.3	1.9
반사회보/구청소식지	0.9	0.6	1.1	1.5	0.4	1.3	0.7	0.0	1.4	0.7	0.0	0.5	1.3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3.8	4.3	3.4	5.0	2.9	4.4	4.7	1.6	5.4	3.2	1.2	2.6	5.3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2.9	2.1	3.6	5.4	3.3	3.1	0.7	0.0	6.3	1.9	0.0	0.8	5.1
친구/가족/직장동료/이웃	10.5	10.9	10.2	9.4	10.0	10.7	12.1	11.3	7.2	11.5	12.2	9.9	10.7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16.0	12.4	19.5	30.2	18.0	16.9	4.0	1.6	30.6	12.1	0.0	7.9	25.3

나.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신고여부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유흥주점, 숙박업소, 안마시술소 등에서 여전히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대한 질문에 이어 이러한 성매매 알선업소를 수사당국에 신고할지 여부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1) 성매매 알선업소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질문한 결과, 집결지(특정 지역에서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45.8%). 그 다음으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14.0%, 호텔 등 숙박업소 및 이발소, 안마시술소 등이 각각 13.4%, 인터넷 등 통신매체가 10.5%, 그 외 노래연습장 및 비디오방 등이 2.9%였다.

<표 IV-32> 성매매 알선업소

(단위: 명(%), N=1,000)

구분	1순위	2순위
집결지	458 (45.8)	123 (12.3)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140 (14.0)	267 (26.7)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소	134 (13.4)	182 (18.2)
이발소,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등	134 (13.4)	242 (24.2)
인터넷 등 통신매체	105 (10.5)	108 (10.8)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등	29 (2.9)	76 (7.6)
무응답	0 (0.0)	2 (0.2)
계	1,000 (100.0)	1,000 (100.0)

2) 향후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신고의사

<표 IV-33> 향후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신고의사

(단위: %, N=1,000)

구분		집결지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소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등	이발소,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등	인터넷 등 통신매체
신고의사	신고하겠다	27.5	26.6	26.5	29.0	28.2	28.8
	신고하지 않겠다	49.7	49.2	49.3	48.0	47.3	47.5
	잘 모르겠다	22.8	24.2	24.2	23.0	24.5	2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향후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를 발견한다면, 신고하겠는가를 질문한 결과, 약 25~30% 정도가 신고하겠다고 대답하였고, 나머지 70~75%는 신고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73.5%)’,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73.4%)’, ‘집결지(72.5%)’, ‘이발소,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등(71.8%)’ 순으로 ‘신고하지 않겠다’ 내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미신고 이유를 물어본 결과, 대부분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내지는 ‘신고해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먼저 집결지,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경우,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가 각각 48.6%, 51.5%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신고해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는 40.1%, 40.2%였다.

숙박업소, 노래연습장 및 비디오방 등의 경우에도 가장 큰 이유가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로 52.8%, 54.2%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신고해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39.3%, 37.3%였다.

<표 IV-34> 업소유형별 신고를 꺼리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집결지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소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등	
미 신 고 이 유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352 (48.6)	378 (51.5)	388 (52.8)	385 (54.2)
	신고해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291 (40.1)	295 (40.2)	289 (39.3)	265 (37.3)
	어디에 신고하는지 몰라서	35 (4.8)	24 (3.3)	25 (3.4)	21 (3.0)
	나도 가본 경험이 있어 신고할 수가 없어서	23 (3.2)	15 (2.0)	12 (1.6)	17 (2.4)
	후환이 두려워서	6 (0.8)	6 (0.8)	6 (0.8)	6 (0.8)
	사회적으로 인정이 필요	6 (0.8)	5 (0.7)	5 (0.7)	5 (0.7)
	귀찮아서	4 (0.6)	4 (0.5)	4 (0.5)	4 (0.6)
	성매매가 범죄인지 몰라서	3 (0.4)	2 (0.3)	2 (0.3)	2 (0.3)
	무서워서	2 (0.3)	2 (0.3)	2 (0.3)	2 (0.3)
	경찰서 자진출두	2 (0.3)	2 (0.3)	1 (0.1)	2 (0.3)
	피해여성이 생겨서	1 (0.1)	1 (0.1)	1 (0.1)	1 (0.1)
계	725	734	735	710	

다. 법의 효과성 및 관련법에 관한 인식

1) 성매매처벌법에 관한 인식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여부를 질문한 결과, 81.2%가 찬성하고 18.8%가 반대하였다. 전체 의견 중에서 44.0%가 매우 찬성하는 것으로 대답하였고, 37.2%가 조금 찬성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그리고 15.4%의 경우에는 별로 찬성하지 않았고, 3.4%는 전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성별에 따라보면 여성의 89.0%가 찬성하였고, 남성은 73.1%가 찬성하였다. 반면 여성의 11.0%, 남성의 26.9%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5> 성매매금지주의에 관한 인식

(단위: 명(%), N=1,000)

구분		전체	여성	남성
계		1,000 (100.0)	509 (100.0)	491 (100.0)
찬성	소계	812 (81.2)	453 (89.0)	359 (73.1)
	매우 찬성한다	440 (44.0)	290 (57.0)	150 (30.5)
	조금 찬성한다	372 (37.2)	10 (32.0)	209 (42.6)
반대	소계	188 (18.8)	56 (11.0)	132 (26.9)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154 (15.4)	50 (9.8)	103 (21.2)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34 (3.4)	6 (1.2)	28 (5.7)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 188명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80.3%는 ‘성매매를 금지할 경우 음성적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하였고, ‘성매매는 개인의 사생활이므로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가 9.6%, ‘성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므로 금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가 5.3%, ‘성매매도 직업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가 3.7%였다. 성별에 따라서 보면, 여성의 경우 ‘성매매를 금지할 경우 음성적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82.1%)가 남성(79.5%)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 ‘성매매는 개인의 사생활이므로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11.4%)가 여성(5.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6> 성매매 금지주의를 찬성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N=188)

구분	전체	여성	남성
계	188 (100)	56 (100)	132 (100)
성매매 금지시 음성적으로 확산	151 (80.3)	13 (82.1)	105 (79.5)
성매매는 개인 사생활이므로 국가개입 불가	18 (9.6)	3 (5.4)	15 (11.4)
성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함	10 (5.3)	3 (5.4)	7 (5.3)
성매매도 직업으로 인정되어야 함	7 (3.7)	2 (3.6)	5 (3.8)
기타	2 (1)	1 (1.8)	0 (0)

주: 기타는 '독신자의 성욕구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성폭력 증가'임.

2) 법의 효과성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범죄 감소에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56.6%는 기여하였다고 대답하였다. '기여하였다'고 답한 중에는 '매우 크게 기여하였다'는 3.3%,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가 53.3%로 일정 수준에서 성매매처벌법의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근소한 차이로 성매매처벌법의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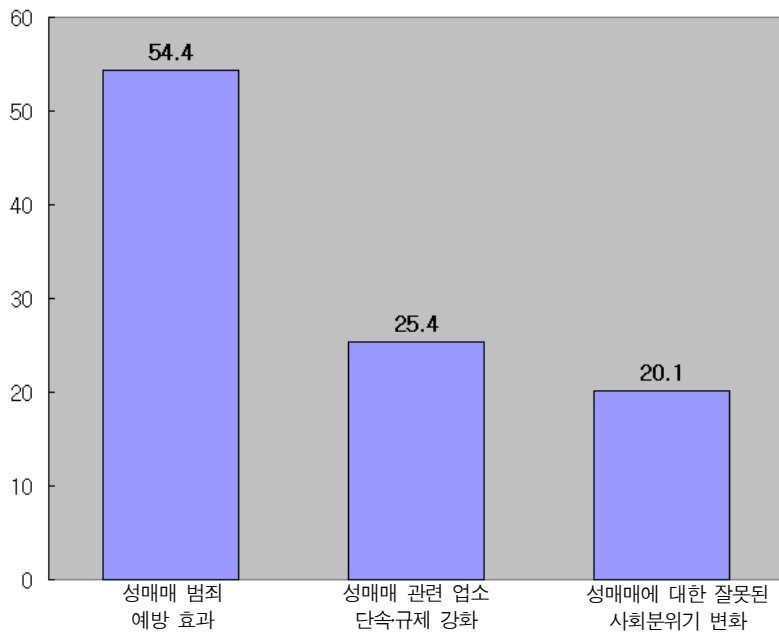
<표 IV-37>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 방지 기여 여부
(단위: 명(%))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여성	남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기여 (56.6)	매우 기여	33 (3.3)	18 (3.5)	15 (3.1)	5 (2.3)	5 (2.1)	9 (3.9)	102.1 (4.4)	6.93 (4.5)
	어느 정도 기여	533 (53.3)	293 (57.6)	240 (48.9)	105 (48.6)	127 (52.7)	128 (55.4)	125.7 (54.4)	87.01 (56.5)
비기여 (43.4)	별로 기여 못함	368 (36.8)	176 (34.6)	192 (39.1)	88 (40.7)	89 (36.9)	76 (32.9)	58.9 (37.3)	36.4
	전혀 기여 못함	66 (6.6)	22 (4.3)	44 (9.0)	18 (8.3)	20 (8.3)	18 (7.8)	6.0 (3.8)	2.6
계	1,000	509	491	216	241	231	158	154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범죄 감소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43.4%가 대답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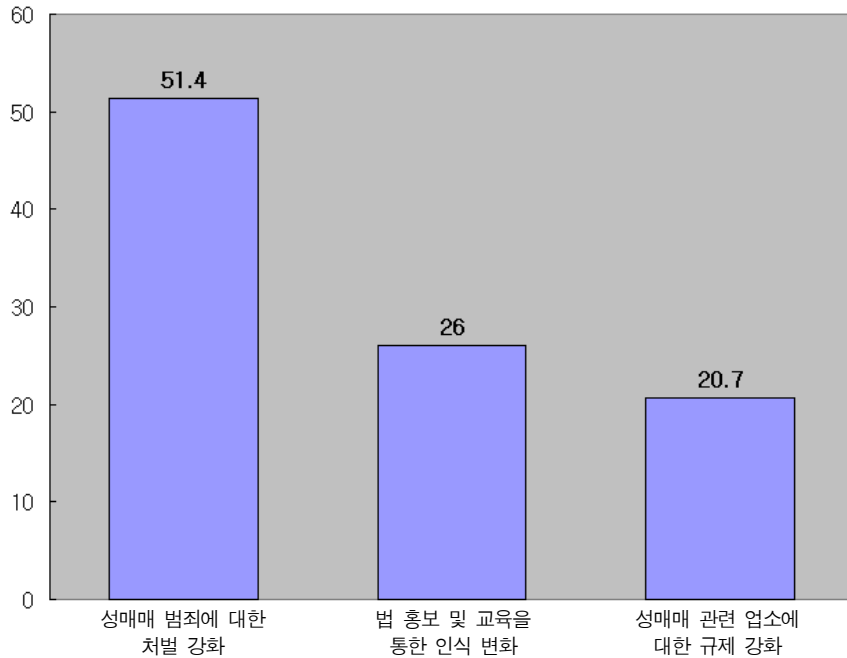
다. ‘기여하지 못했다’는 응답 중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였다’가 36.8%,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가 6.6%를 차지하였다. 성별에 따라 보면, 여성의 38.9%, 남성의 48.1%가 기여하지 못했다고 대답하였다.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방지에 기여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기여했다고 본 566명 중에 54.5%가 ‘성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성매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았고, ‘성매매 관련 업소 단속 및 규제 강화’가 25.4%로 다음 순이었고, 마지막으로 ‘성매매처벌법을 통한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변화 등 사회분위기 효과’가 20.1%였다.



<그림 IV-3>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 방지 기여 여부 (단위: %)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감소에 기여하지 못했다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성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5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법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 유도’가 26.0%, ‘성매매 관련 업소에 대한 규제강화’가 20.7%였다.



<그림 IV-4> 성매매처벌법의 개선되어야 할 점 (단위: %, N=1,000)

3) 향후 성매매처벌법 내용 상 보완되어야 할 점

향후 성매매처벌법 내용 상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63.2%가 ‘성매매알선업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우선 순위로 두었다. 그 다음으로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12.1%, ‘성매매피해자 개념규정 확대’가 8.1%,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 보장’이 5.0%,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치료 및 감시체계 강화’가 3.4%, ‘변종 성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이 2.9% 등 이었다. 성별에 따라보면, 여성의 경우 68.2%가 ‘성매매알선업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우선 순위로 두었다. 그 다음으로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10.4%, ‘성매매피해자 개념규정 확대’가 7.5% 등 이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58.0%가 ‘성매매알선업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우선 순위로 두었다. 그 다음으로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13.8%, ‘성매매피해자 개념규정 확대’가 8.8% 등 이었다.

<표 IV-38> 향후 성매매처벌법 내용 상 보완되어야 할 점
(단위: 명(%))

구분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보 완 점	성매매 알선업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632 (63.2)	133 (13.3)	87 (8.7)
	성판매자(강요 등에 의하지 않고 성판매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	121 (12.1)	314 (31.4)	13 (13.0)
	성매매피해자(강요 등에 의해 성판매를 한 경우) 개념 규정 확대	81 (8.1)	120 (12.0)	182 (18.2)
	수사 및 재판과정 등에서의 피해자 인권 보장	80 (8.0)	177 (17.7)	155 (15.5)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치료 및 감시체계 강화	34 (3.4)	119 (11.9)	206 (20.6)
	변종 성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29 (2.9)	79 (7.9)	99 (9.9)
	해외성매매 처벌규정 신설	10 (1.0)	26 (2.6)	54 (5.4)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 적용대상 범죄 확대	9 (0.9)	27 (2.7)	74 (7.4)
	잘 모르겠다	4 (0.4)	5 (0.5)	13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 성매매 관련 외국 입법례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성매매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성매매방지정책과 관련 제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외국의 법과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7년 현재 시행 3년을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성매매방지를 위한 외국의 예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현재의 성매매방지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스웨덴과 대만의 관련 정책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스웨덴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여 성판매여성은 성매매피해자로 보아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하는데 모델이 되었던 입법례이다. 대만의 예는 대만이 성매매에 관한 규제주의를 채택하여 우리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우리와 같은 아시아권에 위치하고 있고, 성매매가 성산업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가. 스웨덴의 성구매자 관련 정책

1) 스웨덴 성구매자 관련 정책의 현황¹⁰⁸⁾

스웨덴은 성매매에 관한 법적 규제와 관련하여 폐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으나 1998년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라고 하는 광범위한 법 개정을 통해 여성에 대한 학대, 성폭력, 폭력, 성매매 등 광범위하게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로 1999년 제정된 「성적 서비스 구매금지에 관한 법」은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성매매처벌법 제정에 모델이 된 입법례이다. 이 법에 따르면,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양성불평등에서 비롯되는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되고 성매매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착취 및 억압의 또 다른 표현이며 성매매종사자는 언제나 피해자로 인식된다.

즉,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성판매자들은 양성불평등의 피해자이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남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이다.

이와 같이 이 법에서는 성구매자만을 처벌하고, 기타 길거리 성매매나 호객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공공질서에 반하는 범죄조항에 의한다.

이 법 시행 이후 성매매종사자들이 성매매업을 떠나고 있다는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한 우려스러운 점도 보고되고 있다. 성구매자를 범죄인화함으로써 인신매매의 피해자 및 착취의 피해자가 되는 불법체류 성매매종사자들은 성구매자들의 증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송환되어 외국인 성매매종사자들의 피해와 착취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있고, 성매매종사자들이 법 집행과정에서 성구매자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으려 하여 실질적인 기소율이 매우 낮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한다.

108) 스웨덴의 성구매자정책에 관해서는 이은애·김재광(2006),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연구』, 한국법제연구원, 54~61면 참조.

또한 성구매자 처벌 이후 체포의 위험을 피하려는 성구매자 때문에 성판매 여성들은 더욱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길거리 성매매의 경우 경찰의 눈을 피해 이루어지는 가격홍정의 시간이 더욱 짧아지고 이 때문에 성판매여성들은 성구매자로부터의 폭력의 가능성에 더욱 노출되고, 성구매자처벌법 시행 이후 길거리 성구매를 시도하는 성구매자들은 이미 범죄기록을 갖고 있어 폭력의 위험성이 그만큼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행 상 부작용이 있지만 스웨덴의 성구매자처벌법은 급진주의적 여성주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세계 최초로 성구매자 처벌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법을 모델로 우리 법에서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한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성판매 여성을 모두 피해자로 자리매김한 것은 아니지만 성매매를 강요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매매피해자로 인정하면서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규정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좋은 입법 사례로서 평가된다. 성매매시장이나 환경이 여러모로 같지 않은 상황에서 스웨덴의 처벌법에 관련하여 우려되는 지점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경우 이전에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 시 성판매 여성이 범죄자였기 때문에 성구매자들이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 등이 있었던 것에 비해 현행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피해자는 범죄자가 아니므로 최소한 그런 부분은 사라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성구매 남성에 대한 연구 및 남성단체 지원¹⁰⁹⁾

또 하나 스웨덴의 성매매정책과 관련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정책은 성구매 남성에 대한 연구 및 남성단체 지원에 관한 것이다.

스웨덴 정부는 남성들에 대한 예방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남성들의 자발적인 단체와 조직을 지원한다. 스웨덴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범죄를

109) 이하의 내용은 장필화 외(2001),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사례연구』, 여성부, 69~71면 참조.

자행하는 남성들과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남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들이 있으며 그 중 ‘위기센터’, ‘남성폭력에 대한 남성연대’ 등의 조직은 남성들을 위해 남성들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구매자들이 삶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을 도와주고 지원하기 위해 “스웨덴의 성구매남성연구” 등의 남성연구가 활발히 수행, 지원되고 있고, 성구매자를 위한 상담서비스가 성구매자에게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 서비스 운영자들은 경찰, 검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매자와 그의 가족들, 연인이 함께 고객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스웨덴은 성매매당사자 중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므로 성구매자를 위한 상담서비스나 남성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듯하다. 우리의 경우도 성구매자 자신들이 성구매행위의 범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되면 재수없게 걸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많은 경우 왜곡된 성인식으로 인해 잘못된 성매매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도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상담서비스 제공이 매우 유익할 듯하다. 성구매를 원하는 수요자측인 성구매자를 성구매로부터 차단시킨다면 성매매의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 경찰 등 관계자 교육

스웨덴 정부는 성매매 관련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하기 위해 경찰들을 3년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 연계는 스웨덴 경찰의 의무사항이다.

그리고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를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 대한 교육을 중앙, 지방단위의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들에게 수행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 지방단체 등에 의해 시행되는 교육에 대해 국제재판소, 검찰청, 보건복지부, 국가위원회가 협의할 의무를 가지며, 국가 경찰위원회에 이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경찰 등 관계자 교육 역시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스웨덴의

예에서처럼 경찰들을 3년간 지속적으로 교육시킨다면 성매매 관련 전문가 수준의 기량을 갖고 성매매사건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사건 수사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대만의 퇴폐업소 척결정책

대만은 원래 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1994년 천수이피엔 타이페이 시장이 취임(1994)한 이후 대만의 성매매근절정책을 펴면서 대대적인 퇴폐업소 단속을 시작하였다.¹¹⁰⁾

대만의 이러한 퇴폐업소 단속정책은 타이페이 경찰국이 주도하였으며, 강력한 단속이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그 여파로 1997년 공창제 폐지 시행을 선포하게 되었다.

타이페이의 성매매방지정책은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정책진행과정은 제1단계 경찰 및 관계공무원 유착비리 차단, 제2단계 퇴폐업소 척결, 제3단계는 공창제 폐지와 공창을 전업시키기 위한 대안서비스로 레인보우정책¹¹¹⁾이 시행되었다. 이 정책들은 우리의 경우 집결지 폐쇄정책과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운영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가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제2단계 퇴폐업소 척결사업에 관한 것이다. 이 사업 시행 당시 사우나, 여관, 이발소, 목욕탕, 룬살롱, 식당까지 단속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3개월 간의 사전조사과정을 거쳐 업소명단을 파악하고, 한달 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적발된 업소에 대해 단전단수조치를 취하였다. 퇴폐업소 단속도 단계별로 이루어져 초기 주택가 부근에서부터 이후 상업지역의 유흥업소로 점차 단속지역을 확대하였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시 적발된 경우 타이페이의 조례에 따라 6개월 이상 전기와 수도물을 끊어 버리는 조치를 취했으며, 단전단수기간

110) 장필화 외(2001), 앞의 글, 29~38면 참조.

111) 레인보우정책은 공창들을 전업시키기 위한 대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직업훈련소 운영, 건강보험카드 발급, 경제보조, 가족부양보조금, 취업·창업지원, 법률상담 및 직업상담 을 제공하는 것이다.

에는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사도 금지하였다. 이 조치의 목표는 한 번 적발된 업소는 다시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었다.

단전단수조치 결과 퇴폐업소가 감소하였으며, 초기에는 적발된 업소가 계속 영업을 재개하여 한 업소가 여러 차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단전단수 조치 이후에는 한 번 적발된 업소가 다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퇴폐업소가 많이 감소하였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실제 성매매업소로 단속되어 업주가 구속되고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아도 그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 최근에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업소에서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발생하여 영업정지, 영업소폐쇄 조치를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¹¹²⁾

대만의 단전단수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우리의 경우 도입된다면 산업형 성매매업소의 축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단전단수조치를 시행할 경우 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이 정도의 특단의 조치를 선택한 대만 타이페이시의 예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만 타이페이시 사례는 공창제, 즉 성매매정책에 관한 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예라서 우리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매매가 성매매를 매개하는 조직으로 구성된 하나의 ‘산업’으로 구성되어 ‘거리 성매매’가 두드러진 서구와는 다른 아시아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공통점이 있다.

산업형 성매매단속과 업주처벌이 성매매처벌법의 제정목적의 하나라고 볼 때, 성매매알선행위를 포착하여 업주를 처벌함과 동시에 그 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업주는 처벌되어도 영업은 계속되는 우리 사회의 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해 단전단수조치와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대표되는 대만의 퇴폐업소 척결정책은 우리의 성

112) 2005. 8. 18 이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 4. 30 원안가결되었다.

매매방지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할 선례라고 할 수 있다.

6. 소 결

이상에서 성매매처벌법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성매매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집행 현황 및 문제점, 법 인지도 조사, 외국 입법례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그 내용과 향후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성매매처벌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 성매매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수를 보면, 업주 등 관련자는 2004년 16.7%, 2005년 22.0%로 증가했다가 2006년 10.5%로 감소, 2007년 8월 현재 14.4%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구매자는 2004년 60.0%, 2005년 62.0%, 2006년 79.0%, 2007년 8월 현재 70.1%이고, 성매매여성은 2004년 23.3%, 2005년 16.0%, 2006년 10.5%로 감소하였고, 2007년 8월 현재 15.5%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성구매자의 검거비율이 60%이상으로 높은 반면, 업주 등 관련자나 성매매여성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성구매자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 때는 성구매자 처벌근거가 법에 있었으나 처벌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훈방해 오던 것을 성매매처벌법 시행에 따라 성구매자를 적극 처벌하게 되었고, 집중테마단속 및 영업장부·신용카드 전표 등에 대한 추적 수사 등으로 1개업소 단속 시 수십, 수백 명의 성구매자가 단속, 검거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2007년 현재 성매매사범 중 특히 성구매자, 성판매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우선 성구매자는 회사원, 자영업의 비율이 높고, 연령대는 30대, 20대, 40대의 순이며, 재범여부와 관련하여 전과가 없는 경우가 90% 이상이다. 또한

성구매자들의 성구매 이용장소 및 수단을 보면, 성구매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는 2007년의 경우 안마·이발소(32.2%), 마사지·휴게텔(19.7%), 인터넷(8.8%), 유흥단란(6.7%), 집결지(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여성의 연령별 특성을 보면, 2007년 7월 현재 20대(50.7%), 30대(23.1%), 14~19세(8.6%), 50대(8.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20대 연령은 감소하고 30~40대 연령은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의 기소율을 보면, 2004년 76.5%였던 것이 2005년 57.5%, 2006년 19.1%로 되어 해가 갈수록 기소율이 떨어지고 있다. 성구매자에 대한 존스쿨 교육 조건의 기소유예가 많아진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범죄자에 대한 구속, 불구속 상황을 보면, 2004년에 비해 2005, 2006년으로 갈수록 구속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바, 성매매처벌법 시행초기에 비해 수사기관의 처벌의지가 약화된 것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법원의 성매매사건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제1심법원의 선고결과를 보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 중 2005년에 처리된 765명 중 집행유예가 323명(42.2%), 재산형 294명(38.4%), 유기징역 39명(5.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유예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는 성매매강요, 알선, 구매, 판매행위 등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범죄유형이 포함된 것이다.

정부의 성매매정책으로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성매매방지관련 시행계획 포함과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의 활동과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수립, 시행, 법 집행기관인 경찰청의 성매매테마단속 전개와 117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운영, 법무부의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 교육)과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클린지수 평가 등이 현재 집행되고 있고,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를 토대로 한 개선대책, 즉 변종 성매매업소의 성매매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마련, 성매매알선업자 및 알선업소의 건물주에 대한 처벌강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강화, 처벌 가능한 유사성교행위 유형의 구체화, 성매매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규정

의 실효성 제고, 안마관련업소의 성매매알선장소 제공 가능성 제거 그리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 성과를 토대로 한 인터넷 성매매, 해외성매매 단속과 처벌강화 및 성매매알선업자 등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강화를 통한 성매매 차단에 계속적으로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성매매처벌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경찰, 검찰, NGO관계자 면접을 통해 성구매자를 비롯한 수사기관, 일반사회에서의 성구매행위에 대한 범죄인식이 미흡하고, 성매매업소 단속, 수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획수사에 우려되는 부분과 성매매알선업자 처벌이 미약하고 성매매행위 장소제공과 건물주 처벌이 미흡하며, 내부고발자 신고가 저조하다는 것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판매자에 대한 사후대책이 부족하고,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피해자 개념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으며,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보호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인지도 조사에서는 성매매처벌법의 존재와 내용에 관한 인지도, 성매매알선업소에 대한 신고여부, 법의 효과성 및 관련법에 관한 의식에 관해 알아 보았다.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법이 존재하는 사실을 아는 정도(‘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는 93.9%에 이르나, 법의 내용에 대해 아는 정도(‘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는 55.9%에 불과하다. 또한 성별로는 남성(95.9%, 63.7%)이 여성(91.9%, 48.3%)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남녀 간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2004년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진 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 존재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실제 법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성구매자 및 성판매자의 처벌조항 외에

는 평균적으로 다른 법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 인지 경로는 TV/라디오(96.6%), 신문/잡지(48.1%) 등 대중매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질문한 결과, 집결지(45.8%), 단란주점, 유흥주점(14.0%), 호텔 등 숙박업소 및 이발소, 안마시술소(13.4%), 인터넷 등 통신매체(10.5%), 그 외 노래연습장 및 비디오방 등(2.9%)의 순으로 답하였고, 향후 성매매알선업소에 대한 신고의사와 관련해서는 약 25~30% 정도가 신고하겠다고 대답하고, 나머지 70~75%는 신고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성매매알선업소에 대한 미신고 이유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또는 '신고해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의 이유가 많았다.

법의 효과성 및 의식과 관련하여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여부를 질문한 결과, 81.2%가 찬성하고 18.8%가 반대하였다. 금지주의에 대한 반대이유로는 80.3%는 '성매매를 금지할 경우 음성적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방지에 기여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기여했다고 본 566명 중에 54.5%가 '성매매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성매매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았고, '성매매 관련 업소 단속 및 규제 강화'가 25.4%로 다음 순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성매매처벌법을 통한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변화 등 사회분위기 효과'가 20.1%였다.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감소에 기여하지 못했다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질문해 본 결과, '성매매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5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법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 유도'가 26%, '성매매 관련 업소에 대한 규제강화'가 20.7%였다.

향후 성매매처벌법 내용 상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해 질문해 본 결과, 63.2%가 '성매매알선업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우선 순위로 두었다. 그 다음으로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12.1%, '성매매피해자 개념 규정 확대'가 8.1%,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인권 보장'이 5.0%, '성구

매자 재범방지교육/치료 및 감시체계 강화'가 3.4%, '변종 성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이 2.9% 등이었다.

다. 성매매 관련 외국 입법례

2007년 현재 시행 3년을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현재의 성매매방지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스웨덴과 대만의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스웨덴은 성매매에 관한 법적 규제와 관련하여 폐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8년 개정된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은 여성에 대한 학대, 성폭력, 성매매 등 광범위하게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게 되었고, 그 연장선에서 1999년 제정된 「성적 서비스 구매금지에 관한 법」은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성판매자들은 양성불평등의 피해자이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남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성구매자를 범죄인화함으로써 인신매매의 피해자 및 착취의 피해자가 되는 불법채류 성매매종사자들은 성구매자들의 증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송환되어 외국인 성매매종사자들의 피해와 착취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거나 성구매자 처벌 이후 체포의 위험을 피하려는 성구매자때문에 성판매여성들은 더욱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하나 스웨덴의 성매매정책과 관련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정책은 성구매남성에 대한 연구 및 남성단체 지원에 관한 것이다.

스웨덴 정부는 남성들에 대한 예방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위기센터', '남성폭력에 대한 남성연대' 등 남성들의 자발적인 단체와 조직을 지원한

다. 또한 성구매자들이 삶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을 도와주고 지원하기 위해 “스웨덴의 성구매남성연구” 등의 남성연구와 성구매자를 위한 상담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 정부는 성매매 관련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하기 위해 경찰들을 3년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를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 대한 교육을 중앙, 지방단위의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들에게 수행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 지방단체 등에 의해 시행되는 교육에 대해 국제재판소, 검찰청, 보건복지부, 국가위원회가 협의할 의무를 가지며, 국가 경찰위원회에 이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음은 대만의 퇴폐업소 척결정책을 보면, 대만은 원래 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1994년 천수이피엔 타이페이시장이 취임(1994)한 이후 대만의 성매매근절정책을 펴면서 대대적인 퇴폐업소 단속을 시작하였다.¹¹³⁾

타이페이의 성매매방지정책은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제1단계 경찰 및 관계공무원 유착비리 차단, 제2단계 퇴폐업소 척결, 제3단계는 공창제 폐지와 공창을 전업시키기 위한 대안서비스로 레인보우정책의 3단계로 추진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제2단계 퇴폐업소 척결사업에 관한 것이다. 이 사업 시행당시 사우나, 여관, 이발소, 목욕탕, 룸살롱, 식당까지 단속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3개월 간의 사전조사과정을 거쳐 업소명단을 파악하고, 한달 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적발된 업소에 대해 단전단수조치를 취하였다.

단전단수조치 결과 퇴폐업소가 감소하였으며, 초기에는 적발된 업소가 계속 영업을 재개하여 한 업소가 여러 차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단전단수조치 이후에는 한 번 적발된 업소가 다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퇴폐업소가 많이 감소하였다고 한다. 스웨덴의 성구매자에 관한 교육을 비롯한 성구매자 정책이나 대만의 유흥업소에 대한 척결정책은 우리가 성매매방

113) 장필화 외(2001), 앞의 글, 29~38면 참조.

지정책을 수행하면서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라 할 것이다.

이상의 성매매관련 정책이나 국민의 인지도 및 외국 입법례의 고찰을 통해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성매매방지책의 변화와 그로 인해 일부 진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법 인지도 조사에서 나왔듯이 성매매처벌법의 존재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93.9%가 인지하고 있어 단연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의 충분한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의 결여로 시행초기 성매매금지에 관한 찬반의견이 엇갈렸고, 아직까지도 법 제정과 시행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의식전환 차원에서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처벌법은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의 제정으로 다시 탄생되었다. 윤락행위가 성행하게 된 것을 윤락여성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들에 대한 선도보호에 목적을 두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과는 달리 성매매알선행위와 성을 파는 행위, 사는 행위가 모두 처벌되고, 폭행, 협박, 위계에 의한 성매매강요나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의 경우는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의 시행에 대한 평가는 2, 3년으로는 아직 이르다고 할 것이다.

법 시행과정에서 신종, 변종 성매매가 출현한다거나 수사기관의 단속, 수사가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 법의 실효성은 없다고 단정해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성매매의 금지는 성매매가 인간존엄성에 대한 침해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음을 일반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법 집행자인 수사기관 담당자들의 성매매에 관한 인식과 전문성 배양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 계획이 꾸준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처벌법이 계속 살아있는 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

법제 정비방안

1. 성폭력	317
2. 가정폭력	323
3. 성매매	330

지금까지 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특례법·성매매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공식통계,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경찰, 검찰, NGO와의 심층면접 자료를 통하여 현행 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특례법·성매매처벌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위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특례법·성매매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성폭력

가. 성폭력 개념의 확장

성폭력특별법은 이제 가해자 남성/피해자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에 서 벗어나 성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담아 내는 도구로써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미 성폭력 인지도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일반 국민 83%가 성폭력피해자는 남성·여성의 성별 차이의 문제라기 보다는 성중립적인 사회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 외국의 여러 국가에서 강간을 성중립적인 관점에서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성폭력의 개념 확장은 필수적인 정비 방안으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돕고 있는 NGO 관계자들과 법 집행자들 역시 현재 증가하고 있는 동성 간의 성폭력과 남녀 구분 없이 아동 성폭력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강간의 객체를 부녀자로 상정하는 성폭력 개념의 협소함을 지적하며 강간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 성폭력, 부부 간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동의에 의한 성관계와 성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 집행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인, 연인, 부부 간에 발생하는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성폭력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성폭력 개념의 확장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그리고 법 집행자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부장적이고 왜곡된 의식을 교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나. 성폭력전담관 제도의 정비 방안

최근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전담관 제도는 형식적인 차원에서 전담관이 존재하지만 내용적으로 전담관의 전문성은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또한 인지도 조사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전담관 제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전담관 제도가 어떻게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인지를 일반 국민들이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또한 문제로써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전담관 제도 신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전담관 제도가 아닌 성폭력사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훈련과 현실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일선 경찰에서 실행되고 있는 전담관 제도의 경우 성폭력전담관은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피해자 조서를 꾸미고 강력반의 일반 형사들이 조사를 하는 이원화된 구조의 체제 정비가 우선시 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을 찾기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One-Stop 지원센터 체제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성폭력전담 경찰, 검사 뿐 아니라 일반적인 경찰과 검사 모두 성폭력사건을 다룰 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법 해석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 피해자보호를 위한 진술녹화제도의 정비 방안

성폭력피해자의 반복적인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진술녹화제도는 긍정적인 제도로써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실행 과정에서의 미숙함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진술녹화를 통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의 해석 차이는 경찰의 과중한 업무로 귀결됨과 동시에 피해자의 반복 진술을 최소화하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진술녹화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검찰과 경찰이 함께 만듦으로써 진술녹화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유치장이나 취조실 바로 옆에 배치된 진술녹화실의 환경 개선 작업도 정비방안의 하나로 제기되어야 한다.

라. 친고죄 폐지에 대한 검토

친고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성폭력특별법의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나올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로써 빠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 사회 내에서 친고죄의 존속은 한국의 유교적인 성문화, 즉 강간을 여전히 정조에 관한 죄로 생각하고 따라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친고죄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계속 주장해 왔다. 결국 우리나라에 친고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성폭력을 사회적인 범죄가 아닌 개인적인 권리의 문제로만 한정하는 경향성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의 성문화의 점진적인 변화는 친고죄 폐지를 큰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미 다수의 피해자인 여성을 대변하는 여성단체들은 친고죄를 통해서 피해자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2차 피해의 방지를 보완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형법 상의 친고죄 폐지 후에 제기될 피해자의 2차 피해의 문제는 또 다른 보안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마. 부부 간의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부부 간의 성폭력은 현행 형법 상의 강간 규정으로도 원칙적으로는 처벌 가능하다. 집행과정 상의 문제점에서도 밝혔듯이 현행법으로 부부 간의 성폭력은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자들의 보수적인 시각 때문에 실

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한 번의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법 집행자들이 결혼한 부부의 성적 관계는 혼인계약이며 의무라는 관점에 근거하여 상호 동의한 성관계와 성폭력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 간의 성폭력에 대한 규정을 법률 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혼인 계약의 의무라는 동의 하에 성관계와 성폭력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부 간의 성폭력은 성폭력특별법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바. 장애인의 성폭력 처벌 규정 정비문제

제정 당시에는 신체장애자에 대한 준강간 등을 처벌하였는데, 1997년 8월 2차 개정에서 그 범위를 신체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장애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의 보호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성폭력특별법 제8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항거불능’ 요건을 둘러싸고, 판례는 “[성폭력특별법 제8조에 따른]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¹⁴⁾라고 ‘항거불능’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신체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에 제8조를 적용하기 더욱 힘든 현실이다.

이러한 법해석은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에서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과 협박(최협의설 적용)에 피해자가 강렬히 저항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최협의설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인한 한계라고 본다.

114) 대법원 2000. 5. 26, 98도3257; 대법원 2003. 10. 24, 2003도5322; 대법원 2004. 5. 27, 2004도1449 판결 참조.

최근 성폭력특별법 개정안¹¹⁵⁾에 따르면 기존의 ‘항거불능’의 개념을 삭제하는 주장이 있다. 항거불능 개념이 삭제될 경우 신체장애 내지는 정신적 장애의 유무만을 확인하면 되므로 훨씬 성폭력피해를 인정받기 쉬워질 것이다.

결국 장애인의 성폭력 처벌 규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특히 성폭력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정신장애’를 ‘지적 장애’로 수정하는 제안은 또 다른 의미에서 경청할 만하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 수정도 필요하다. 또한 법 집행자들이 지적 장애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것처럼 보일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명백한 강간임에도 불구하고 화간으로 판결내리는 경우 등에 대해서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성폭력을 처리하는 기준에 대한 좀더 면밀한 분석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폭행이나 협박은 없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비동의 간음에 대해 현행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은 아무런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실제로 성관계라는 것이 동의에 의한 성관계와 물리적 폭력이 행해지는 강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무수한 형태의 동의되지 않은 형태의 성관계가 존재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¹¹⁶⁾ 부부 간이나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에까지 이르지 않는으나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 현행법 규정 상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07. 4. 18 임종인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279조는 “사람에 대하여 그가 동의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성적 행동을 하는

115) 성폭력특별법 개정법률안(이은영 의원 대표발의, 2005. 6. 22 의안번호 2091) 참조.

116) 이호중(2007),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성폭력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2007. 2. 8), 여성인권법연대.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대해, 명확한 행위양태를 규정하기 힘들어서 오는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실무상 입증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견해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에 대해 최협의설을 따르고 있는 법해석의 관행을 완화시키지 않는 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동의없는 강제적 성관계’를 보호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¹¹⁷⁾

따라서 항거곤란의 정도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동의없이 간음·추행한 경우, 그리고 항거곤란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저항의 외적 표시를 남길 여지가 없이 공포심에 짓눌려 당한 경우 등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동의 간음죄는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¹¹⁸⁾

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사업의 강화

성폭력특별법의 실질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국민, 정부, 경찰, 검찰, 법원을 비롯한 사법기관, 피해자보호시설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이해와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의식에 기초한 이해, 성폭력사실의 신고와 사법기관과 피해자보호시설의 활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의 책무, 사법기관의 인권보호 관점에서 사건처리, 피해자보호시설의 상담과 보호, 치료가 상호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고 그 역할이 잘 이루어져야 법의 실효성과 인권보장기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법 시행주체들에 대한 인권과 양성평등의식, 관련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연수원에서부터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

117) 이호중(2007), 앞의 글, 15~16면 참조.

118) 한인섭(1994), “성폭력특별법의 형법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3호, 한국피해자학회, 37면; 윤덕경 외(1999),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38면.

체적인 집행과정과 방식 그리고 관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경찰에게 실시되는 정기적인 교육에서 양성평등적이고 성중립적인 관점에서 성폭력사건을 집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하우가 무엇인지를 훈련하는 교육의 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도 주요한 정비방안 중의 하나로 채택되어야 한다. 또한 성폭력예방교육을 학교, 가정, 조직 내에서 의무화한다면, 이는 성폭력가해자가 되기 전에 성폭력의 심각성과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는 기회를 사전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가정폭력

가. 법의 목적 - 가정보호보다는 피해자의 인권 및 안전 강조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는 일반 폭력범죄와 동일하게 다루기가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친밀함을 기초로 하고 있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폭력은 단순한 개인 간의 폭력을 넘어서서 가족 내 폭력행위자와 피해자간의 위계구조를 근간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질을 띠기 때문에 특례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1997년 법 제정 당시 입법목적은 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전면에서 강조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 및 다른 가족구성원의 인권 및 안전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¹¹⁹⁾

이에 지난 2002년 법 개정을 통해 일차적인 가정보호 목적에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가 법의 목적에 추가되었다.¹²⁰⁾ 그러나 여전히 ‘건전한 가정육

119)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정 1997. 12. 13 법률 제543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2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 2002. 12. 18 법률 제6783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

성'이라는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이라는 법익보다 먼저 제시됨으로 인해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가 피해자로서 완전한 인권보장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의 정상화를 위한 협력의무가 있는 책임자로서 인식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¹²¹⁾ 이것은 가정폭력행위가 엄연한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보호라는 목적이 강조된 결과 상당수의 사건들이 경미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의 50% 이상이 불기소 되고, 30% 정도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물론 '가정의 유지'라는 목적 자체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거나 비효과적인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가정폭력행위를 경미한 범죄로 인식될 여지를 주게 된다. 가정폭력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법규정은 실제로 상당수의 사건이 피해자의 이혼의사에 따라 검사재량으로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이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재범 혹은 상습가능성이 큰 사건은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현행법의 가정보호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특례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가정의 유지 내지는 회복이 아니라 기본원칙으로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보호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¹²²⁾

나. 기계적인 피해자의 의사 존중 지양 - 형사절차 속에서의 피해자의 권한 강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판단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현행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기계적으로 파악하여 존중하는 처리방식은 오히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¹²³⁾ 따라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판단 및 선택을 돕기 위

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21) 김은경(2003b),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피해자 선택’으로 부터 ‘피해자 권한강화’로 -”, 『여성연구』 제65호, 한국여성개발원, 2면.

122) 이호중(2004), 앞의 글, 56면.

123) 김은경(2006), 앞의 글, 146면.

한 형사절차 상의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은 제5조 제4호에서 “폭력행위의 재발 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디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불안한 상황 하에서 단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¹²⁴⁾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이후의 절차 진행에 대한 고지로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 단계 등 각 단계별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지로서 가정폭력관련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이용안내 및 관련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어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윤근의원과 홍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특례법개정안에 사법경찰관리의 신고 이후의 법적 절차 등에 대한 고지의 무가 반영되어 있었으나, 지난 7월의 제11차 개정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복지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상황적 강제와 부담을 경감시키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지원에 대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 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지원

- 긴급보호조치 신설 및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의 내용 확충

피해자는 우위에 서는 가해자의 지배 하에서 폭력피해를 당한다. 피해자의 신체적·성적·심리적 안전과 사회적·경제적 안전에 관하여 가해자의 보복에 의하여 침해 받지 않을 정도의 보장을 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그 피해를 신고하여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가정폭력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124) 이호중(2005b), 앞의 글, 27면.

는 “한 지붕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고, 많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되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장래의 경제적·사회적 생활의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없이는 해결로 나아가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출동한 경찰관이 응급조치를 한 후 현행범 체포 및 긴급체포하기가 곤란하여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막연히 철수하게 되었을 때 가해자가 보복을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있으며, 구속되었던 가해자가 풀려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피해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당하게 된다. 또한 법원이 결정한 임시조치를 위반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올 때 특정한 범법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현행범 상 마땅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퇴거격리조치나 접근금지조치는 사건발생 후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가정폭력특례법 제 29조에 의한 임시조치(가해자의 퇴거격리조치, 가해자의 접근금지조치 등)는 검사에게 신청하고, 다시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퇴거격리조치나 접근금지조치는 사건발생 후 즉각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경찰이 이러한 조치를 현장에서 즉시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¹²⁵⁾ 경찰의 초기 대응강화와 함께 가해자를 격리하기 위하여 경찰의 긴급체포권을 추가하는 등 가정폭력특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으나 지난 7월 개정된 가정폭력특례법은 이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반영되지 못한 채 통과되었으며 이에 대해 여성단체는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¹²⁶⁾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 측의 인권보장을 유연하게 하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적법절차 조항을 근거로 많은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가정

125) 박종인(2003), 앞의 글, 37면.

126) 김영란(2007), 앞의 글, 97~98면 참조.

폭력특례법이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한 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반대할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며, 헌법상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절차권 보장 등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충분히 도입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체적 안전 보장뿐만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사회적 생활의 전망을 가능하도록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재산처분금지, 주거사용권 등의 조치를 포함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실질적 피해자인 자녀보호와 관련하여 친권·양육권에 관한 제한조치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일본과 대만의 민사보호령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자는 개정안¹²⁷⁾이 제출되었지만 제11차 개정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에 산재해 있는 피해자보호조치들을 통합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한 민사법적 조치로 구상된 것이다. 이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여부와는 무관하게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시조치나 보호처분과는 독립성을 갖는 민사법적 조치로서 법체계적 난점을 극복하면서 피해자보호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피해자보호조치가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종속되어 있어 발생하는 피해자보호조치의 공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27) 홍미영의원 대표발의안(2005. 6. 13, 의안번호 2028) 제56조 내지 제57조. 법안 설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호중(2005b), 앞의 글 참조.

라. 가해자 위험성 평가 제도의 도입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가정폭력 사안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생명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정이다. 즉, 위험성 평가는 궁극적으로 폭력발생 및 생명 손실을 억제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부터 시민과 사회의 안전과 보호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¹²⁸⁾

현재 실무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서양식의 개발, 즉 범죄의 행위책임성, 위험성(risk assessment), 가해자의 교정가능성 및 피해자의 요보호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사 체크리스트를 구성하는 일이다. 이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등 보호명령 발령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인권침해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위험성 및 가해자 유형에 따른 적절한 분류처우를 선택, 처벌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¹²⁹⁾

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조건

가정폭력특례법의 제11차 개정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그 처분을 검사선의주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담당 검사의 가정폭력에 대한 시각과 가치관에 따라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 따라서 그 효과적 정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처리 지침의 마련이 시급하다.

128) 이수경(2007), “가정폭력 위험성평가 도구 개발 연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열린 포럼』(2007. 11. 28), 경찰청·(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 78면.

129) 김은경(2007), “가정폭력 대응입법 패러다임에 대한 재검토”, 『성·가정·아동폭력 형사정책 공청회』(2007. 10. 24), 법무부, 126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위험수위에 대한 평가와 그에 근거하여 상담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적격한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파악과 필요한 처분을 판단하기 위하여 검찰의 사건처리에 전문가의 의견조회 시스템 등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상담 불성실 이수자 및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식적인 상담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성행 교정을 통한 폭력 재발의 억제라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일정 수준의 위하감을 줄 수 있는 공적인 상담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담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보호처분 보다 빠른 사건 처리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 반면에 폭력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으로 이어지면서 가해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어 상담기간 중 피해자 및 상담자에게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피해자 및 상담자 보호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바. 보호처분의 실질화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높은 불처분율, 미약한 임시조치의 활용, 판결 전 조사제도의 형식적 운용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보호처분과 관련하여 보호처분의 내용이 가해자 교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보호관찰소에 접수된 가정폭력범죄자 중에는 처분경력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원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범죄의 속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판사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행

위의 위험성, 교정가능성, 재범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진단결과를 통해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행위자를 분류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¹³⁰⁾ 또한 시설의 기반이 없어 거의 사문화되고 있는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시설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보호처분 대상자들의 행위교정을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사. 인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가정폭력특례법의 집행은 국민, 정부, 경찰, 검찰, 법원을 비롯한 사법기관, 피해자보호시설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가정폭력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사실의 신고와 사법기관과 피해자 보호시설의 활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의 책무, 사법기관의 인권보호 관점에서의 사건처리, 피해자보호시설의 상담과 보호, 치료가 상호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고 그 역할이 잘 이루어져야 법의 실효성과 인권보장기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법시행주체들에 대한 인권과 양성평등의식, 관련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 또한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면 가정폭력행위자가 되기 전에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문제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성매매

가. 성구매행위에 대한 범죄인식 강화

실제 수사과정에서 보여주는 성구매자의 태도는 억울하다는 반응이 많은

130) 김은경(2003a), 앞의 글, 95면.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경찰, 검찰의 태도 역시 성구매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나 편의를 봐 주는 식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성구매행위가 처벌되어야 하는 행위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성구매를 남성들의 놀이정도로 생각하는 잘못된 사회일반의 인식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홍보와 성구매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처벌로 성구매행위를 하면 확실히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구매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스웨덴식의 ‘성구매남성연구’나 성구매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등이 활용되는 것이 좋겠다.

또한 경찰을 대상으로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숙지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3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스웨덴의 경찰관계자 교육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청소년상대로 한 성평등교육이나 일반인 대상의 성매매금지에 관한 인권교육과 기업문화 바꾸기에 대한 홍보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나. 성매매업소 단속 및 알선업자 처벌 강화

성매매의 특성 상 증거포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이에 관해 앞의 경찰관 면접사례를 통해 성매매단속이나 수사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성매매업주의 처벌과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업주는 처벌되어도 업소는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어 실제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영업소 폐쇄조치, 알선업소의 건물주에 대한 처벌 및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등 성매매방지 개선대책으로 내세운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을 가능한 자유업 형태의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속망을 피해가는 다양한 성매매 경로를 획기적으로 차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¹³¹⁾ 앞서 살펴 본 대만의 퇴폐업소 척결정책은 우리

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으며 그 정도의 강력한 의지로 대처해야 함을 알려 주는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이 성구매자나 성판매자에 비해서는 높으나 대체적으로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벌금 몇 백만원 정도로는 영업을 그만 두게 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다. 좀 더 강력한 실행이나 벌금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 성판매자에 대한 사후대책의 구체화

현재 성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재범인 경우 보호처분 등으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 기소유예의 경우 성판매여성은 성매매업소로 돌아가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보호처분제도는 있으나 최근 활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앞에서의 NGO관계자의 주장처럼 성판매자에 대한 교육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참고하여 초범자인 성판매여성에게도 기소유예단계에서의 재범방지교육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구매자를 위한 존스쿨 교육도 대상자는 많고 교육여건은 부족한 상황에서 과밀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성판매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겠는가의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를 기본목표로 세운 한에서는 이를 위한 정책과 여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책무라 할 것이다.

라.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

우선 성매매피해자 개념적용과 관련하여 경찰과 NGO사이의 견해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성매매피해자 판단을 위한 기준이나 지침이

131) 2007. 9. 6 홍미영의원 대표발의로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무리한 성매매피해자 만들기에 여력을 쏟거나 경찰과 NGO간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성매매나 성매매여성에 관한 정보나 이해부족으로 성매매여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성매매여성은 성매매피해자가 되거나 판매자로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범죄자로 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지역의 경찰을 만나는가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리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수사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매매피해를 인식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금지정책 활성화

성매매방지대책은 중앙에서 지역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성매매정책집행을 위해 근거법령인 조례제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매매가능업소에 대한 행정기관의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도로, 지역에서의 성매매업소 퇴치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성매매업소를 줄여가는 일을 함으로써 양방향에서의 공약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예를 들어 성매매업소를 알리는 불법 전단지나 명함 등이 주택가나 학교지역에 마구 뿌려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의 풍속정화나 아동보호차원에서 그러한 업소의 퇴치의 필요성을 느끼는 등 사례는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의 발의를 위해 생활정치와 인권감수성이 특히 높은 여성위원의 지방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성매매방지정책 이행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¹³²⁾ 여기서 성매매방지 관련 조례의 제정과 이행정도

132)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방지정책 이행평가는 성매매방지정책을 예방, 보호, 집행, 계획 및 목표치 설정의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변화순 외(2007),

를 평가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바. 성구매자에 대한 보호처분 제도의 적극 활용

현재 성구매자에 대한 존스쿨 교육 등 초범자에 대해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교육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재범자에 대해서는 벌금, 실형이 내려지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이 성구매자, 판매자에 대한 보호처분 제도를 두어 성행의 교정을 통한 사회통합의 길을 열어 두고 있다. 그러나 성구매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실적은 낮은 실정이다. 성매매란 특별한 병리적인 속성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성문화에 의한 왜곡된 성인식에 근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처분의 활용이 요청되는 분야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관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형사처분 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 젠더 관점에서의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현행법 상 성매매여성의 경우 성판매자와 성매매피해자로 구분되고 있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로 보고 성매매여성은 사회의 구조적 피해자로서 모두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관점이 성매매처벌법 제정과정에서 하나의 선명한 목소리를 낸 바 있으나 현행법은 성매매강요 등 강제에 의한 경우만 성매매피해자로 개념을 정리하였다. 젠더 관점에서 성매매를 본다면 성매매는 여성인권에 대한 침해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전형적인 것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여성을 지원하는 현장에서는 성판매자를 사회의 구조적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최근의 5, 6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내린 최종권고에서도 자발적인 성매매여성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2006년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대책 이행평가』, 여성가족부).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¹³³⁾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법 감정 상 이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공론의 장을 통해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정책상 성매매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성매매여성이 소위 젠더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피해자로 보는 관점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정교화와 지속적인 추진으로 성매매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33) CEDAW/C/KOR/CO/6의 우려 및 권고사항(Principal areas concern and recommendations) 19항 참조.

참고문헌

1. 성폭력

- 곽병선(2006), “성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피해자의 관점에서 -”,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 국회법제사법위원회(2006),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2006. 3. 16),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김선복(1997), “친고죄에 대한 고찰”, 『형사법연구』 제10권, 한국형사법학회.
- 김혜정(2005),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혜정(2006), “성폭력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사법적 개선방안”, 『영남법학』 제12권 제1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희균(2005), “성폭력범 처벌의 이론: 강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검찰청(2007), 『검찰연감 2007』.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5, 2000, 2004, 2005, 2006, 2007』.
- 도미향(2003), “성폭력 현황에 따른 성폭력특별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8권 제1호, 한국가족복지학회.
- 류화진(2004), “우리 형법상 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 『여성연구』 제67호, 한국여성개발원.
- 박강우(2006), “서구의 여성주의 법운동 및 강간죄 개혁의 성과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의”, 『형사법연구』 제26호, 한국형사법학회.
- 박기석(2004), “부부강간행위의 강간죄 성립여부”,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기석(2004), “폭력범죄 규정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제22호, 한국형사법학회.
- 박미숙(2000), “성폭력관련법률의 체계화 방안 - 성폭력특별법에 나타난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박선영(2006),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으로 본 ‘부부간 성폭력’”, 『공법연구』 제34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 박성희(2003), “성폭력대처방안을 위한 전략연구”, 『여성연구』 통권 제64호, 한국여성개발원.

- 박수희(2006),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 보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2호, 한국공안행정학회.
- 박인혜(2007), “여성인권정책 관련 토론편”, 『여성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 참여정부 여성정책 평가 및 향후 비전 모색』 (2007. 4. 13), 열린우리당.
- 박정은(2007), 『고시계』 8월호, 고시계사.
- 박준영(2005),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대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은경(1997),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여성과사회』 제8호, 창작과 비평사.
- 법무부(2006), 『법무부 여성통계 2006』.
- 법무부(2006), 『성폭력범죄 근절 및 피해자보호대책』 (2006. 2. 28)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95, 2004, 2006, 2007』.
- 변혜정(2004), “성폭력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반성폭력운동단체의 성정치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0권 제2호, 한국여성학회.
- 서정애(2006), “성적자기결정권 - 관계적 맥락에서 재사유하기”, 제22차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한국여성학회.
- 신상숙(2001),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 제13권, 한국여성연구소.
- 신연희(2005), “아내강간의 실태와 피해자의 특징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 신윤진(2005), “‘의제화간’의 메커니즘 - 강간죄 해석에 있어서의 최협의 폭행·협박설 비판”, 『공익과 인권』 제2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21.
- 여성가족부(2007),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2006년 시행실적 및 2007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07),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8~2012)』, 여성가족부.
- 여성인권법연대(2007), 『성폭력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2007. 2. 8), 여성인권법연대.
- 유숙영(2003), “성폭력범죄의 친고죄적용에 대한 검토”, 『한국여성학』 제19권 제1호, 한국여성학회.
- 윤영철(2007), “형법의 법익론 관점에서 본 부부강간의 문제”,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명숙(2005), “부부간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 아내의 남편 살해에 대한 고찰”,

- 『가족법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 이미경(2007),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형법 마련을 위해”, 『성폭력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2007. 2. 8).
- 이성은(2003), “성희롱-이성애제도-조직문화 그 연관성에 관한 고찰”, 『한국여성학』, 제19권 2호, 한국여성학회.
- 이존걸(2001), “성폭력범죄와 그 대책방안”, 『법학연구』 제7집, 한국법학회.
- 이창무(2004),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6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호중(2005), “성폭력 처벌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재구성”, 『형사정책』 제17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회.
- 정현미(1999), “성범죄사건의 형사재판과 피해자”,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 정현미(2000),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 조광훈(2004), “부부 강간죄 도입 논의에 따른 법적 문제점의 소고”, 『형사정책연구소식』 제86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 국(2001),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조 국(2002), “강간피해 고소여성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사용 제한 - 미국 “강간방지법”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69호, 한국법학원.
- 조 국(2002),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범죄”, 『법학』 제43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조 국(2002),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형사정책』 제14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최상섭(2007), “성범죄자의 치료프로그램 효과평가와 치료감호제도의 필요성”,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사법적 대안모색』 (2007. 4. 4), 법무부·여성가족부·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심리학회.
- 최일숙(1999), “여성에 대한 폭력 -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 『법과 사회』 제16, 17호, 법과사회이론학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등(2004), 『성폭력특별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2004. 7. 7),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한국여성전화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인권국(2004), “정신지체 장애인 성폭력 - 왜 자꾸 무죄라고 하나”, 『나눔터』 제50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외(2007), “여성인권 정책평가 및 향후 과제 - 대(對) 여성폭력 정책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제언 토론회』 자료집(2007. 2. 22),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2003),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한국성폭력상담소(2005), 『성폭력 관련 법적 쟁점 Workshop』 자료집(2005. 12. 20),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2006~2007),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자료집(1~8)』,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개발원(1999),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2006), 『성폭력범죄자 처우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단체연합 외(2006), 『성폭력근절을 위한 긴급 토론회』(2006. 3. 15),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2000)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아카데미.

한인섭(1994),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그 문제와 개선점”, 『피해자학연구』 제3호, 한국피해자학회.

황만성(2004),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정미(2005), “1990년대 성폭력의 공론화에 관한 담론분석: 섹슈얼리티 담론에서의 가족주의와 자유주의”, 제21차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지구적 자본주의와 한국여성학의 지평확대』, 한국여성학회.

増田 生成(2000), “諸外國における女性に對する暴力關聯立法 - 加害行爲に關する立法 No. 1 -”, ISSUE BRIEF NUMBER 338~340 (APR. 14. 2000), 國立國會圖書館 行政法務調査室課.

2. 가정폭력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0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2006. 2. 10),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김병주(1998), “가정폭력관련법률에 대한 평가와 전망”, 『형사법연구』 제10호, 한

국형사법학회.

- 김성진(2002), “가정폭력에 대한 법정책 검토”, 『법과 정책연구』 제2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 김영란(2007),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개입에 대하여-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젠더리뷰』 가을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예정(2004), “부부의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제6호, 한국가정관리학회.
- 김용우(2002), “가정폭력관련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현안』 제2002-13호 (통권 제131호), 국회사무처 법제실.
- 김은경(2001),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2002),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형사정책연구소식』 제69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2003a),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피해자 선택’으로부터 ‘피해자 권한강화’로 -”, 『여성연구』 제65호, 한국여성개발원.
- 김은경(2003b), “피해자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과 한계”,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 김은경(2006), “소송과정에서의 폭력피해자 보호현황과 쟁점들”, 『가정폭력 피해지원 시스템의 문제와 과제』 (2006. 9. 21), 가정폭력추방 연속토론회 3차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김은경(2007), “가정폭력 대응입법 패러다임에 대한 재검토”, 『성·가정·아동폭력 형사정책 공청회』 (2007. 10. 24), 법무부.
- 김재민(2006a), “경찰의 가정폭력 위기개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검토 -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국가의 자세』 토론회(2006. 12. 6), 서울여성의전화.
- 김재민(2006b), “경찰의 가정폭력 위기개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검토 -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제18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재민(2007),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개입 현황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법령 개선 방안”,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열린 포럼』 (2007. 11. 28), 경찰청·(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
- 김재엽(1997), “가정폭력방지관련법의 개정 방안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제28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중두(200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미영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2005. 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김태명(2004), “가정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대상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刑事判例의 研究』, 志松 李在祥教授 華甲紀念論文集.
- 박미숙(2001), “가정폭력관련법률의 효율성 제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소현(2005), “상담을 통해 본 가정폭력의 실태 및 법적 보호 강화 방안”, 『가족법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 박종인(2003), “가정폭력의 원인과 방지제도 및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소고”, 『실무연구』 제9권, 서울가정법원.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99~2007』.
- 변화순 외(2000), 『한국의 가정폭력관련법 제정 이후 가정폭력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서거석·김은희(2002),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제14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서울여성의전화(2003), 『가정폭력방지법 시행5주년, 현주소와 개선방향』 (2003. 7. 1),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5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서울여성의전화.
- 양현아(2005), “가정폭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젠더폭력 개념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 여성부(2004), 『2004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여성부.
- 여성부·법무부(2004),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부.
- 우병창(2005), “일본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와 그 동향”, 『가족법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 윤형관(2004),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8호, 한국경찰학회.
- 이금옥(2006), “인권침해로서 가정폭력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 『헌법학연구』 제12권 제5호, 한국헌법학회.
- 이명숙(2005), “부부간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 아내의 남편 살해에 대한 고찰”, 『가족법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 이수경(2007), “가정폭력 위험성평가 도구 개발 연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

- 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열린 포럼』(2007. 11. 28), 경찰청·(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
- 이영란(1999), “미국의 가정폭력의 실태와 처벌 - 한국에서의 적용과 대책을 위하여”, 『형사정책』 제1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창무(2004),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6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호중(200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정의 보호·유지에서 피해자의 보호·인권강화로』(2004. 10. 28),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 이호중(2005a), “가정폭력사건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호중(2005b),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연내통과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장희숙(2007),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법부 개입의 효과 - 보호처분 판결을 받은 폭력남편들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제33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정현미(2006), “가정폭력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현미(2006a),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도입 검토”, 『폭력없는 가정 - 가정폭력 관련 상담법제 개선방안』(2006. 6. 2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정현미(2006b), “가정폭력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 국(2000), “매맞는 여성 증후군이론의 형사법적 함의”, 『형사법연구』 제15권, 한국형사법학회.
- 주명희(2006),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관한 연구: 체포 강제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여성연구』 제71호, 한국여성개발원.
- 표창원(2000), “영국사례의 검토를 통한 한국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방안”,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6), 『폭력없는 가정 - 가정폭력 관련 상담법제 개선방안』(2006. 6. 2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여성개발원(1999),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단체연합(2004), 『가정의 보호·유지에서 피해자의 보호·인권강화로』,

-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2004. 10. 28),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 한국여성단체협의회(2003), 『가족위기: 울타리 안의 폭력』,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 기념토론회(2003. 11. 25),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전화연합(2005),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연내통과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한국여성의전화연합(2006), 『가정폭력 피해 지원 시스템의 문제와 과제』, 가정폭력추방 연속토론회 3차 자료집(2006. 9. 21),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한국여성의전화연합(2006), 『가정폭력을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본다』, 가정폭력추방 연속토론회 1차 자료집(2006. 5. 11),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한국여성의전화연합(2006), 『정부의 가정폭력추방정책은 있는가』, 2006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추방 연속토론회 2차 세미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한국여성의전화연합(2007), 『참여정부의 가정폭력추방정책 평가 토론회』(2007. 6. 26),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한인섭(1998), “가정폭력법의 법적 구조와 정책지향에 대한 검토”, 『법학』 제107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한인섭(1999), “가정폭력법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 허경미·박영주(2004), “가정폭력의 대응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8호, 한국경찰학회.
- 허소영·허남순(2003), “경찰관의 가정폭력개입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1호, 한국가족복지학회.
- 홍중희(2007),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성·가정·아동폭력 형사정책 공청회』(2007. 10. 24), 법무부.

3. 성매매

- 경찰청(2007), 『성매매 방지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2007. 3. 20), 경찰청.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국회의원 조배숙 의원실·다시함께센터(2007), 『일상 속의 성매매 드러내기 - 산업형 성매매 축소를 위한 정책토론회』(2007. 3. 20),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국회의원 조배숙 의원실·다시함께센터.
- 국회여성정책포럼(2004),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2004. 11. 15), 국회여성정책포럼.

- 국회의원 조배숙 의원실(2006), 『성매매특별법 2주년, 그 성과와 과제』 (2006. 9. 29), 국회의원 조배숙 의원실.
- 김성천(2004), “성매매의 비범죄화”, 『중앙법학』 제16집 제4호, 중앙법학회.
- 김은경(2002),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과 형사정책적 딜레마”, 『형사정책』 제14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은경(2006),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 효과성 분석”, 『형사정책』 제18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다시함께센터(2007), 『산업형 성매매 축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다시함께센터.
- 민주성노동자연대 외(2005), 『성매매 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운동의 방향과 전망』 토론회 자료집(2005. 9. 23), 민주성노동자연대 외.
- 박영란 외(2004), 『성매매방지 관련 법령정비 및 피해자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여성부.
- 박지현(2005), “성매매 행위에 대한 법적 대안 모색”, 『교정복지연구』 창간호, 한국교정복지학회.
- 법무부(2004), “법무부, 성매매 사범 재범방지 종합대책 실시”(2004. 9. 22 보도자료).
- 법무부(2005), “법무부, 성구매사범 대상 『John School(존스쿨)』 실시”(2005. 8. 27 보도자료).
- 법무부(2005),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존스쿨』 도입계획”(2005. 7. 11 보도자료).
- 법무부(2006), “성인, 성폭력사범 등에 대한 외출제한명령제도 확대 적용”(2006. 2. 21 보도자료).
- 법무부(2006), “존스쿨 참가자 특성분석 및 수강명령 표준프로그램 개발”(2006. 3. 13 보도자료).
- 변혜정(2004), “성매매는 왜, 누구의 문제인가”, 『당대비평』 통권 제28호, 생각의 나무.
- 변화순 외(2001),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법무부.
- 변화순 외(2005), 『성매매 클린지수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 변화순(2004), “성매매 관련 국제기구의 동향과 각국의 법”, 『성매매: 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사람생각.
- 변화순 외(2007), 『2006년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대책 이행평가』, 여성가족부
- 선중수(2005), “성매매방지법의 형법적 한계”, 『사회과학논집』 제24집 제1호, 동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2005),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성매매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공관중심주의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외.
- 성매매방지기획단(2004), 『성매매방지종합대책(안)』 (2004. 3. 31), 성매매방지기획단.
- 성매매방지기획단(2004~2007),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자료(제1차~제14차)』, 성매매방지기획단.
-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준비위원회(2004),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 토론회』 (2005. 10. 25),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준비위원회.
- 손승영 외(2004), 『탈성매매 및 재유입 방지 방안 연구』, 국회여성위원회.
- 손승영(2004), “한국 성매매 실태와 정책 대안”, 『동덕여성연구』 제9호,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양현아(2004), “성매매방지법의 의의와 과제”, 한국여성학회 특별심포지움 『성매매방지법과 성담론』, 한국여성학회.
- 엄혜진(2006), “1980년대 여성주의 성매매 반대 담론의 성격”, 『페미니즘 연구』 제6호, 동녘.
- 여성가족부(2006), “성매매 영업소 폐쇄 조치 등 알선업자 처벌 강화”(2006. 9. 19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2006),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및 향후 개선대책 발표”(2006. 9. 19 보도자료).
- 여성부(2001), 『성매매 관련 국민의식 조사』, 여성부.
- 여성부(200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체계 국외사례 연구 - 미국·캐나다』, 여성부.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2006),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 대한 점검과 대안모색』, 2006년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정책포럼.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2006), 『전국 성매매 업소 집결지 실태조사 보고서』,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 원미혜(2001),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의 전략들”, 『여성학논집』 제18집, 한국여성연구원.
- 윤덕경(2004), “성매매방지법, 과잉입법 아니다”, 『시민과 변호사』 12월호, 서울지방변호사회.
- 윤덕경(2006), “성매매처벌법의 시행 현황과 향후 과제”, 『젠더리뷰』 겨울호, 한국

여성개발원.

- 이나영(2005), “성매매: 여성주의 성정치학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학』 제21권 제1호, 한국여성학회.
- 이명숙(2004), “성매매피해여성,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시민과 변호사』 7월호, 서울지방변호사회.
- 이상돈(2004), “성매매의 범죄화와 인권침해”, 『시민과 변호사』 12월호, 서울지방변호사회.
- 이옥경(2007), 『성매매처벌법 시행에 관한 평가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애·김재광(2006),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이정은·허태주(2005), “성매매 근절주의’에 표류하는 집결지 프로젝트”, 『월간 말』 3월호, 월간 말.
- 이호용(2005), “단순 성매매 규제의 법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규제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경제연구원.
- 이호용(2005), “성매매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0호, 한국공안행정학회.
- 인천발전연구원(2004), 『탈성매매를 위한 현실적 방안 모색』, 인천발전연구원 여성개발센터 2004 여성정책 쟁점토론회(2004. 12. 22), 인천발전연구원.
- 임상규(2005),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형사정책』 제1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장필화 외(2001),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사례연구』, 여성부.
- 조 국(2003),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조 국(2004), “2004년 성매매처벌특별법 제정의 의의”, 『시민과 변호사』 7월호, 서울지방변호사회.
- 조이여울(2004), “성매매 문제 해결의 열쇠는? -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노동사회』 11월호, 노동사회연구소.
- 조진경(2004), “성매매 현황과 근절을 위한 우리의 실천”, 『시민과 변호사』 7월호, 서울지방변호사회.
- 조진경(2006),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현장은...”, 『젠더리뷰』 겨울호, 한국여성개발원.
- 조진경(2006), “성매매피해자 지원의 어제와 오늘, 우리의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

다”, 『시민과 변호사』 11월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천진호(2002), “성착취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학회.

최홍원영(2002), “왜 ‘성 매매 피해 여성’으로 규정해야 하는가? - 성매매방지법 논쟁을 중심으로”, 『당대비평』 통권 제18호, 생각의 나무.

한국여성개발원(2005), 『성매매처벌법 시행 6개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제 25차 여성정책포럼(2005. 3. 22),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단체연합 외(2005), 『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 “여성에게 대한 성적착취 근절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유럽의 경험과 교훈” (2005. 9. 21),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한국여성단체연합(2001),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01. 10. 23),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2003), 『성매매에 대한 대중의식 토론회 - 성매매 의식변화를 위한 대안과 실천』 (2003. 10. 10),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2004), 『“성매매 방지법” 이해를 위한 자료집』 (2004. 6),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5), 『성매매사범 특성 및 유형 연구와 수강명령 표준프로그램 개발(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허경미(2005), “성인지적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성매매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0호, 한국공안행정학회.



부 록

1. 여성폭력관련법 인지도 조사지 **3**

ID				
----	--	--	--	--

2007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
여성폭력관련법 인지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200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와 관련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처벌에 관한 법’의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본 조사와 관련된 법을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4년에 제정되었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그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제정되었습니다.

이 설문지의 결과는 향후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며,
개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6월



연구책임자 :
 문 의 처 :

(주)글로벌리서치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5-32

전화번호 : 02-3438-1724

담당자 : 은 효 성 연구원

【조사지역】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연령】 2007년 6월 현재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세 (만 20세 이상 면접)

응답자 특성

【문1】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① 미혼 ② 유배우(사실혼을 포함하여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 ③ 별거 ④ 이혼 ⑤ 사별

【문2】 귀하 닉의 월평균 총가구소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월평균 총가구소득: 가구원의 근로소득, 이자, 연금, 임대수입 등 모든 소득을 합계한 금액으로, 총소득이 없는 경우 '0'으로 표시합니다.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200만원 미만
- ③ 200만원~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400만원 미만
- ⑤ 400만원~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600만원 미만
-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800만원 미만
- ⑨ 800만원 이상 ⑩ 기타(자세히: _____원)

【문2-1】 최근 3개월 간 귀하의 월평균 개인근로소득(세금 포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월평균 개인근로소득: 개인이 근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0'으로 표시합니다.

-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100만원 미만
- ③ 100만원~150만원 미만 ④ 150만원~200만원 미만
- ⑤ 200만원~250만원 미만 ⑥ 250만원~300만원 미만
- ⑦ 300만원~350만원 미만 ⑧ 350만원~400만원 미만
- ⑨ 400만원 이상 ⑩ 기타(자세히: _____원)

【문3】 귀하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 | |
|---------------------|------------------|
| ①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 의회의원 | ② 전문직 |
| ③ 기술직 및 준전문직 | ④ 사무직 |
| ⑤ 서비스직 | ⑥ 판매직 |
| ⑦ 농림어업 종사숙련직 | ⑧ 기능직 |
| ⑨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직 | ⑩ 단순노무직 |
| ⑪ 직업군인 | ⑫ 학생 |
| ⑬ 전업주부 | ⑭ 기타(자세히: _____) |

【문3-1】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정규직근로자)
- ② 임금근로자 중 임시, 인용, 시간제 등 비정규근로자
- ③ 1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고용주
- ④ 자영업자
- ⑤ 무급 가족 종사자

【문4】 귀하의 학력은 어떠하십니까?

- ① 중학교 중퇴 / 졸업 이하
- ② 고등학교 중퇴 / 졸업
- ③ 대학교 중퇴 / 수료 / 졸업(2·3년제 대학 포함)
- ④ 대학원 중퇴 / 재학 / 수료 이상

성폭력특별법

※ 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함)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우리나라의 ‘성폭력특별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 | | |
|----------------|---------------|------------------|
| ①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 ☞ 【문4】 | ②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다. |
|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 ④ 잘 알고 있다. |

성폭력은 음란전화, 강제추행, 강간미수, 강간 등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성폭력은 일부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통상의 경우 일반 성인이라면 크고 작은 유형의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귀하의 성폭력 피해 경험 등에 관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최근 5년간(2002. 5~2007. 5)** 귀하의 **성폭력 피해 경험 및 신고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질문별로 하단 **【보기】**에서 해당사항을 골라 **√**표를 해 주십시오.

유형	질문	【문4】	【문4-1】	【문4-2】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셨다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u>하나만</u> 선택해 주십시오.
	【 보기 】	① 없다. ② 1회 ----- ③ 2회 ----- ④ 3회 ----- ⑤ 4회 이상 -----	① 신고했다. ② 신고하지 않았다. 「 ③ 신고한 적도 있고, 하지 않은 적도 있다.	① 신고절차를 잘 몰라서 ② 사건이 경미해서 ③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④ 사건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⑤ 신고해도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⑥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⑦ 범죄인지 몰라서 ⑧ 기타(자세히: _____)
	① 음란전화를 받거나 혹은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물을 받아본 적이 있다.	1 2 3 4 5	1 2 3	1 2 3 4 5 6 7 8
	② 몰래카메라에 찍혀 본 적이 있다.	1 2 3 4 5	1 2 3	1 2 3 4 5 6 7 8
	③ 지하철이나 버스 및 공공장소에서 원치 않는 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	1 2 3 4 5	1 2 3	1 2 3 4 5 6 7 8
	④ 원치 않는 강제적인 신체접촉(키스나 포옹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1 2 3 4 5	1 2 3	1 2 3 4 5 6 7 8
	⑤ 원치 않는 강제적인 성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다.	1 2 3 4 5	1 2 3	1 2 3 4 5 6 7 8

※ 다음은 향후 귀하나 귀하의 가까운 사람 등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할 경우, 그 신고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질문별로 하단 **【보기】** 에서 해당사항을 골라 √표를 해 주십시오.

대상 \ 질문	【문5】	【문5-1】
		향후 귀하 등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 보기 】	① 신고하겠다. ☞ ② 신고하지 않겠다. 문5-1 ③ 잘 모르겠다.-----	① 신고절차를 잘 몰라서 ②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③ 피해자가 사건 공개를 원치 않을 것 같아서 ④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⑤ 기타(자세히: _____)
① 본인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_____
② 가족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_____
③ 친구, 이웃, 직장동료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_____
④ 잘 모르는 사람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_____

일반적으로 성폭력의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성이 남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여성이 성폭력가해자인 경우, 성전환자에 대한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6】 위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성폭력특별법이 다음 중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남자, 여자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 ② 여성 이외에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성피해자 보호에 주력해야 한다.
- ③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니 성폭력특별법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 ④ 기타(자세히: _____)

【문7】 귀하께서는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① 성립할 수 있다. ☞ **【문7-1】**
- ② 성립할 수 없다. ☞ **【문7-2】**

【문7-1】 【문7】 에서 1을 체크하신 경우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우선 순위로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	----------------------	-----	----------------------

- ① 부부간의 성행위가 항상 동의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② 부부간의 성행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국가가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③ 부부간의 강제적 성행위는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처벌이 필요하다.
- ④ 부부간의 성적 관계에서도 개인의 의사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⑤ 기타(자세히: _____)

【문7-2】 【문7】 에서 2를 체크하신 경우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우선 순위로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	----------------------	-----	----------------------

- ① 부부간의 성행위는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이기 때문이다.
- ② 부부간의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③ 부부간의 강제적 성행위는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④ 부부간간죄를 인정할 경우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 ⑤ 기타(자세히: _____)

【문8】 귀하께서는 성폭력특별법이 성폭력범죄 감소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크게 기여했다. ☞ **【문8-1】**
- ② 어느 정도 기여했다. ☞ **【문8-1】**
- ③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 **【문8-2】**
- ④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 **【문8-2】**

【문8-1】 【문8】 에서 1, 2를 체크하신 경우 성폭력특별법이 성폭력 감소에 기여했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 ② 성폭력 피해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법적 해결방식 유도(제공)
- ③ 성폭력특별법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변화 등 사회분위기 변화
- ④ 기타(자세히: _____)

【문8-2】 【문8】 에서 3, 4를 체크하신 경우 성폭력특별법이 성폭력 감소에 기여하지 못했다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②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유도
- ③ 성폭력특별법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 유도
- ④ 기타(자세히: _____)

【문10】 귀하께서는 향후 성폭력특별법 내용 상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우선 순위로 세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②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의 피해자 인권 보장
- ③ 신중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④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의 폐지
- ⑤ 배상명령제도(형사재판 시 민사 손해배상을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도입
- ⑥ 성폭력범죄 고소기간의 연장
- ⑦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교육·치료 및 지속적인 감시체계 강화
- ⑧ 잘 모르겠다.
- ⑨ 기타(자세히: _____)

가정폭력특례법

※ 다음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이라 함)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 【문4】** ②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다.
-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족 간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부부 간·부모자식간의 폭행, 유기, 학대,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이 해당됩니다. 현실적으로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귀하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 등에 관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최근 1년간(2006. 5~2007. 5)** 귀하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 및 신고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질문별로 하단 **【보기】**에서 해당사항을 골라 **√**표를 해 주십시오.

【문4】 자식(친자, 양자, 계부모자, 적모서자 관계 포함)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와 신고 경험

☞ **자식이 없으신 경우 【문5】로 가 주십시오.**

유형	질문	【문4】	【문4-1】	【문4-2】
		다음과 같은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하셨다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u>하나만</u> 선택해 주십시오.
	【 보기 】	① 없다. ② 1회 --- ③ 2회 --- ④ 3회 --- ⑤ 4회 이상	① 신고했다. ② 신고하지 않았다. ③ 신고한 적도 있고, 하지 않은 적도 있다.	① 신고절차를 잘 몰라서 ② 사건이 경미해서 ③ 자식을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 ④ 사건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⑤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⑥ 가족이 신고하지 못하게 해서 ⑦ 범죄인지 몰라서 ⑧ 기타(자세히: _____)
	①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② 욕설 등 심한 말을 퍼부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③ 물건을 집어던졌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④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⑤ 물건(학대, 몽둥이, 흉기 등)으로 때리거나 위협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⑥ 부모의 재산(월급, 연금, 부동산 등)을 동의 없이 가져갔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문5】 부모(친부모, 시부모, 양부모, 계부모, 적모서자 관계에서의 부모 포함)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와 신고 경험

☞ 부모 두 분 모두 안 계시는 경우 **【문6】** 으로 가 주십시오.

질문 유형	【문5】	【문5-1】	【문5-2】
	다음과 같은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하셨다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u>하나만</u> 선택해 주십시오.
【 보기 】	① 없다. ② 1회 ----- ③ 2회 ----- ④ 3회 ----- ⑤ 4회 이상 -----	① 신고했다. ② 신고하지 않았다. ③ 신고한 적도 있고, 하지 않은 적도 있다.	① 신고절차를 잘 몰라서 ② 사건이 경미해서 ③ 부모님을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 ④ 사건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⑤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⑥ 가족들이 신고하지 못하게 해서 ⑦ 범죄인지 몰라서 ⑧ 기타(자세히: _____)
① 욕설 등 심한 말을 퍼부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_____
② 때리려고 위협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_____
③ 물건을 집어던졌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_____
④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_____
⑤ 물건(책대, 몽둥이 등)으로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_____
⑥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_____

【문6】 함께 사는 형제자매, 친·인척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와 신고 경험

☞ 부모, 자식 이외에 함께 사는 형제자매, 친·인척이 없는 경우 **【문7】** 로 가 주
십시오.

유형	질문	【문6】	【문6-1】	【문6-2】
		다음과 같은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하셨다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u>하나</u> 만 선택해 주십시오.
	【 보기 】	1 없다. 2 1회 ---- ☞ 3 2회 ---- 문 4 3회 ---- 6-1 5 4회 이상	1 신고했다. 2 신고하지 않았다. 1 3 신고한 적도 있고, 1 문 하지 않은 적도 있다. 6-2	1 신고절차를 잘 몰라서 2 사건이 경미해서 3 친족을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 4 사건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5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6 가족들이 신고하지 못하게 해서 7 범죄인지 몰라서 8 기타(자세하: _____)
① 욕설 등 심한 말을 퍼부었다.		1 2 3 4 5	1 2 3	1 2 3 4 5 6 7 8 _____
② 때리려고 위협을 하였다.		1 2 3 4 5	1 2 3	1 2 3 4 5 6 7 8 _____
③ 물건을 집어던졌다.		1 2 3 4 5	1 2 3	1 2 3 4 5 6 7 8 _____
④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1 2 3 4 5	1 2 3	1 2 3 4 5 6 7 8 _____
⑤ 물건(현대, 몽둥이 등)으로 때렸다.		1 2 3 4 5	1 2 3	1 2 3 4 5 6 7 8 _____
⑥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1 2 3 4 5	1 2 3	1 2 3 4 5 6 7 8 _____

【문7】 현재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포함)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와 신고 경험

☞ **결혼한 적이 없으신 경우 【문9】로 가 주십시오.**

질문 유형	【문7】 다음과 같은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7-1】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하셨다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문7-2】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u>하나</u> 만 선택해 주십시오.
【 보기 】	1 없다. 2 1회 ----- 3 2회 ----- 4 3회 ----- 5 4회 이상 -----	1 신고했다. 2 신고하지 않았다. 3 신고한 적도 있고, 하지 않은 적도 있다.	1 신고절차를 잘 몰라서 2 사건이 경미해서 3 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 4 사건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5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6 배우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해서 7 범죄인지 몰라서 8 기타(자세하: _____)
① 욕설 등 심한 말을 퍼부었다.	1 2 3 4 5	1 2 3	1 2 3 4 5 6 7 8 _____
② 때리려고 위협을 하였다.	1 2 3 4 5	1 2 3	1 2 3 4 5 6 7 8 _____
③ 물건을 집어던졌다.	1 2 3 4 5	1 2 3	1 2 3 4 5 6 7 8 _____
④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1 2 3 4 5	1 2 3	1 2 3 4 5 6 7 8 _____
⑤ 물건(책대, 몽둥이 등)으로 때렸다.	1 2 3 4 5	1 2 3	1 2 3 4 5 6 7 8 _____
⑥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1 2 3 4 5	1 2 3	1 2 3 4 5 6 7 8 _____

【문8】 전배우자(사실혼 상의 전배우자 포함)에 의한 가정폭력

☞ **지난 1년간(2006. 6 ~ 2007. 6) 전배우자가 없으신 경우 【문9】로 가 주십시오.**

질문 유형	【문8】	【문8-1】	【문8-2】
		다음과 같은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하셨다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습니까?
【 보기 】	① 없다. ② 1회 ----- ③ 2회 ----- ④ 3회 ----- ⑤ 4회 이상 -----	① 신고했다. ② 신고하지 않았다. ③ 신고한 적도 있고, 하지 않은 적도 있다.	① 신고절차를 잘 몰라서 ② 사건이 경미해서 ③ 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 ④ 사건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⑤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⑥ 배우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해서 ⑦ 범죄인지 몰라서 ⑧ 기타(자세히: _____)
① 욕설 등 심한 말을 퍼부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_____
② 때리려고 위협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_____
③ 물건을 집어던졌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_____
④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_____
⑤ 물건(책대, 몽둥이 등)으로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_____
⑥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_____

※ 다음은 향후 귀하나 귀하의 가까운 사람 등이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할 경우, 그 신고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질문별로 하단 **【보기】** 에서 해당사항을 골라 √표를 해 주십시오.

신고여부 대상	【문9】	【문9-1】
	향후 귀하 등이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시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u>하나만</u> 선택해 주십시오.
【 보기 】	① 신고하겠다. ② 신고하지 않겠다. --- ☞문9-1 ③ 잘 모르겠다. -----	① 신고절차를 잘 몰라서 ② 가족들을 차마 신고할 수 없을 것 같아서 ③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④ 신고하면 폭력을 당할 것 같아서 ⑤ 당사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⑥ 기타(자세히: _____)
① 본인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② 가족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③ 친구, 이웃 직장동료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④ 잘 모르는 사람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문10】 귀하께서는 가정폭력특례법이 가정폭력범죄 감소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크게 기여했다. **☞ 【문10-1】**
- ② 어느 정도 기여했다. **☞ 【문10-1】**
- ③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 【문10-2】**
- ④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 【문10-2】**

【문10-1】 【문9】 에서 1, 2를 체크하신 경우 가정폭력특례법이 가정폭력 감소에 기여했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 가정폭력 범죄 예방 효과
- ②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법적 해결방식 유도(제공)
- ③ 가정폭력특례법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변화 등 사회분위기 변화
- ④ 기타(자세히: _____)

【문10-2】 【문10】에서 3, 4를 체크하신 경우 가정폭력특례법이 가정폭력 감소에 기여하지 못했다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②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유도
- ③ 가정폭력특례법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 유도
- ④ 기타(자세히: _____)

**【문11】 귀하께서는 향후 가정폭력특례법 내용 상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우선 순위로 세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강화
- ②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의 피해자 인권 보장
- ③ 신고시 사법경찰관의 개입조치 강화
- ④ 가정폭력 사건 전담반 규정 신설
- ⑤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교육·치료 및 지속적인 감시체계 강화
- ⑥ 접근금지, 사회봉사·수감명령 등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성행교정 조치(보호처분) 불이행 시 제재규정 강화
- ⑦ 잘 모르겠다.
- ⑧ 기타(자세히: _____)

성매매처벌법

※ 다음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함)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성매매처벌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 【문4】** ②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다.
-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 다음은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4】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우선 순위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집결지(특정 지역에서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
- ②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 ③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소
- ④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등
- ⑤ 이발소,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시지 업소 등
- ⑥ 인터넷 등 통신매체
- ⑦ 기타(자세히: _____)

※ 다음은 향후 귀하의 성매매 알선업소 신고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질문별로 하단 **【보기】**에서 해당사항을 골라 √표를 해 주십시오.

질문 유형	【문5】	【문5-1】
	향후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성매매 알선업소를 보신다면 신고하시겠습니까?	신고하지 않으시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u>하나만</u> 선택해 주십시오.
【 보기 】	① 신고하겠다. <input type="checkbox"/> ② 신고하지 않겠다. <input type="checkbox"/> ③ 잘 모르겠다. <input type="checkbox"/>	① 어디에 신고하는지 몰라서 ② 신고해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③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④ 나도 가본 경험이 있어 신고할 수가 없어서 ⑤ 성매매가 범죄인지 몰라서 ⑥ 기타(자세히: _____)
① 집결지(특정 지역에서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②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③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소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④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등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⑤ 이발소,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시지 업소 등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⑥ 인터넷 등 통신매체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문6】 귀하께서는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
- ② 조금 찬성한다.
- ③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 **【문6-1】**
- ④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 **【문6-1】**

【문6-1】 **【문6】** 에서 3, 4를 체크하신 경우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우선 순위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성매매를 금지할 경우, 음성적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 ② 성매매는 개인의 사생활이므로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③ 성매매도 직업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④ 성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므로 금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⑤ 기타(자세히: _____)

【문7】 귀하께서는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범죄 감소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크게 기여했다. ☞ **【문7-1】**
- ② 어느 정도 기여했다. ☞ **【문7-1】**
- ③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 **【문7-2】**
- ④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 **【문7-2】**

【문7-1】 **【문7】** 에서 1, 2를 체크하신 경우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감소에 기여했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성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성매매 범죄 예방 효과
- ② 성매매 관련 업소 단속 및 규제 강화
- ③ 성매매처벌법을 통한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변화 등 사회분위기 변화
- ④ 기타(자세히: _____)

【문7-2】 【문7】에서 3, 4를 체크하신 경우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감소에 기여하지 못했다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성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② 성매매 관련 업소에 대한 규제 강화
- ③ 성매매처벌법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 유도
- ④ 기타(자세히: _____)

【문8】 귀하께서는 향후 성매매처벌법 내용 상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우선 순위로 세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성매매 알선업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 ② 성판매자(강요 등에 의하지 않고 성판매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강화
- ③ 성매매피해자(강요 등에 의해 성판매를 한 경우) 개념 규정 확대
- ④ 수사 및 재판과정 등에서의 피해자 인권 보장
- ⑤ 변종 성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⑥ 해외성매매 처벌규정 신설
- ⑦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치료 및 감시체계 강화
- ⑧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 적용대상 범죄 확대
- ⑨ 잘 모르겠다.
- ⑩ 기타(자세히: _____)

●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면접원 기록사항			
응답자 성명		면접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면접원 ID	
응답자 주소	()시 ()구 ()동		
면접일시	2007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분

2007 연구보고서-13-2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I)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2007년 12월 26일 인쇄

2007년 12월 28일 발행

발행인 : 김 경 애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978-89-8491-213-7 93330 <정가 13,000 원>